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18.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18. 9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18.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구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

2018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 약

1. 서 론

-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이에 따른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999)」,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994)」 제도를 도입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조 8,444억원) 및 세액공제(1조 5,775억원)의 조세규모는 매년 조세지출액 상위권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요약-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세지출순위

	2016년(실적)	2017년(전망)	2018년(전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위 (18,444억원)	5위 (8,862억원)	6위 (19,475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7위 (15,776억원)	7위 (16,390억원)	7위 (17,028억원)

- 이 연구는 두 제도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약 20년간 적용된 동 제도들의 특성 및 제도들의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일몰 이후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가. 도입배경 및 현행 제도

- (도입배경) 1999년 8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됨

-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 소득공제(단,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현행 제도)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제도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함

<표 요약-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 도	설 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로소득자 ○ 최소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15% - 직불·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 사용분: 30%(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천만원 이하: Min[연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1억 2천만원 이하: 연250만원(단,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연 30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연200만원

나. 제도 운용현황

1) 공제인원 및 공제세액

- 2016년 동 제도를 통하여 총 910만 2,086명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그 규모는 22조 112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197% 증가함

2) 1인당 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 2016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은 전년 대비(241만 1천원) 0.3% 증가한 241만 8천 원 수준이며, 2006년(-7.2%), 2009년(-3.7%), 2010년(-17.1%)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2016년 한계세율¹⁾을 적용한 1인당 경감세액은 전년 대비(24만 3천원) 0.8% 증가한 **24만 5천원** 수준임

○ 1인당 경감세액 또한 1인당 평균소득공제금액과 비슷하게 2009년, 2010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보다 그 변화폭이 큼

<표 요약-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명, 만원)

연도	공제금액 (A)		공제인원 (B)		1인당평균 소득공제금액 (A/B)		1인당 경감세액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전년 대비 (%)		
2005	7,422,300	-	4,410,349	-	168.3	-	-	-
2006	7,894,799	6.4	5,055,503	14.6	156.2	-7.2	18.6	-
2007	9,401,010	19.1	5,704,731	12.8	164.8	5.5	20.0	7.5
2008	13,952,687	48.4	6,072,779	6.5	229.8	39.4	26.5	32.5
2009	13,839,775	-0.8	6,253,955	3.0	221.3	-3.7	20.0	-24.5
2010	11,563,159	-16.4	6,305,853	0.8	183.4	-17.1	16.0	-20.0
2011	12,828,035	10.9	6,739,692	6.9	190.3	3.8	17.2	7.5
2012	14,886,974	16.1	7,246,023	7.5	205.5	8.0	18.8	9.3
2013	16,642,766	11.8	7,645,693	5.5	217.7	5.9	20.3	8.0
2014	19,194,108	15.3	8,252,634	7.9	232.6	6.8	23.2	14.3
2015	20,647,425	7.6	8,564,504	3.8	241.1	3.7	24.3	4.7
2016	22,011,216	6.6	9,102,086	6.3	241.8	0.3	24.5	0.8

3)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총급여구간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음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공제인원은 39~44% 수준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22~26%)’ 구간의 비중이 그다음으로 큼

□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1인당 공제금액은 소득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자일수록 동 제도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음

1) 한계세율= 산출세액/과세표준,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준.

다. 타당성 평가

- 신용카드의 사용이 이미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유지를 통해 기대되는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는 조세지출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효과는 동 제도 도입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의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과약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소득과약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 격차는 2010년 23%p에서 2016년에는 7%p로 감소함

〈표 요약-4〉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추정)

(단위: 십억원, %, %p)

연도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차이 (A-B)
	피용자 임금·급여	과세대상금로소득 신고금액	소득과약률(A)	개인 영업잉여	사업소득 신고금액	소득과약률(B)	
2010	466,460	396,289	85	103,265	63,835	62	23
:	:	:	:	:	:	:	:
2016	627,828	595,990	95	128,633	112,853	8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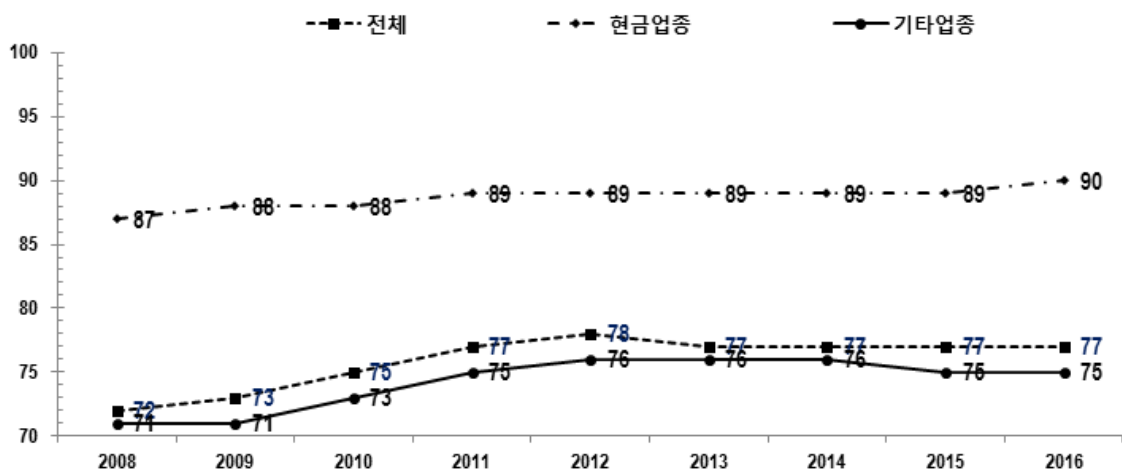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액의 11.20%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3.7%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귀착되는 등 고소득층에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소득계층 간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요구됨
 - 2017년부터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로 고소득층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이 줄어 소득분배가 일부 개선될 것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혜택 집중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게 귀착되는 조세혜택은 공제한도 축소 후 21.2%에서 18.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라. 효과성 평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러한 효과는 제도 도입 초기에 극적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그 효과가 둔화됨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초기에는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폭이 20%를 넘어섰으나, 현재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6년 기준 종합소득세(약 21조원)는 전년 대비 11.6%, 부가가치세(약 18조원)는 4.6% 증가함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은 거래투명성을 높여 기장신고문화의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개인사업자 기장신고비율은 2008년 7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77%를 달성하였으며, 2016년 기준 현금수입업종의 기장신고비율은 90%에 달함

[그림 요약-1] 개인사업자 기장신고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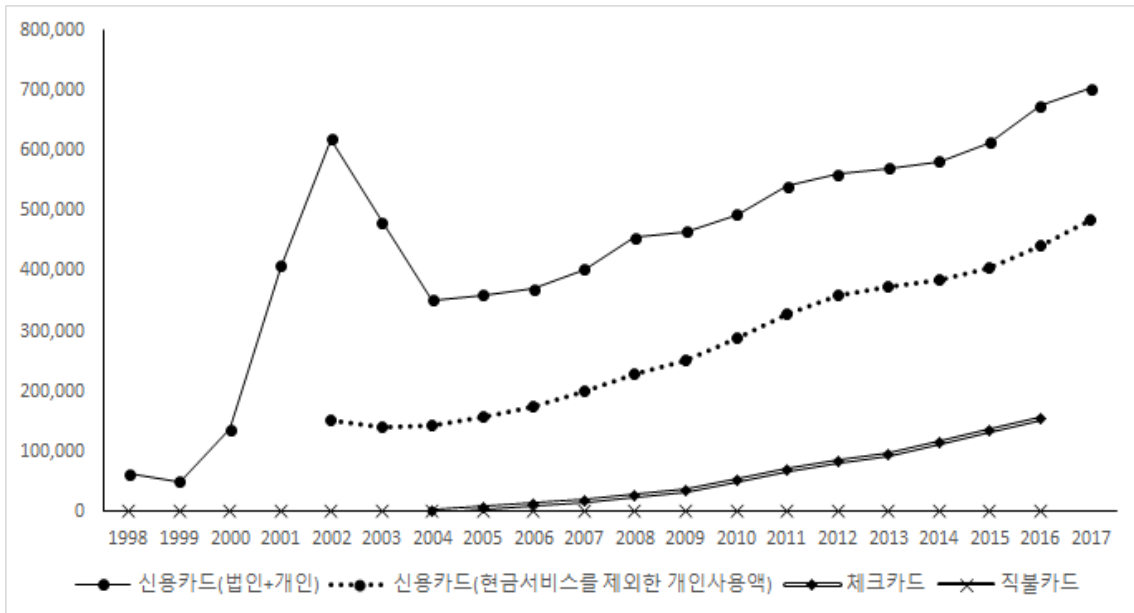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카드 수수 문화 및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에는 세제혜택을 통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 증대효과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임
 -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로 민간소비지출에서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6%에서 2017년에는 58%로 증가함

- 민간소비지출에서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p 증가한 19.4% 수준임
-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6년과 2007년에 6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1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한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함(2016년 민간소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7% 수준)

[그림 요약-2] 연도별 신용·체크·직불카드 이용실적

(단위: 십억원)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2013년 이후 전통시장 매출과 고객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현금결제 비율이 90% 이상이고, 신용카드단말기 보급률이 2013년 이후 정체상태에 있어 전통시장 매출의 증가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인지 여부가 불명확함
 - 대중교통 평균 목적통행량은 2014년 소폭 증가한 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평균 이용인원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하여 추가공제혜택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촉진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회귀분석²⁾을 실시한 결과,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마. 효율성 평가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로 인한 2000년 이후 조세지출 규모는 총 36조원으로 동 기간의 개인사업자 세수증가액 32조원(중소세 18조원 + 부가세 14조원)을 초과함
- 단순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정책으로 인한 조세지출비용³⁾과 개인사업자 세수증가분만을 비교했을 때,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정책은 효율성이 낮은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신용불량자 비용, 현금영수증제도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음

<표 요약-5> 연도별 조세지출비용과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액 비교

(단위: 십억원, %)

연도	신용카드 등 조세지출(A)	개인사업자의 세수증가액			비용-효익분석(A/D)
		종합소득세(B)	부가가치세(C)	합계(D=B+C)	
2000	278	923	933	1,856	2
2001	745	738	-56	682	30
2002	1,378	-593	465	-128	-487
2003	1,606	1,085	489	1,574	53
2004	1,440	467	1,226	1,693	53
2005	1,480	431	1,015	1,446	68
2006	1,636	1,412	1,264	2,676	39
2007	1,950	1,403	1,301	2,704	46
2008	2,362	577	1,275	1,852	82
2009	2,897	-164	220	56	3,381
2010	3,073	1,104	1,332	2,436	76
2011	2,556	1,787	1,119	2,906	40
2012	2,610	963	347	1,310	89
2013	2,739	1,265	800	2,065	66
2014	2,960	2,225	534	2,759	57
2015	3,208	2,327	460	2,787	115
2016	3,422	2,233	786	3,019	113
누계	36,339	18,183	13,510	31,693	115

2)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바. 설문조사 결과

- 지불결제수단 중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결제수단의 편리성과 신용카드 혜택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전체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은 신용카드(54.8%), 체크·직불·선불카드(23.5%),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13.3%),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8.3%) 순으로 조사됨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50.9%)’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31.2%)’ 응답 비율은 다소 낮은 편임

-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전혀 없었다(50.1%)’와 ‘체크·직불·선불카드를 조금/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49.9%)’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음

- 추가공제혜택(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사용분)이 추가공제항목 이용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낮음
 - 도서·공연 추가공제혜택은 응답자의 70%가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
 - 전통시장 사용에 미친 영향은 응답자의 61.3%가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
 - 대중교통 이용에 미친 영향은 응답자의 54.9%가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

-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65.4%)’로 가장 높았고, 바람직한 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다(49.6%)’가 가장 높았음

사. 정책대안

- 도입 직후 신용카드 등의 수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에 그 효과가 둔화되어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조세규모가 1.8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축소 또는 폐지 추진 시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 감소로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자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 제도의 개편방안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상위 3개 항목은 ① 제도의 단순화, ② 세액공제로의 전환, ③ 신용카드 공제율을 축소/폐지하여 다른 지불수단과 공제율 격차 확대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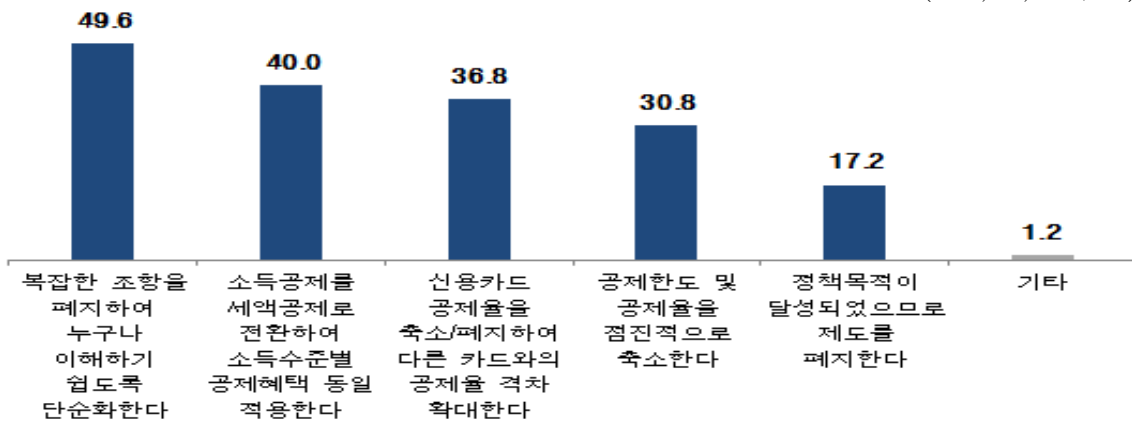
1) 제도의 단순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 폐지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정책효과가 불명확하고,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것을 고려

[그림 요약-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n= 2,500, 단위: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을 폐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을 약 11.3%(약 241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만 폐지할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9.6%(약 206억원),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만 폐지할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9.0%(약 1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의 폐지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 폐지로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공제혜택이 5.1% 감소하는 반면 총급여 8천만~1억원인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3배 높은 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 고소득층 공제한도 축소 & 세액공제로 전환

- 소득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함
- 고소득층에 세금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소득구간별 차등 한도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고소득자의 공제한도 축소만으로는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이후에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7%에 해당하는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계층에 전체 조세혜택의 18% 이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의 공제한도를 현재보다 낮추거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요약-6> 고소득자 공제한도 추가축소방안

총급여	공제한도	
	【대안 1】	【대안 2】
7천 이하	Min(총급여의 20%, 300만원)	Min(총급여의 20%, 300만원)
7천~1억 2천	200만원	150만원
1억 2천 초과	150만원	100만원
공통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추가공제혜택 제공	

- 【대안 1】을 선택할 경우, 조세지출은 3.9% 감소하고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속되는 공제혜택은 19.1%에서 17%로 2.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대안 2】**를 선택할 경우, 조세지출은 8.1% 감소하고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 소득자에 귀속되는 공제혜택은 19.1%에서 14.5%로 4.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할 경우,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가정함

<표 요약-7> 세액공제로의 전환 방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총급여의 25%	총급여의 25%
세액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	3%	3%
	직불카드	3%	2.5%	2.5%
	신용카드	1.5%	1%	0.5%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6만원 - 총급여 7천만~1억 2천만원: 3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24만원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한도 → 각각 12만원)		

- **【대안 1】** 적용 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에 비하여 공제혜택이 증가하며,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의 비중은 19.1%에서 11.6%로 7.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안 2】** 적용 시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에 비하여 공제혜택이 증가하며,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의 비중은 19.1%에서 12.2%로 6.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안 3】** 적용 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에 비하여 공제혜택이 증가하며,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의 비중은 19.1%에서 12.7%로 6.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지불수단 간 공제율 격차 확대: ①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② 축소 및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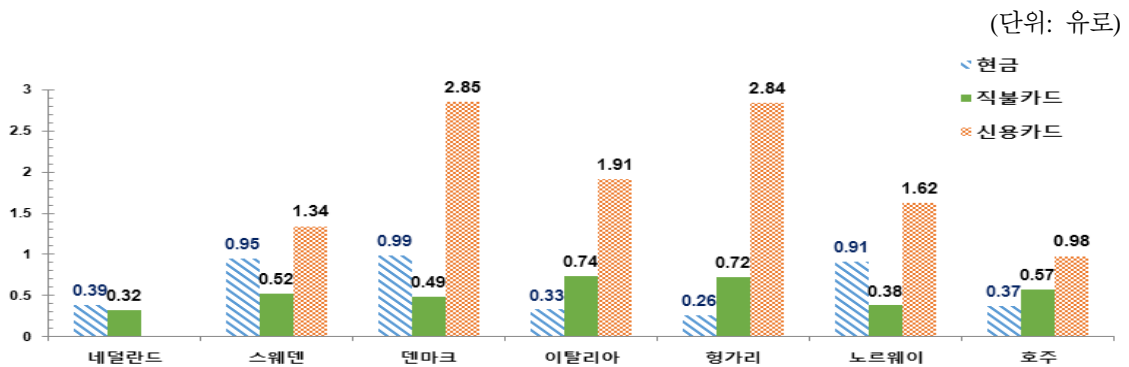
□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직불·체크카드에 비해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높은 지급 수단임

-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현금이 0.26~0.99유로, 직불카드가 0.32~0.74유로, 신용카드가 0.98~2.85유로로 신용카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금, 직불카드의 순서임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지급액 비율은 2016년 기준 **45.5%**로 조사대상국가 평균인 18.3%보다 월등히 높지만, 직불·체크카드 지급액 비율은 **27.6%**로 조사대상국가 평균인 37%보다 낮음

- 미국, 영국, 호주의 직불·체크카드 지급액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46.1%, 52.9%, 44.1%로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직불·체크카드에 의해 결제되고 있음
- 반면 미국, 영국, 호주의 신용카드 지급액 비율은 2016년 기준 24.7%, 11.5%, 22.6%로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결제행태를 보임

[그림 요약-4]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헝가리는 2009년, 노르웨이, 호주는 2013년
 자료: 한국은행,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6.

□ 신용카드는 직불·체크카드에 비하여 높은 가맹점수수료,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비용이 크므로 신용카드공제율을 낮추고, 직불·체크카드공제율은 높여 직불·체크카드에 의한 지급액 비중을 높이고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액 비중은 낮출 필요가 있음

- 회귀분석 결과,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은 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줄어 결과적으로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요약-8>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및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신청자 1인당 기준)

(단위: 원)

총급여	현행 1인당 공제혜택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10%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5%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0%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천	52,347	50,558	-1,789	47,454	-4,893	42,168	-10,179
1~1.5천	91,909	85,575	-6,334	77,084	-14,825	66,382	-25,527
1.5~2천	108,945	100,471	-8,474	89,752	-19,193	77,158	-31,787
2~3천	137,217	129,027	-8,190	118,100	-19,117	104,540	-32,677
3~4천	205,577	196,433	-9,144	182,914	-22,663	164,499	-41,078
4~4.5천	256,455	247,374	-9,081	232,864	-23,591	211,241	-45,214
4.5~5천	282,980	273,663	-9,317	258,025	-24,955	234,032	-48,948
5~6천	315,735	306,553	-9,182	290,426	-25,309	263,978	-51,757
6~8천	346,688	339,316	-7,372	325,347	-21,341	299,638	-47,050
8천~1억	397,629	392,013	-5,616	380,281	-17,348	354,069	-43,560
1~2억	487,898	482,041	-5,857	469,059	-18,839	436,147	-51,751
2~3억	595,880	589,985	-5,895	576,048	-19,832	530,025	-65,855

【대안 1】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및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30%)을 그대로 두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10%, 5%, 0%로 낮추어 공제율 격차를 확대할 경우, 조세지출은 각각 3.4%, 8.8%, 17.2% 감소하며, 전 소득구간에서 조세혜택의 감소가 관찰됨
 -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0%로 낮추어 공제격차를 30%로 확대 시 총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

【대안 2】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및 공제율 격차 확대

- 현재의 공제율 격차 15%를 유지하되 직불·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율을 (25%, 10%), (20%, 5%), (15%, 0%)로 인하할 경우 조세지출은 각각 7.9%, 20.6%, 41.1% 감소하며, 전 소득구간에서 조세혜택의 감소가 관찰됨
 - 총급여 2억~3억원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

<표 요약-9>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및 공제율 격차 확대

(단위: 원)

총급여	현행 1인당 공제혜택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10%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5%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0%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천	52,347	50,558	- 1,789	47,454	- 4,893	42,168	- 10,179
1~1.5천	91,909	85,575	- 6,334	77,084	- 14,825	66,382	- 25,527
1.5~2천	108,945	100,471	- 8,474	89,752	- 19,193	77,158	- 31,787
2~3천	137,217	129,027	- 8,190	118,100	- 19,117	104,540	- 32,677
3~4천	205,577	196,433	- 9,144	182,914	- 22,663	164,499	- 41,078
4~4.5천	256,455	247,374	- 9,081	232,864	- 23,591	211,241	- 45,214
4.5~5천	282,980	273,663	- 9,317	258,025	- 24,955	234,032	- 48,948
5~6천	315,735	306,553	- 9,182	290,426	-25,309	263,978	- 51,757
6~8천	346,688	339,316	- 7,372	325,347	- 21,341	299,638	- 47,050
8천~1억	397,629	392,013	- 5,616	380,281	- 17,348	354,069	- 43,560
1~2억	487,898	482,041	- 5,857	469,059	- 18,839	436,147	- 51,751
2~3억	595,880	589,985	- 5,895	576,048	- 19,832	530,025	- 65,855

【대안 3】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현직불·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율을 (25%, 5%), (25%, 0%), (20%, 0%)로 인하여 공제율 격차를 확대할 경우 조세지출은 각각 14.0%, 23.4%, 31.2% 감소하며, 전 소득구간에서 조세혜택의 감소가 관찰됨

<표 요약-10>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단위: 원)

총급여	현행 1인당 공제혜택	직불카드 = 25% 신용카드 = 10%		직불카드 = 20% 신용카드 = 5%		직불카드 = 15% 신용카드 = 0%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천	52,347	48,233	- 4,114	41,719	- 10,628	31,115	- 21,232
1~1.5천	91,909	79,736	- 12,173	63,611	- 28,298	43,122	- 48,787
1.5~2천	108,945	93,161	- 15,784	73,015	- 35,930	49,018	- 59,927
2~3천	137,217	120,183	- 17,034	96,914	- 40,303	67,294	- 69,923
3~4천	205,577	185,040	- 20,537	153,813	- 51,764	109,291	- 96,286
4~4.5천	256,455	234,945	- 21,510	199,460	- 56,995	144,535	-111,920
4.5~5천	282,980	260,937	- 22,043	223,344	- 59,636	162,351	-120,629
5~6천	315,735	293,519	- 22,216	253,937	- 61,798	186,358	-129,377
6~8천	346,688	327,439	- 19,249	291,334	- 55,354	222,516	-124,172
8천~1억	397,629	380,367	- 17,262	347,653	- 49,976	275,773	- 121,856
1~2억	487,898	468,086	- 19,812	432,531	- 55,367	348,122	- 139,776
2~3억	595,880	570,826	- 25,054	532,362	- 63,518	427,587	- 168,293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가. 도입배경 및 현행 제도

- (도입배경)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제도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사업자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도입됨
 - 도입 당시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하고 과표양성화 비율이 낮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의 0.5%를 세액공제함
- (현행 제도) 현행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제도는 일반과세자 중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을 공제함

<표 요약-1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설명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개인사업자(단,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 공제율 * 2018년 이후 각각 2%, 1.3%로 조정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숙박업 영위: 2.6% - 그 외의 경우: 1.3% ○ 한도: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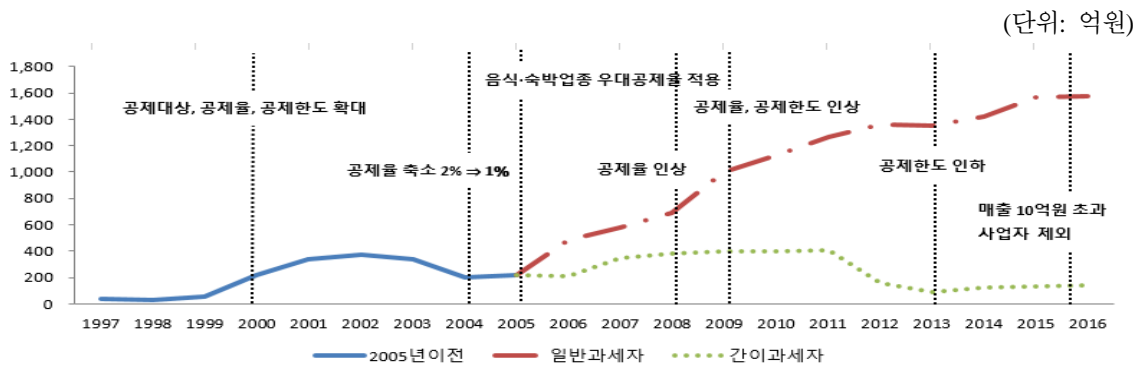
나. 제도 운용현황

1) 공제건수 및 공제세액

- 1997년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공제세액은 373억원 수준이었지만, 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에 의하여 **2016년 동 제도로 인한 공제세액 규모는 일반과세자 1조 5771억원, 간이과세자 1,391억원**에 달함
 - 2000년 공제사업자 범위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인상하여 공제세액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함

- 2004년 공제율을 1%로 축소하고, 2005년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1.5%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 개편에 따라 공제건수는 전년 대비 42.5% 감소하였지만, 공제금액은 6.8% 증가하였음
- 2016년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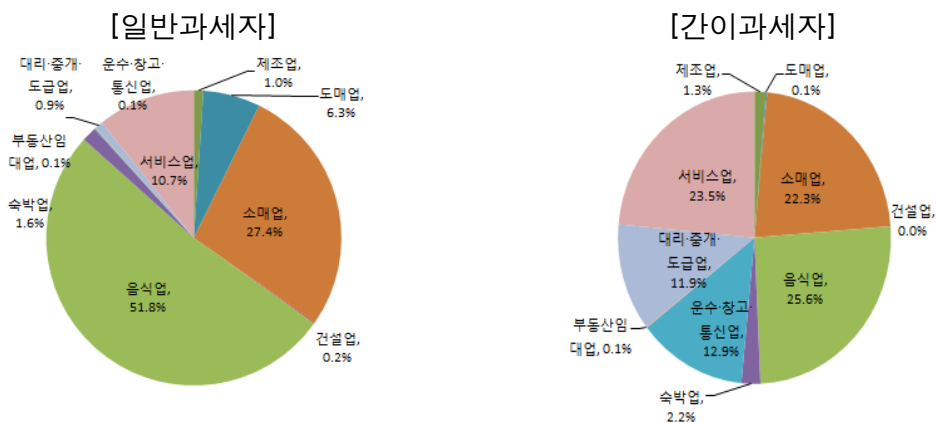
[그림 요약-5]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매출세액 세액공제 현황



2) 업종별 현황

- 2016년을 기준으로 업종별 발행세액 공제 현황 비중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음식업(51.8%), 소매업(27.4%), 서비스업(10.7%) 순이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업(25.6%), 서비스업(23.5%), 소매업(22.3%) 순임
- 간이과세자의 경우 운수·창고·통신업(12.9%), 대리·중개·도급업(11.9%) 종사 사업자도 비교적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

[그림 요약-6] 업종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현황(2016년)



다. 타당성 분석

- 신용카드 등 사용문화 정착으로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효과가 약화되었지만, 현재 경기상황과 영세자영업자의 여건을 고려할 때 동 제도를 통하여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간이과세자 및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직후인 1999년과 200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에 다시 한 번 크게 상승함
 - 그러나 현재는 신용카드 수수 및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이 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됨
 - 2016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과세분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간이과세자 1.6%, 일반사업자 3.8%로 한자릿수로 떨어짐

-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비중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월등히 높아 세액공제대상자를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로 한정**한 것은 **정책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정책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효과가 클 것이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표 요약-12〉 사업자별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

(단위: 십억원, %)

연도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연간 과세 표준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연간 과세 표준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연간 과세 표준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2	3,646	120	3	598	142	24	28	14	51
2013	3,692	124	3	607	150	25	27	14	53
2014	3,712	133	4	615	157	25	31	19	62
2015	3,679	138	4	631	168	27	31	18	59
2016	3,734	148	4	655	180	28	31	20	64

라. 효과성 분석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 32% 이상이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세금혜택이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의 25%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일반과세자는 1인당 136만원, 간이과세자는 22만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발생함

<표 요약-13> 일반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단위: 명, 백만원, 건, %)

연도	과세분매출 신고인원	납부세액	세액공제 건수		세액공제금액	
			신고인원 대비	납부세액 대비		
2006	2,145,196	8,670,690	515,894	24	485,579	6
2007	2,310,397	9,765,887	1,167,358	51	1,161,191	12
2008	2,492,782	10,909,944	645,719	26	693,771	6
2009	2,657,537	11,553,461	694,332	26	996,551	9
2010	2,783,474	12,554,397	754,766	27	1,126,803	9
2011	2,939,301	13,425,761	809,599	28	1,264,875	9
2012	3,019,745	14,242,706	834,197	28	1,364,319	10
2013	3,115,758	15,114,898	867,754	28	1,352,283	9
2014	3,205,354	15,691,516	867,625	27	1,418,814	9
2015	3,379,821	16,208,680	1,100,848	33	1,568,227	10
2016	3,584,805	17,025,286	1,160,011	32	1,577,129	9

<표 요약-14> 간이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단위: 명, 백만원, 건, %)

연도	과세분매출 신고인원	세액	세액공제 건수		세액공제금액	
			신고인원 대비	세액 대비		
2006	1,603,117	772,336	415,055	26	106,677	14
2007	1,623,653	711,189	463,151	29	121,448	17
2008	1,759,530	799,050	476,418	27	154,225	19
2009	1,838,024	814,985	472,677	26	174,766	21
2010	1,863,201	789,657	483,171	26	176,493	22
2011	1,827,821	779,726	489,215	27	181,082	23
2012	1,762,094	778,133	474,653	27	162,437	21
2013	1,680,400	759,477	501,497	30	94,014	12
2014	1,671,880	523,376	530,308	32	122,731	23
2015	1,659,847	551,222	587,110	35	128,522	23
2016	1,652,045	554,288	626,653	38	139,191	25

마. 설문조사 결과

- 정부의 과표 양성화 정책에 대해 세무대리인 200명 중 71.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7.5%로 높게 조사됨(도움이 되는 편이다 58.0% + 매우 도움이 된다 19.5%)
-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하한다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89.5%로 높게 나타났으며(조금 증가할 것이다 61.5% + 크게 증가할 것이다 28.0%), 제도 개편방안으로는 현행 유지 의견이 77.5%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는 여전히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바. 정책대안

- 과표양성화 효과 약화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정책으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감소하였지만, 동 제도를 통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상당하여 자영업자의 경영여건과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를 유지하고, 추후 단계적인 개편방안을 모색**
 - 추후 단계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세액공제대상자의 축소나 우대공제율에 대한 일몰연장 중단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1) 일반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 검토

- 우대공제율이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2005년은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시기지만, 신용카드 수수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정착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폭이 둔화됐으므로 우대공제율을 유지할 근거가 이전보다 약화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혜택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

폭이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규모 또한 그에 비례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의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2010년 20%/21%/25%에서 2016년에는 8%/4%/12%로 하락함

-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폭이 둔화된 일반사업자를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사업자에게 세액공제혜택의 90% 이상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2)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축소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우대공제율을 적용(2.6%)받고 있는데, 이 우대공제율 적용이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 업종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폭이 타 업종보다 높아야 하지만, 숙박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016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율은 음식업 10%, 소매업 8%이지만 숙박업은 3% 수준임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축소 시 세수효과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음

- 【대안 1】 실행 시 숙박업 간이사업자 1인당 12만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
- 【대안 4】 실행 시 음식업 간이사업자 1인당 10만원, 숙박업 간이사업자 1인당 12만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

<표 요약-15>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축소 시 세수효과

(단위: 백만원)

업종	【현행】 음식업=2.6% 숙박업=2.6%	【대안 1】 음식업=2.6% 숙박업=1.3%	【대안 2】 음식업=2.0% 숙박업=2.0%	【대안 3】 음식업=2.0% 숙박업=1.3%	【대안 4】 음식업=1.3% 숙박업=1.3%
음식업	35,575	35,575	27,365	27,365	17,788
숙박업	3,098	1,549	2,383	1,549	1,549
합 계	38,673	37,124	29,748	28,914	19,337
세수변동		1,549	8,925	9,759	19,337

-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5억원을 기점으로 공제한도나 세액공제율에 차등을 둘 경우 매출이 큰 사업자에게 공제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이 500만원, 5억원 초과는 3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일반사업자 1인당 공제세액이 32만~9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요약-16>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원)

과세표준	【현행】 수입금액 관계없이 5백만원	【대안 1】 수입금액 5억 미만=5백만원 수입금액 5억 초과=3백만원		【대안 2】 수입금액 2억 미만=5백만원 수입금액 2억 초과=3백만원	
		금액	차이	금액	차이
2억~5억	1,933,571	1,933,571	0	1,780,475	-153,096
5억~10억	1,883,580	1,562,156	-321,424	1,562,156	-321,424
10억~20억	1,801,063	1,419,685	-381,378	1,419,685	-381,378
20억 초과	2,941,499	2,012,933	-928,566	2,012,933	-928,566

-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이 1.3%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5억원 초과는 우대공제율 적용을 폐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일반사업자 1인당 공제세액이 2~4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요약-17>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원)

과세표준	【현행】 수입금액 관계없이 1.3%	【대안 1】 수입금액 5억 미만=1.3% 수입금액 5억 초과=1.0% 공제한도 = 500만원		【대안 2】 수입금액 2억 미만=1.3% 수입금액 2억 초과=1.0% 공제한도 = 500만원	
		금액	차이	금액	차이
2억~5억	1,933,571	1,933,571	0	1,862,825	-70,746
5억~10억	1,883,580	1,843,069	-40,511	1,843,069	-40,511
10억~20억	1,801,063	1,778,781	-22,282	1,778,781	-22,282
20억 초과	2,941,499	2,922,024	-19,475	2,922,024	-19,475

목 차

I. 서 론	37
II.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41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43
가. 도입 목적	43
나. 변천 과정	44
다. 현행제도	59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62
가. 도입 목적	62
나. 변천 과정	62
다. 현행 제도	68
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69
4.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70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71
II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운용현황	73
1. 연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75
2. 1인당 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76
3.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77
4. 향후전망	84
IV.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 운용현황	85
1. 연도별 공제건수 및 공제세액	87
2. 업종별 발행세액공제 현황	89
3. 향후전망	91

V. 타당성 평가	93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95
가. 정부 역할의 적절성	95
나.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96
다. 정부지원 형태의 적절성: 조세지원 vs. 재정지원	103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03
가. 정부 역할의 적절성	103
나.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105
다. 정부지원 형태의 적절성: 조세지원 vs. 재정지원	121
VI. 효과성 평가	123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25
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125
나.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및 현금영수증 수취문화의 정착	132
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139
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증가	141
마. 지급수단 이용행태의 변화	145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58
VII. 효율성 평가	163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편익 - 세수증대	165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비용	167
가. 조세지출	167
나. 카드 가맹점수수료	169
다. 현금영수증제도 운영비용	170
라. 신용불량자 비용	171
VIII. 설문조사 결과	173
1. 조사 개요	175

가. 조사 설계	175
나. 조사 내용	176
다. 응답자 특성	177
2. 조사 결과 요약 및 종합	178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178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88
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	191
라. 조사 결과 종합	194
3. 조사 결과 분석	197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197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	201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향	231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	249
IX. 정책방향 및 대안	255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57
가. 정책방향	257
나. 정책대안	258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74
가. 정책방향	274
나. 정책대안	274
참고문헌	283
부 록	285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지	287

표 목 차

<표 II-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천 과정	55
<표 II-2>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일몰기한 변천 과정	57
<표 II-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2018)	59
<표 II-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변천 과정	67
<표 II-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2018)	69
<표 II-6>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규모	70
<표 II-7>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적용사례	72
<표 III-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현황	75
<표 III-2>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및 1인당 경감세액	77
<표 III-3>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인원	78
<표 III-4>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금액	79
<표 III-5>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1인당 공제금액	81
<표 III-6>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1인당 경감세액	82
<표 III-7> 주요 조세특례 제도(연도별 조세지출액 상위 10개)	84
<표 IV-1> 과세자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현황(2016)	89
<표 IV-2>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현황(2016)	90
<표 IV-3> 주요 조세특례제도(연도별 조세지출액 상위 10개)	91
<표 V-1>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소득과약률(추정)	96
<표 V-2> 근로소득 규모별 공제인원과 소득공제금액(2016)	97
<표 V-3> 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소득공제 신청인원 기준)	98
<표 V-4> 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근로소득 연말정산인원 기준)	99

<표 V-5>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효과(추정)	101
<표 V-6> 개인사업자의 과세분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4
<표 V-7> 사업자별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	106
<표 V-8>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	106
<표 V-9>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비중	107
<표 V-10>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8
<표 V-11>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	109
<표 V-1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0
<표 V-13> 업종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2016년)	111
<표 V-14>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신청자 분포(일반사업자)	112
<표 V-15>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신청자 분포(간이과세자)	113
<표 V-16> 과세표준 규모별 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액(일반사업자)	114
<표 V-17> 과세표준 규모별 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액(간이과세자)	115
<표 V-18>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수혜비율(일반과세자)	116
<표 V-19>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수혜비율(간이과세자)	117
<표 V-20>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	119
<표 VI-1>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납세인원	126
<표 VI-2>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127
<표 VI-3>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29
<표 VI-4>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	131
<표 VI-5> 현금수입업종과 기타 업종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현황	132

<표 VI-6>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133
<표 VI-7> 민간소비지출 대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134
<표 VI-8> 연도별 체크카드 사용실적	135
<표 VI-9> 연도별 직불카드 사용실적	136
<표 VI-10>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138
<표 VI-11> 소비자 상대 업종의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138
<표 VI-12>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	140
<표 VI-13> 전통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 및 매출액	142
<표 VI-14> 전통시장 신용카드단말기 보급률	143
<표 VI-15> 구매장소별 지급수단 이용비중(건수기준)	144
<표 VI-16> 대중교통 평균 이용인원 및 목적통행량	145
<표 VI-17>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 비교	146
<표 VI-18> 연도별 직불카드 등 사용비중	149
<표 VI-19>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에 미치는 영향	150
<표 VI-20>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에 미치는 영향	152
<표 VI-21>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155
<표 VI-22>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격차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157
<표 VI-23> 일반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158
<표 VI-24>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완화	159
<표 VI-25> 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혜택 ...	160
<표 VI-26> 과세표준 규모별 세부담 경감효과 비교(일반사업자)	161
<표 VII-1> 연도별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액	165
<표 VII-2> 연도별 국세탄성치	166
<표 VII-3>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비용	168
<표 VII-4> 연도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169

<표 VII-5> 현금영수증제도 운영비용	170
<표 VII-6> 신용카드 관련 사유별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171
<표 VII-7> 신용카드 관련 금액구간별, 연령별(연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현황	172
<표 VII-8> 연도별 채무조정 현황	172
<표 VIII-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조사 설계	175
<표 VIII-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 조사 설계	175
<표 VIII-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조사 내용	176
<표 VIII-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 조사 내용	176
<표 VIII-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77
<표 VIII-6>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178
<표 VIII-7> 신용카드 사용 이유 - 중복응답	178
<표 VIII-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179
<표 VIII-9>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 인지 여부	179
<표 VIII-10>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미친 영향	179
<표 VIII-11>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180
<표 VIII-12>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180
<표 VIII-13>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180
<표 VIII-14> 전통시장 미사용 이유 - 중복응답	181
<표 VIII-15>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181
<표 VIII-16>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182
<표 VIII-17> 대중교통 미이용 이유 - 중복응답	182
<표 VIII-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183
<표 VIII-19>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의 소비/지출 영향	183
<표 VIII-2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183
<표 VIII-21>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184
<표 VIII-22>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인지 여부	184
<표 VIII-23>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185
<표 VIII-24>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방법	185

<표 VIII-2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185
<표 VIII-26>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186
<표 VIII-27>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186
<표 VIII-28>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186
<표 VIII-29> 신용카드 대비 직불·체크카드 장점 인지 여부	186
<표 VIII-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 중복응답	187
<표 VIII-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188
<표 VIII-32>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88
<표 VIII-33>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89
<표 VIII-34>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89
<표 VIII-3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90
<표 VIII-36>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90
<표 VIII-3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90
<표 VIII-38>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91
<표 VIII-39>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91
<표 VIII-40> 정부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의 과표 양성화 효과	192
<표 VIII-4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 도움 정도	192
<표 VIII-4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192
<표 VIII-4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인하가 자영업자 세부담에 미칠 영향	193
<표 VIII-44>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필요에 대한 의견	193
<표 VIII-4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	194
<표 VIII-46>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198
<표 VIII-47> 신용카드 사용 이유 - 중복응답	200
<표 VIII-4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202

<표 VIII-49>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 인지여부	204
<표 VIII-50>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미친 영향	206
<표 VIII-51>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208
<표 VIII-52>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210
<표 VIII-53>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212
<표 VIII-54> 전통시장 미사용 이유 - 중복응답	214
<표 VIII-55>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216
<표 VIII-56>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218
<표 VIII-57> 대중교통 미이용 이유 - 중복응답	220
<표 VIII-5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222
<표 VIII-59>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의 소비/지출 영향	224
<표 VIII-6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226
<표 VIII-61>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228
<표 VIII-62>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인지 여부	230
<표 VIII-63>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232
<표 VIII-64>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방법	234
<표 VIII-6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236
<표 VIII-66>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238
<표 VIII-67>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240
<표 VIII-68>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242
<표 VIII-69> 신용카드 대비 직불·체크카드 장점 인지 여부	244
<표 VIII-7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 중복응답	246
<표 VIII-7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248
<표 VIII-72> 정부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의 과표 양성화 효과	249
<표 VIII-7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 도움 정도	250
<표 VIII-7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251

<표 VIII-7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인하가 자영업자 세 부담에 미칠 영향	252
<표 VIII-76>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필요에 대한 의견	253
<표 VIII-77>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254
<표 IX-1>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조항 폐지 시 공제혜택 변화	259
<표 IX-2> 고소득자 공제한도 추가축소방안	261
<표 IX-3> 고소득자 공제한도 추가축소방안	261
<표 IX-4>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로 인한 1인당 공제세액의 변화	262
<표 IX-5> 세액공제로의 전환 방안	262
<표 IX-6> 세액공제로 전환 시 공제혜택 변화	264
<표 IX-7> 카드를 이용한 지급비율 국가간 비교	266
<표 IX-8> 소득공제율 조정방안	267
<표 IX-9>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확대	268
<표 IX-10>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확대 ..	269
<표 IX-11> 직불카드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유지	270
<표 IX-12> 직불카드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유지 (총액기준)	270
<표 IX-13> 직불카드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확대 (신청자 1인당 기준)	271
<표 IX-14> 직불카드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확대 (총액기준)	272
<표 IX-15> 소득계층별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액(2016년 기준)	273
<표 IX-16> 일반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 시 세수효과	275
<표 IX-17> 일반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 시 사업자별 공제혜택 변동	276
<표 IX-18>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축소 시 세수효과	277
<표 IX-19>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축소 시 1인당 세 부담 효과 변동	278

<표 IX-20>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279
<표 IX-21>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279
<표 IX-22>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280
<표 IX-23>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281
<표 IX-24>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281
<표 IX-25>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282

그림 목 차

[그림 II-1] 시행연도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	60
[그림 II-2] 시행연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공제한도	61
[그림 II-3] 시행연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최저사용금액기준	61
[그림 III-1] 연도별 공제금액 및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76
[그림 III-2]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인원 비율	78
[그림 III-3]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금액 비율	80
[그림 III-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현황	83
[그림 III-5] 과세대상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2016)	83
[그림 IV-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현황	88
[그림 IV-2] 업종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현황(2016년)	90
[그림 V-1] 근로소득 규모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비중	98
[그림 V-2] 1인당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2016년 귀속 소득공제 신청인원 기준)	99
[그림 V-3]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인지 여부	100
[그림 V-4]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전후 1인당 경감세액(추정)	101
[그림 V-5]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가 소득계층별 귀착에 미치는 효과(추정)	102
[그림 V-6] 과세표준 규모별 일반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액(2016년)	114
[그림 V-7] 과세표준 규모별 간이과세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액(2016년)	115
[그림 V-8] 과세표준 규모별 수혜비율의 변화(일반사업자)	117
[그림 V-9] 과세표준 규모별 수혜비율의 변화(간이과세자)	118
[그림 V-10]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규모별 신청인원 및 수혜비율 비교(2016년) ...	118
[그림 V-1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규모별 신청인원 및 수혜비율 비교(2016년) ...	119

[그림 V-1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	120
[그림 V-13]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	121
[그림 VI-1]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납세인원	126
[그림 VI-2]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128
[그림 VI-3] 개인사업자 기장신고비율	130
[그림 VI-4] 민간소비지출 대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134
[그림 VI-5] 연도별 신용·체크·직불카드 이용실적	137
[그림 VI-6]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137
[그림 VI-7]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 ...	141
[그림 VI-8] 전통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 및 매출액	143
[그림 VI-9] 대중교통 평균 이용인원 및 목적통행량(평일)	145
[그림 VI-10] 연도별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	149
[그림 VI-11] 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혜택	160
[그림 VII-1] 연도별 국세탄성치	167
[그림 VIII-1]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197
[그림 VIII-2] 신용카드 사용 이유 - 중복응답	199
[그림 VIII-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201
[그림 VIII-4]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 인지 여부	203
[그림 VIII-5]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미친 영향	205
[그림 VIII-6]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207
[그림 VIII-7]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209
[그림 VIII-8]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211
[그림 VIII-9] 전통시장 미사용 이유 - 중복응답	213
[그림 VIII-10]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215
[그림 VIII-11]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217
[그림 VIII-12] 대중교통 미이용 이유 - 중복응답	219

[그림 VIII-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221
[그림 VIII-14]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의 소비/지출 영향	223
[그림 VIII-15]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225
[그림 VIII-16]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227
[그림 VIII-17]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인지 여부	229
[그림 VIII-18]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231
[그림 VIII-19]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방법	233
[그림 VIII-2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235
[그림 VIII-21]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237
[그림 VIII-22]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239
[그림 VIII-23]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241
[그림 VIII-24] 신용카드 대비 직불·체크카드 장점 인지 여부	243
[그림 VIII-2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 중복응답	245
[그림 VIII-2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247
[그림 VIII-27] 정부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의 과표 양성화 효과	249
[그림 VIII-28]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 도움 정도	250
[그림 VIII-29]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251
[그림 VIII-3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인하가 자영업자 세부담에 미칠 영향	252
[그림 VIII-31]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필요에 대한 의견	253
[그림 VIII-3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254
[그림 IX-1]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265

I. 서론



I. 서론

-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이에 따른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999)」,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994)」제도를 도입

-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임

- 1994년 도입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일반과세자 중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 음식·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5%, 그 외의 경우 1.3%을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함

- 위 제도들은 제도가 신설된 이래로 일몰이 계속 연장되어 왔으며,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등 정책목적에 따라 공제대상 및 공제율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조 8,444억원) 및 세액공제(1조 5,775억원)의 조세규모는 매년 조세지출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 제도들의 특성 및 도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적에 따른 제도의 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공제율 변화 등을 파악하여 제도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시 활용하고자 함

Ⅱ.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II.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아 공평과세에 어려움이 있었고, 탈세의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3자 정보보고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었음
 - 1990년대 말까지도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과세표준 양성화율이 높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대략 3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음⁴⁾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 변화를 가져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를 필두로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도입 목적, 변천 과정 및 현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함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가. 도입 목적

- 1999년 8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⁵⁾가 도입됨⁶⁾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 소득공제

4) 김재진·홍범교(2012)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 기획재정부(2000), 『1999 간추린 개정세법』

- 단,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금액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직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포함(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은 제외됨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물품 등의 구매없는 신용카드 사용분, 실제 매출금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경우
- 신설법안은 1999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됨
 - 1999.9.1.~11.30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동 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p style="margin: 0;">< 소득공제 계산식(1999) ></p> $\text{공제금액} = [(\text{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text{총급여} \times 0.1)] \times 0.1$
--

나. 변천 과정

- 2001년 신용카드 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증가한 세수를 근로소득자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소득공제율을 확대조정⁷⁾
 - 소득공제액을 ‘연간급여의 2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 금액’으로 조정하고, 공제한도를 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함
 - 개정안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카드사용분부터 적용됨
- 2002년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표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공제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⁸⁾
 - 직불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7) 기획재정부(2002), 『2001 간추린 개정세법』

8) 기획재정부(2003), 『2002 간추린 개정세법』

-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를 동 제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학원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함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20%)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학원수강료를 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신용·직불카드, 학원수강료 사용 비중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되어 계산됨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이용금액과 직불카드 총이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 과표가 100%로 노출된 품목 등 동 제도의 실익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제외대상금액 중 전화료에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제외
 - 신규 출고차량 결제금액 제외
- 2002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적용시한은 2005년 11월 30일(3년 연장)로 정함

< 소득공제 계산식(2002귀속) >

$$\text{공제금액} = \text{초과금액} \times [(\text{①} + \text{②}) \div \text{③}] \times 0.2 + \text{초과금액} \times [\text{④} \div \text{③}] \times 0.3$$

-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 ② 학원수강료
-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대상 총사용액)
- ④ 직불카드 사용금액

< 안분계산 예(2002귀속) >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지로를 통한 학원수강료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begin{aligned} \text{초과금액} &= \text{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text{연간 총급여액} 10\% \\ &= 1,600\text{만원} - 5,000\text{만원} \times 0.1 = 1,100\text{만원} \end{aligned}$$

$$\begin{aligned} \text{공제금액} &= 1,100\text{만원} \times [(1,000\text{만원} + 100\text{만원}) \div 1,600\text{만원}] \times 0.2 \\ &\quad + 1,100\text{만원} \times [500\text{만원} \div 1,600\text{만원}] \times 0.3 \\ &\simeq 151\text{만원} + 103\text{만원} \\ &\simeq 254\text{만원} \end{aligned}$$

- 2003년 거래내용이 자동노출되는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해 나가되 지급결제수단 간 소득공제율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율을 ‘연급여 10% 초과액의 20%’로 하향조정⁹⁾
 - 공제대상에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함
 -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제외하고, 동 개정사항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2004년에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되므로 적정공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조정¹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 중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총급여의 15% 초과로 조정
 -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아래와 같은 항목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 등기·등록된 재화·용역의 구입대금(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등 구입비용)
 -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됨

- 2005년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 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카드 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소폭 인하¹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
 - 제도의 일몰을 2007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개정안은 2005년 12월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됨

9) 기획재정부(2004), 『2003 간추린 개정세법』

10) 기획재정부(2005), 『2004 간추린 개정세법』

11) 기획재정부(2006), 『2005 간추린 개정세법』

- 200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하며, 현금거래 신고·인증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허용¹²⁾
 -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무기명 선불카드를 통한 매출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무기명 선불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취득 후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해 본인인증을 받는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사실을 신고·확인을 얻은 경우 소득공제 허용
 -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신고·인증제도와 도입 시기를 일치하기 위하여)함

- 2007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¹³⁾
 -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 높아진 문턱을 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함
 - 상호저축은행 및 신탁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카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공제대상으로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전자화폐 결제액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전자화폐 결제액과 동일하여 공제대상으로 추가
 - 과표 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함
 - 국가·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등이 그 대상임

12) 기획재정부(2007), 『2006 간추린 개정세법』

13) 기획재정부(2008), 『2007 간추린 개정세법』

- 최저사용금액과 공제적용률에 대한 적용시기는 2008년 1월 1일 지출하는 분부터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카드 및 기명식 전자화폐 공제대상으로 추가 및 공제배제대상 추가는 2007년 1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됨
 - 제도의 일몰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2009년 과표 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공제수준 축소하고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불·선불카드 공제율을 인상하였으며, 월세 소득 공제 신설에 따른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적용배제 대상을 추가함¹⁴⁾
- 공제수준 축소: 최저 사용금액을 총급여의 25%수준으로 인상함
 - 공제율 차등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20%적용, 직불(체크)·선불카드의 경우 25% 적용
 - 공제한도 인하: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으로 추가
 -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본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됨

< 소득공제 계산식(2009귀속) >

$$\text{공제금액} = \text{초과금액} \times [(\text{①} + \text{②} + \text{③}) \div \text{④}] \times 0.2 + \text{초과금액} \times [\text{⑤} \div \text{④}] \times 0.25$$

-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 ② 학원수강료
-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대상금액 합계, ①+②+③+⑤)
- ⑤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초과금액: 공제대상금액 합계 - 연간 총급여액×0.25

- 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명확화¹⁵⁾

14) 기획재정부(2010), 『2009 간추린 개정세법』

15) 기획재정부(2012), 『2011 간추린 개정세법』

- 직불(체크)·선불카드의 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하여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공제한도(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100만원) 적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우는 방식으로 변경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으로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하여 도로통행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함
- 제도의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명확화는 2012년 2월 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며, 그 외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됨

< 소득공제 계산식(2011귀속) >

$$\text{공제금액} = \frac{[(\text{①}+\text{②})\times 0.3] + [(\text{③}+\text{④}+\text{⑤})\times 0.2] - \text{㉗} + \text{㉘}}$$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②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③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④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⑤ 학원수강료

- ㉗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③+④+⑤ : 최저사용금액×0.2
 - 최저사용금액 > ③+④+⑤ : [최저사용금액-(③+④+⑤)]×0.3 + (③+④+⑤)×0.2

- 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해줌
 - Min[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분×0.3, 100만원]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0.25

**공제한도: Min[총급여액×0.2, 300만원], 밀출친 부분의 공제한도

***한도초과금액(값이 음수이면 0):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 계산 예(2011귀속) >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전통시장 사용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1,000만원, 학원 수강료 100만원, 현금영수증 500만원, 직불카드 등 500만원을 사용하고,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전통시장 사용분이 120만원인 경우,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원
- ②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500만원
- ③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1,000만원
- ④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500만원
- ⑤ 학원수강료 = 100만원

㉓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0.2
 = 1,250×0.2= 250만원

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해줌
 - Min[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분×0.3, 100만원]
 = Min[0, 36, 100] = 0원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0.25 = 1,250만원

**공제한도: Min[총급여액×0.2, 300만원] = 300만원

***한도초과금액(값이 음수이면 0):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 0원

$$\begin{aligned} \text{공제금액} &= [((\text{①}+\text{②})\times 0.3) + [(\text{③}+\text{④}+\text{⑤})\times 0.2] - \text{㉓} + \text{㉔}] \\ &= [(120+500)\times 0.3] + [(1,000+500+100)\times 0.2] - 250 + 0 \\ &= 186 + 320 - 250 = 256\text{만원} \end{aligned}$$

- 2012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및 신용카드 공제율을 15%로 하향조정하고,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¹⁶⁾
 -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율과 같이 30%로 상향조정하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15%로 하향조정하였음
 - 대중교통비 사용분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사용금액을 뜻하며, 공제한도 또한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하여 100만원의 추가공제한도 확대
 - 본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됨

16) 기획재정부(2013), 『2012 간추린 개정세법』

- 2014년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40%로 공제율을 확대¹⁷⁾
 -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이 증가한 사람에 한함
 - 제도의 일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본 개정안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계산식(2014귀속) >

$$\text{공제금액} = \frac{[(\text{㉠}+\text{㉡}+\text{㉢}+\text{㉣})\times 0.3] + \text{㉤}}{1} + (\text{㉥}\times 0.15) - \text{㉦} + \text{㉧}$$

- ㉠ 전통시장 사용분
- ㉡ 대중교통 사용분
- ㉢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 : 최저사용금액×0.15
 - 최저사용금액 > ㉥ : [(최저사용금액-㉥)×0.3] + (㉥×0.15)

-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해줌
 - ㉨: Min[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분×0.3, 100만원]
 - ㉩: Min[한도초과금액-㉨(음수면, 0), 대중교통 사용분×0.3, 100만원]
 - = ㉨ + ㉩

-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3년 사용금액 < 2014년 사용금액
 - : (2014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0.5)×0.1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0.25
- **공제한도: Min[총급여액×0.2, 300만원], 밀출친 부분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금액(값이 음수이면 0):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 [#]추가공제율 사용분: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및 직불카드 사용분

17) 기획재정부(2015), 『2014 간추린 개정세법』

- 2015년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을 위하여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50%로 공제율을 확대함¹⁸⁾
-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 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소득공제 계산식(2015귀속) >

$$\text{공제금액} = \frac{[(\text{㉑}+\text{㉒}+\text{㉓}+\text{㉔})\times 0.3] + \text{㉕}}{+ (\text{㉖}\times 0.15) - \text{㉗} + \text{㉘}}$$

- ㉑ 전통시장 사용분
- ㉒ 대중교통 사용분
- ㉓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㉕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㉖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㉕ : 최저사용금액×0.15
- 최저사용금액 > ㉕ : [(최저사용금액-㉕)×0.3] + (㉕×0.15)

㉗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해줌

- ㉘: Min[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분×0.3, 100만원]
- ㉙: Min[한도초과금액-㉘(음수면, 0), 대중교통 사용분×0.3, 100만원]
- = ㉘ + ㉙

㉚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3년 사용금액 < 2015년 사용금액
: (20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 사용분×0.5)×0.1
- 2014년 사용금액 < 2015년 사용금액
: (20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0.5)×0.2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0.25

**공제한도: Min[총급여액×0.2, 300만원], 밀출친 부분의 공제한도

***한도초과금액(값이 음수이면 0):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추가공제율 사용분: 2015/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및 직불카드 사용분

18) 기획재정부(2016), 『2015 간추린 개정세법』

□ 2016년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몰연장 및 급여수준별 한도를 조정함

- 동 제도의 공제한도를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단, 2018년 1월 1일 이후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함
-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함
- 본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됨

< 소득공제 계산식(2016귀속) >

$$\text{공제금액} = \underbrace{[(\text{㉑}+\text{㉒}+\text{㉓}+\text{㉔})\times 0.3] + \text{㉕}}_{\text{㉖}} + (\text{㉗}\times 0.15) - \text{㉘} + \text{㉙}$$

- ㉑ 전통시장 사용분
- ㉒ 대중교통 사용분
- ㉓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㉕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㉖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㉗ : 최저사용금액×0.15
 - 최저사용금액 > ㉗ : [(최저사용금액-㉗)×0.3] + (㉗×0.15)

- 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해줌
 - ㉙: Min[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분×0.3, 100만원]
 - ㉚: Min[한도초과금액-㉙(음수이면, 0), 대중교통 사용분×0.3, 100만원]
 - = ㉙ + ㉚

- ㉙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사용금액 < 2015년 사용금액
 - : (2016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0.5)×0.2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0.25
 **공제한도: Min[총급여액×0.2, 300만원], 밀출친 부분의 공제한도
 ***한도초과금액(값이 음수이면 0):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추가공제율 사용분: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및 직불카드 사용분

< 계산 예(2016귀속) >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 600만원, 직불카드 등 600만원을 사용하고,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전통시장 사용분이 16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이 160만원이고,

2014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240만원, 2015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260만원, 2014년 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액이 240만원, 2016년 상반기 본인의 추가공제율 사용액이 160만원인 경우,

- ① 전통시장 사용분 = 160만원
- ② 대중교통 사용분 = 160만원
- ③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전통/대중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600만원
- ④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전통/대중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600만원
- 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대중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 = 1,000만원

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⑤ : [(최저사용금액-⑤)×0.3] + (⑤×0.15)
 = [(1,200-1,000)×0.3] + (1,000×0.15) = 225만원

㉒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더해줌
 ㉓: Min[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 사용분×0.3, 100만원]
 = Min[89, 48, 100] = 48만원
 ㉔: Min[한도초과금액-㉓(음수면, 0), 대중교통 사용분×0.3, 100만원]
 = Min[41, 48, 100] = 41만원
 = ㉓ + ㉔ = 89만원

㉕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4년 사용금액 < 2015년 사용금액
 : (2016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0.5)×0.2
 = (160 - 240×0.5) ×0.2 = 8만원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0.25 = 1,250만원
 **공제한도: Min[총급여액×0.2, 300만원] = 300만원
 ***한도초과금액(값이 음수이면 0):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 0원

$$\begin{aligned} \text{공제가능금액} &= [(\text{⑤} \times 0.15) + (\text{①} + \text{②} + \text{③} + \text{④}) \times 0.3] + \text{㉕} - \text{㉑} \\ &= [(1,000 \times 0.15) + (160 + 160 + 600 + 600) \times 0.3] + 8 - 225 \\ &= 150 + 456 + 8 = 389\text{만원} \end{aligned}$$

공제가능금액은 389만원이지만,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일반공제금액(300만원) + 추가공제금액(89만원) = 총공제금액(389만원)

- 2017년 동 제도의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한도 100만원을 추가함¹⁹⁾
 - 도서공연비에 대한 공제율은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함

<표 II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천 과정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1999.8.31.) ○ 대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초과금액의 1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10% 금액 중 적은 금액 ○ 일몰기한: 2002. 11. 30일까지 ○ 기타: 1999. 9. 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초과금액의 20%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금액 중 적은 금액 ○ 기타: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추가: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20%)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30%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20% ○ 일몰기한: 2005. 11. 30(3년 연장) ○ 공제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2003. 1. 1 이후 분부터 적용) 등 추가(2002. 12.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 12. 1일 이후 구입하는 경우 ○ 기타: 2002. 12. 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등 사용분부터 적용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통일: 직불(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20%로 하향조정 ○ 공제대상 추가: 기명식선불카드 ○ 기타: 2003. 12. 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기타: 2014. 12.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추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소득공제(2005.1.1.부터 적용) ○ 공제율: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대상, 최저사용금액 초과금액의 15%(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은 2005년 12월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 2007. 11. 30(2년 연장)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 시 소득공제 허용(2006.12.1. 이후 적용)

19) 기획재정부(2017-10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7.8.3)

시행연도	변천내용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 확인 후 소득공제 허용(2007. 7. 1. 이후 사용분부터) -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카드 및 기명식 전자화폐 추가(2007.12.1. 이후) ○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배제(2007.12.1. 이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초과금액의 20% ○ 일몰기한: 2009. 12. 31(일몰연장)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최저사용금액 초과금액의 20% - 직불(체크), 선불카드의 경우 최저사용금액 초과금액의 25% ○ 공제한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일몰기한: 2011. 12. 31(일몰연장)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적용배제 대상 추가 - 2010. 1. 1. 이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추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30% 공제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초과분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한도 초과분과 전통시장 사용분 중 적은 금액 추가로 공제 ○ 공제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20%),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30%) ○ 일몰기한: 2014. 12. 31(일몰연장) ○ 최저사용률 차감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도록 진행(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1. 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제외대상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통행료 제외(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하여 도로통행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 2012. 2. 2.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 조정 ○ 공제대상추가: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30%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초과분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한도 초과분과 대중교통 사용분 중 적은 금액 추가로 공제 ○ 기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공제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40% 공제(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일몰기한: 2016. 12. 31(일몰연장) ○ 기타: 2014. 7.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시행연도	변천 내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공제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50% 공제(2014년 대비 20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기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금액 계산부터 적용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2019. 12. 31로 연장 ○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300만원 다만, 2018년부터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10%)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전통시장, 대중교통 지출에 대한 공제율 30% → 40% 확대 ○ 공제대상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30%로 신설(단, 한도 100만원,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자료: 김재진(2016)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국세법령시스템, 조문별정보, 조세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 동 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하여 ①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이에 따른 ②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등의 목적으로 재정되었으며 이후 ③건전 소비 유도, ④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및 ⑤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문화공연 이용 활성화 등의 정책목적에 맞게 공제대상 및 공제율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

□ 동 제도가 시행된 20년간 8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계속 연장되어옴

<표 II -2>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일몰기한 변천 과정

시행연도	공제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일몰연장
1999	신용카드 직불카드	10%	Min[300만원, 총급여액 10%]	10%	2002년
2001	"	20%	Min[500만원, 총급여액 20%]	"	"
2002	신용카드	20%	"	"	2005년
	직불(체크)카드	30%			
2003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20%	"	"	"

시행연도	공제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일몰연장
2004	"	"	"	15%	"
2005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15%	"	"	2007년
	현금영수증	20%			
2008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20%	"	20%	2009년
201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0%	Min[300만원, 총급여액 20%]	25%	2011년
	직불카드 등	25%			
201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0%	Min[300만원+ α^1], 총급여액 20%]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100만원	"	2014년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	30%			
2013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15%	Min[300만원+ β^2], 총급여액 20%] *대중교통비 사용분: 추가100만원	"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30%			
2014	" 추가공제 1 ³⁾	"	Min[300만원+ β^2], 총급여액 20%]	"	2016년
2015	" 추가공제 2 ⁴⁾	"	Min[300만원+ β^2], 총급여액 20%]	"	"
2017	"	"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신설 ⁵⁾	"	2019년
2018	신용카드	15%	Min[300만원+ γ^7], 총급여액 20%]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100만원	"	"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공연 ⁶⁾	30%			

- 주: 1) α :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전통시장 사용분의 30%와 한도초과금액 중 적은 값을 추가로 공제함.
- 2) β :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전통시장사용분의 30% + 대중교통이용분의 30%와 한도초과금액 중 적은 값을 추가로 공제함.
- 3) 추가공제 1: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보다 50% 증가한 경우, 그 금액의 40% 공제
- 4) 추가공제 2: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2014년보다 50% 증가한 경우, 그 금액의 50% 공제
- 5) 7천만원 이하: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300만원 다만, 2018년부터 $\text{Max}[300 - [\text{총급여액} - 7\text{천만원}] * 50\%, 250]$ *300만원 → 250만원으로 축소, 1억 2천만원 초과: $\text{Max}[250 - [\text{총급여액} - 1\text{억 } 2\text{천만원}] * 50\%, 200]$
- 6)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 한도 100만원에 한함.
- 7) γ :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문화공연 이용분(단, 도서·문화공연 이용분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자료: 김재진(2011)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다. 현행제도

- 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함
 - 장소 및 지불수단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40%, 도서·공연 사용분, 직불카드 사용분의 경우 30%,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15% 공제
 -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²⁰⁾’,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함

〈표 II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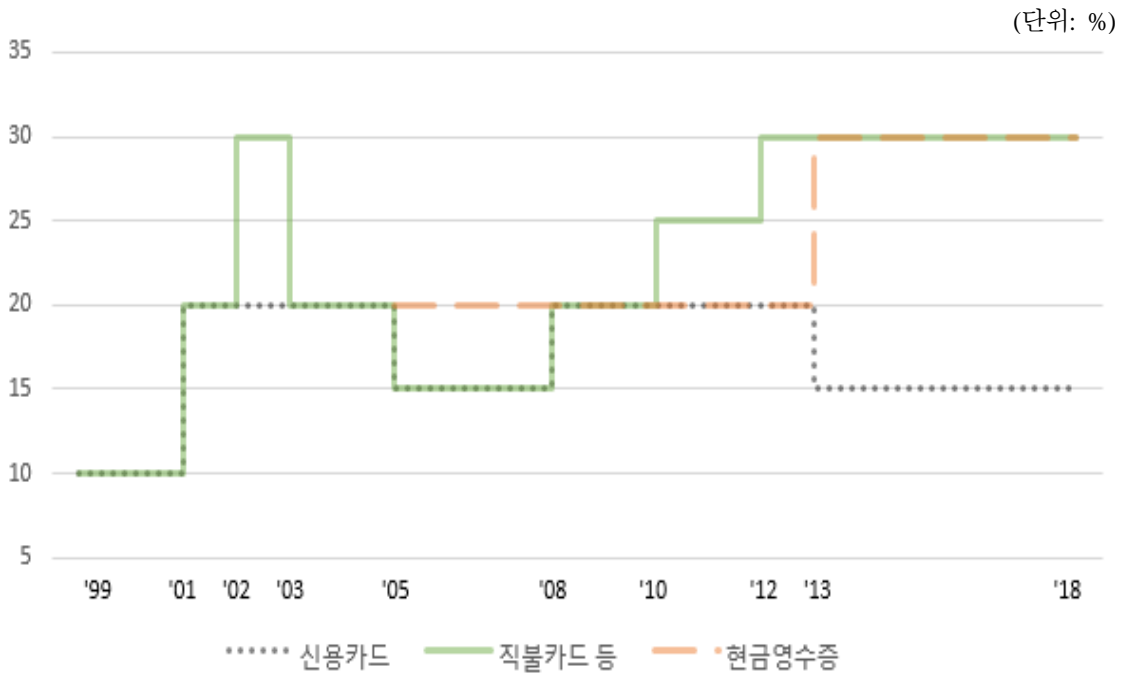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공제 적용	○ 최저사용금액: 연간 총급여액의 25% ○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15% - 직불·체크·선불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이용분: 40% - 도서·공연 사용분: 30%(단,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적용) ○ 추가공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추가한도 적용
공제 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7천만원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연간 300만원) ○ 1억 2천만원 < 총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00만원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시행령 제88조

20)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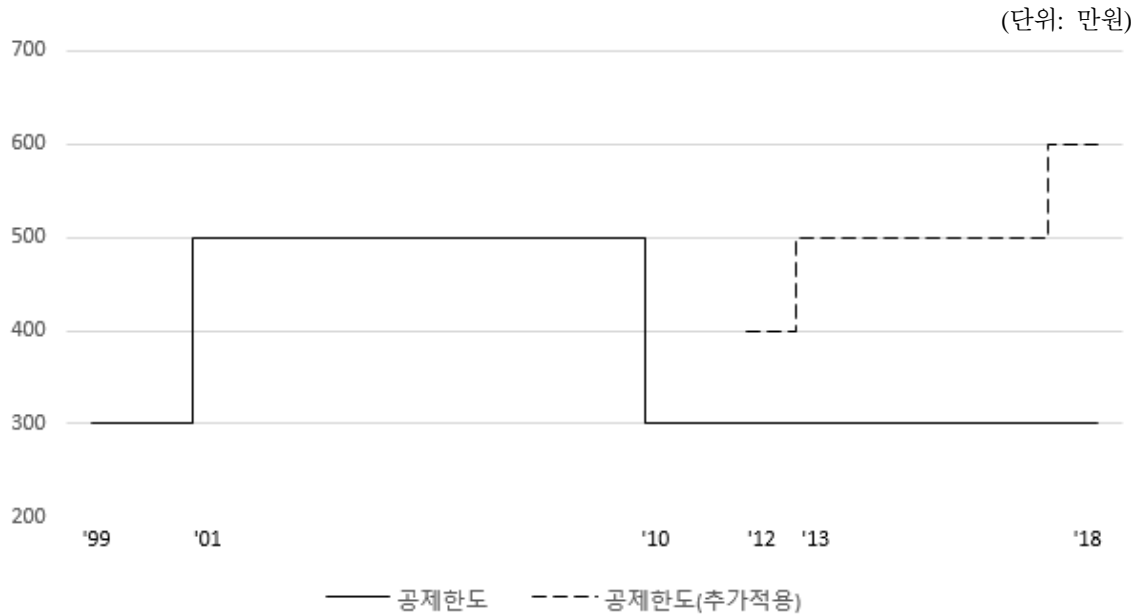
- 시행연도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 변화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인하,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공제율은 인상되었음
- 2013년 신용카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인하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공제율은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

[그림 II -1] 시행연도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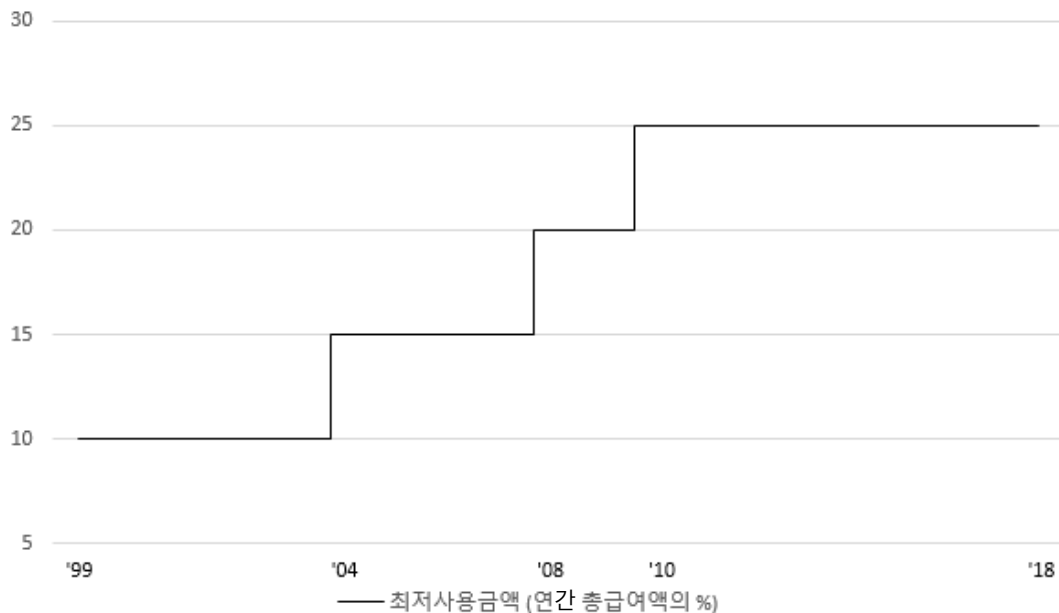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공제한도는, 2001년 인상(500만원→700만원)되었고 2010년에 다시 500만원으로 인하되었음
- 다만, 2014~2015년도에 추가사용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적용과 2012년 이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추가적으로 적용됨
- 2018년 7월 1일 이후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추가한도(100만원)가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됨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단, 2018년 1월 1일 이후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함

[그림 II -2] 시행연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공제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2004년, 2008년, 2010년 3차례에 걸쳐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II -3] 시행연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최저사용금액¹⁾기준



주: 1) 최저사용금액이란, 연간 총급여액의 해당 %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받기 위한 공제문턱을 뜻함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가. 도입 목적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제도²¹⁾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사업자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도입됨
 - 신용카드 발행 확대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됨
 - 도입 당시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하고 과표 양성화 비율이 낮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의 0.5%를 세액공제함

나. 변천 과정

- 1993년 이전에는 음식·숙박·소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한하여 0.5%를 세액공제하였으나, 세제개편을 통해 금전등록기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²²⁾
 -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가맹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세액의 0.5%를 세액공제
 - 법인 및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개인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
 -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995년 세법개정을 통해 종전 ‘사업자가 신용카드 발행 시 발행금액의 0.5% 세액공제’에서 공제율을 1%로 상향하고, 이를 1996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²³⁾

2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22) 기획재정부(1994), 『1993 간추린 개정세법』

23) 기획재정부(1996), 『1995 간추린 개정세법』

- 신용카드 거래 자료는 전액 거래금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소매상 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과세자료임
 - 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 시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카드세액공제 혜택이 작아 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998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도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정함²⁴⁾
- 국세청장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경정 사유에 해당함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정함
 - 대상사업자: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다만,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1억 2,500만원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직불카드 영수증도 포함시킴
 - 개정안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범위, 공제율, 공제한도를 확대²⁵⁾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범위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종전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조건을 삭제
 - 경감대상을 전체 사업자로 확대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24) 기획재정부(1999), 『1998 간추린 개정세법』

25) 기획재정부(2000), 『1999 간추린 개정세법』

- 공제율은 1%에서 2%로 확대 적용하며, 공제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신용·직불카드에 의한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요건 중 사업자나 사용인의 서명 날인 요건 삭제
 - 개정안은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01년 세법개정에서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는바, 발급대상영수증에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세액공제 신설²⁶⁾
-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
 -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으로, 위 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2003년 세법개정에서 본 제도와 더불어 다양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제율을 축소하고, 공제대상으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등을 추가²⁷⁾
- 소매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0% 내외로 공제율 2%는 부가가치율 20%를 공제하는 효과가 있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어 공제율을 1%로 축소
 - 이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했던 공제방식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 세액공제제도는 과표 양성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납부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공제대상으로 「조특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매출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 선불카드(실지명의 확인분) 매출분을 추가
 -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PG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도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포함(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하여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26) 기획재정부(2002), 『2001 간추린 개정세법』

27) 기획재정부(2004), 『2003 간추린 개정세법』

- 현금영수증 부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그 외 개정안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04년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업계 사정을 감안하여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종전 공제율을 1%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세 음식·숙박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²⁸⁾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를 공제금액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율을 1.5%로 함
 - 개정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 2006년 신용카드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지출증빙 보관 요건 등을 완화하여 매입세액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²⁹⁾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되고, ERP 시스템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거래내용의 변조가 불가하므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방지가 가능함
 - 따라서 다음의 경우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에 보관
 - 개정안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08년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과표 양성화로 급속히 증가한 음식·숙박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로 인상³⁰⁾
 -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09년 과표 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30% 인상함³¹⁾

28) 기획재정부(2005), 『2004 간추린 개정세법』

29) 기획재정부(2007), 『2006 간추린 개정세법』

30) 기획재정부(2008), 『2007 간추린 개정세법』

- 세액공제율을 일반업종의 경우 1.3%, 음식·숙박업종 간이과세자의 경우 2.6%로 인상하고, 한시적용 기한을 2010년 말까지로 함
 - 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 공제한도 또한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함
 -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0년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등 중소기업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³²⁾
- 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2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대 공제율은 일몰 연장하되,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 종료³³⁾
- 동 제도의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 종료되어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변경
 -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급·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 2014년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연장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³⁴⁾
- 우대공제율이란,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에게 2.6%, 기타 개인사업자에게 1%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함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2015년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 사업자를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³⁵⁾
- 매출액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적용

31) 기획재정부(2009), 『2008 간추린 개정세법』

32) 기획재정부(2011), 『2010 간추린 개정세법』

33) 기획재정부(2013), 『2012 간추린 개정세법』

34) 기획재정부(2015), 『2014 간추린 개정세법』

35) 기획재정부(2016), 『2015 간추린 개정세법』

- 2016년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제도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³⁶⁾
 - 2018년 말까지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2.6%)와 기타 사업자(1.3%)에 대한 우대공제율을 적용함

<표 II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변천 과정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0.5% ○ 공제 사업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및 연간 매출액 3억 이상의 개인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1%로 인상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사업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자: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단,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 및 창고업의 경우 1억 2,500만원 ○ 공제한도: 연 300만원 <신설>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직불카드 영수증 포함.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사업자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확대 ○ 공제율: 2%로 인상 ○ 공제한도: 연 500만원으로 인상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도입(2000년 이후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는 분부터)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1%로 축소 ○ 공제방식: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 공제대상(현금영수증 매출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 선불카드 매출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영수증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로 상향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요건 중 지출증빙 보관 요건 완화

36) 기획재정부(2017), 『2016 간추린 개정세법』

시행연도	변천 내용
2008	○ 공제율 -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로 상향
2009	○ 공제율(우대공제율 적용) - 일반업종 1.3%로 상향 -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6%로 상향 ○ 일몰기한: 2010년 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2011	○ 우대공제율(1.3%/2%)과 우대공제한도(연 700만원) 일몰연장(2012.12.31.)
2013	○ 우대공제율에 대한 일몰을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 ○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하향(우대공제한도 적용 종료)
2015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2016.12.31.까지)
2016	○ 적용대상 조정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 사업장 단위로 적용
2017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 세액공제율 - 음식,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2018년 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1%(2018년 말까지 1.3%)

자료: 김재진(2016)을 바탕으로 업데이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2013년6월 7일 이전)

다. 현행 제도

- 현행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일반과세자 중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을 공제함
 - 음식·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6%, 그 외의 경우 1.3%를 곱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함
 - 이는 우대공제율로서 2018년 12월 31일을 일몰로 정하고, 이후 음식·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 그 외의 경우 1.3%를 곱한 금액을 공제함

<표 II -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2018)

구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업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¹⁾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공제대상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유형: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제 의미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 - 전자적 결제 수단: 전자화폐,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와 같이 대상을 구분하여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 2.6% - 그 외의 경우: 1.3%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0만원 한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음식·숙박업, 그 외 사업자에게 우대공제율이 적용되어 왔으며, 우대공제율 일몰은 2010, 2012, 2014, 2016, 2018년으로 계속 연장되었음

주: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육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변호사, 변리사 등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 및 행정사업, 우체국의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 사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무도학원의 용역공급하는 사업, 전기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산업용이 아닌 전력(도시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1996년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촉진, 사업자의 성실신고 및 이로 인한 세부담 증가액의 일정액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도입

-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사업장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총수입 금액 대비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 초과금액의 50%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함
- 이후 2001년 전자상거래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1) 전년 대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공제(증가매출 감면방법), (2)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공제(총매출 감면방법) 중 택일
- 매출액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총매출 공제방법이 증가매출공제방법보다 유리하여 2003년 총매출 감면방법의 공제율을 10%, 2004년 5%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일몰이 연장됨
- 2011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가 보편화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리잡은 상황을 감안하여 세제를 정상화하고자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표 II -6〉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규모

(단위: 명, 백만원)

총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39,577	42,113	44,583	44,189	46,986
금액	36,924	38,626	37,398	41,159	52,24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 1996년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함께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³⁷⁾를 2001년 1월 1일부터 도입함
-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최소 총급여의 10%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공제금액 한도도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신용카드 활성화제도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었음

37)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복권제도를 도입함
 - 최고 1억원의 당첨상금을 제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한 복권제 도입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된 점과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짐과 동시에 복권제로 인한 추가적인 세원 양성화 유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폐지됨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³⁸⁾ 도입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금탈루 우려가 많은 B2B 업종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여 탈루를 방지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금 관련 제품, 구리스크랩, 철스크랩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운영 중임
 - 따라서,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소비자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체납 방지 등을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 체납률 및 신용카드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업종(예: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임
 - 신용카드 등을 통한 거래 발생 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함
 - 신용카드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의 4/110, 공급가액의 4%)을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 4/110 비율은,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이 약 27~56%임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임
 - 적용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가능

38) 기획재정부(2017: 64~66), 『2017 세법개정안』

- 적용대상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 도입
 - 예를 들어 2019.1월~2019.3월간 1.1억원의 매출(봉사료 제외, 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올린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400만원을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됨
 - 이때 대리납부한 금액에 일정비율(금융기관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1% 내외)을 곱한 금액(예: 4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표 II -7〉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적용사례

(단위: 만원)

'19.1~3월	사업자 A	사업자 B
매출액	11,000(매출세액 1,000)	
매입액	5,500(매입세액 500)	7,700(매입세액 700)
납부세액(A) (매출세액-매입세액)	500	300
기납부세액(B) (대리납부세액)	400	400
신고시 납부세액(A-B)	100	△100(환급)

주: 1. 봉사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었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액에 포함
 2.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리납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2017: 66), 「2017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운용현황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운용현황

1. 연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하여 총 910만 2,086명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그 규모는 22조 112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197% 증가함
 - 2010년 최저사용금액 기준 상향조정 및 공제한도 하향조정과 함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공제율 차등적용으로 전년 대비 공제금액 규모가 16.4% 감소함
 - 다만, 2010년 이후 신용-직불(체크)카드 간 공제율 격차가 커지면서, 총공제금액 규모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공제인원은 2005년 이후로 계속하여 증가하여 2016년 총 910만 2,086명이 동 제도를 통해 공제받고 있음
 - 동 제도를 통한 공제인원은 2005년(441만 349명)과 비교하여 2016년 2.1배(106.4%) 증가하였고, 2006년(14.6%)에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표 Ⅲ-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연도	공제금액 (A)	공제인원(B)		
		전년 대비(%)	공제인원(B)	전년 대비(%)
2005	7,422,300	-	4,410,349	-
2006	7,894,799	6.4	5,055,503	14.6
2007	9,401,010	19.1	5,704,731	12.8
2008	13,952,687	48.4	6,072,779	6.5
2009	13,839,775	-0.8	6,253,955	3.0
2010	11,563,159	-16.4	6,305,853	0.8
2011	12,828,035	10.9	6,739,692	6.9
2012	14,886,974	16.1	7,246,023	7.5
2013	16,642,766	11.8	7,645,693	5.5
2014	19,194,108	15.3	8,252,634	7.9
2015	20,647,425	7.6	8,564,504	3.8
2016	22,011,216	6.6	9,102,086	6.3

주: 전년 대비: [(당해연도 수치 - 이전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의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1인당 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 2016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은 전년 대비(241만원) 0.3% 증가한 242만원 수준이며, 2006년(-7.2%), 2009년(-3.7%), 2010년(-17.1%)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
 -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이란, 당해연도 총공제금액에서 총공제인원을 나눈 값을 의미함
 - 2008년 기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15%), 현금영수증(20%)의 공제율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대상의 공제율을 20%로 개편한 해에 전년 대비 증가율(39.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한계세율³⁹⁾을 적용한 1인당 경감세액은 전년 대비(24만 3천원) 0.8% 증가한 24만 5천원 수준임
 - 1인당 경감세액 또한 1인당 평균소득공제금액과 비슷하게 2009년, 2010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과 비교해 전년 대비 변화가 큰 것으로 파악됨

[그림 III-1] 연도별 공제금액 및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9) 한계세율= 산출세액/과세표준,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준.

<표 III-2>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및 1인당 경감세액

(단위: 만원, %)

연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A/B)		1인당 경감세액	
		전년 대비(%)		전년 대비(%)
2005	168.3	-	-	-
2006	156.2	-7.2	18.6	-
2007	164.8	5.5	20.0	7.5
2008	229.8	39.4	26.5	32.5
2009	221.3	-3.7	20.0	-24.5
2010	183.4	-17.1	16.0	-20.0
2011	190.3	3.8	17.2	7.5
2012	205.5	8.0	18.8	9.3
2013	217.7	5.9	20.3	8.0
2014	232.6	6.8	23.2	14.3
2015	241.1	3.7	24.3	4.7
2016	241.8	0.3	24.5	0.8

주: 전년 대비: [(당해연도 수치 - 이전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의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 2016년 동 제도를 통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10만명으로 2008년(550만명)과 비교하여 약 65.4% 증가하였고, 조사기간 동안 연평균 6.5%씩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총공제인원이 약 13.6% 증가하여 조사기간 동안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총급여구간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음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공제인원은 39~44% 수준으로 비중이 가장 큼

<표 III-3>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인원

(단위: 백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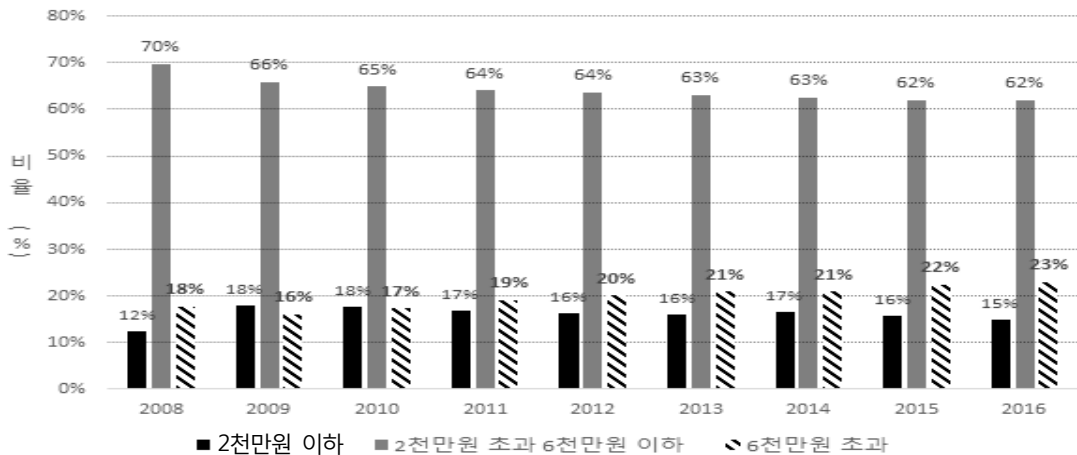
연도	1천만 이하	2천만 이하	4천만 이하	6천만 이하	8천만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합계
2008	6 (0.01)	6,846 (12.44)	23,839 (43.31)	14,555 (26.45)	6,315 (11.47)	2,150 (3.91)	1,255 (2.28)	56 (0.10)	13 (0.02)	3 (0.01)	55,038 (100)
2009	476 (0.76)	10,802 (17.27)	26,237 (41.95)	14,976 (23.95)	6,524 (10.43)	2,235 (3.57)	1,218 (1.95)	56 (0.09)	12 (0.02)	2 (0.00)	62,540 (100)
2010	466 (0.74)	10,767 (17.07)	25,742 (40.82)	15,181 (24.07)	6,610 (10.48)	2,658 (4.22)	1,567 (2.48)	55 (0.09)	10 (0.02)	2 (0.00)	63,059 (100)
2011	426 (0.63)	10,901 (16.17)	27,046 (40.13)	16,133 (23.94)	7,662 (11.37)	3,007 (4.46)	2,137 (3.17)	69 (0.10)	14 (0.02)	2 (0.00)	67,397 (100)
2012	354 (0.49)	11,494 (15.86)	28,808 (39.76)	17,254 (23.81)	8,598 (11.87)	3,348 (4.62)	2,502 (3.45)	83 (0.11)	16 (0.02)	3 (0.00)	72,460 (100)
2013	336 (0.44)	11,901 (15.57)	30,001 (39.24)	18,263 (23.89)	9,316 (12.18)	3,678 (4.81)	2,850 (3.73)	92 (0.12)	18 (0.02)	3 (0.00)	76,457 (100)
2014	1,172 (1.42)	12,474 (15.12)	32,250 (39.08)	19,380 (23.48)	9,975 (12.09)	3,937 (4.77)	3,213 (3.89)	103 (0.12)	20 (0.02)	3 (0.00)	82,526 (100)
2015	1,326 (1.55)	12,063 (14.08)	33,237 (38.81)	19,806 (23.13)	10,900 (12.73)	4,509 (5.26)	3,658 (4.27)	119 (0.14)	25 (0.03)	4 (0.00)	85,645 (100)
2016	1,302 (1.43)	12,356 (13.57)	35,659 (39.18)	20,746 (22.79)	11,594 (12.74)	5,119 (5.62)	4,066 (4.47)	143 (0.16)	30 (0.03)	5 (0.01)	91,021 (100)

- 주: 1. 해당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의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함
 2.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이중근로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통계표상의 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기 곤란함
 3.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이란, 내국인의 경우 소득명세계,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의 경우, 소득명세+비과세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포함)을 뜻함
 4. 연도별 자료를 종합하기 위하여 각 연도의 소득구간을 2008년 기준으로 재배치함
 5. 위 자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로 경감세액이 있는 자와 경감세액이 없는 자의 소득공제 인원을 합한 자료임
 6. () 안은 해당 과세대상 근로소득 분류에 속하는 인원의 비율을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2]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인원 비율

(단위: %)



-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2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공제인원 비율을 비교해 보면 조사기간 동안 6천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공제인원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됨
- ‘2천만원 이하’에 속하는 공제자의 비율은 평균 16.1%로 2008년(12.4%)에 가장 낮고, 2009년(18.0%)에 가장 크며, 2009년을 기준으로 매년 -0.2~1.1% 감소하여 2016년에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한 15.0% 수준임
 - ‘6천만원 초과’에 속하는 공제자의 비율은 평균 19.7%로 2009년(16.1%)에 가장 낮고, 2009년 기준으로 매년 0~1.8%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년 대비 0.6%p 증가한 19.7% 수준임

〈표 III-4〉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금액

(단위: 천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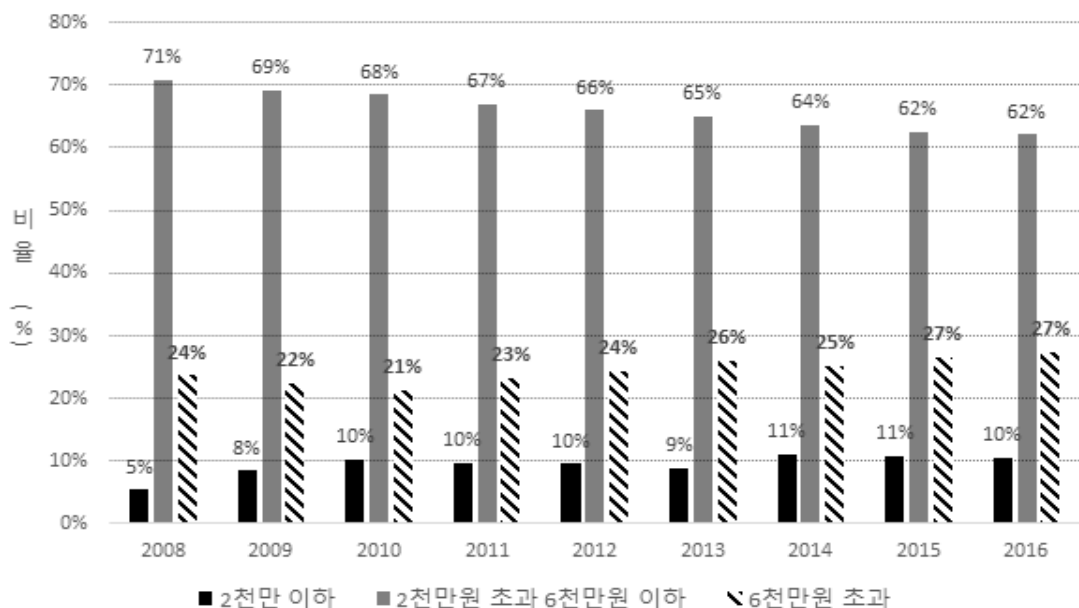
연도	1천만 이하	2천만 이하	4천만 이하	6천만 이하	8천만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합계
2008	7 (0.00)	71,931 (5.47)	506,818 (38.56)	424,858 (32.33)	195,216 (14.85)	70,275 (5.35)	42,711 (3.25)	1,916 (0.15)	475 (0.04)	107 (0.01)	1,314,313 (100)
2009	1,194 (0.09)	116,152 (8.39)	534,252 (38.60)	422,084 (30.50)	196,781 (14.22)	71,052 (5.13)	40,077 (2.90)	1,862 (0.13)	434 (0.03)	90 (0.01)	1,383,977 (100)
2010	1,164 (0.10)	117,223 (10.14)	458,816 (39.68)	332,712 (28.77)	148,828 (12.87)	60,300 (5.21)	35,714 (3.09)	1,265 (0.11)	250 (0.02)	42 (0.00)	1,156,316 (100)
2011	1,064 (0.08)	124,125 (9.68)	496,144 (38.68)	362,044 (28.22)	177,446 (13.83)	70,390 (5.49)	49,578 (3.86)	1,613 (0.13)	338 (0.03)	59 (0.00)	1,282,804 (100)
2012	899 (0.06)	142,028 (9.54)	569,908 (38.28)	412,316 (27.70)	213,723 (14.36)	84,510 (5.68)	62,750 (4.22)	2,077 (0.14)	417 (0.03)	70 (0.00)	1,488,697 (100)
2013	856 (0.05)	148,287 (8.91)	617,500 (37.10)	464,274 (27.90)	250,598 (15.06)	101,223 (6.08)	78,455 (4.71)	2,509 (0.15)	501 (0.03)	73 (0.00)	1,664,277 (100)
2014	9,614 (0.50)	204,331 (10.65)	712,889 (37.14)	508,782 (26.51)	277,039 (14.43)	111,755 (5.82)	91,447 (4.76)	2,892 (0.15)	575 (0.03)	87 (0.00)	1,919,411 (100)
2015	11,654 (0.56)	213,523 (10.34)	760,651 (36.84)	529,548 (25.65)	308,399 (14.94)	130,216 (6.31)	106,507 (5.16)	3,418 (0.17)	713 (0.03)	113 (0.01)	2,064,742 (100)
2016	11,551 (0.52)	219,004 (9.95)	812,496 (36.91)	555,405 (25.23)	329,704 (14.98)	148,505 (6.75)	119,300 (5.42)	4,137 (0.19)	859 (0.04)	159 (0.01)	2,201,122 (100)

주: 1. 해당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의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함
 2.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이중근로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통계표상의 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기 곤란함
 3.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이란, 내국인의 경우 소득명세제,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의 경우, 소득명세+비과세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포함)을 뜻함
 4. 연도별 자료를 종합하기 위하여 각 연도의 소득구간을 2008년 기준으로 재배치함
 5. 위 자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로 경감세액이 있는 자와 경감세액이 없는 자의 소득공제 인원을 합한 자료임
 6. 괄호 안은 해당 과세대상 근로소득 분류에 속하는 인원의 비율을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소득을 갖는 공제자의 비율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을 갖는 공제자의 비율이 더 높으며 2009년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됨
 - 2009년 이후로 ‘2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공제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6천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공제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동 제도를 통한 소득공제 금액은 약 22조원으로 2008년 약 13조원과 비교하여 약 67.5% 증가하였고, 조사기간 동안 매년 평균 7.1%씩 증가하였음
 -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총공제금액이 약 16% 증가하여 조사기간 동안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제도가 신설된 해임
-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총급여구간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공제금액 비율이 가장 큼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공제금액은 36~39% 수준으로 비율이 가장 크며,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25~33%)’ 구간의 비율이 그다음으로 큼

[그림 III-3]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소득공제 금액 비율

(단위: %)



- 과세대상 금액 분포가 가장 큰 ‘2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공제금액 비율을 비교해 보면 조사기간 동안 6천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공제금액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됨
 - ‘2천만원 이하’에 속하는 공제금액의 비율은 평균 9.4%로 2014년(11.1%)에 가장 높고, 2008년(5.5%)에 가장 낮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0.4%p 감소한 10.5% 수준임
 - ‘6천만원 초과’에 속하는 공제금액의 비율은 평균 24.5%로 2010년(21.3%)에 가장 낮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0.8%p 증가한 27.4% 수준으로 가장 높았음

〈표 Ⅲ-5〉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1인당 공제금액

(단위: 만원)

연도	1천만 이하	2천만 이하	4천만 이하	6천만 이하	8천만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합계
2008	13	105	213	292	309	327	340	341	360	402	239
2009	25	108	204	282	302	318	329	336	358	400	221
2010	25	109	178	219	225	227	228	230	239	271	183
2011	25	114	183	224	232	234	232	234	242	265	190
2012	25	124	198	239	249	252	251	249	259	279	205
2013	26	125	206	254	269	275	275	274	276	292	218
2014	82	164	221	263	278	284	285	282	282	300	233
2015	88	177	229	267	283	289	291	288	289	312	241
2016	89	177	228	268	284	290	293	289	290	309	242

- 주: 1. 해당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의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함
 2.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이중근로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통계표상의 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기 곤란함
 3.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이란, 내국인의 경우 소득명세계,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의 경우, 소득명세계+비과세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포함)을 뜻함
 4. 연도별 자료를 종합하기 위하여 각 연도의 소득구간을 2008년 기준으로 재배치함
 5. 위 자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로 경감세액이 있는 자와 경감세액이 없는 자의 소득공제 인원을 합한 자료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1인당 공제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와 비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가장 낮은 소득구간(1천만원 이하)과 가장 높은 소득구간(5억원 초과)의 1인당 공제금액은 약 11배 차이
 - 2014년 ‘1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공제금액은 전년(26만원) 대비 약 3.2배 증가한 82만원 수준임
 - 2010년 공제한도 변경(500만원 → 300만원) 후 1인당 공제금액이 전년 대비 17.2%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0년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1인당 공제금액이 크게 감소하였음
 - 특히,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22.3%)’,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12.7%)’ 구간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III-6〉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 1인당 경감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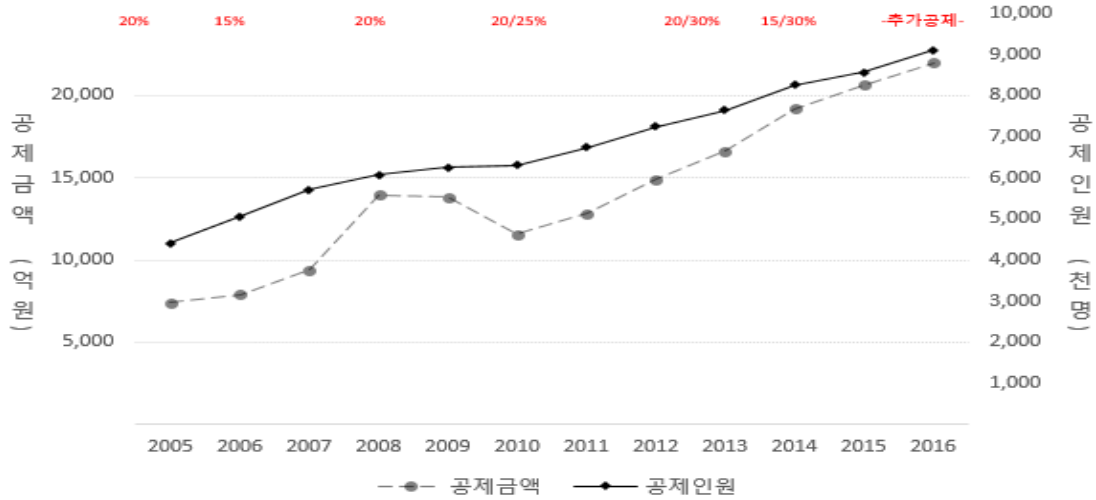
(단위: 원)

연도	1천만 이하	2천만 이하	4천만 이하	6천만 이하	8천만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 초과
2008	10,402	84,062	183,989	334,238	426,189	519,086	698,793	955,709	1,074,567	1,271,947
2009	15,113	64,520	138,813	276,793	372,215	444,087	640,105	913,652	1,034,317	1,261,810
2010	15,104	65,336	121,162	210,511	267,141	304,554	424,459	598,809	683,766	859,212
2011	15,043	68,332	125,393	215,286	273,271	326,182	425,443	609,505	687,831	838,136
2012	15,277	74,151	135,430	231,459	293,919	351,759	458,667	650,848	741,670	931,945
2013	15,374	74,779	141,708	248,504	319,495	384,227	505,600	716,519	792,828	974,884
2014	49,252	98,294	164,940	282,555	351,983	432,957	556,486	776,513	854,342	1,034,846
2015	52,757	106,218	171,194	650,760	358,893	440,426	571,512	796,593	882,159	1,072,341
2016	53,228	106,360	171,103	288,598	359,887	440,484	577,486	798,029	892,540	1,066,459

- 주: 1. 해당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자의 신고실적을 기준으로 함.
 2.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이중근로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통계표상의 급여는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기 곤란함
 3.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이란, 내국인의 경우 소득명세제,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의 경우, 소득명세+비과세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포함)을 뜻함
 4. 연도별 자료를 종합하기 위하여 각 연도의 소득구간을 2008년 기준으로 재배치함
 5. 위 자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수준별로 경감세액이 있는 자와 경감세액이 없는 자의 소득 공제 인원을 합한 자료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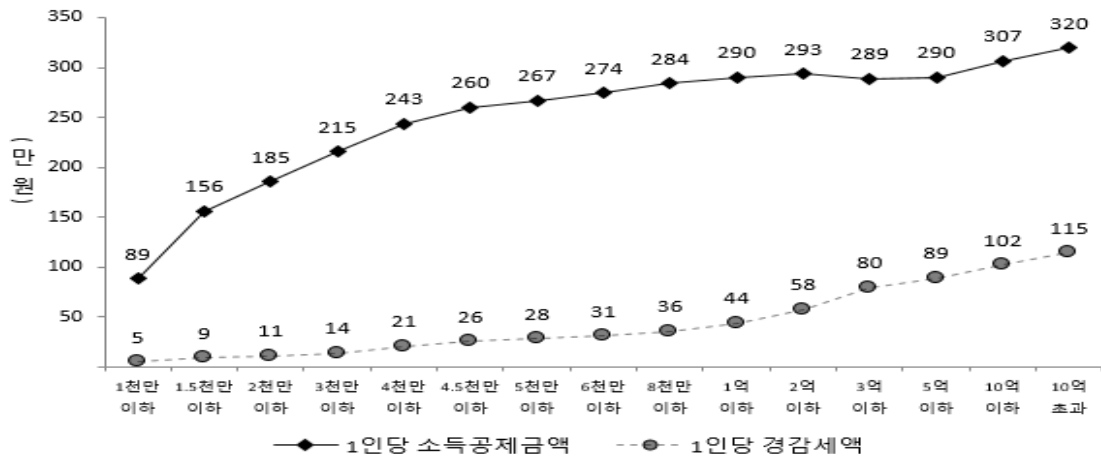


주: 그림 상단의 비율(%)은 각 연도별 공제율 범위를 뜻하며, 추가공제란 전년 대비 추가사용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뜻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16년 과세대상근로소득 수준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은 1.5천만원~2천만원 구간과 2억~3억원 구간에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한계세율을 적용한 경감세액의 경우 약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은 1.5천만원~2천만원 구간에서 평균 156.5만원, 2억~3억원 구간에서는 평균 283.5만원을 받음
- 한계세율을 적용한 1인당 경감세액의 경우 1.5천만원~2천만원 구간에서 평균 9.5만원, 2억~3억원 구간에서 평균 67만원을 받음

[그림 III-5] 과세대상근로소득수준별 1인당 평균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201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4. 향후전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지출액이 상당히 큰 제도로 2017년, 2018년에도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1조 9,475억원으로 2016년 1조 8,444억원에서 약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III-7> 주요 조세특례 제도(연도별 조세지출액 상위 10개)

(단위: 억원)

순위	2016년(실적)		2017년(전망)		2018년(전망)	
1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5,978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8,314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30,094
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4,09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40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6,161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94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2,93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2,709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8,64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6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2,164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44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862	연금보험료공제	19,722
6	연금보험료공제	17,683	연금보험료공제	18,6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475
7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5,77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6,39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7,028
8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4,897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5,017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5,139
9	자녀세액공제	13,085	자녀세액공제	13,174	자녀세액공제	13,810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2,04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2,155	교육비 세액공제	13,252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IV.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 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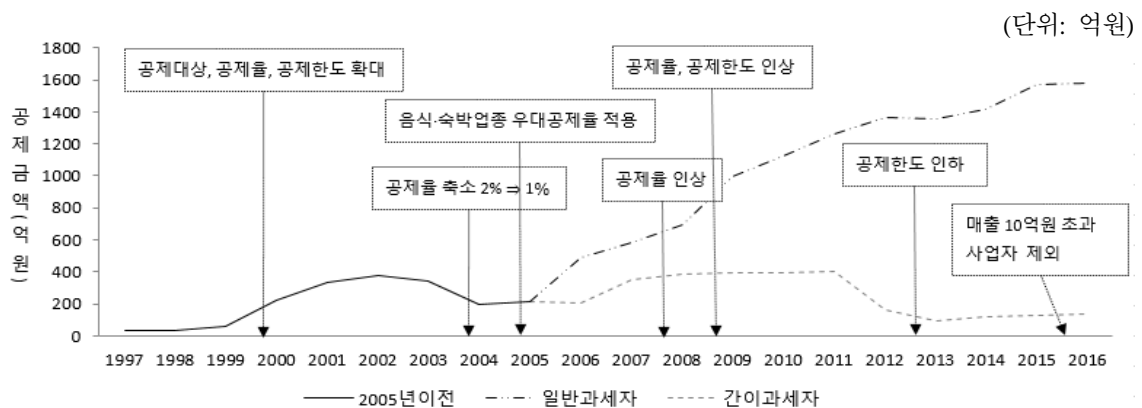
IV.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 운용현황

1. 연도별 공제건수 및 공제세액

- 1997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공제세액은 373억원 수준이었지만, 공제대상 및 공제율 확대에 의하여 2016년 동 제도로 인한 공제세액 규모는 일반과세자 1조 5,771억원, 간이과세자 1,391억원에 달함
 - 2000년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자 범위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인상하여 전년 대비 공제세액이 약 3배 증가함
 - 2004년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공제율을 1%로 축소하였으나, 2005년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1.5%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되었음
 -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표 양성화가 급속히 증가하여 음식·숙박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자 제도의 공제율 인상과 함께 음식·숙박업종의 사업자의 경우 우대공제율이 적용되었음
 - 2016년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제도가 2000년 공제대상, 공제율, 공제한도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전년 대비 2001년 발행세액건수는 41.8%, 공제세액은 52.5% 증가하였음
 -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공제건수는 2004년, 공제금액은 2003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04년 공제율이 축소(2%→1%) 개편됨에 따라 공제건수는 전년 대비 42.5% 감소하였지만, 공제금액은 6.8% 증가하였음
- 음식·숙박업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2005년, 2008년도에 공제율이 인상(1%→1.5%→2%)되었고, 2009년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증가하였음

- 2005~2009년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의 공제세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 공제율, 공제한도 인상(1%→1.3%, 500만원→700만원)으로 일반과세자의 공제세액이 크게 증가함
 - 일반과세자의 공제세액은 2008년(약 6,938억원) 대비 2009년(약 9,966억원) 약 43.6% 증가함
 - 2005년, 2008년, 2009년 세차레에 걸쳐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사업자의 공제율이 인상되었고,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도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 일반사업자와 비교해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사업자의 공제율이 우대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의 공제세액 인상폭에 비해 간이과세자의 인상폭은 작은 편임
- 2012년 이후로 공제한도 인하(2013년),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 제외(2016년) 등의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 증가폭이 낮아짐
- 일반과세자의 발행세액 공제액의 경우, 2013년(약 1조 2,523억원) 전년(약 1조 3,643억원)대비 -0.88%로 처음 감소하였으나, 2014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
 -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 공제액의 경우, 2012년(-60%)과 2013년(-42%)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2014년(+30%)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상대적으로 공제율 인상, 인하 개편보다 공제한도, 공제대상 축소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현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V-1> 과세자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¹⁾ 현황(2016)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신고건수		공제세액	
1997	193,236		37,378	
1998	203,006		30,927	
1999	304,065		56,911	
2000	528,963		219,948	
2001	750,410		335,447	
2002	826,963		374,645	
2003	828,018		342,284	
2004	824,507		201,307	
2005	473,981		215,089	
구 분 ²⁾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건수	공제세액	신고건수	공제세액
2006	515,894	485,579	818,532	106,677
2007	583,679	580,602	1,256,039	347,896
2008	645,719	693,771	1,286,055	383,304
2009	694,332	996,551	1,280,459	398,338
2010	754,766	1,126,803	1,287,777	398,347
2011	809,599	1,264,875	1,278,215	405,438
2012	834,197	1,364,319	952,242	162,437
2013	867,754	1,352,283	501,497	94,014
2014	867,625	1,418,814	530,308	122,731
2015	1,100,848	1,568,227	587,110	128,522
2016	1,160,011	1,577,129	626,653	139,191

주: 1)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를 포함함

2)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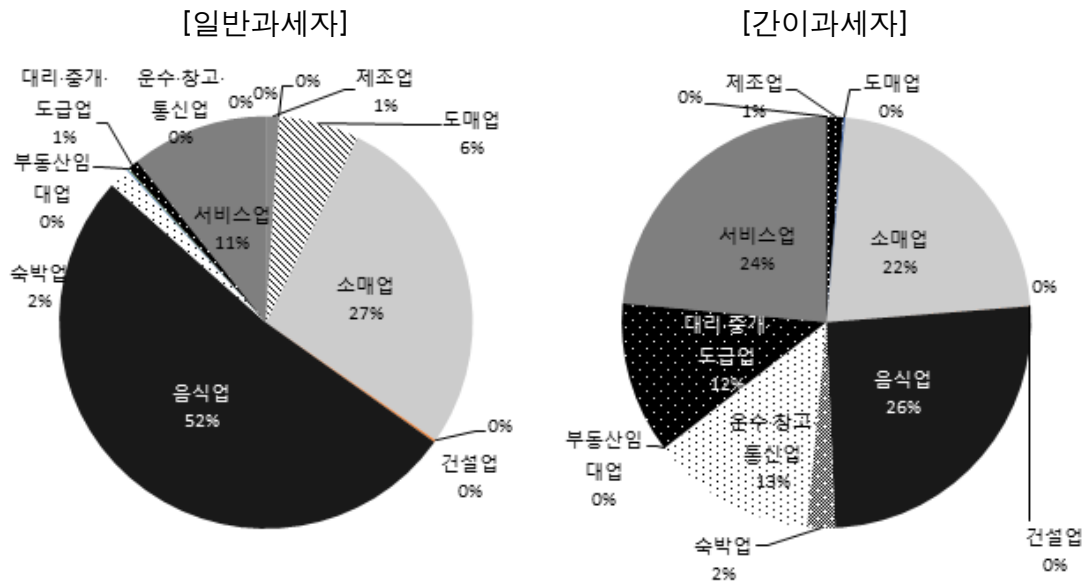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업종별 발행세액공제 현황

□ 2016년을 기준으로 동 제도의 발행세액 공제금액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경우 89.9%, 간이과
세자의 경우 71.3%로 해당 업종 사업자가 대부분임

- 일반과세자의 경우 음식업(51.8%), 소매업(27.4%), 서비스업(10.7%) 순이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업(25.6%), 서비스업(23.5%), 소매업(22.3%) 순임
- 간이과세자의 경우 운수·창고·통신업(12.9%), 대리·중개·도급업(11.9%) 종사
사업자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

[그림 IV-2] 업종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현황(2016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표 IV-2>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¹⁾ 현황(2016)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건수	공제세액	공제세액 비율	건수	공제세액	공제세액 비율
농·임·어업	119	67	0.0	83	10	0.0
광업	5	2	0.0	-	-	-
제조업	46,133	16,335	1.0	9,944	1,853	1.3
전기·가스·수도업	61	9	0.0	4	-	-
도매업	141,003	98,829	6.3	1,009	184	0.1
소매업	304,001	431,654	27.4	175,142	30,984	22.3
부동산매매업	50	33	0.0	3	1	0.0
건설업	11,440	2,597	0.2	224	33	0.0
음식업	435,601	816,547	51.8	172,783	35,575	25.6
숙박업	18,526	25,661	1.6	12,782	3,098	2.2
운수·창고·통신업	5,679	1,575	0.1	72,782	17,978	12.9
부동산임대업	2,167	1,101	0.1	724	106	0.1
대리·중개·도급업	24,642	13,801	0.9	54,120	16,616	11.9
서비스업	170,584	168,918	10.7	127,053	32,753	23.5
합계	1,160,011	1,577,129	100	626,653	139,191	100

주: 1)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포함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3. 향후전망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함께 조세지출액이 상당히 큰 제도로 2017년, 2018년도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액은 1조 7,028억원으로 2016년 1조 5,776억원에서 약 8%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IV-3〉 주요 조세특례제도(연도별 조세지출액 상위 10개)

(단위: 억원)

	2016년(실적)		2017년(전망)		2018년(전망)	
1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5,978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8,314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30,094
2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4,09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40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6,161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94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2,93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2,709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8,64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6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2,164
5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18,444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18,862	연금보험료공제	19,722
6	연금보험료공제	17,683	연금보험료공제	18,610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19,475
7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5,77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6,39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7,028
8	농·축·임·어업용기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4,897	농·축·임·어업용기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5,017	농·축·임·어업용기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5,139
9	자녀세액공제	13,085	자녀세액공제	13,174	자녀세액공제	13,810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2,04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비과세	12,155	교육비세액공제	13,252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V. 타당성 평가



V. 타당성 평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 정부 역할의 적정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임

-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동 제도의 유지를 통해 기대되는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는 조세지출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효과는 동 제도 도입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효과는 조세지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2000~2016년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누적액은 총 36조 3,390억원으로 동 기간의 개인사업자 세수증가액 합계 31조 6,930억원을 초과함

- 다만,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소득과약률이 높은 편이므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해 조세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
 - 다만, 최근 들어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소득과약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 2016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소득과약률은 95%로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 88%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2010년에 비해 그 격차가 23%p에서 7%p로 감소함

<표 V-1>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소득과약률(추정)

(단위: 십억원, %)

연도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	사업소득 신고금액	소득과약률	국민계정상 피용자 임금·급여	과세대상 근로소득 신고금액	소득과약률
2010	103,265	63,835	62	466,460	396,289	85
2011	106,136	71,832	68	494,130	433,266	88
2012	108,466	74,997	69	518,196	466,684	90
2013	111,066	79,697	72	544,103	498,028	92
2014	115,452	89,956	78	565,986	528,660	93
2015	121,879	102,029	84	594,338	562,509	95
2016	128,633	112,853	88	627,828	595,990	9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나.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1) 조세지원 대상의 적절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임
 - 근로소득자의 소득과약률이 자영업자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2016년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액의 11.2%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3.7%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귀착되는 등 고소득층에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⁴⁰⁾
 -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41.7%를 차지하는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구간 계층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은 전체의 약 6.2%에 불과하여 대조를 보임
 - 소득공제 신청인원은 총급여 2천만~4천만원 구간이 36.9%로 가장 많았으나, 1인당 소득공제액은 총급여 6천만~8천만원 구간이 240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40) 2017년 소득공제신청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음

〈표 V-2〉 근로소득 규모별 공제인원과 소득공제금액(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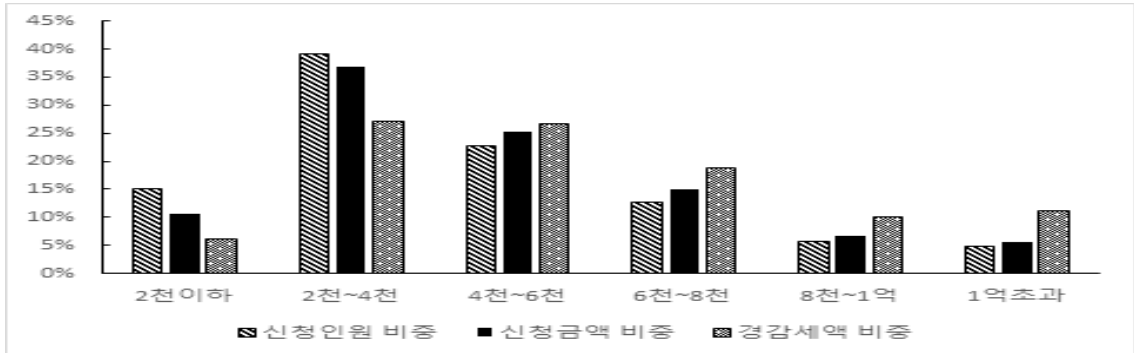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 %p)

총급여 구간	근로소득 신고인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청인원		차이 (B)-(A)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청금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로 인한 경감세액		차이 (D)-(C)
	(A)비중		(B)비중			(C)비중		(D)비중		
~ 1천	3,334,672	18.9	130,242	1.4	-17.4	115,515	0.5	6,933	0.3	-0.2
1천 ~ 1.5천	1,891,689	10.7	335,558	3.7	-7.0	522,941	2.4	31,382	1.4	-1.0
1.5천 ~ 2천	2,131,429	12.1	900,034	9.9	-2.2	1,667,103	7.6	100,035	4.5	-3.1
2천 ~ 3천	3,144,981	17.8	1,977,062	21.7	3.9	4,257,236	19.3	276,520	12.4	-6.9
3천 ~ 4천	2,049,625	11.6	1,588,837	17.5	5.9	3,867,726	17.6	328,451	14.7	-2.8
4천 ~ 4.5천	777,388	4.4	650,955	7.2	2.8	1,691,302	7.7	166,393	7.5	-0.2
4.5천 ~ 5천	654,432	3.7	557,309	6.1	2.4	1,486,761	6.8	156,959	7.0	0.3
5천 ~ 6천	1,015,129	5.7	866,313	9.5	3.8	2,375,985	10.8	270,823	12.1	1.4
6천 ~ 8천	1,375,500	7.8	1,159,437	12.7	5.0	3,297,044	15.0	417,267	18.7	3.7
8천 ~ 1억	640,114	3.6	511,913	5.6	2.0	1,485,051	6.7	225,490	10.1	3.4
1억 ~ 2억	583,421	3.3	406,615	4.5	1.2	1,193,000	5.4	234,814	10.5	5.1
2억 ~ 3억	42,407	0.2	14,336	0.2	-0.1	41,371	0.2	11,441	0.5	0.3
3억 초과	27,498	0.2	3,475	0.0	-0.1	10,181	0.0	3,347	0.2	0.1
합 계	17,668,285	100	9,102,086	100		22,011,216	100	2,229,853	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1] 근로소득 규모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비중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근로소득자 1인당 경감세액(소득공제 신청인원 기준)은 총급여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1인당 소득공제액은 총급여 4천만원 이상 구간에서 거의 일정함
 - 총급여 4천~4천 5백만원 구간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267만원으로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소득공제액 293만원의 91% 수준임
 - 반면 총급여 4천~4천 5백만원 구간의 1인당 경감세액은 28만원으로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경감세액 96만원의 29% 수준에 불과함

<표 V-3> 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소득공제 신청인원 기준)

(단위: 원)

총급여 구간	소득공제 신청인원 기준			
	1인당 소득공제금액		1인당 경감세액(원)	
	최고금액 ¹⁾	대비(%)	최고금액 ²⁾	대비(%)
~ 1천	886,926	30.2	53,228	5.5
1천 ~ 1.5천	1,558,422	53.1	93,521	9.7
1.5천 ~ 2천	1,852,267	63.1	111,145	11.5
2천 ~ 3천	2,153,314	73.4	139,864	14.5
3천 ~ 4천	2,434,313	83.0	206,724	21.5
4천 ~ 4.5천	2,598,186	88.6	255,613	26.5
4.5천 ~ 5천	2,667,750	90.9	281,638	29.2
5천 ~ 6천	2,742,640	93.5	312,616	32.5
6천 ~ 8천	2,843,659	96.9	359,887	37.4
8천 ~ 1억	2,900,983	98.9	440,484	45.7
1억 ~ 2억	2,933,979	100.0	577,486	60.0
2억 ~ 3억	2,885,812	98.4	798,036	82.9
3억 초과	2,929,784	99.9	963,03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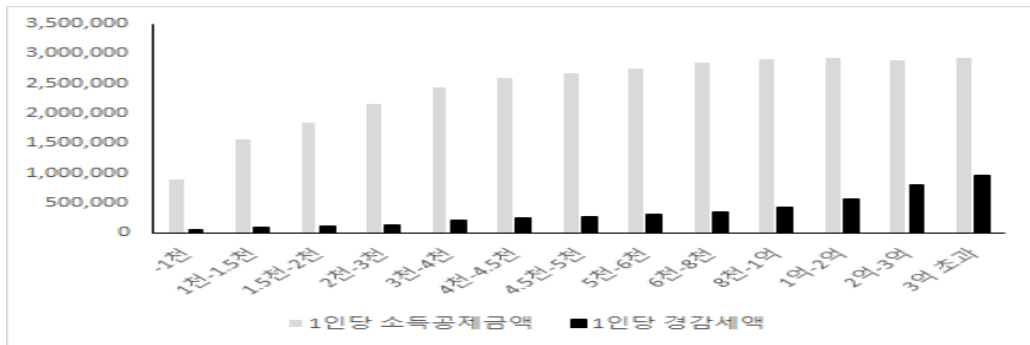
주: 1) 최고금액(2,933,979원) 대비 해당 구간의 1인당 소득공제금액

2) 최고금액(963,039원) 대비 해당 구간의 1인당 소득공제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2] 1인당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2016년 귀속 소득공제 신청인원 기준)

(단위: 원)



주: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인원 1인당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1인당 소득공제액과 공제혜택은 총급여 2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하나, 총급여 2억원을 기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
 - 총급여 2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높은 공제문턱(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인하여 공제인원이 적어 소득공제총액을 전체 연말정산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됨

<표 V-4> 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근로소득 연말정산인원 기준)

(단위: 원)

총급여 구간	근로소득 연말정산인원 기준	
	1인당 소득공제금액	1인당 경감세액
~ 1천	34,641	2,079
1천 ~ 1.5천	276,441	16,589
1.5천 ~ 2천	782,153	46,933
2천 ~ 3천	1,353,660	87,924
3천 ~ 4천	1,887,041	160,249
4천 ~ 4.5천	2,175,621	214,041
4.5천 ~ 5천	2,271,834	239,840
5천 ~ 6천	2,340,574	266,787
6천 ~ 8천	2,396,979	303,356
8천 ~ 1억	2,319,979	352,265
1억 ~ 2억	2,044,836	402,479
2억 ~ 3억	975,570	269,782
3억 초과	370,245	121,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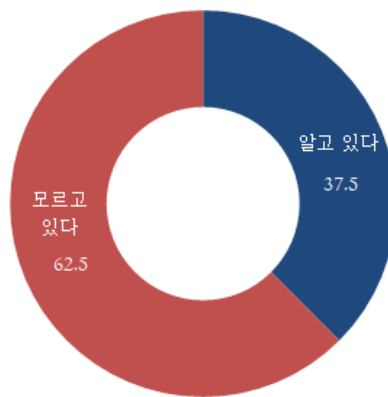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정부는 고소득자의 소득공제혜택 독식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조특법」 개정에서 소득구간별 차등한도 규정을 도입함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2017년부터 공제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총급여액 7천만~1억 2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2018년부터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임

- 근로소득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총급여액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공제한도 축소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가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변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변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는 62.5%로 응답자 3명 중 2명꼴로 조사됨

[그림 V-3]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인지 여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 요약

-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가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아 실제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구간별 차등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의 효과를 추정함
 -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5%를 샘플링하여 분석을 수행함

- 추정 결과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로 총급여 8천만~1억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5만 6천원, 총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21만 8천원의 세부담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
 - 총급여 8천만~1억원인 근로소득자는 세법개정 전 290만원을 공제받았으나, 공제한도 축소 후 소득공제금액이 253만원으로 37만원 감소함
 - 총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는 세법개정 전 288만원을 공제받았으나, 공제한도 축소 후 소득공제금액이 209만원으로 78만원 감소함
 - 공제한도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효과는 총급여 2억~3억원 구간에서 21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표 V-5〉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효과(추정)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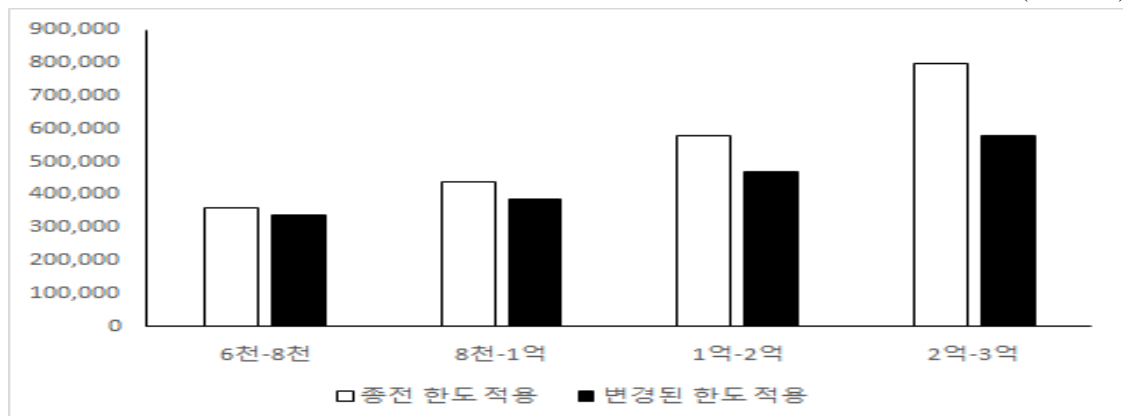
총급여	1인당 소득공제금액			1인당 경감세액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6천~8천	2,843,659	2,658,739	-184,920	359,887	336,484	-23,403
8천~1억	2,900,983	2,532,196	-368,787	440,484	384,488	-55,996
1억~2억	2,933,979	2,394,778	-539,201	577,486	471,357	-106,129
2억~3억	2,885,812	2,098,801	-787,011	798,036	580,398	-217,638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전체 근로소득자의 5%에 해당하는 455,100명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가 1인당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이용

〔그림 V-4〕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전후 1인당 경감세액(추정)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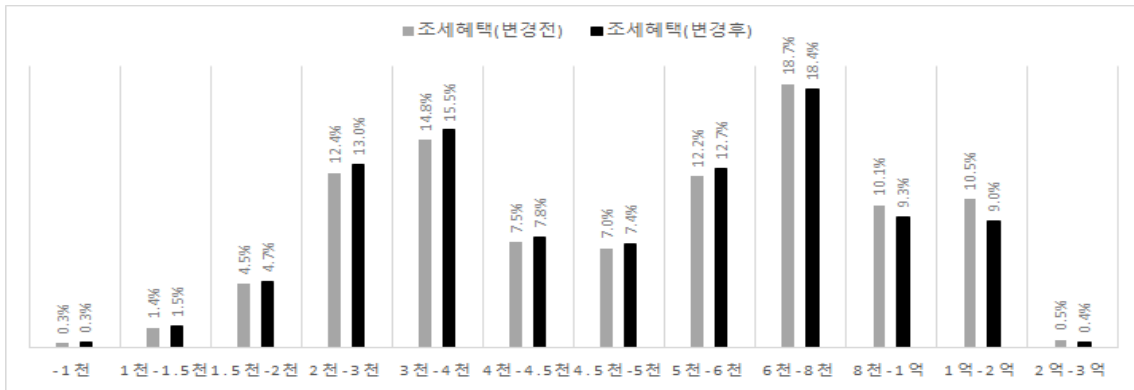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전체 근로소득자의 5%에 해당하는 455,100명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가 1인당 소득공제금액 및 경감세액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이용

- 고소득자의 공제한도 축소는 고소득층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을 줄여 소득분배의 개선을 가져오나, 고소득자의 유효세율이 저소득자보다 높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은 21.2%에서 공제한도 축소 후 18.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공제한도 축소 후에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7%에 해당하는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계층에 전체 조세혜택의 18% 이상이 집중

[그림 V-5]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가 소득계층별 귀착에 미치는 효과(추정)

(단위: %)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전체 근로소득자의 5%에 해당하는 455,100 명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가 1인당 소득 공제금액 및 경감세액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이용

2) 적용대상금액의 적절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결제금액임⁴¹⁾
 - 다만,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관계가 없는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 제외)의 구입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

41) 단,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관계가 없는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 제외)의 구입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정치자금, 월세액, 사업소득 관련비용, 법인의 비용 지출액, 신용카드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정치자금, 월세액, 사업소득 관련비용, 법인의 비용 지출액, 신용카드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특별세액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혼재되어 있지만, 중복적용이 허용되는 사유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지만, 보장정보료, 기부금 등은 중복공제가 불가능함
- 신용카드 거래내역 이외에 다른 과세자료를 통해 세원파악이 가능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간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제대상금액을 축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다. 정부지원 형태의 적절성: 조세지원 vs. 재정지원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지원하여 주는 재정적 지원은 찾기 어려움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 정부 역할의 적정성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정책목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임
- 간이과세자 및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직후인 1999년과 200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에 다시 한 번 크게 상승함
 - 간이과세자의 과세매출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99년에 전년 대비 13.6% 증가

- 일반사업자의 과세매출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00년과 2001년에 전년 대비 각각 20.1%와 22.0%가 증가하여 최근 19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표 V-6> 개인사업자의 과세분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백만원, %)

연도	간이과세자 ¹⁾²⁾		일반사업자 ¹⁾	
		증감률		증감률
1998	26,143,949	-	139,144,163	-
1999	29,710,087	13.6	167,069,577	20.1
2000	28,620,307	-3.7	203,784,931	22.0
2001	26,594,251	-7.1	229,746,589	12.7
2002	27,097,900	1.9	266,822,550	16.1
2003	25,321,491	-6.6	283,558,417	6.3
2004	23,971,965	-5.3	305,582,212	7.8
2005	24,127,584	0.6	328,938,975	7.6
2006	26,199,305	8.6	362,956,877	10.3
2007	29,557,188	12.8	400,228,769	10.3
2008	30,241,128	2.3	446,204,844	11.5
2009	29,455,814	-2.6	452,965,011	1.5
2010	29,012,365	-1.5	515,779,765	13.9
2011	28,830,812	-0.6	569,861,534	10.5
2012	27,929,582	-3.1	572,446,292	0.5
2013	26,958,390	-3.5	583,443,940	1.9
2014	30,637,807	13.6	592,952,280	1.6
2015	30,900,007	0.9	609,687,361	2.8
2016	31,402,241	1.6	632,793,274	3.8
평균		1.2		9.0

주: 1) 과세분매출 과세표준(영세율 과세표준 미포함)

2) 과세특례자 포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신용카드 수수 문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거래투명성이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난 판매자에 대한 배려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초기에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어 준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현재는 신용카드 수수 및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이 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됨
 - 2016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과세분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간이과세자 1.6%, 일반사업자 3.8%로 한자릿수로 떨어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의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어줄 정책적 필요성은 감소

- 하지만, 동 제도를 통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상당하여 제도를 유지하고 추후 단계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또는 과표 양성화효과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야에 한정하여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1) 조세지원대상의 적절성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 발급 대상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2016년 기준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은 28%와 64%로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비중 4%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의 매출비중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

- 이러한 관점에서 세액공제대상자를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표 V-7> 사업자별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

(단위: 십억원, %)

연도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연간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¹⁾		연간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¹⁾		연간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¹⁾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2	3,646	120	3	598	142	24	28	14	51
2013	3,692	124	3	607	150	25	27	14	53
2014	3,712	133	4	615	157	25	31	19	62
2015	3,679	138	4	631	168	27	31	18	59
2016	3,734	148	4	655	180	28	31	20	64

주: 1) 신용카드 등 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아울러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이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은 평균 28%이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62%를 기록함
 -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은 평균 64%이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은 이보다 24% 높은 88%를 기록함

<표 V-8>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

(단위: 십억원, %)

연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연간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¹⁾		연간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¹⁾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2	213	126	59	14	12	82
2013	221	132	60	12	10	81
2014	228	139	61	15	13	85
2015	260	160	62	16	14	86
2016	271	167	62	17	15	88

주: 1) 신용카드 등 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에서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업으로 2016년 기준 89.1%에 달함

- 일반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매출 중 신용카드 등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0.2%에서 2016년에는 27.5%로 증가함

<표 V-9>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비중¹⁾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임·어업	3.4	4.7	3.3	3.0	3.3	3.6	4.0	4.7
광업	0.1	0.1	0.1	0.0	0.0	0.0	0.0	0.1
제조업	1.0	1.0	1.0	1.1	1.2	1.3	1.4	1.6
전기·가스·수도업	2.9	2.1	2.0	1.6	1.4	1.0	0.2	0.2
도매업	7.2	7.5	7.6	8.2	8.7	9.2	8.4	8.9
소매업	53.7	58.4	59.6	60.6	61.3	61.7	63.7	64.6
부동산매매업	0.8	1.5	2.1	2.5	2.2	2.0	0.2	0.3
건설업	0.3	0.3	0.3	0.3	0.4	0.5	0.5	0.6
음식업	82.8	86.7	87.2	87.6	87.6	88.2	88.9	89.1
숙박업	67.4	72.3	73.2	71.9	70.4	71.8	70.9	69.3
운수·창고·통신업	0.3	0.3	0.3	0.4	0.4	0.5	0.6	0.6
부동산임대업	5.1	5.3	5.4	5.7	5.3	3.6	0.5	0.5
대리·중개·도급업	1.4	2.0	2.5	3.2	3.8	4.3	4.8	6.0
서비스업	24.8	27.7	29.7	30.7	31.7	34.0	37.0	38.4
전체 업종	20.2	21.5	22.2	23.8	24.8	25.5	26.7	27.5

주: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신용카드 등 매출 증가폭은 20%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과표 성장률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짐

〈표 V-10〉 일반사업자의 업종별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십억원, %)

업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농·임·어업	4,841	34	3,617	-25	3,659	1	4,333	18	4,712	9	5,790	23	7,928	37
광업	152	-30	75	-51	43	-43	53	23	25	-53	47	88	119	153
제조업	1,415,305	19	1,599,761	13	1,705,973	7	1,821,648	7	1,934,428	6	1,960,521	1	2,236,368	14
전기·가스·수도업	2,258	-6	2,554	13	2,372	-7	2,554	8	2,385	-7	917	-62	1,024	12
도매업	10,575,608	18	11,762,103	11	12,235,929	4	12,669,410	4	13,160,119	4	12,011,477	-9	12,956,924	8
소매업	50,741,710	21	57,782,999	14	61,344,738	6	62,601,177	2	62,730,472	0	66,528,750	6	69,330,315	4
부동산매매업	16,237	43	27,316	68	28,092	3	28,662	2	28,225	-2	3,398	-88	4,786	41
건설업	96,063	16	115,970	21	120,735	4	146,176	21	196,883	35	234,545	19	283,031	21
음식업	42,336,451	20	48,361,219	14	52,652,628	9	57,751,058	10	61,095,787	6	69,172,634	13	74,760,872	8
숙박업	1,292,962	22	1,469,120	14	1,617,089	10	1,753,832	8	1,937,938	10	2,106,509	9	2,258,404	7
운수·창고·통신업	55,143	24	60,680	10	71,337	18	78,077	9	102,946	32	143,617	40	149,133	4
부동산임대업	1,179,975	20	1,361,077	15	1,551,338	14	1,506,496	-3	1,056,104	-30	158,708	-85	154,754	-2
대리·중개·도급업	291,011	52	420,339	44	537,533	28	661,951	23	784,167	18	825,707	5	1,099,631	33
서비스업	7,880,880	25	9,406,597	19	10,290,274	9	11,420,628	11	13,700,011	20	15,283,318	12	17,097,059	1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업, 대리중개도급업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은 2012년 51.3%에서 2016년에는 64.5%로 상승함

<표 V-11>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¹⁾

(단위: %, %p)

업종	2012(A)	2013	2014	2015	2016(B)	(B)-(A)
농·임·어업	56.2	30.0	31.6	14.5	13.2	-42.9
제조업	38.1	42.8	48.4	48.2	50.8	12.7
전기가스수도업	0.0	0.0	7.0	0.8	2.4	2.4
도매업	67.4	62.2	69.9	69.3	74.1	6.7
소매업	60.8	62.3	65.5	64.5	69.4	8.6
부동산매매업	0.0	9.8	37.0	25.4	10.1	10.1
건설업	11.4	11.8	11.7	15.8	16.5	5.1
음식업	82.8	84.8	89.0	84.2	89.2	6.4
숙박업	50.5	49.4	52.2	49.9	49.5	-0.9
운수창고통신업	4.8	10.5	21.6	35.3	47.6	42.8
부동산임대업	0.4	0.3	0.4	0.2	0.2	-0.2
대리중개도급업	25.9	31.0	70.5	79.1	83.3	57.4
서비스업	55.1	59.3	65.5	65.4	68.0	13.0
전체 업종	51.3	52.8	62.0	59.4	64.5	13.2

주: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은 2012년 14조원에서 2016년에는 20조원으로 증가함
 - 서비스업은 4년 연속 신용카드 등 매출이 증가한 반면 소매업과 음식업은 연도별로 큰 폭의 등락을 나타냄

〈표 V-1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위: 백만원, %)

업종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농림어업	2,147	-64	766	17	897	5	943	16	1,090	5
제조업	129,217	6	136,568	6	152,707	12	162,597	5	171,410	6
전기가스수도업	-	-	-	-	15	-80	3	333	13	-80
도매업	19,983	-25	14,918	3	15,344	54	23,624	6	24,986	54
소매업	4,003,138	-9	3,639,602	10	3,994,133	-1	3,937,328	8	4,261,542	-1
부동산매매업	-	-	12	42	17	712	138	64	64	712
건설업	2,145	-13	1,867	-4	1,794	62	2,913	4	3,016	62
음식업	7,654,878	-1	7,595,718	41	10,672,281	-13	9,243,666	10	10,180,634	-13
숙박업	169,692	-1	168,524	8	181,701	-2	178,763	3	184,961	-2
운수창고통신업	116,262	124	260,624	115	559,424	74	974,276	44	1,399,303	74
부동산임대업	16,069	-14	13,857	5	14,598	-31	10,111	-8	9,304	-31
대리중개도급업	235,218	37	321,721	204	979,054	37	1,339,048	-1	1,326,048	204
서비스업	1,984,511	5	2,081,430	17	2,433,705	2	2,492,427	8	2,688,356	17
전체 업종	14,333,261	-1	14,235,607	34	19,005,668	-3	18,365,836	10	20,250,726	34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수혜자의 92%가 일반사업자이며, 일반사업자 수혜금액의 절반 이상이 음식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세액공제 신청자 수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비중은 35%이나, 공제금액 기준으로는 8%에 불과함
 - 일반사업자의 조세혜택 중 52%가 음식업, 27%가 소매업, 11%가 서비스업에 귀착되어 3개 업종의 수혜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3> 업종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2016년)

(단위: 건, 백만원, %)

업종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건수 ¹⁾		공제금액		건수 ¹⁾		공제금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농·임·어업	83	0	10	0	119	0	67	0
광업	0	0	0	0	5	0	2	0
제조업	9,944	2	1,853	1	46,133	4	16,335	1
전기·가스·수도업	4	0	0	0	61	0	9	0
도매업	1,009	0	184	0	141,003	12	98,829	6
소매업	175,142	28	30,984	22	304,001	26	431,654	27
부동산매매업	3	0	1	0	50	0	33	0
건설업	224	0	33	0	11,440	1	2,597	0
음식업	172,783	28	35,575	26	435,601	38	816,547	52
숙박업	12,782	2	3,098	2	18,526	2	25,661	2
운수·창고·통신업	72,782	12	17,978	13	5,679	0	1,575	0
부동산임대업	724	0	106	0	2,167	0	1,101	0
대리·중개·도급업	54,120	9	16,616	12	24,642	2	13,801	1
서비스업	127,053	20	32,753	24	170,584	15	168,918	11
전체	626,653	100	139,191	100	1,160,011	100	1,577,129	100
전체에서 비중²⁾	35		8		65		92	

주: 1) 제2기 신청인원

2) 세액공제 전체 신청자수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건수, 공제금액 비중과 일반사업자의 건수, 공제금액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주된 수혜자인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증가폭이 둔화됐으므로 세액공제를 통해 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감소함
 -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의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2010년 20%/21%/25%에서 2016년에는 8%/4%/12%로 떨어짐

-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이 자영업자 과포 양성화를 통해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2) 과세표준 규모별 분석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청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4천 8백만원 이하 구간 신청자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음(2016년 기준)
- 세액공제대상자를 전년도 수입금액 10억원(사업장 단위) 이하 개인사업자로 제한한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2016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신청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⁴²⁾

<표 V-14>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신청자 분포(일반사업자)

(단위: 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4백 이하	10,752	22	10,939	21	11,146	21	11,941	21	13,287	22
24백~48백	11,148	23	11,782	23	11,552	22	12,747	22	13,698	23
48백~60백	3,811	8	4,085	8	4,115	8	4,530	8	4,856	8
60백~72백	2,979	6	3,199	6	3,280	6	3,595	6	3,852	6
72백~1억	4,852	10	5,259	10	5,483	10	6,004	10	6,477	11
1억~2억	8,146	16	8,770	17	9,204	17	9,893	17	10,557	17
2억~5억	5,679	11	6,051	12	6,441	12	7,143	12	7,433	12
5억~10억	1,361	3	1,407	3	1,493	3	1,623	3	577	1
10억~20억	482	1	481	1	471	1	459	1	57	0
20억 초과	180	0	172	0	165	0	144	0	11	0
합계	49,390	100	52,145	100	53,350	100	58,079	100	60,805	100
샘플링비율	5.9		6.0		6.1		5.3		5.2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42) 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신청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2천 4백만~4천 8백만 구간의 신청자비율이 32%로 가장 높았음

〈표 V-15〉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신청자 분포 (간이과세자)

(단위: 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3백 이하	2,415	8	892	6	937	6	938	5	1,072	6
3백~6백	4,257	15	1,053	7	1,093	7	1,100	6	1,197	6
6백~12백	10,225	36	2,647	17	2,667	16	2,945	16	3,084	16
12백~18백	5,081	18	2,814	18	2,856	17	3,055	17	3,188	17
18백~24백	3,251	11	2,487	16	2,420	15	2,584	14	2,815	15
24백~48백	2,466	9	4,294	28	4,716	28	5,582	31	6,019	32
48백~72백	447	2	628	4	924	6	942	5	942	5
72백 초과	439	2	458	3	938	6	735	4	781	4
합계	28,581	100	15,273	100	16,551	100	17,881	100	19,098	100
샘플링비율	6.0		3.0		3.1		3.0		3.0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간이과세자 신고자료 97,384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국세청 샘플링자료 분석결과 1인당 공제세액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천 4백만원 이하 구간은 평균 12만원을 공제받은 반면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은 294만원을 공제받음(2016년 기준)
 - 1인당 공제세액은 과세표준 5억원 구간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과세표준 20억원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함
 - 2013년 공제한도 축소(700만원→500만원)의 영향으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공제세액이 2012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3백만원 이하 구간은 1인당 공제세액이 1만 3천 원에 불과하나, 과세표준 7천 2백만원 초과 구간은 무려 94만원에 달함(2016년 기준)
 - 공급대가가 연 2천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2천 4백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공제세액이 다른 과표 구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됨

〈표 V-16〉 과세표준 규모별 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액(일반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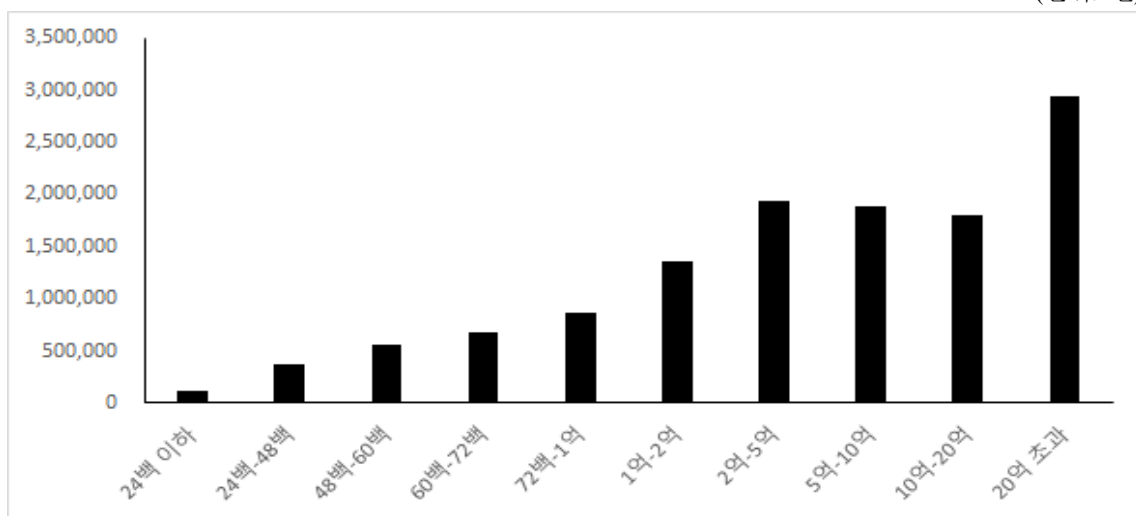
(단위: 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2	2013	2014	2015	2016
24백 이하	127,067	128,974	125,281	127,937	124,551
24백~48백	356,491	360,963	364,747	370,591	366,590
48백~60백	532,128	538,963	548,939	563,004	553,948
60백~72백	651,602	650,161	661,791	671,713	676,844
72백~1억	799,685	821,792	840,681	857,552	867,803
1억~2억	1,275,492	1,314,133	1,343,407	1,330,187	1,355,259
2억~5억	2,127,407	1,802,861	1,880,616	1,904,065	1,932,683
5억~10억	2,261,159	1,844,769	1,811,197	1,895,199	1,883,580
10억~20억	2,954,088	2,071,717	2,129,215	2,104,816	1,801,063
20억 초과	3,902,840	3,023,285	2,746,374	2,658,520	2,941,499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간이과세자 신고자료 97,384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그림 V-6] 과세표준 규모별 일반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액(2016년)

(단위: 원)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간이과세자 신고자료 97,384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표 V-17> 과세표준 규모별 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액(간이과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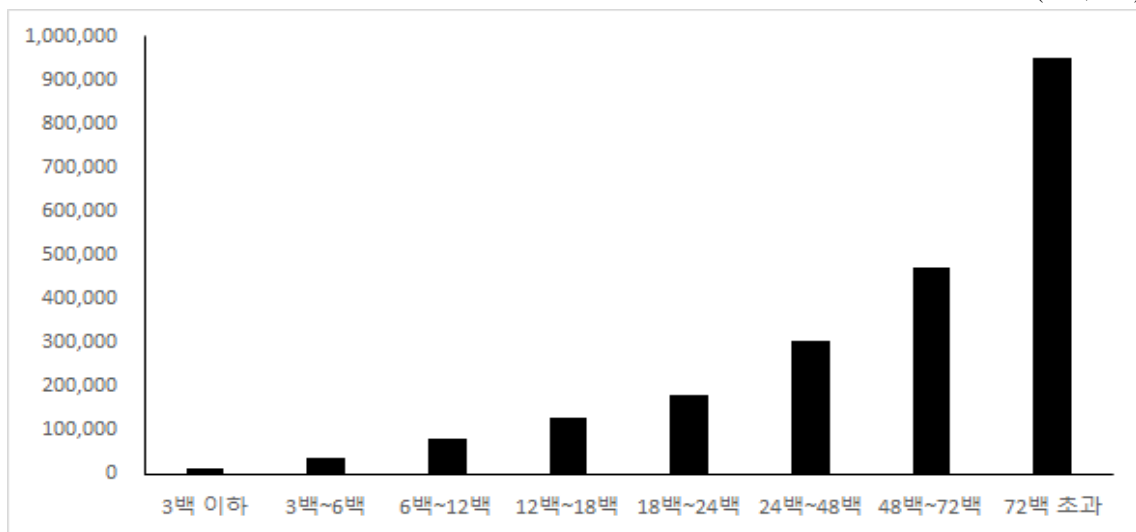
(단위: 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2	2013	2014	2015	2016
3백만원 이하	20,166	13,983	13,465	13,373	13,343
3백만~6백만원	49,213	37,170	36,903	37,860	37,704
6백만~12백만원	99,615	68,721	72,060	77,082	79,249
12백만~18백만원	175,540	106,968	116,469	125,005	127,649
18백만~24백만원	245,102	163,892	172,725	175,542	180,610
24백만~48백만원	389,693	277,015	295,224	297,265	304,432
48백만~72백만원	700,174	461,937	484,635	463,997	470,430
72백만원 초과	1,326,141	951,096	1,023,395	964,776	948,112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년~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간이과세자 신고자료 97,384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그림 V-7] 과세표준 규모별 간이과세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액(2016년)

(단위: 원)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년~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간이과세자 신고자료 97,384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국세청 샘플링자료 분석결과 과세표준 1억~5억원 구간에 공제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규모별 수혜비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37.0%, 과세표준 1억~5억원은 60.4%이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은 2.6%로 미미한 수준임(2016년 기준)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규모별 수혜비율은 과세표준 2천 4백만~4천 8백만원 구간이 43.25%로 가장 높고, 과세표준 7천 2백만원 초과 구간도 17.49%로 상당히 높은 편임(2016년 기준)

<표 V-18>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수혜비율 (일반과세자)

(단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2	2013	2014	2015	2016
24백 이하	3.35	3.46	3.23	3.22	3.47
24백~48백	9.71	10.42	9.72	9.92	10.56
48백~60백	4.96	5.40	5.22	5.36	5.66
60백~72백	4.74	5.10	5.01	5.06	5.49
72백~1억	9.49	10.59	10.65	10.82	11.83
1억~2억	25.43	28.20	28.64	27.74	30.10
2억~5억	29.59	26.73	27.94	28.58	30.31
5억~10억	7.53	6.38	6.24	6.47	2.29
10억~20억	3.47	2.44	2.31	2.03	0.22
20억 초과	1.72	1.28	1.05	0.80	0.07
1억 이하	32.25	34.97	33.83	34.38	37.02
1억~5억	55.02	54.93	56.58	56.32	60.40
5억~10억	7.53	6.38	6.24	6.47	2.29
10억 초과	5.19	3.72	3.36	2.83	0.28

주: 1.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년~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분석한 결과임

2. 수혜비율 = 해당 과표 구간의 세액공제액 합계/일반사업자의 세액공제액 합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표 V-19>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수혜비율
(간이과세자)

(단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2	2013	2014	2015	2016
3백만원 이하	1.01	0.44	0.33	0.32	0.34
3백만~6백만원	4.33	1.37	1.06	1.06	1.07
6백만~12백만원	21.15	6.37	5.06	5.79	5.77
12백만~18백만원	18.50	10.53	8.78	9.74	9.62
18백만~24백만원	16.53	14.27	11.02	11.57	12.01
24백만~48백만원	19.93	41.63	36.64	42.31	43.25
48백만~72백만원	6.49	10.14	11.81	11.14	10.47
72백만원 초과	12.07	15.25	25.30	18.07	17.49

주: 1.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년~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분석한 결과임

2. 수혜비율 = 해당 과표 구간의 세액공제액 합계/일반사업자의 세액공제액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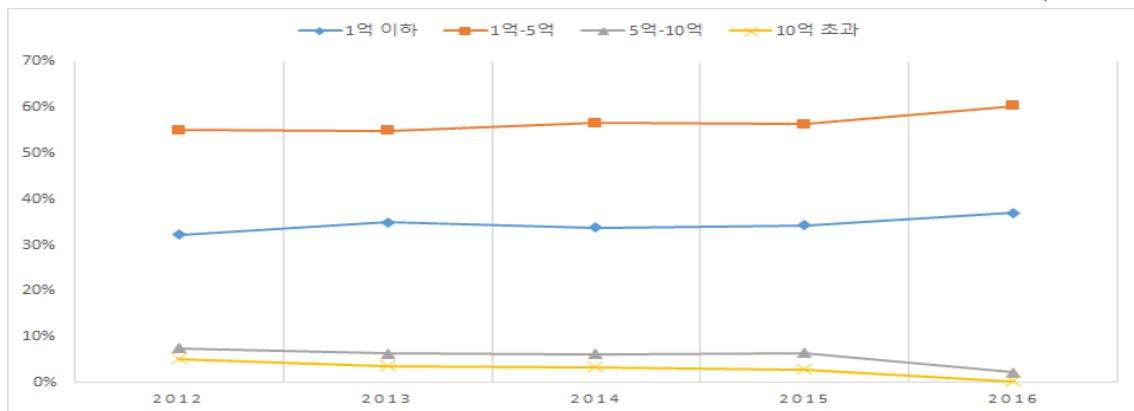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세액공제대상자를 전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로 규제한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의 수혜비율은 증가한 반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수혜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일반사업자의 수혜비율은 2015년 12.72%에서 2016년에는 2.57%로 감소함

[그림 V-8] 과세표준 규모별 수혜비율의 변화(일반사업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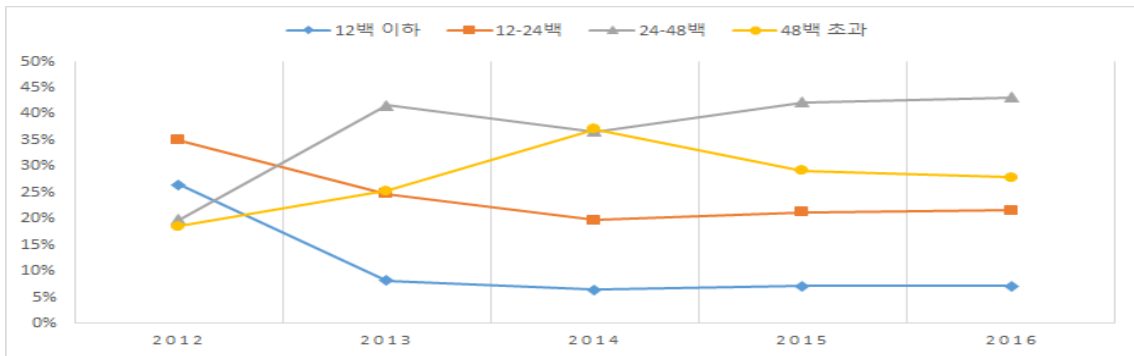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년~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2천 4백만원~4천 8백만원 구간의 수혜비율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세표준 4천 8백만원 초과 구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과세표준 2천 4백만원 이하 구간의 수혜비율은 2014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림 V-9] 과세표준 규모별 수혜비율의 변화(간이과세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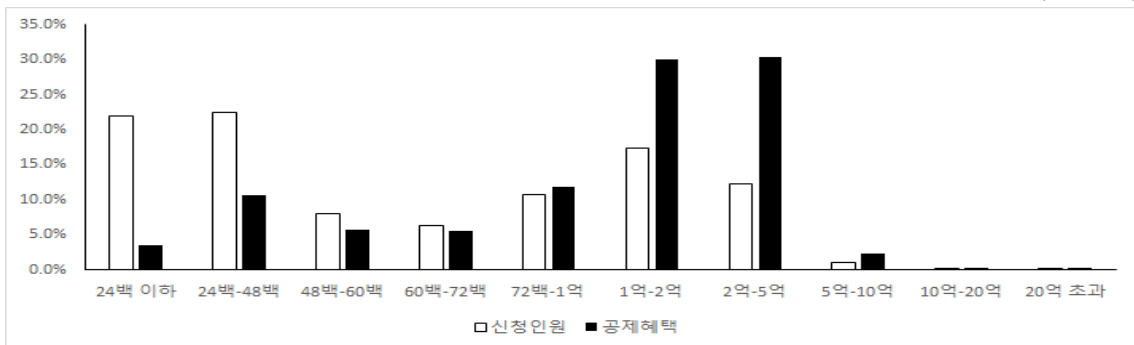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년~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4천 8백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신청자 숫자가 전체의 52.4%를 차지하나, 이들이 공제받은 세액은 전체의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16년 기준)
- 반면 전체 신청인원의 29.6%를 차지하는 과세표준 1억~5억원 구간에 전체 공제혜택의 60.4%가 귀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0]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규모별 신청인원 및 수혜비율 비교(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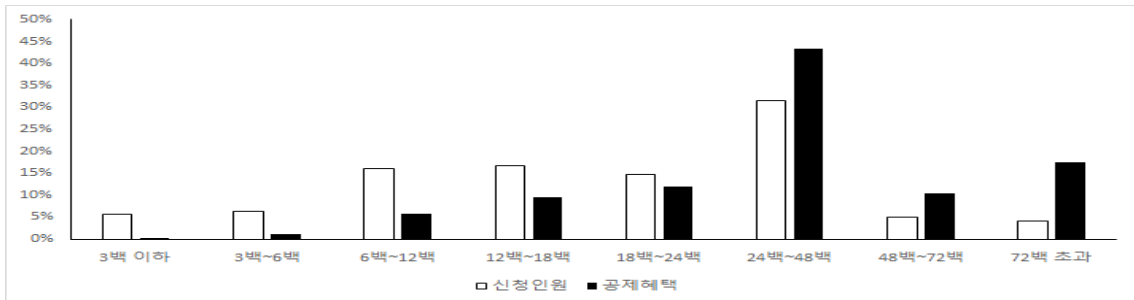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년~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1천 2백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신청자 숫자가 전체의 28.0%를 차지하나, 이들이 공제받은 세액은 전체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016년 기준)
 - 반면 전체 신청인원의 9.0%를 차지하는 과세표준 4천 8백만원 초과 구간에 전체 공제혜택의 28.0%가 귀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규모별 신청인원 및 수혜비율 비교(2016년)

(단위: %)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년~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간이과세자 신고자료 97,384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국세청 샘플링자료 분석결과 전체 매출에서 신용카드 등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세표준 5억원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이 70%를 초과하나, 과세표준 5억~20억원 구간은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이 35~45%에 불과함

<표 V-20>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규모별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

(단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2	2013	2014	2015	2016
24백만원 이하	72.60	72.57	72.43	74.06	73.87
24백만~48백만원	73.21	73.61	74.32	75.55	75.34
48백만~60백만원	70.97	71.56	73.08	74.88	73.77
60백만~72백만원	70.71	70.73	72.13	73.21	73.71
72백만원~1억	67.50	69.22	70.63	72.25	73.21
1억~2억	65.71	67.74	69.05	68.81	70.14
2억~5억	59.48	59.97	62.61	64.89	66.02
5억~10억	42.20	43.17	43.39	46.22	45.84
10억~20억	47.56	44.07	43.13	47.87	35.82
20억 초과	60.30	64.69	60.37	55.63	58.62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년~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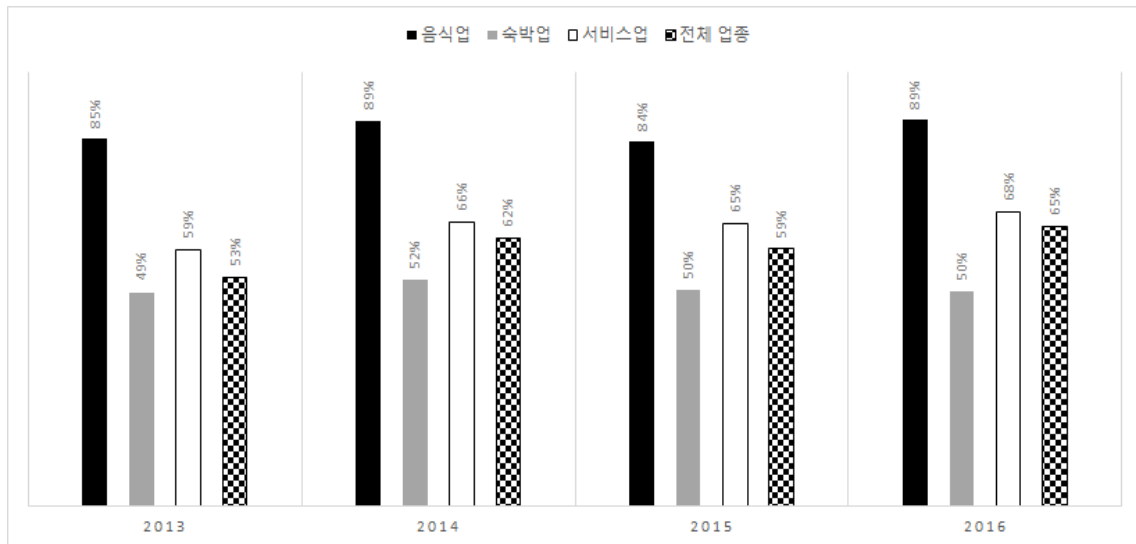
3)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제공의 타당성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08년 이후 우대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 일반적인 세액공제율은 1.3%이나,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2배 높은 2.6%를 적용받음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을 타 업종과 비교한 결과, 음식업은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나 숙박업은 타 업종보다 낮음
 - 2016년 기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은 89%로 간이과세자 전체 평균 65%와 서비스업 평균 68%보다 2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은 50%로 간이과세자 전체 평균 및 서비스업 평균보다 낮았음

[그림 V-1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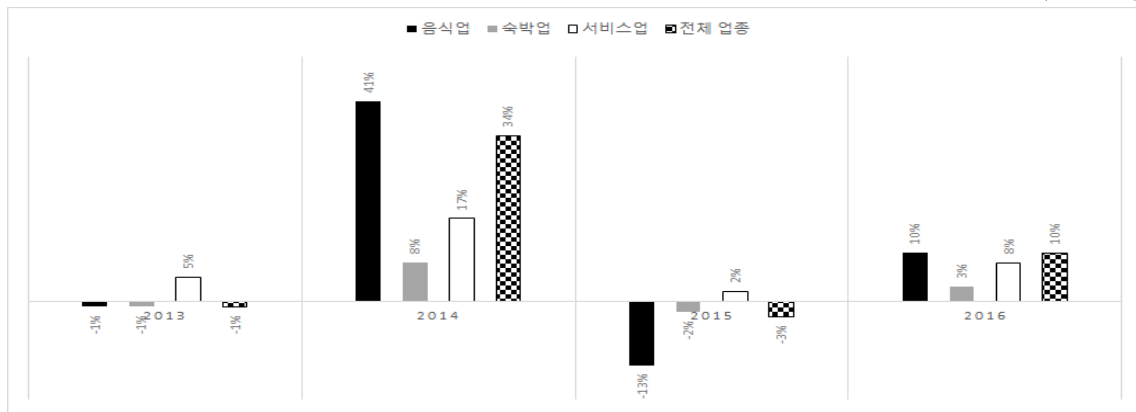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을 타 업종과 비교한 결과, 숙박업은 타 업종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음식업은 전체 산업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은 10%로 전체 산업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고, 서비스업 평균(8%)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은 3%로 전체 산업 평균 및 서비스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3]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

(단위: %)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이 타 업종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활성화 정책의 여파를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업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 및 매출증가율이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정책적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다. 정부지원 형태의 적절성: 조세지원 vs. 재정지원

-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찾기 어려움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정책목표를 지닌 조세지원제도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었으나, 2010년 이후 폐지

Ⅵ. 효과성 평가



VI. 효과성 평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숫자는 2016년 기준 1996년 대비 각각 301%와 93% 증가함
 -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숫자는 1996년 132만명에서 2016년에는 530만명으로 4배 증가함
 -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숫자는 1996년 277만명에서 2016년에는 533만명으로 약 2배 증가함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인 2006년에, 부가가치세 납세인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에 16.1%,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인 2006년에 19.18% 증가함
 - 부가가치세 납세인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에 1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18년간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평균 증가율 4.0%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표 VI-1>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납세인원

(단위: 천명, %)

연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원 ¹⁾	전년 대비 증감률	인원 ²⁾	전년 대비 증감률
1999	1,322	9.0	2,767	4.1
2000	1,535	16.1	3,112	12.5
2001	1,741	13.4	3,388	8.9
2002	1,942	11.5	3,618	6.8
2003	2,031	4.6	3,636	0.5
2004	2,133	5.0	3,570	-1.8
2005	2,195	2.9	3,723	4.3
2006	2,616	19.2	3,841	3.2
2007	2,900	10.9	4,146	7.9
2008	3,393	17.0	4,412	6.4
2009	3,336	-1.7	4,605	4.4
2010	3,529	5.8	4,703	2.1
2011	3,703	4.9	4,798	2.0
2012	3,903	5.4	4,793	-0.1
2013	4,106	5.2	4,988	4.1
2014	4,589	11.8	4,970	-0.4
2015	4,965	8.2	5,132	3.3
2016	5,296	6.7	5,331	3.9
평균		8.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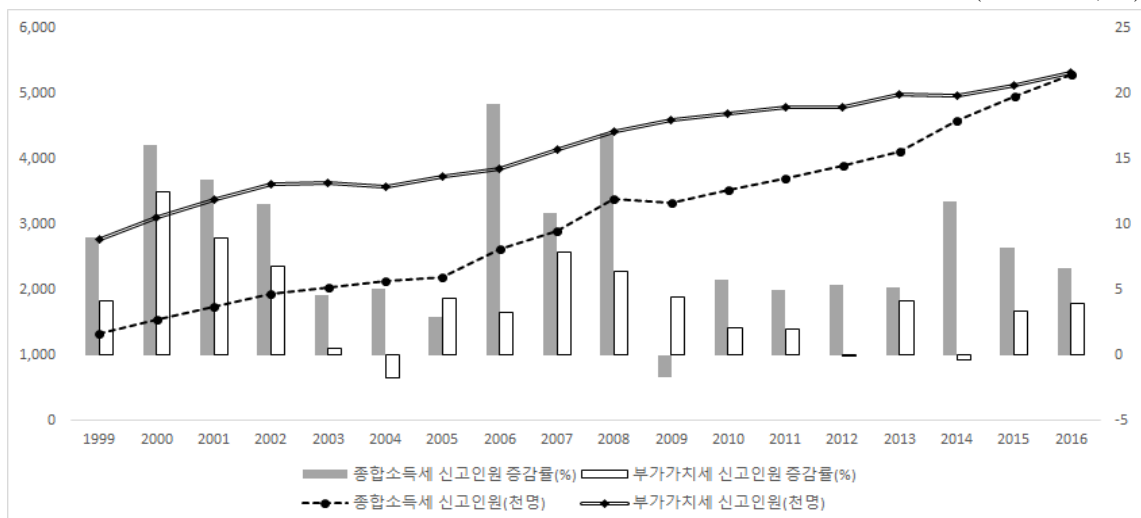
주: 1. 해당 연도에 귀속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2. 해당 연도 제2기 확정신고자 수로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신고인원 수의 합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1]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납세인원

(단위: 천명, %)



주: 1. 해당 연도에 귀속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2. 해당 연도 제2기 확정신고자 수로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신고인원 수의 합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16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수는 1999년 대비 549%가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세수는 1999년 대비 320% 증가함
 - 종합소득세 세수는 1999년 3조 3천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21조 5천억원으로 6.5배 증가함
 - 부가가치세 세수는 1999년 4조 2천억원이었으나, 2016년 17조 7천억원으로 4.2배 증가함

- 개인사업자 세수실적 증가는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과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인 2006년, 2007년에 두드러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에 종합소득세 세수는 27.9%, 부가가치세 세수는 22.1% 증가함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인 2006년과 2007년에 종합소득세 세수는 전년 대비 각각 22.2%와 18.0%가 증가함

〈표 VI-2〉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십억원, %)

연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금액 ¹⁾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¹⁾	전년 대비 증감률
1999	3,314	16.0	4,216	22.8
2000	4,237	27.9	5,149	22.1
2001	4,975	17.4	5,093	-1.1
2002	4,382	-11.9	5,558	9.1
2003	5,467	24.8	6,047	8.8
2004	5,934	8.5	7,273	20.3
2005	6,365	7.3	8,288	14.0
2006	7,777	22.2	9,552	15.3
2007	9,180	18.0	10,853	13.6
2008	9,757	6.3	12,128	11.7
2009	9,593	-1.7	12,348	1.8
2010	10,697	11.5	13,680	10.8
2011	12,484	16.7	14,799	8.2
2012	13,447	7.7	15,146	2.3
2013	14,712	9.4	15,946	5.3
2014	16,937	15.1	16,480	3.3
2015	19,264	13.7	16,940	2.8
2016	21,497	11.6	17,726	4.6
평균	-	12.3	-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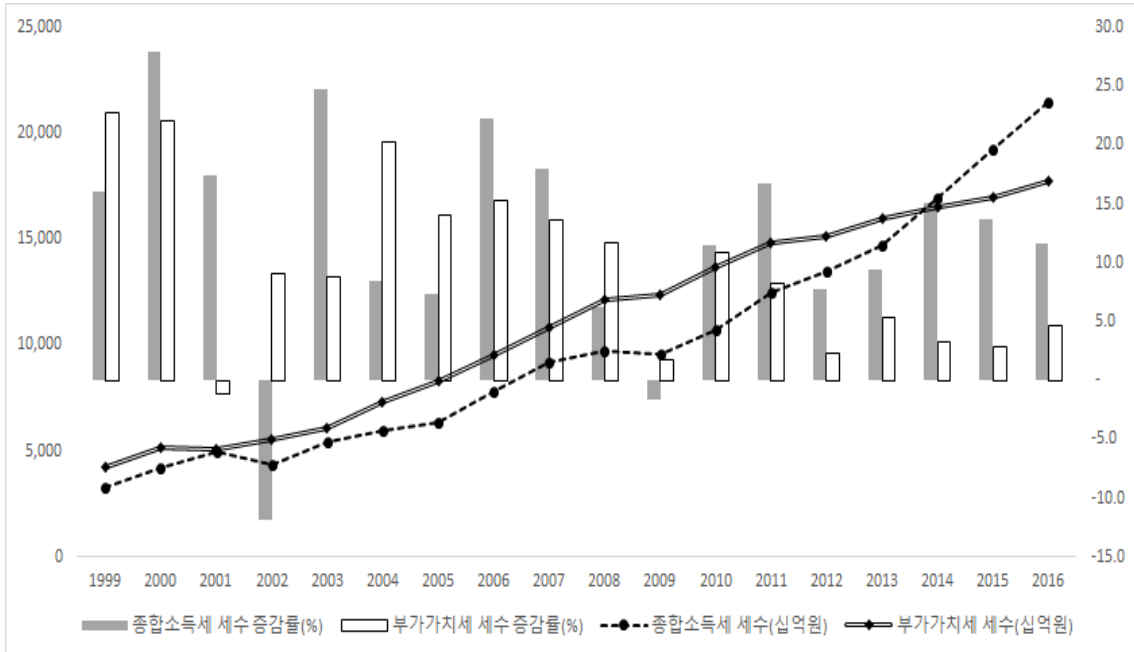
주: 1. 해당 연도에 귀속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합계임

2. 해당 연도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의 실세수 합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2] 개인사업자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단위: 십억원, %)



주: 1. 해당 연도에 귀속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합계임
 2. 해당 연도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의 실세수 합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제도를 비롯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그리고 납부세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2012년 38만명에서 2016년에는 46만명으로 19%가 증가함
 -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12년 80조원에서 2016년에는 108조원으로 36%가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12년 2조 9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4조 1천억원으로 무려 41%가 증가함

<표 VI-3>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연도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부세액	
		건수 ¹⁾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가) 법인 사업자	2012	32,536		43,416,130		1,559,287	
	2013	34,342	6	47,318,610	9	1,667,449	7
	2014	36,911	7	51,407,535	9	1,839,371	10
	2015	40,837	11	49,857,257	-3	2,114,268	15
	2016	44,367	9	59,444,151	19	2,226,989	5
(나) 일반 사업자	2012	224,959		34,632,608		1,310,085	
	2013	230,280	2	36,864,666	6	1,384,884	6
	2014	241,380	5	40,441,287	10	1,554,340	12
	2015	255,851	6	43,777,154	8	1,701,402	9
	2016	272,967	7	46,559,542	6	1,830,865	8
(다) 간이 과세자	2012	129,351		1,987,910		54,075	
	2013	138,503	7	2,082,607	5	49,896	-8
	2014	132,979	-4	2,460,803	18	60,998	22
	2015	139,423	5	2,784,355	13	71,098	17
	2016	143,296	3	2,687,355	-3	68,359	-4
(라) 전체 사업자 (=가+나+다)	2012	386,846		80,036,648		2,923,447	
	2013	403,125	4	86,265,883	8	3,102,229	6
	2014	411,270	2	94,309,625	9	3,454,709	11
	2015	436,111	6	96,418,766	2	3,886,768	13
	2016	460,630	6	108,691,048	13	4,126,21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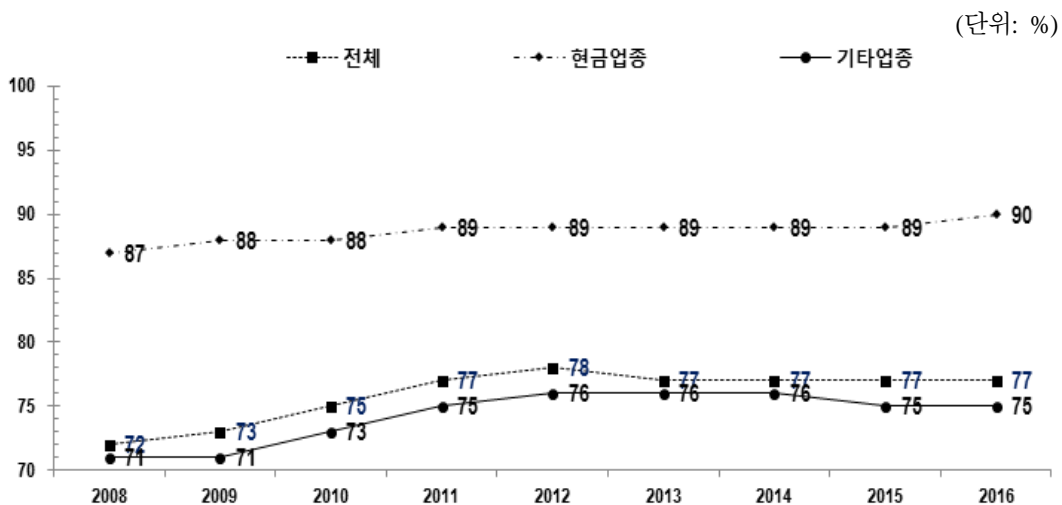
주: 1) 인원란의 합계는 해당연도 2기 확정신고 인원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에 개인사업자 납세인원 및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이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와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러한 효과는 제도 도입 초기에 극적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그 효과가 둔화됨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초기에는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폭이 20%를 넘어섰으나, 현재는 성장세가 둔화됨(2016년 기준 종합소득세 11.6%, 부가가치세 4.6%)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및 세수실적이 2014년과 201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때문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과 무관함
- 한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 정책은 거래투명성을 높여 기장신고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개인사업자 기장신고비율은 2008년 7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77%를 달성함
 - 2016년 기준 현금수입업종의 기장신고비율은 90%로 타 업종에 비해 15% 이상 높음

[그림 VI-3] 개인사업자 기장신고비율



주: 1. 사업소득명세서상 사업장별 신고유형에 따른 집계로 복수사업장을 가진 인원의 경우 중복 집계될 수 있으며, 비사업자는 제외됨
 2. 기장신고비율=(성실신고자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개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표 VI-4〉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

(단위: 건, 백만원)

귀속연도	업종	성실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건수	수입금액	건수	수입금액	건수	수입금액	건수	수입금액	건수	수입금액
2008	계	1,042,371	455,921,415	1,120,608	88,973,453	641,540	35,109,224	2,805,326	49,566,584		
	현금업종 기타업종	170,829 871,542	61,497,653 394,423,762	89,144 1,031,464	5,724,307 83,249,146	33,611 607,929	1,613,581 33,495,643	134,860 2,670,466	2,136,864 47,429,719		
2009	계	1,095,745	473,030,590	1,221,240	93,013,959	696,631	36,356,833	2,263,364	43,210,357		
	현금업종 기타업종	178,487 917,258	66,970,971 406,059,619	92,563 1,128,677	5,818,036 87,195,923	36,132 660,499	1,695,140 34,661,692	121,313 2,142,051	2,032,148 41,178,209		
2010	계	1,177,254	541,334,130	1,347,637	99,986,916	697,813	37,728,789	2,303,905	45,821,645		
	현금업종 기타업종	188,419 988,835	73,799,985 467,534,145	97,312 1,250,325	5,956,906 94,030,010	38,385 659,428	1,835,465 35,893,323	123,471 2,180,434	2,085,275 43,736,370		
2011	계	99,448	195,578,733	1,219,253	416,518,818	1,427,048	101,779,283	697,541	38,435,803	2,364,482	45,308,923
	현금업종 기타업종	20,059 79,389	30,231,140 165,347,593	180,311 1,038,942	49,622,351 366,896,467	103,299 1,323,749	6,091,986 95,687,297	134,103 661,621	2,358,507 42,950,415		
2012	계	95,732	181,568,834	1,345,551	440,985,676	1,483,265	100,235,579	742,501	39,188,146	2,398,150	40,798,465
	현금업종 기타업종	20,572 75,160	31,556,771 150,012,063	187,131 1,158,420	51,029,065 389,956,612	102,817 1,380,448	5,947,330 94,288,249	37,500 705,001	2,278,340 38,520,124		
2013	계	99,575	180,641,410	1,430,119	453,440,273	1,618,782	105,460,954	730,932	38,442,471	2,339,129	40,926,433
	현금업종 기타업종	21,414 78,161	33,994,756 146,646,654	193,357 1,236,762	52,860,917 400,579,356	108,641 1,510,141	6,324,248 99,136,705	35,302 695,630	1,742,159 36,700,312	124,411 2,214,718	2,311,347 38,615,086
2014	계	185,452	254,391,006	1,448,433	395,899,756	1,735,041	107,234,845	748,344	40,995,451	2,296,660	42,895,862
	현금업종 기타업종	41,274 144,178	47,448,844 206,942,163	184,343 1,264,090	44,948,859 350,950,897	117,058 1,617,983	6,723,439 100,511,406	38,676 709,668	1,894,803 39,100,648	119,105 2,177,555	2,419,638 40,476,224
2015	계	192,847	257,972,925	1,560,690	415,666,924	1,811,337	108,702,310	803,766	43,578,394	2,564,223	50,695,192
	현금업종 기타업종	42,778 150,069	51,852,224 206,120,701	195,830 1,364,860	47,284,616 368,382,308	124,349 1,686,988	7,058,594 101,643,717	43,219 760,547	2,182,909 41,395,486	118,259 2,445,964	2,392,790 48,302,402
2016	계	202,509	267,657,596	1,697,876	438,757,846	1,877,014	110,382,632	886,249	44,847,021	2,781,793	56,254,455
	현금업종 기타업종	45,930 156,579	58,096,056 209,561,540	206,358 1,491,518	49,680,234 389,077,612	128,406 1,748,608	7,122,156 103,260,476	47,371 838,878	2,267,186 42,579,835	117,375 2,664,418	2,287,047 53,967,407

주: 1. 사업소득명세서상 사업장별 신고유형에 따른 집계로 복수사업장을 가진 인원의 경우 중복 집계될 수 있으며, 비사업자는 제외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가장신고문화의 정착은 과표양성화와 직결되는바, 현금수입업종의 수입금액 증가율이 타 업종에 비하여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현금수입업종의 수입금액 증가율은 8%로 기타 업종의 수입금액 증가율 4%에 비하여 2배가량 높음

<표 VI-5> 현금수입업종과 기타 업종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현금업종		기타업종		현금업종		기타업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8	70,972,405	-	558,598,270	-	11,977,050	-	42,670,890	-
2009	76,516,296	8	569,095,443	2	13,185,778	10	44,867,645	5
2010	83,677,631	9	641,193,848	13	14,275,876	8	50,428,034	12
2011	90,013,371	8	707,608,188	10	15,618,238	9	57,439,272	14
2012	92,564,458	3	710,212,242	0	15,882,552	2	60,027,854	5
2013	97,233,428	5	721,678,113	2	16,932,022	7	63,354,792	6
2014	103,435,583	6	737,981,338	2	18,782,243	11	70,973,211	12
2015	110,771,132	7	765,844,613	4	20,603,974	10	79,106,013	11
2016	119,452,680	8	798,446,870	4	22,465,543	9	87,521,595	11

주: 1. 사업소득명세서상 사업장별 신고유형에 따른 집계로 복수사업장을 가진 인원의 경우 중복 집계될 수 있으며, 비사업자는 제외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나.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및 현금영수증 수취문화의 정착

1)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8년 63조원에서 2017년에는 703조원으로 11배 증가함

□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직후인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전년 대비 175%와 197%가 증가하여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표 VI-6>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십억원, %)

연도	전체 이용금액	증감률	법인 이용금액	개인 이용금액	구분		
					일반구매 이용금액	할부구매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1998	63,556		-	-	-	-	-
1999	50,007	-21	-	-	-	-	-
2000	137,749	175	-	-	-	-	-
2001	409,185	197	-	-	-	-	-
2002	619,158	51	109,807	509,351	79,051	72,835	357,465
2003	481,454	-22	100,217	381,237	91,858	49,854	239,526
2004	352,506	-27	83,342	269,164	102,032	40,558	126,574
2005	360,699	2	96,871	263,828	114,362	44,244	105,223
2006	370,959	3	103,173	267,785	124,848	50,988	91,949
2007	403,632	9	116,810	286,822	142,682	58,155	85,985
2008	456,421	13	137,352	319,069	164,199	65,888	88,982
2009	466,358	2	132,142	334,216	185,681	66,728	81,807
2010	493,736	6	124,033	369,703	211,346	76,715	81,642
2011	540,794	10	130,223	410,571	241,748	86,010	82,813
2012	561,858	4	126,274	435,584	268,360	91,310	75,913
2013	570,643	2	128,138	442,505	289,143	83,697	69,665
2014	581,964	2	131,495	450,469	297,790	87,407	65,273
2015	614,241	6	146,861	467,380	310,713	94,344	62,323
2016	675,762	10	172,230	503,532	340,974	100,682	61,876
2017	702,970	4	156,797	546,173	376,726	108,808	60,639

주: ‘-’ 는 통계자료 미생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신용대란이 발생한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임
 - 2009년 이후 10% 미만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성장률은 4%임
-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민간소비지출에서 개인신용카드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6%에서 2017년에는 58%로 증가함
 - 민간소비지출에서 개인신용카드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처음으로 50%를 돌파하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VI-7> 민간소비지출 대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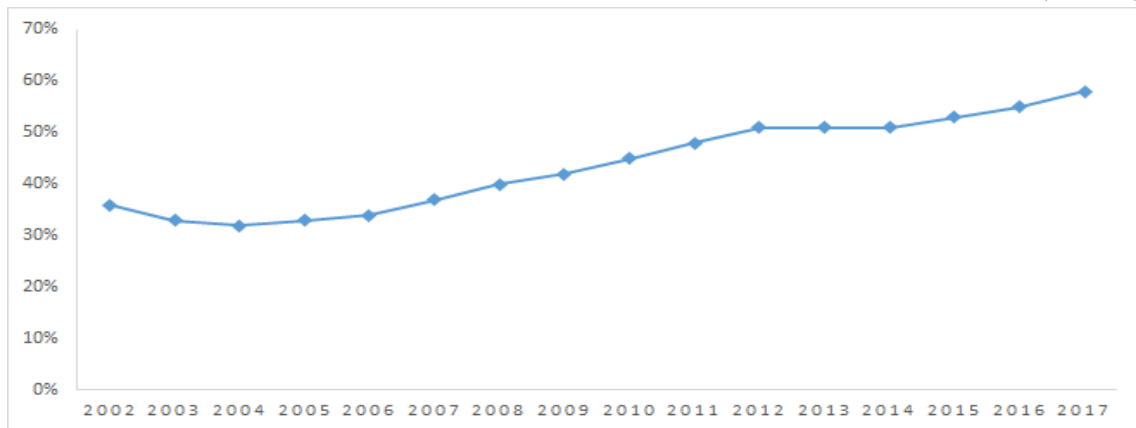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연도	민간소비지출 ¹⁾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민간소비지출 대비 비중
2002	423,157	151,886	36
2003	434,864	141,711	33
2004	449,982	142,590	32
2005	480,170	158,605	33
2006	509,907	175,836	34
2007	546,429	200,837	37
2008	579,053	230,087	40
2009	594,883	252,409	42
2010	636,713	288,061	45
2011	679,142	327,758	48
2012	707,614	359,671	51
2013	727,800	372,840	51
2014	748,201	385,196	51
2015	771,239	405,057	53
2016	798,729	441,656	55
2017	832,235	485,534	58

주: 1) 국민계정상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VI-4] 민간소비지출 대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

(단위: %)



- 체크카드 사용실적은 2004년 2조 6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155조원으로 무려 59배가 증가함
 - 특히, 체크카드에 대해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기 시작한 2010년에 체크카드 사용액이 36조원에서 52조원으로 1년 사이 42% 증가함

- 체크카드 사용액은 2011년까지 매년 30% 이상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2012년 이후 성장률이 둔화됨
 - 소득공제혜택 확대를 통한 체크카드 이용 증대 효과가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판단됨

〈표 VI-8〉 연도별 체크카드 사용실적

(단위: 천매, 천건, 십억원, %, 천개)

연도	카드발급매수	이용건수	이용금액	증감률	가맹점 수
2004	11,782	77,632	2,637		17,499
2005	19,620	195,516	7,774	194.8	19,103
2006	26,799	328,896	12,330	58.6	20,807
2007	39,346	510,877	18,855	52.9	14,732
2008	54,457	742,592	26,802	42.1	15,436
2009	64,230	1,049,027	36,462	36.0	16,466
2010	77,130	1,418,176	51,840	42.2	18,084
2011	90,264	1,908,921	69,824	34.7	18,275
2012	102,233	2,544,710	84,793	21.4	17,725
2013	103,398	3,442,773	96,105	13.3	17,376
2014	108,928	4,400,236	113,805	18.4	17,747
2015	115,360	5,400,849	134,214	17.9	-
2016	120,067	6,392,948	155,055	15.5	-

주: ‘-’ 는 통계자료 미생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직불카드 사용액은 1996년 340억원에서 시작하여 2005년에는 1,740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16년 사용액은 50억원에 불과함
 - 체크카드 역시 직불카드의 일종이나, 직불카드는 가맹점이 적고, 사용 가능 시간에 제약이 있어 체크카드가 직불카드에 비해 선호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VI-9> 연도별 직불카드 사용실적

(단위: 천매, 천건, 십억원, 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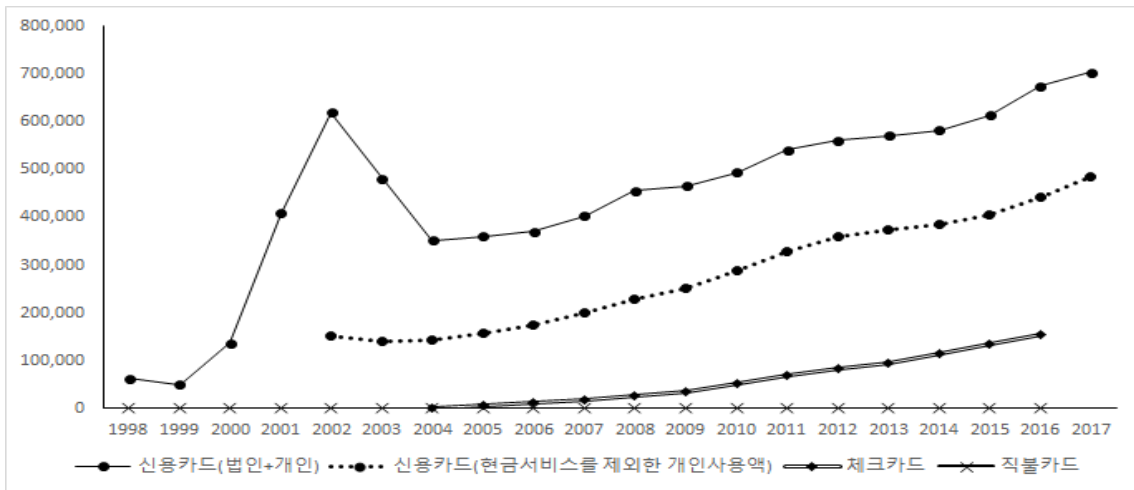
연도	카드발급매수	이용건수	이용금액	가맹점수
1996	12,290	660	34	122
1997	24,423	1,119	57	181
1998	33,636	1,444	65	183
1999	39,315	1,892	98	198
2000	53,758	1,786	106	246
2001	63,078	1,622	98	284
2002	65,362	1,171	76	282
2003	65,818	904	62	281
2004	63,173	1,106	70	303
2005	62,030	3,533	174	296
2006	63,432	2,466	113	280
2007	62,608	1,834	79	252
2008	64,319	1,335	57	252
2009	60,114	1,027	50	251
2010	51,403	950	39	249
2011	51,204	792	34	248
2012	46,144	581	23	247
2013	45,884	407	16	211
2014	45,123	286	11	188
2015	43,869	194	8	**
2016	43,952	134	5	**

주: ‘-’ 는 통계자료 미생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사용실적을 카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체크카드임
 - 직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그림 VI-5] 연도별 신용·체크·직불카드 이용실적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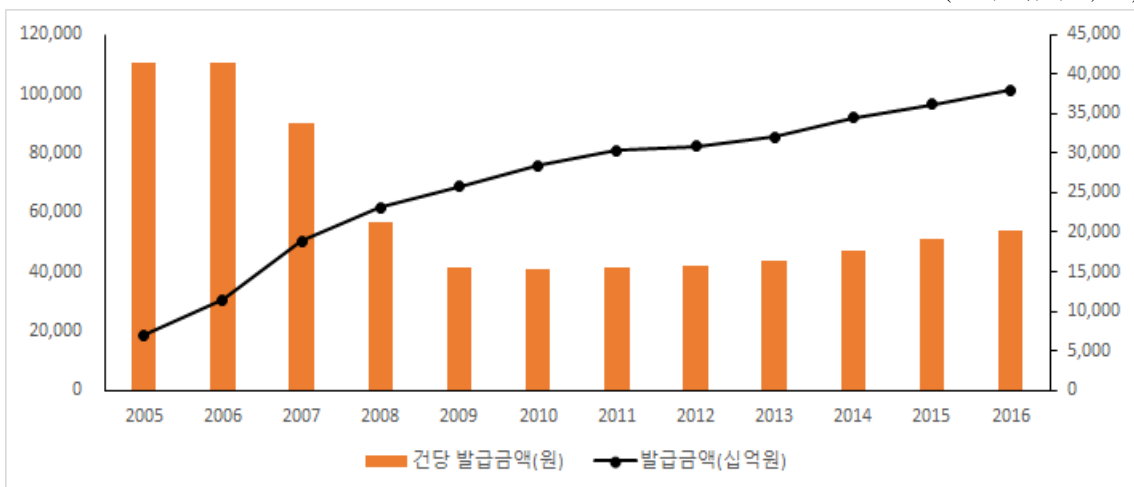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현금영수증 발급문화 정착

-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05년 18조원에서 2016년에는 101조원으로 5.45배 증가함
-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6년과 2007년에 6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1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한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VI-6]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단위: 십억원,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VI-10>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단위: 십억원, %)

연도	발급 금액	증감률							
			소매업	병의원	학원	전문직	음식· 숙박업	서비 스업	기타
2005	18,560		8,168	-	-	-	1,561	3,261	5,569
2006	30,627	65.0	13,608	-	-	-	3,664	5,436	7,919
2007	50,256	64.1	20,150	-	-	-	5,290	9,904	14,912
2008	61,556	22.5	25,345	-	-	-	6,644	13,630	15,938
2009	68,698	11.6	28,376	3,480	1,679	2,029	7,833	2,878	22,423
2010	75,957	10.6	30,082	5,195	1,674	2,153	7,999	3,861	24,992
2011	80,890	6.5	32,360	4,948	1,759	2,510	8,314	4,968	26,031
2012	82,389	1.9	32,457	5,096	1,923	2,598	8,253	5,073	26,990
2013	85,515	3.8	32,220	5,616	2,002	2,629	8,008	5,450	29,591
2014	91,947	7.5	32,896	6,184	2,157	2,716	8,474	6,178	33,342
2015	96,546	5.0	34,085	6,315	2,448	3,207	8,426	8,432	33,633
2016	101,258	4.9	34,936	6,539	2,650	3,888	8,311	9,469	35,46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소비자 상대 업종의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은 2009년 64조원에서 2017년에는 98조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4년 이후 소득과약률이 낮은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11> 소비자 상대 업종의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단위: 십억원, %)

연도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합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9	43,075		16,537		1,021		3,949		64,582	
2010	47,178	10	17,617	7	975	-5	4,947	25	70,717	9
2011	50,284	7	18,752	6	899	-8	4,780	-3	74,715	6
2012	51,977	3	18,706	0	688	-23	4,390	-8	75,761	1
2013	54,609	5	18,639	0	680	-1	4,485	2	78,413	4
2014	57,865	6	20,255	9	1,223	80	4,709	5	84,052	7
2015	59,125	2	22,546	11	1,389	14	4,932	5	87,992	5
2016	61,635	4	23,849	6	1,475	6	5,048	2	92,007	5
2017	65,684	7	26,284	10	1,794	22	5,081	1	98,843	7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2016년 기준 약 22조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 대비 약 5%에 해당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2005년 7조 4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22조원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함

-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51.5%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자 비율은 2005년 3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50%를 돌파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1인당 경감세액은 2016년 기준 약 20만원임
 - 소득공제신청자 1인당 경감세액은 2009년이 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이 16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 1인당 소득공제신청금액은 늘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와 공제한도 축소로 실제 공제받은 세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있고 동 제도로 인한 경감세액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4.22%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에 상당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근로소득자가 경감받은 세금은 총 1조 8천억원으로 이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4.22%, 결정세액의 5.98% 수준임

〈표 VI-12〉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효과

연도	연말정산 신고자 인원수 (명) ¹⁾	근로 소득금액 (억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청금액 ²⁾			1인당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청금액		경감세액 ²⁾			1인당 경감세액	
			인원 (명)	금액 (억원)	근로 소득금액 대비 (%)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고자 기준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자기준 (원)	금액 (억원)	신출세액 대비 (%)	결정세액 대비 (%)	연말정산신 고자 기준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자기준 (원)
2005	11,868,591	1,597,608	4,410,349	74,223	4.65	625,373	1,682,928	9,812	8.35	10.03	82,672	222,477
2006	12,567,609	1,785,876	5,055,503	78,948	4.42	628,186	1,561,625	10,465	7.61	9.05	83,270	207,002
2007	13,292,795	2,013,208	5,704,731	94,010	4.67	707,226	1,647,932	12,506	7.54	8.86	94,081	219,222
2008	13,957,784	2,212,269	6,072,779	139,527	6.31	999,635	2,297,579	15,171	9.08	10.70	108,692	249,820
2009	14,250,112	2,398,663	6,253,955	138,398	5.77	971,205	2,212,964	18,934	12.41	14.73	132,869	302,752
2010	15,142,639	2,666,085	6,305,853	115,632	4.34	763,616	1,833,718	18,405	10.06	11.81	121,544	291,872
2011	15,480,508	2,945,681	6,739,692	128,280	4.35	828,657	1,903,356	11,729	5.65	6.59	75,766	174,029
2012	15,716,148	3,196,993	7,246,023	148,870	4.66	947,241	2,054,503	11,697	5.04	5.86	74,427	161,426
2013	16,295,073	3,437,230	7,645,693	166,428	4.84	1,021,337	2,176,750	13,721	5.31	6.16	84,203	179,461
2014	16,629,769	3,861,395	8,252,634	191,941	4.97	1,154,202	2,325,816	15,708	4.25	6.18	94,457	190,339
2015	17,263,158	4,130,302	8,564,504	206,474	5.00	1,196,040	2,410,814	18,163	4.49	6.43	105,212	212,073
2016	17,668,285	4,399,935	9,102,086	220,112	5.00	1,245,804	2,418,261	18,444	4.22	5.98	104,390	202,635

주: 1)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신고인원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액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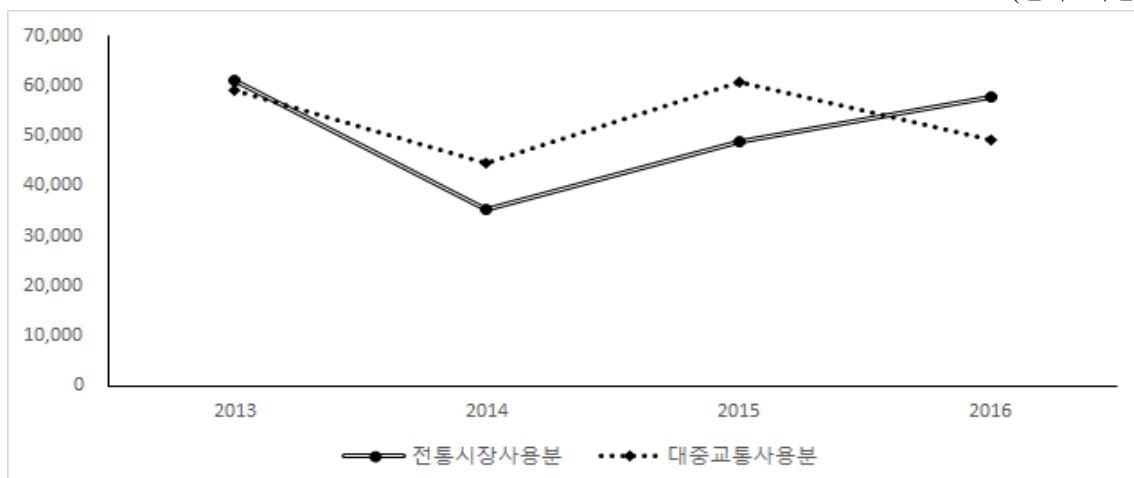
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증가

-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의 촉진, 그리고 국민문화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하여 일반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하여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뿐 아니라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해주고 있음
 - 전통시장 사용분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 분부터 우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대중교통 사용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우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도서·공연 사용분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우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은 201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금액은 2013년 6조 1,140억원에서 2014년에는 3조 5,181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6년 5조 7,906억원을 기록함

[그림 VI-7]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금액

(단위: 억원)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금액은 2013년 5조 8,966억원에서 2014년에는 4조 4,669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6조 760억원까지 상승하였으나, 2016년 다시 4조 9,285억원으로 감소함
-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3년 최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전년보다 478만원이 감소한 4,502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4,271만원까지 감소함
 - 201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4,988만원을 기록함
- 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는 2006년 2,587명에서 2016년에는 4,486명으로 1.7배 증가함

<표 VI-13> 전통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 및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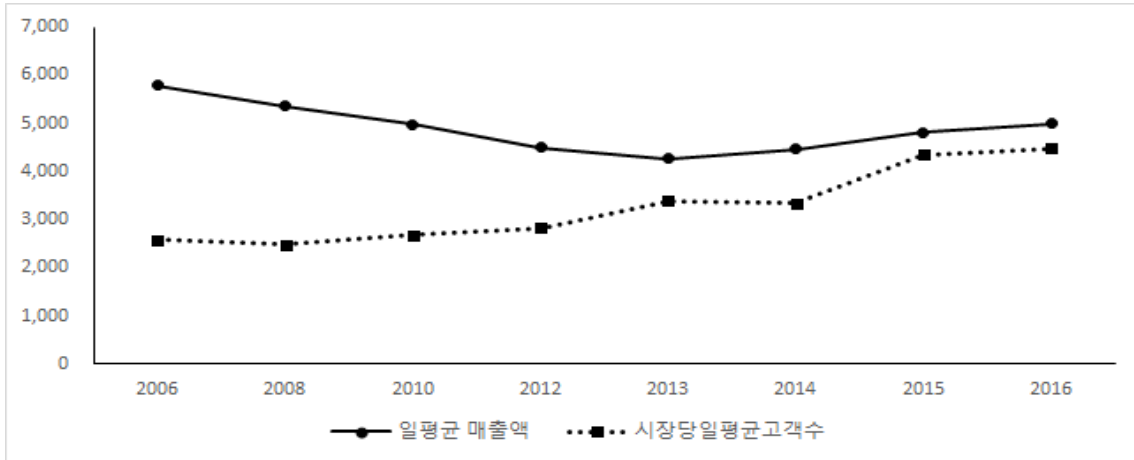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일평균 매출액	시장당일 평균 고객 수
2006	5,787	2,587
2008	5,358	2,486
2010	4,980	2,684
2012	4,502	2,824
2013	4,271	3,389
2014	4,472	3,338
2015	4,812	4,349
2016	4,988	4,486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VI-8] 전통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 및 매출액

(단위: 만원, 명)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각 연도

- 전통시장의 신용카드단말기 보유율은 2006년 37.1%에서 2016년 63.3%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 정체상태에 있음

<표 VI-14> 전통시장 신용카드단말기 보급률

(단위: %)

연도	신용카드단말기	POS기기
2006	37.1	2.5
2008	46.4	1.4
2010	50.2	2.5
2012	57.3	6.5
2013	60.4	21.1
2014	60.8	7.1
2015	61.8	5.8
2016	63.3	7.5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각 연도

- 전통시장의 신용카드단말기 보급률이 60%를 넘어섰으나, 여전히 전체 거래의 90% 이상이 현금결제이고, 카드 사용비중은 10% 미만임
 - 한국은행의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현금 이용비중이 가장 높은 구매 장소로 현금결제비율이 무려 90.4%에 달함
 - 반면 신용카드 사용비중은 6.7%, 체크·직불카드 사용비중은 2.6%에 불과함

<표 VI-15> 구매장소별 지급수단 이용비중(건수기준)

(단위: %)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직불 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모바일 카드
편의점	55.8	0.1	29.5	13.2	0.0	1.3
대형마트/백화점	16.5	0.0	67.9	14.4	0.0	1.2
전통시장	90.4	0.0	6.7	2.6	0.0	0.2
소매점/매장/슈퍼마켓	56.1	0.0	32.3	11.1	0.0	0.6
식당/술집	23.9	0.0	61.1	13.8	0.1	1.2
커피숍	34.3	0.0	48.9	15.1	0.0	1.6
병원/약국	36.4	0.0	50.6	11.8	0.0	1.1
교통수단	28.6	0.0	54.9	13.0	1.8	1.6
학원	17.9	4.6	62.4	14.6	0.0	0.5
문화공간	19.7	0.0	63.4	15.5	0.0	1.3
주유소	7.2	0.0	82.1	9.5	0.0	1.1

자료: 한국은행,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2018

- 2013년 이후 전통시장 매출과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이고, 신용카드단말기 보급률이 2013년 이후 정체상태에 있어 전통시장 매출의 증가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인지 여부가 불명확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47.9%가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공제혜택이 전통시장 이용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응답함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통시장의 대다수 현금결제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수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 대중교통 평균 목적통행량은 2014년 소폭 증가한 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평균 이용인원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하여 추가공제혜택이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별다른 효과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대중교통 평일 평균 이용인원은 2014년 1,296만명에서 2017년에는 1,151만명으로 감소함

<표 VI-16> 대중교통 평균 이용인원 및 목적통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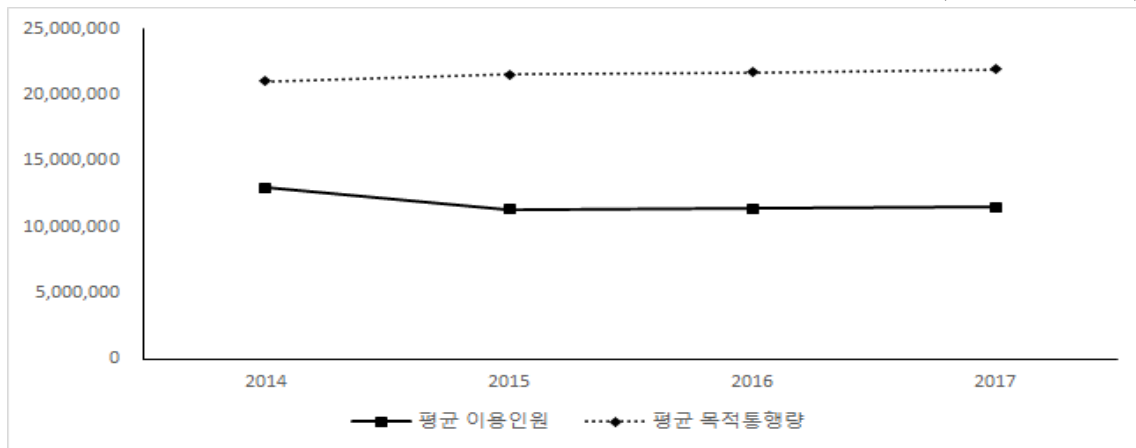
(단위: 명, 통행/일)

	2014	2015	2016	2017
평균 이용인원(평일)	12,966,553	11,324,822	11,407,143	11,518,917
평균 이용인원(주말)	9,300,717	8,552,412	8,557,459	8,690,075
평균 목적통행량(평일)	21,041,853	21,571,902	21,740,903	21,927,672
평균 목적통행량(주말)	14,654,093	15,742,409	15,681,651	15,840,670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 대중교통 DB」

[그림 VI-9] 대중교통 평균 이용인원 및 목적통행량(평일)

(단위: 명, 통행/일)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 대중교통 DB」

마. 지급수단 이용행태의 변화

1) 분석개요

- 정부는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 대신 직불·체크카드의 사용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낮은 공제율을,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 확대가 근로소득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미친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에 처음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은 2010년으로 이때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집계하기 시작함
 -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자료를 이용 가능한 기간은 2010년부터이나, 실증분석에는 당기뿐 아니라 전기의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기간은 그 다음 해인 2011년부터 시작함
-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한 910만명의 근로소득자 모집단과 회귀분석에 사용한 20만명의 근로소득자 표본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가 일부 구간에서 차이를 나타냄
- 모집단과 비교했을 때 총급여 1천 5백만원~3천만원 구간의 비중은 낮고, 총급여 5천만~2억원 구간의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I-17>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 비교

(단위: 개, %, %p)

총급여액	모집단 ¹⁾		표본 ²⁾		차이 (A)-(B)
	개수	비중(A)	개수	비중(B)	
~1천	130,242	1.4	234	0.1	1.3
1~1.5천	335,558	3.7	923	0.5	3.2
1.5~2천	900,034	9.9	3,560	1.8	8.1
2~3천	1,977,062	21.7	17,316	8.6	13.1
3~4천	1,588,837	17.5	26,980	13.5	4.0
4~4.5천	650,955	7.2	16,302	8.1	-1.0
4.5~5천	557,309	6.1	16,571	8.3	-2.1
5~6천	866,313	9.5	30,159	15.1	-5.5
6~8천	1,159,437	12.7	47,725	23.8	-11.1
8천~1억	511,913	5.6	22,193	11.1	-5.5
1~2억	406,615	4.5	17,599	8.8	-4.3
2~3억	14,336	0.2	595	0.3	-0.1
3억~	3,475	0.0	144	0.1	0.0
합계	9,102,086	100.0	200,301	100.1	

주: 1) 2016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한 전체 근로소득자(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2011년~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 표본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본 연구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공제율 격차 확대가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봄
 - 첫째, 공제율 격차가 확대됐을 때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증가하는지 살펴봄
 - 둘째, 공제율 격차가 1%p 확대됐을 때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몇 % 증가·감소하는지 살펴봄

2)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격차 확대가 직불·체크 사용비중에 미친 효과 분석

-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 확대가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모형은 식 (1)과 같음
 - 식 (1)의 종속변수는 UW 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직불·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에서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직불·체크카드 사용액과 동일한 우대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UW 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함
 - UW_a 는 분모에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는 4가지 항목(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모두를 포함함
 - UW_b 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는 4가지 항목 중 그 비중이 미미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제외하고, 직불·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만을 포함함
 - UW_c 와 UW_d 는 가장 축소된 형태로 분모에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만을 집계함

$$UW_t = \alpha_0 + \alpha_1 DDR_t + \alpha_2 \ln TW_t + \alpha_3 UW_{t-1} + \alpha_4 INT_t + \alpha_5 EXTRA_t + \epsilon \quad (1)$$

종속변수:

- UW_{a_t} =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직불·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직불·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신용카드 사용액);
- UW_{b_t} = (직불·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직불·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신용카드 사용액);
- UW_{c_t} =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직불·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신용카드 사용액);

$UW_{d,t}$ = 현금영수증 발급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직불·체크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발급액+신용카드 사용액);

관심변수:

DDR_t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신용카드 공제율);

통제변수:

UW_{t-1} = 전년도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

$\ln TW_t$ = 당해 연도 총급여의 자연로그값;

INT_t = 한국은행 기준금리;

$EXTRA_t$ = 해당 연도에 직불·체크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공제혜택이 주어진 경우 1, 아니면 0.

□ 식 (1)에서 관심변수는 DDR 로 직불·체크카드 공제율과 신용카드 공제율의 격차를 나타냄

○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아진다면 DDR 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통제변수는 직불·체크카드 등 사용비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로 구성함

○ 개인별로 선호하는 지급수단이 다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기와 유사한 선호패턴이 유지될 것이므로 전기의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UW_{t-1})을 통제변수로 사용함

○ 소득($\ln TW$)이 많을수록 높은 신용도와 경제적 여유로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자율(INT)이 높으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직불·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추가공제 혜택을 제공한 2014년과 2015년 ($EXTRA=1$)은 직불·체크카드의 상대적 이점이 두드러진 해이므로 다른 기간에 비해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됨

□ <표 VI-18>은 연도별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우대공제율 적용항목의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액 비중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우대공제율 적용항목(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9.2%에서 2016년에는 37.9%로 증가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1년 11.5%에서 2016년에는 20.3%로 증가함
-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7.3%에서 2016년에는 13.9%로 감소함
- 소액결제에 카드사용이 늘어나면서 현금결제비중이 감소한 것이 현금영수증 발급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표 VI-18〉 연도별 직불카드 등 사용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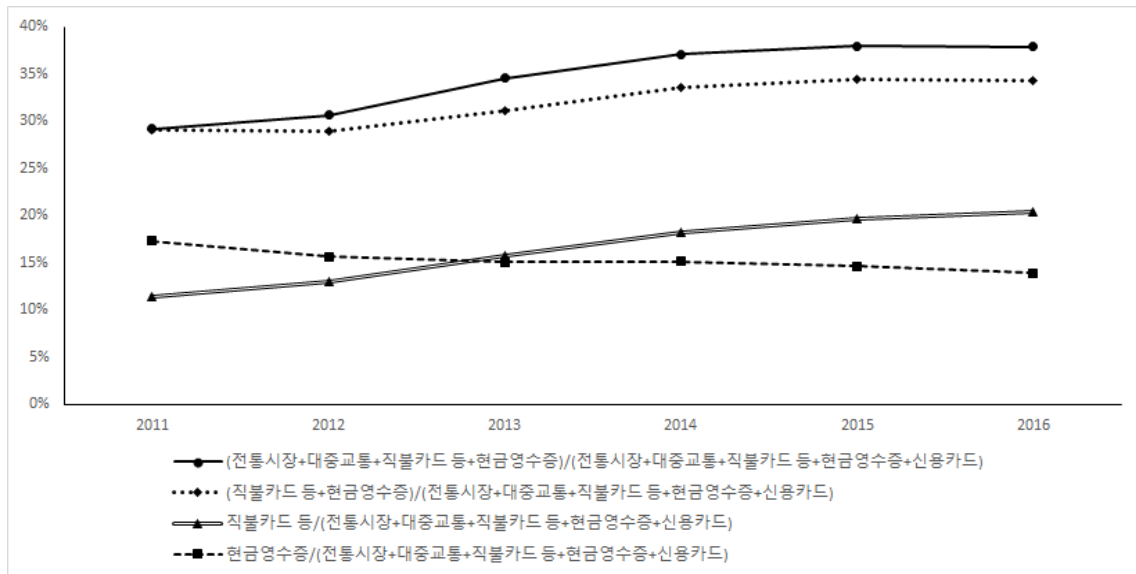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각 항목들의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29.2	30.7	34.6	37.1	38	37.9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29.2	28.9	31.1	33.6	34.5	34.4
직불·체크카드	11.5	13	15.8	18.2	19.7	20.3
현금영수증	17.3	15.7	15.1	15.2	14.6	13.9

주: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을 계산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그림 VI-10〕 연도별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

(단위: %)



주: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을 계산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표 VI-19>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종속변수= UW_a _t	종속변수= UW_b _t	종속변수= UW_c _t	종속변수= UW_d _t
<i>DDR_t</i>	0.67*** (97.66)	0.47*** (68.97)	0.36*** (66.93)	0.07*** (14.73)
<i>lnTW_t</i>	-0.00*** (-11.30)	-0.00*** (-3.96)	0.00 (1.29)	-0.00*** (-3.87)
<i>UW_a_{t-1}</i>	0.77*** (1357.17)			
<i>UW_b_{t-1}</i>		0.78*** (1373.30)		
<i>UW_c_{t-1}</i>			0.79*** (1355.61)	
<i>UW_d_{t-1}</i>				0.63*** (977.13)
<i>INT_t</i>	0.02*** (37.45)	0.03*** (40.64)	0.01*** (26.03)	0.01*** (31.48)
<i>EXTRA_t</i>	0.01*** (10.94)	0.02*** (36.96)	0.01*** (19.41)	0.01*** (29.01)
<i>Intercept</i>	0.01 (1.44)	-0.03*** (-4.93)	-0.04*** (-8.04)	0.02*** (5.33)
<i>N</i>	1,201,806	1,201,806	1,201,806	1,201,806
<i>Adj. R²</i>	0.62	0.62	0.62	0.45
<i>F-value</i>	385358.27***	386703.09***	389384.56***	193426.59***

주: 1.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2. 모형 1의 종속변수는 UW_a로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나눈 비율임

3. 모형 2의 종속변수는 UW_b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나눈 비율임

4. 모형 3의 종속변수는 UW_c로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나눈 비율임

5. 모형 4의 종속변수는 UW_d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나눈 비율임

6.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7.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변수에 대해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상하위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윈저라이징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이용

□ <표 VI-19>는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직불·체크 사용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로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 1에서 *DDR*의 회귀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²의 값을 나타냈다는 것은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우대공제율 적용 항목(즉,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함
 - 모형 2에서 *DDR*의 회귀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²의 값을 나타냈다는 것은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함
 - 모형 3에서 *DDR*의 회귀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²의 값을 나타냈다는 것은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함
 - 모형 4에서 *DDR*의 회귀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²의 값을 나타냈다는 것은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함
-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기의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UW_t-1)은 당기의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UW_t)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급여수준($\ln TW$)이 낮고, 기준금리(INT)가 높으며,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추가공제 혜택을 제공한 기간($EXTRA$)에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사전적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귀모형이 보편적 상식과 일치함을 시사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결정계수값은 0.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관심변수로 현금영수증 사용액 비중(UW_d)을 사용한 모형 4의 수정 결정계수값이 0.45로 다른 모형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한편 총급여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 표본을 제외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분석결과가 강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VI-20>은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6개의 총급여 구간별로 나누어 재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임

- 분석결과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커질 때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전 소득구간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으로 밝혀짐

〈표 VI-20〉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총급여 2천 이하	총급여 2천-4천	총급여 4천-6천	총급여 6천-8천	총급여 8천-1억	총급여 1억-3억
UW_{a_t}	+***	+***	+***	+***	+***	+***
UW_{b_t}	+***	+***	+***	+***	+***	+***
UW_{c_t}	+***	+***	+***	+***	+***	+***
UW_{d_t}	+	+***	+***	+***	+***	+***
표본수	53,301	358,024	386,452	229,595	96,311	77,281

- 주: 1.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2. 총급여 구간별로 6개의 하부표본(subsample)으로 나눈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관심변수인 DDR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요약하여 보고한 결과임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4.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변수에 대해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상하위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윈저라이징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함
 5. UW_a =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 UW_b =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UW_c =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UW_d = 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이용

4)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격차 확대가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 사용액에 미친 효과 분석

- 공제율 격차가 1%p 늘어날 때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몇 % 증가·감소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음
 - 식 (2)의 종속변수는 우대공제율 적용항목의 사용액 합계(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PREF$ 로 공제율 격차가 1%p 늘어날 때 우대공제율 적용항목의 사용액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임

- 식 (3)의 종속변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자연로그값인 UCC 로 공제율 격차가 1%p 늘어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임
- 식 (4)의 종속변수는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의 자연로그값인 UDC 로 공제율 격차가 1%p 늘어날 때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임
- 식 (5)의 종속변수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자연로그값인 UCR 로 공제율 격차가 1%p 늘어날 때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임
- 식 (6)의 종속변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자연로그값인 UT 로 공제율 격차가 1%p 늘어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임

$$PREF_t = \alpha_0 + \alpha_1 DDR_t + \alpha_2 \ln TW_t + \alpha_3 PREF_{t-1} + \alpha_4 int_t + \alpha_5 EXTRA_t + \epsilon \quad (2)$$

$$UCC_t = \alpha_0 + \alpha_1 DDR_t + \alpha_2 \ln TW_t + \alpha_3 UCC_{t-1} + \alpha_4 INT_t + \alpha_5 EXTRA_t + \epsilon \quad (3)$$

$$UDC_t = \alpha_0 + \alpha_1 DDR_t + \alpha_2 \ln TW_t + \alpha_3 UDC_{t-1} + \alpha_4 INT_t + \alpha_5 EXTRA_t + \epsilon \quad (4)$$

$$UCR_t = \alpha_0 + \alpha_1 DDR_t + \alpha_2 \ln TW_t + \alpha_3 UCR_{t-1} + \alpha_4 INT_t + \alpha_5 EXTRA_t + \epsilon \quad (5)$$

$$UT_t = \alpha_0 + \alpha_1 DDR_t + \alpha_2 \ln TW_t + \alpha_3 UT_{t-1} + \alpha_4 INT_t + \alpha_5 EXTRA_t + \epsilon \quad (6)$$

종속변수:

$PREF_t$ = 우대공제율 적용항목 사용액의 합계(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의 자연로그값;

UCC_t = 신용카드 사용액의 자연로그값;

UDC_t =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의 자연로그값;

UCR_t =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자연로그값;

UT_t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의 자연로그값;

관심변수:

DDR_t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신용카드 공제율);

통제변수:

$PREF_{t-1}$ = 전기 우대공제율 적용항목 사용액의 합계의 자연로그 값;

UCC_{t-1} = 전기 신용카드 사용액의 자연로그값;

UDC_{t-1} = 전기 직불/체크 사용액의 자연로그값;

UCR_{t-1} = 전기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자연로그값;

UT_{t-1} = 전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자연로그값;

$\ln TW_t$ = 당해 연도 총급여의 자연로그값;

INT_t = 한국은행 기준금리;

$EXTRA_t$ = 해당 연도에 직불·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 추가공제혜택이 주어진 경우 1, 아니면 0.

- 통제변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로 구성함
 - 개인별로 선호하는 지급수단이 다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기와 유사한 선호패턴이 유지될 것이므로 전기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PREF_{t-1}$, UCC_{t-1} , UDC_{t-1} , UCR_{t-1} , UT_{t-1})을 통제변수로 추가함

- <표 VI-21>은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격차가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 공제율 격차의 확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나(모형 2), 직불·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늘리는(모형 3, 4)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제율 격차가 확대되면 우대공제율 적용대상 항목의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모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모형 5)
 - 공제율 격차의 확대는 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기 때문에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1%p 확대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3.01% 감소하고,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각각 7.38%와 0.72%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1%p 확대되면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증가하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이 0.69%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표 VI-21〉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종속변수= $PREF_t$	종속변수= UCC_t	종속변수= UDC_t	종속변수= UCR_t	종속변수= UT_t
DDR_t	2.19*** (53.53)	-3.01*** (-41.50)	7.38*** (38.69)	0.72*** (7.05)	-0.69*** (-46.78)
$\ln TW_t$	0.39*** (214.83)	0.37*** (113.71)	0.48*** (57.14)	0.57*** (123.79)	0.24*** (310.90)
$PREF_{t-1}$	0.30*** (723.63)				
UCC_{t-1}		0.63*** (1015.33)			
UDC_{t-1}			0.64*** (979.18)		
UCR_{t-1}				0.51*** (718.31)	
UT_{t-1}					0.63*** (990.73)
INT_t	-0.04*** (-11.06)	-0.12*** (-18.42)	0.08*** (4.27)	0.17*** (18.22)	-0.04*** (-27.89)
$EXTRA_t$	0.01* (1.94)	-0.08*** (-11.60)	0.11*** (6.12)	0.10*** (9.72)	-0.00** (-2.07)
<i>Intercept</i>	3.88*** (111.63)	0.15** (2.41)	-4.78*** (-29.44)	-3.57*** (-40.74)	2.28*** (176.37)
<i>N</i>	1,201,806	1,201,806	1,201,806	1,201,806	1,201,806
<i>Adj. R2</i>	0.39	0.50	0.47	0.33	0.65
<i>F-value</i>	154,784***	235,726***	211,566***	120,343***	445,288***

주: 1.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2. 모형 1의 종속변수는 PREF로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3. 모형 2의 종속변수는 UCC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4. 모형 3의 종속변수는 UDC로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5. 모형 4의 종속변수는 UCR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6. 모형 5의 종속변수는 UT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임
 7.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8.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변수에 대해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상하위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윈저라이징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이용

-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늘어나며, 전기의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당기의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금리가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액은 줄고,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이 주어진 연도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줄어드는 반면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수정 결정계수는 0.33~0.65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종속변수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일 때(모형 4)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낮았고, 종속변수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일 때(모형 5)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총급여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 표본을 제외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분석결과가 강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VI-22>는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이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6개의 총급여 구간별로 나누어 재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임

- 분석결과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 확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고,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대체로 전 소득구간에서 관찰되나, 총급여가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구간에서는 공제율 격차 확대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제율 격차가 커질 때 우대공제율 적용항목의 사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전 소득구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됨
 - 그러나 공제율 격차가 커질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현상은 총급여 1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만 관찰됨

- 공제율 격차가 커질 때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총급여 1.5천~2억원 사이 구간에서만 관찰되며, 총급여 1.5천만원 이하, 총급여 2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공제율 격차의 확대가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제율 격차가 커질 때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늘어나는 현상은 총급여 2천만~3억원 사이 구간에서만 관찰되며,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총급여 2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공제율 격차 확대가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제율 격차가 커질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현상은 총급여 1.5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만 관찰되며, 총급여 1.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율 격차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22>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격차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분석)

종속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1천 이하	1~1.5천	1.5천~2천	2~3천	3~4천	4~4.5천
$PREF_t$	6.199***	8.663***	6.156***	4.732***	2.302***	2.417***
UCC_t	-0.275	-3.985***	-5.095***	-4.732***	-3.013***	-2.859***
UDC_t	-4.226	3.107	2.918**	5.684***	7.589***	9.076***
UCR_t	2.338	-3.090	-0.467	0.629*	1.115***	0.979***
UT_t	0.217	-0.227	-0.926***	-0.780***	-0.694***	-0.652***
표본수	2,878	11,794	38,629	148,284	209,740	109,025
종속변수	모형 7	모형 8	모형 9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4.5~5천	5~6천	6~8천	8천~1억	1~2억	2~3억
$PREF_t$	2.637***	2.598***	2.593***	2.719***	2.425***	6.244***
UCC_t	-2.750***	-2.036***	-2.025***	-1.666***	-1.645***	-1.078***
UDC_t	9.032***	8.995***	8.337***	7.354***	6.881***	5.981
UCR_t	1.552***	1.011***	0.872***	0.868***	1.193***	1.656
UT_t	-0.597***	-0.555***	-0.638***	-0.477***	-0.614***	-0.822**
표본수	102,077	175,350	229,595	96,311	74,674	2,607

주: 1.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2. 총급여 구간별로 12개의 하부표본(subsample)으로 나눈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관심변수인 DDR의 회귀계수 값과 통계적 유의성을 요약하여 보고한 결과임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4.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변수에 대해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상하위 1%에 해당하는 값으로 조정하는 윈저라이징을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함
 5. $PREF$ =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자연로그값, UCC = 신용카드 사용액의 자연로그값, UDC = 직불카드 사용액의 자연로그값, UCR =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자연로그값, UT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 사용액)의 자연로그값.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이용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의 정책목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대정책으로 늘어난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일반사업자 중 32%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공제금액이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일반사업자 중 과세분 매출을 신고한 인원은 총 358만명이며, 이 중 32%에 해당하는 116만명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함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일반사업자의 납부세액 합계는 17조 252억원이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1조 5,77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9%에 해당함

<표 VI-23> 일반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단위: 명, 건, 백만원, %)

연도	과세분매출 신고인원 ¹⁾²⁾	납부세액 ¹⁾	세액공제 건수 ³⁾		세액공제금액	
			신고인원 대비	납부세액 대비		
2006	2,145,196	8,670,690	515,894	24	485,579	6
2007	2,310,397	9,765,887	1,167,358	51	1,161,191	12
2008	2,492,782	10,909,944	645,719	26	693,771	6
2009	2,657,537	11,553,461	694,332	26	996,551	9
2010	2,783,474	12,554,397	754,766	27	1,126,803	9
2011	2,939,301	13,425,761	809,599	28	1,264,875	9
2012	3,019,745	14,242,706	834,197	28	1,364,319	10
2013	3,115,758	15,114,898	867,754	28	1,352,283	9
2014	3,205,354	15,691,516	867,625	27	1,418,814	9
2015	3,379,821	16,208,680	1,100,848	33	1,568,227	10
2016	3,584,805	17,025,286	1,160,011	32	1,577,129	9

주: 1)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일반사업자 신고인원 및 납부세액

2) 인원란의 합계는 해당연도 2기 확정신고 인원임

3) 건수는 제2기의 건수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간이과세자 중 38%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공제금액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의 25%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세 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간이과세자 중 과세분 매출을 신고한 인원은 총 165만명이며, 이 중 38%에 해당하는 62만명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함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합계는 5,542억원이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1,391억원으로 부가가치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함

<표 VI-24>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완화

(단위: 명, 건, 백만원, %)

연도	과세분매출 신고인원	세액	세액공제 건수		세액공제금액	
			신고인원 대비	세액 대비		
2006	1,603,117	772,336	415,055	26	106,677	14
2007	1,623,653	711,189	463,151	29	121,448	17
2008	1,759,530	799,050	476,418	27	154,225	19
2009	1,838,024	814,985	472,677	26	174,766	21
2010	1,863,201	789,657	483,171	26	176,493	22
2011	1,827,821	779,726	489,215	27	181,082	23
2012	1,762,094	778,133	474,653	27	162,437	21
2013	1,680,400	759,477	501,497	30	94,014	12
2014	1,671,880	523,376	530,308	32	122,731	23
2015	1,659,847	551,222	587,110	35	128,522	23
2016	1,652,045	554,288	626,653	38	139,191	2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16년 기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일반과세자는 1인당 136만원, 간이과세자는 22만원의 세부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과세자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간이과세자보다 6배 이상 높음
- 일반과세자는 2014년, 간이과세자는 2011년을 기점으로 세부담 절감효과가 감소세를 나타냄

<표 VI-25> 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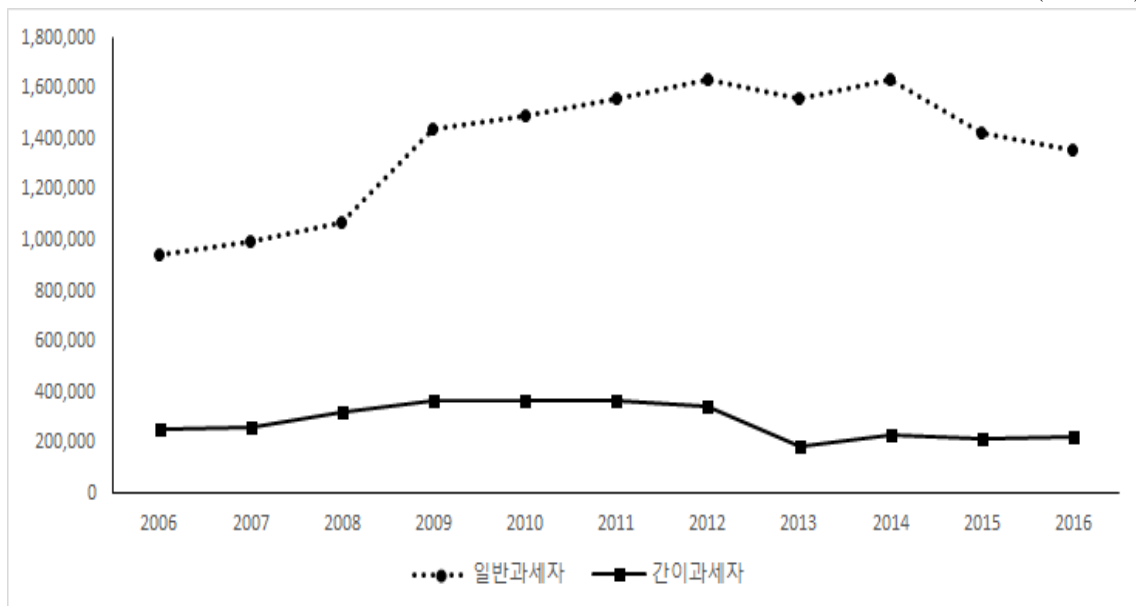
(단위: 원)

연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2006	941,238	257,019
2007	994,717	262,221
2008	1,074,416	323,718
2009	1,435,266	369,737
2010	1,492,917	365,281
2011	1,562,348	370,148
2012	1,635,488	342,223
2013	1,558,371	187,467
2014	1,635,285	231,433
2015	1,424,563	218,906
2016	1,359,581	222,11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11] 사업자 1인당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혜택

(단위: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부담 절감효과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세부담 절감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이 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에서 대체로 일정함
 - 반면 과세표준 5억~10억원 구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이 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18%에 불과함

<표 VI-26> 과세표준 규모별 세부담 경감효과 비교(일반사업자)

(단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2	2013	2014	2015	2016
24백만원 이하	42.12	42.13	40.92	40.76	40.24
24백만원~48백만원	44.23	44.05	43.48	43.01	41.91
48백만원~60백만원	43.38	42.54	41.88	41.48	40.15
60백만원~72백만원	42.09	41.61	41.56	40.92	39.60
72백만원~1억	41.28	40.71	40.02	40.05	38.62
1억~2억	41.81	41.12	39.54	38.45	37.91
2억~5억	38.09	34.08	33.44	36.08	35.05
5억~10억	26.01	23.05	20.51	22.12	21.18
10억~20억	31.97	23.83	20.89	19.24	18.61
20억 초과	32.44	22.86	19.09	19.04	19.82

주: 1.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분석한 결과임
 2. 세부담 경감효과=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납부세액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Ⅶ. 효율성 평가



VII. 효율성 평가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편익 - 세수증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최대 편익은 자영업자의 과표 노출을 통한 세수 증가임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는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자의 거래투명성을 높여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2000~2016년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수는 18조원, 부가가치세 세수는 14조원이 증가하여 총 32조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함
 - 정부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 이외에도 사업용계좌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표 VII-1〉 연도별 개인사업자 세수 증가액

(단위: 십억원)

연도	개인사업자의 세수증가액		
	종합소득세 (A)	부가가치세 (B)	합계 (C=A+B)
2000	923	933	1,856
2001	738	-56	682
2002	-593	465	-128
2003	1,085	489	1,574
2004	467	1,226	1,693
2005	431	1,015	1,446
2006	1,412	1,264	2,676
2007	1,403	1,301	2,704
2008	577	1,275	1,852
2009	-164	220	56
2010	1,104	1,332	2,436
2011	1,787	1,119	2,906
2012	963	347	1,310
2013	1,265	800	2,065
2014	2,225	534	2,759
2015	2,327	460	2,787
2016	2,233	786	3,019
누계	18,183	13,510	31,69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세수 증가분 32조원 전부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정책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세수 증가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의해서도 유도될 수 있으므로 경제규모의 성장을 통제했을 때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이 개인사업자 세수증가에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세탄성치를 계산하여 살펴봄
 - 국세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명목GDP증가율로 나누어 계산되며, 국세탄성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명목경제성장률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는 것을 의미함
- 1999~2016년의 국세탄성치를 계산한 결과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인 2006년의 국세탄성치가 다른 기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직후인 2000년의 종합소득세 탄성치는 2.76, 부가가치세 탄성치는 2.19로 세수증가율이 명목GDP성장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직후인 2006년 종합소득세 탄성치는 4.41, 부가가치세 탄성치는 3.04로 분석대상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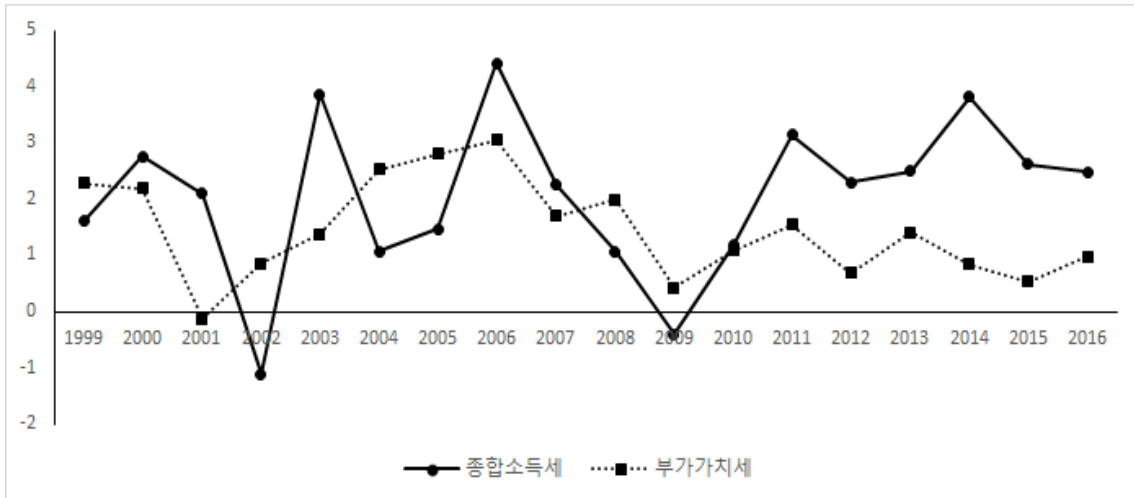
〈표 VII-2〉 연도별 국세탄성치

(단위: 십억원, %)

연도	명목GDP		국세탄성치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1999	576,873	10.0	1.60	2.28
2000	635,185	10.1	2.76	2.19
2001	688,165	8.3	2.09	-0.13
2002	761,939	10.7	-1.11	0.85
2003	810,915	6.4	3.86	1.37
2004	876,033	8.0	1.06	2.53
2005	919,797	5.0	1.46	2.80
2006	966,055	5.0	4.41	3.04
2007	1,043,258	8.0	2.25	1.70
2008	1,104,492	5.9	1.07	1.99
2009	1,151,708	4.3	-0.40	0.42
2010	1,265,308	9.9	1.17	1.09
2011	1,332,681	5.3	3.14	1.54
2012	1,377,457	3.4	2.29	0.68
2013	1,429,445	3.8	2.49	1.40
2014	1,486,079	4.0	3.81	0.83
2015	1,564,123	5.3	2.61	0.53
2016	1,637,420	4.7	2.48	0.9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소득

[그림 VII-1] 연도별 국세탄성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소득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비용

가. 조세지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은 2000년 350억원에서 2016년 1조 8천억원으로 53배가 증가함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초기인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479%와 207%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은 1999년 718억원에서 2016년에는 1조 6천억원으로 22배가 증가함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시행 초기인 2000년과 2001년에 238%와 12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신용카드 등 사용실적이 매년 늘고 있어 두 공제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또한 증가일로에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은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 걸쳐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또한 일부 (2004년, 2005년, 2013년) 연도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특히 2016년에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

<표 VII-3>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비용

(단위: 억원)

연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이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합계
1999	-	718	159	-	877
2000	350	2,426 (238%)	270	176	3,222
2001	2,027 (479%)	5,425 (124%)	416	192	8,060
2002	6,233 (207%)	7,546 (39%)	595	192	14,566
2003	8,308 (33%)	7,748 (3%)	405	163	16,624
2004	8,966 (8%)	5,435 (-30%)	296	61	14,758
2005	9,812 (9%)	4,991 (-8%)	201	47	15,051
2006	10,465 (7%)	5,893 (18%)	278	59	16,695
2007	12,506 (20%)	6,992 (19%)	369	59	19,926
2008	15,171 (21%)	8,451 (21%)	386	48	24,056
2009	18,934 (25%)	10,036 (19%)	375	45	29,390
2010	18,405 (-3%)	12,325 (23%)	412	30	31,172
2011	11,729 (-36%)	13,831 (12%)	419	-	25,979
2012	11,697 (0%)	14,405 (4%)	-	-	26,102
2013	13,721 (17%)	13,667 (-5%)	-	-	27,388
2014	15,708 (14%)	13,888 (2%)	-	-	29,596
2015	17,889 (14%)	14,188 (2%)	-	-	32,077
2016	18,444 (3%)	15,776 (11%)	-	-	34,220
합계 (1999~2016)	200,365	163,741	4,581	1,072	369,759
2017 (예상)	18,862	16,390	-	-	
2018 (예상)	19,475	17,028	-	-	32,334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나. 카드 가맹점수수료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연도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003년 2조 1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11조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이전까지 두자릿수의 성장을 이어오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꺾임
 -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2012년을 기점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됨

〈표 VII-4〉 연도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단위: 십억원, %)

연도	가맹점수수료	전년 대비 증가율
2003	2,158	
2004	1,636	-24.2
2005	2,019	23.4
2006	3,361	66.4
2007	5,610	66.9
2008	5,575	-0.6
2009	6,130	9.9
2010	7,195	17.4
2011	8,569	19.1
2012	8,849	3.3
2013	9,260	4.6
2014	9,963	7.6
2015	10,730	7.7
2016	11,060	3.1
2017	11,678	5.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현금영수증제도 운영비용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운영비용은 2005년 95억원에서 2017년에는 34억원으로 감소함
 - 한때 100억원에 육박했던 현금영수증제도 운영비용은 2011년 현금영수증복권 제도 폐지와 함께 30억원대로 감소함
- 2016년 기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운영비용은 총 34억원으로 위탁사업비가 16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금영수증발급 거부 포상금이 14억원으로 그다음 순위를 차지함

〈표 VII-5〉 현금영수증제도 운영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보전금		운영비		합계
	복권	포상금	위탁사업비	일반수용비	
2005	7,406	0	1,678	446	9,530
2006	6,968		1,589	1,805	10,362
2007	6,746	105	1,626	1,638	10,115
2008	5,938	168	1,670	1,251	9,027
2009	5,574	224	1,666	1,356	8,820
2010	3,117	332	1,503	967	5,919
2011	335	492	1,569	551	2,947
2012	0 ¹⁾	445	1,583	443	2,471
2013	0	588	1,560	302	2,450
2014	0	3,386 ²⁾	1,599	341	5,326
2015	0	2,088	1,606	327	4,021
2016	0	2,480	1,560	353	4,393
2017	0	1,427	1,676	329	3,432

주: 1) 2011년부터 복권제도 폐지

2) 2014년부터 귀금속 업종발급의무 확대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라. 신용불량자 비용

- 신용카드 사용 확대 정책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에 효과가 있지만, 사후결제와 할부기능 때문에 과소비를 유발하고 고금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지님
-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인원은 2017년 말 현재 41만명에 달함
 - 신용불량자 수는 2013년 39만명에서 2015년에는 43만명까지 증가하였지만, 다시 41만명 수준으로 감소함
 - 사유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대금연체가 41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현금서비스 연체로 20만명 수준임

<표 VII-6> 신용카드 관련 사유별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단위: 명)

연도	카드론대금연체 ¹⁾	신용카드대금연체 ²⁾	신용카드 관련 금융질서문란정보	합계 (순인원)
2013	149,936	391,760	-	428,870
2014	173,967	430,875	-	467,842
2015	184,621	432,416	-	468,412
2016	187,225	417,864	20	451,031
2017	196,359	411,685	31	444,596

주: 1)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2)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자, 현금서비스 연체 포함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금액대별로는 5백만원 미만 개인신용불량자가 24만명으로 전체 개인신용불량자의 54%를 차지하며, 고액연체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5백만원 이상 연체한 개인신용불량자 비중은 2013년 37%에서 2017년에는 46%로 증가함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개인신용불량자가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2017년 기준 20대와 30대 개인신용불량자 비중이 32%에 달함

<표 VII-7> 신용카드 관련 금액구간별, 연령별(연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현황

(단위: 명)

	금액구간별					합계
	5백만원 이하	5백만원~1천	1천만원~2천만원	2천만원~3천만원	3천만원 초과	
2013	270,993	72,768	54,349	17,686	13,074	428,870
2014	286,955	78,109	63,660	21,958	17,160	467,842
2015	274,506	79,040	67,819	25,155	21,892	468,412
2016	254,489	74,807	68,393	27,376	25,966	451,031
2017	238,702	75,289	70,747	29,726	30,132	444,596
	연령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2013	140	38,286	106,481	136,427	147,536	428,870
2014	354	42,745	115,342	145,896	163,505	467,842
2015	291	42,617	112,690	142,415	170,399	468,412
2016	227	42,994	106,513	135,249	166,048	451,031
2017	243	43,387	98,973	131,468	170,525	444,596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바, 신용카드 채무 재조정으로 인해 2017년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총 208억원으로 추산됨

○ 2002~2017년 누적기준으로 신용카드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천 억원에 달함

<표 VII-8> 연도별 채무조정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접수건수 ²⁾	채무조정 ¹⁾			확정건수 ⁴⁾
		조정건수 ³⁾	조정 전 금액	조정 후 금액	
2002~2004	350,407	303,993	114,760	97,997	262,370
2005	193,698	208,231	57,633	43,313	233,862
2006	85,826	86,890	24,896	14,216	90,942
2007	63,706	61,597	18,747	8,495	61,010
2008	79,144	73,264	22,394	9,087	68,360
2009	101,714	93,402	29,272	14,702	87,453
2010	84,590	78,528	27,923	12,103	72,329
2011	91,336	84,872	31,244	14,658	79,172
2012	90,126	81,753	28,067	15,170	80,368
2013	97,139	92,032	30,315	16,138	85,400
2014	85,168	79,436	28,322	14,512	73,925
2015	91,520	83,880	32,222	16,005	77,757
2016	96,319	86,498	35,444	18,112	81,401
2017	103,277	94,635	43,209	22,400	89,087
누 계	1,613,970	1,509,011	524,448	316,908	1,443,436

주: 1)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2)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절차가 개시된 건수

3) 채무조정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협의 후 가결된 건수

4)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수 중 채권보유금융기관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한 건수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Ⅷ. 설문조사 결과



VIII.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표 VIII-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조사 설계

조사 대상	연말정산 경험이 3회 이상이며 매월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근로자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온라인 조사 패널 활용)
샘플 수	2,500명
조사 기간	2018년 5월 10일(목) ~ 2018년 5월 18일(금)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표 VIII-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 조사 설계

조사 대상	2017년도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경험이 5회 이상인 세무대리인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모바일 링크 발송)
샘플 수	200명
조사 기간	2018년 5월 10일(목) ~ 2018년 5월 25일(금)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본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조사 내용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VIII-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조사 내용

구 분	세부 항목
지불결제수단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 신용카드 사용 이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 카드별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 차이 인지 여부 • 카드별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 차이의 소비/지출 영향 • 각 부문별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 인지 여부 • 각 부문별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의 소비/지출 영향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 현행 소득공제 제도의 소비/지출 영향 •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인지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에 대한 의견 • 신용카드 사용을 실제로 줄이는 것에 대한 의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 현행 제도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 현행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 신용카드 대비 직불·선불카드의 장점 인지 여부 • 현행 소득공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 현행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표 VIII-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 조사 내용

구 분	세부 항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정책의 과표 양성화 실효성 • 현행 세액공제 제도의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 실효성 • 세액공제율 인하가 자영업자 세부담에 미칠 영향 • 업종별 세액공제율 차이 필요성에 대한 의견 • 현행 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다.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VIII-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비 율
전 체		2,500	100.0
성 별	남성	1,625	65.0
	여성	875	35.0
연 령	19~29세	166	6.6
	30대	614	24.6
	40대	736	29.4
	50대 이상	984	39.4
소 득 수 준	2,000만원 미만	242	9.7
	2,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186	47.4
	5,000만원 ~ 7,000만원 미만	619	24.8
	7,000만원 ~ 1억원 미만	351	14.0
	1억원 ~ 1억 2,000만원 미만	64	2.6
	1억 2,000만원 이상	38	1.5
직 업	전문직	285	11.4
	경영/관리/사무직	1,669	66.8
	판매/서비스직	218	8.7
	생산/기능직	254	10.2
	농림/수산/축산업	12	0.5
	기타	62	2.5
연 말 정 산 경 험 횟 수	경험적음(3~5회)	497	19.9
	경험보통(6~10회)	638	25.5
	경험많음(11회 이상)	1,365	54.6
거 주 지 역 규 모	대도시	1,252	50.1
	중소도시	1,122	44.9
	읍·면·군	126	5.0
학 력	고졸 미만	17	0.7
	고졸	324	13.0
	전문대졸	302	12.1
	대졸	1,536	61.4
	대학원졸 이상	321	12.8
가 족 형 태	부부	233	9.3
	2세대 가구	1,695	67.8
	3세대 가구	228	9.1
	1인 가구	271	10.8
	기타	73	2.9

주: 세액공제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이 세무대리인 200명으로 별도 응답자 특성 제시하지 않음

2. 조사 결과 요약 및 종합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1) 지불결제수단 이용 현황

-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54.8%)를 통한 사용금액 비중이 가장 높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8.3%)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전체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은 신용카드(54.8%), 체크·직불·선불카드(23.5%),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13.3%),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8.3%)순으로 조사됨

<표 VIII-6>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단위: 건, %)

	사례수	신용카드	체크·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
전 체	(2,500)	54.8	23.5	13.3	8.3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50.9%)’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31.2%)’ 응답 비율은 다소 낮은 편임
- 그 외에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41.0%),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37.5%)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결제수단의 편리성과 혜택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VIII-7> 신용카드 사용 이유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현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	잔돈이 없어 결제 과정이 간편
전 체	(2,358)	50.9	41.0	37.5

	사례수	소득공제 혜택	통잔잔액 없이 결제 가능	할부거래 가능	기타
전 체	(2,358)	31.2	20.1	19.0	0.2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

-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잘 아는 편이다 +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52.5%로 나타남
 - ‘모른다(잘 모르는 편이다 + 전혀 모르고 있다)’ 응답 비율은 47.5%로 조사되어, 인지 여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VIII-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단위: 건, %)

	사례수	전혀 모르고 있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 체	(2,500)	2.3	45.2	46.9	5.6

- 신용카드 공제율(15%)과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30%) 차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두 부분의 공제율 차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5.4%로 나타남

<표 VIII-9>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85.4	14.6

-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50.1%가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체크·직불·선불카드를 조금 +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응답 또한 49.9%로 ‘영향이 전혀 없었다’(50.1%) 응답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남

<표 VIII-10>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미친 영향

(단위: 건, %)

	사례수	체크·직불·선불카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체크·직불·선불카드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
전 체	(2,136)	12.3	37.6	50.1

-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서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 40% 공제율의 추가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70.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함

<표 VIII-11>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30.0	70.0

- 현행 소득공제 제도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40% 공제율의 추가공제혜택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표 VIII-12>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55.6	44.4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을 알고 있는 응답자에게 추가공제혜택이 실제 전통시장 사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61.3%가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함
 - ‘조금 늘어났다’는 34.9%, ‘매우 늘어났다’는 3.9%로 비교적 낮게 조사됨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는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보임

<표 VIII-13>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사례수	전통시장 사용이 매우 늘어났다	전통시장 사용이 조금 늘어났다	전통시장 사용에 변화가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
전 체	(1,391)	3.9	34.9	61.3

- 추가공제혜택이 전통시장 사용에 영향이 없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는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 외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이 어렵기 때문에’(47.9%),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42.7%),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37.6%)도 비교적 높게 조사됨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표 VIII-14〉 전통시장 미사용 이유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이 어려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체	(852)	55.8	47.9	42.7

	사례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적음	기타
전 체	(852)	37.6	13.7	2.3

-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40% 공제율의 추가공제혜택은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표 VIII-15〉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55.5	44.5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을 알고 있는 응답자에게 추가공제혜택이 실제 대중교통 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54.9%가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함
 - ‘조금 늘어났다’는 37.6%, ‘매우 늘어났다’는 7.5%로 비교적 낮게 조사됨
 - 전통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장려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VIII-16>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사례수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늘어났다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늘어났다	대중교통 이용에 변화가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
전 체	(1,388)	7.5	37.6	54.9

- 추가공제혜택이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이 없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배차간격, 경로 등으로 인해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복잡해서’(46.1%), ‘주변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이 없어서’(34.5%)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는 32.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소득공제 혜택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표 VIII-17> 대중교통 미이용 이유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복잡해서	주변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이 없어서
전 체	(762)	59.8	46.1	34.5

	사례수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	대중교통 내부 시설이 열악해서	기타
전 체	(762)	32.7	10.0	16.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전반적인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61.2%가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함
 - ‘매우 늘어났다’는 4.0%, ‘조금 늘어났다’는 34.8%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어,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비 및 지출이 늘어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VIII-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사례수	지출이 매우 늘어났다	지출이 조금 늘어났다	지출의 변화가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
전 체	(2,500)	4.0	34.8	61.2

-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이 소비/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 54.2%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함
 - ‘도서·공연 사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 응답자도 4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VIII-19>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사례수	도서·공연 사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도서·공연 사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도서·공연 사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 체	(2,500)	3.1	42.7	54.2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30% → 40%)이 소비/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 52.8%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함
 -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 응답자도 42.5%로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VIII-2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사례수	전통시장 사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통시장 사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전통시장 사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 체	(2,500)	4.7	42.5	52.8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30% → 40%)이 소비/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 51.5%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함
 -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 응답자도 41.3%로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VIII-21〉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사례수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 체	(2,500)	7.2	41.3	51.5

-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변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는 62.5%로 ‘알고 있다’(37.5%)는 응답 비율보다 2배 가량 높게 조사됨

〈표 VIII-22〉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37.5	62.5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향

- 신용카드 공제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현행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물어본 결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것이다(조금 줄일 것이다 + 많이 줄일 것이다)’라는 응답이 58.6%로 나타남
 -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도 41.4%로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VIII-23>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단위: 건, %)

	사례수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줄일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을 조금 줄일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 체	(2,500)	12.7	45.9	41.4

□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지 물어본 결과, ‘체크·직불·선불카드를 더 사용할 것이다’라고 한 응답자가 63.5%로 가장 높았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상관없는 현금 사용’은 6.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 외에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자는 17.4%, ‘전반적인 소비/지출을 줄일 것이다’는 응답자는 12.6%로 비교적 낮게 조사됨
- 즉 신용카드 공제율을 인하하였을 경우, 일반 근로자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게 되고, 그 중 다수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표 VIII-24>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방법

(단위: 건, %)

	사례수	체크·직불· 선불 카드를 더 사용할 것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릴 것이다	전반적인 소비/지출을 줄일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상관없이 현금 사용을 늘릴 것이다
전 체	(1,464)	63.5	17.4	12.6	6.6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르고 있다’(46.5%)는 응답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VIII-2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53.5	46.5

-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40.8%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반대한다’(36.9%)와 ‘상관없다’(22.3%)는 의견도 적지 않았음

〈표 VIII-26〉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건, %)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상관없다
전 체	(2,500)	40.8	36.9	22.3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가격 상승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응답자 64.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르고 있다’(35.6%) 응답 비율 대비 2배가량 높게 조사됨

〈표 VIII-27〉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64.4	35.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6%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함

〈표 VIII-28〉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42.4	57.6

- 신용카드 대비 직불·체크카드의 장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4.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르고 있다’(25.4%) 응답 비율과 큰 차이를 보임

〈표 VIII-29〉 신용카드 대비 직불·체크카드 장점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74.6	25.4

-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46.0%), ‘소득공제의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혜택이 높다’(38.2%)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현행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사회적 비용 등 제도 운영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룸

<표 VIII-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소득공제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혜택이 높다
전 체	(2,500)	65.4	46.0	38.2
	사례수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복지혜택 등이 줄어든다	기타
전 체	(2,500)	26.5	22.8	1.2

-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으로는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다’는 의견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동일 적용’(40.0%),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폐지하여 다른 카드와의 공제율 격차 확대’(36.8%)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제도 내용 및 제도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도 개편 문제를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임

<표 VIII-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단위: %)

	사례수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동일 적용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폐지하여 다른 카드와의 공제율 격차 확대
전 체	(2,500)	49.6	40.0	36.8

	사례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정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제도를 폐지한다	기타
전 체	(2,500)	30.8	17.2	1.2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1)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 지난 조사와 비교 분석한 결과, 카드 사용은 전반적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현금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비중이 +2.3%p로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인 것이 특징적임

<표 VIII-32>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2016년 n=2,000, 2018년 n=2,500, 단위: %, %p)

지불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직불·선불카드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사용금액 비중	55.3	54.8	-1.5	26.5	23.5	-1.0

지불결제수단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사용금액 비중	11.0	13.3	+2.3	7.2	8.3	+1.1

2)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 지난 조사 대비, ‘전통시장 사용이 조금 늘어났다’는 응답 비율이 +6.0%p 상승한 반면, ‘영향이 없었다’의 응답 비율은 -4.8%p의 하락폭을 보임

<표 VIII-33>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2016년 n=2,000, 2018년 n=2,500, 단위: %, %p)

전통시장 사용에 변화가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			전통시장 사용이 조금 늘어났다			전통시장 사용이 매우 늘어났다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66.1	61.3	-4.8	28.9	34.9	+6.0	5.0	3.9	-1.1

3)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늘어났다’는 응답 비율이 +11.5%p의 큰 상승폭을 보인 반면,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8.5%p의 하락폭을 보임

<표 VIII-34>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2016년 n=2,000, 2018년 n=2,500, 단위: %, %p)

대중교통 이용에 변화가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늘어났다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늘어났다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63.4	54.9	-8.5	26.1	37.6	+11.5	10.5	7.5	-3.0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전반적인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지난 조사 대비 +15.6%p 상승함
 - 소득공제 제도가 일반 근로자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III-3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2016년 n=2,000, 2018년 n=2,500, 단위: %, %p)

지출의 변화가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			지출이 조금 늘어났다			지출이 매우 늘어났다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45.6	61.2	+15.6	39.9	34.8	-5.1	14.6	4.0	-10.6

5)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변화에 대해서, ‘영향이 없을 것이다’의 응답 비율이 지난 조사 대비 +23.3%p의 큰 상승폭을 보인 것이 특징적임

<표 VIII-36>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2016년 n=2,000, 2018년 n=2,500, 단위: %, %p)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을 조금 줄일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줄일 것이다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18.1	41.4	+23.3	50.5	45.9	-4.6	31.4	12.7	-18.7

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조사 대비 +16.3%p 만큼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III-3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2016년 n=2,000, 2018년 n=2,500, 단위: %, %p)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37.2	53.5	+16.3	62.8	46.5	-16.3

7)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4%p의 큰 상승폭을 보임

<표 VIII-38>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2016년 n=2,000, 2018년 n=2,500, 단위: %, %p)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44.0	64.4	+20.4	56.0	35.6	-20.4

8)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조사 대비 ‘알고 있다’의 응답 비율이 +9.9%p 상승한 모습을 보임

<표 VIII-39>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 지난 조사 결과 비교

(2016년 n=2,000, 2018년 n=2,500, 단위: %, %p)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32.5	42.4	+9.9	67.5	57.6	-9.9

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인식

-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장려 정책이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여전히 효과가 있다(효과가 있는 편이다 +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1.5%로 나타남
 - ‘효과가 없다(효과가 없는 편이다 +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8.5%로 비교적 낮게 조사됨

<표 VIII-40> 정부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의 과표 양성화 효과

(단위: 건, %)

	사례수	추가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	추가적인 효과가 없는 편이다	여전히 효과가 있는 편이다	여전히 매우 효과가 있다
전 체	(200)	13.0	15.5	49.0	22.5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인 77.5%가 ‘도움이 된다(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표 VIII-4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 도움 정도

(단위: 건, %)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 체	(200)	2.5	20.0	58.0	19.5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응답자 절반 가량인 44.4%가 ‘낮은 공제율’ 때문이라고 응답함
- ‘낮은 공제한도’ 또한 3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까다로운 공제요건’은 6.7%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표 VIII-4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단위: 건, %)

	사례수	낮은 공제율	낮은 공제한도	까다로운 공제요건	기타
전 체	(45)	44.4	37.8	6.7	11.1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인하할 경우 자영업자 세부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물어본 결과, ‘세부담이 조금 증가’가 61.5%, ‘세부담이 크게 증가’가 28.0%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꼴인 89.5%가 공제율을 인하한다면 자영업자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표 VIII-4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인하가 자영업자 세부담에 미칠 영향

(단위: 건, %)

	사례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부담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	세부담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전 체	(200)	28.0	61.5	10.5

- 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응답 비율이 51.0%,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이 49.0%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VIII-44〉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필요에 대한 의견

(단위: 건, %)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200)	51.0	49.0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 77.5%가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이 외에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인하한다’가 20.0%, ‘세액공제 대상자를 축소한다’가 13.0%, ‘정책목적이 달성됐으므로 제도를 폐지한다’가 9.0%로 조사됨

<표 VIII-4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인하한다	세액공제 대상자를 축소한다	제도를 폐지한다	기타
전 체	(200)	77.5	20.0	13.0	9.0	4.0

라. 조사 결과 종합

1) 카드 사용률은 여전히 높았으며, 신용카드 사용의 주된 이유는 편리성과 혜택

- 지불결제수단 중 카드(신용+체크+직불+선불) 사용률은 78.3%로 응답자 5명 중 4명 정도가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현금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포인트·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잔돈이 없어 결제 과정이 간편하다는 점 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결제의 편리성과 사용에 따른 혜택 제공이 신용카드 사용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는 중간 수준

- 제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는 52.5%로 나타났으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각각 55.6%, 55.5%로 나타나 일반근로자 절반 정도가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차이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인 85.4%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서는 30.0%의 낮은 인지도를 보임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61.2%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전반적인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함
-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수준인 50.1%가 공제율 차이 때문에 체크·직불·선불카드를 더 사용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응답함
-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소득공제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도 각각 61.3%, 54.9%가 소득공제 제도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각의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함
- 나아가 소득공제 제도가 전통시장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에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득공제혜택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3.7%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 응답자는 32.7%로 비교적 낮게 조사됨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화의 소비/지출 영향과 내용 인지도 모두 낮게 조사됨

-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과 관련하여 제도의 세부내용 변화가 각 부문의 소비/지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4.2%, 52.8%, 51.5%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금액 축소에 대해서도 응답자 37.5%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비교적 낮은 인지도를 보임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 시, 신용카드 사용 감소 및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 증가 예상

- 신용카드 공제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응답자 58.6%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함(조금 줄일 것이다 45.9% + 많이 줄일 것이다 12.7%)
- 실제 생활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방법에 대해서는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17.4%로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됨

6) 신용카드 사용의 문제점 및 체크·직불카드 장점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

- 응답자 64.4%가 신용카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용카드 대비 체크·직불카드의 장점에 대해서도 응답자 74.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임

7)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은 비용,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 존재

-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65.4%), 사회적 비용 발생(46.0%) 등 비용 관련 의견이 많음
- 또한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내용 단순화(49.6%), 세액공제로 전환(40.0%),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폐지(36.8%)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정부의 과표 양성화 정책에 대해 세무대리인 200명 중 71.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7.5%로 높게 조사됨(도움이 되는 편이다 58.0% + 매우 도움이 된다 19.5%)

- 세액공제 공제율을 인하한다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89.5%로 높게 나타났으며(조금 증가할 것이다 61.5% + 크게 증가할 것이다 28.0%), 제도 개편방안으로는 현행 유지 의견이 77.5%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는 여전히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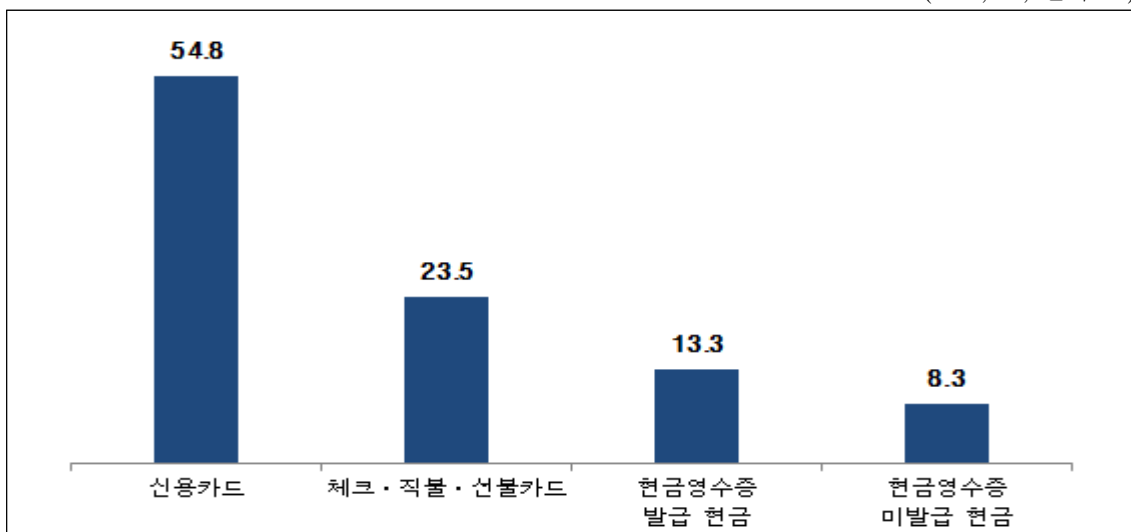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조사

1)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 지불결제수단 사용금액 비중 분석 결과, ‘신용카드’가 54.8%로 지불결제수단 중 가장 높은 사용 금액 비중을 보였으며 ‘체크·직불·선불카드’가 23.5%,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이 13.3%,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이 8.3%로 나타남
 - 특히,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카드 사용이, 저소득층에서는 현금 사용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면,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 비중은 19~29세(38.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VIII-1]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n= 2,500, 단위: %)



<표 VIII-46>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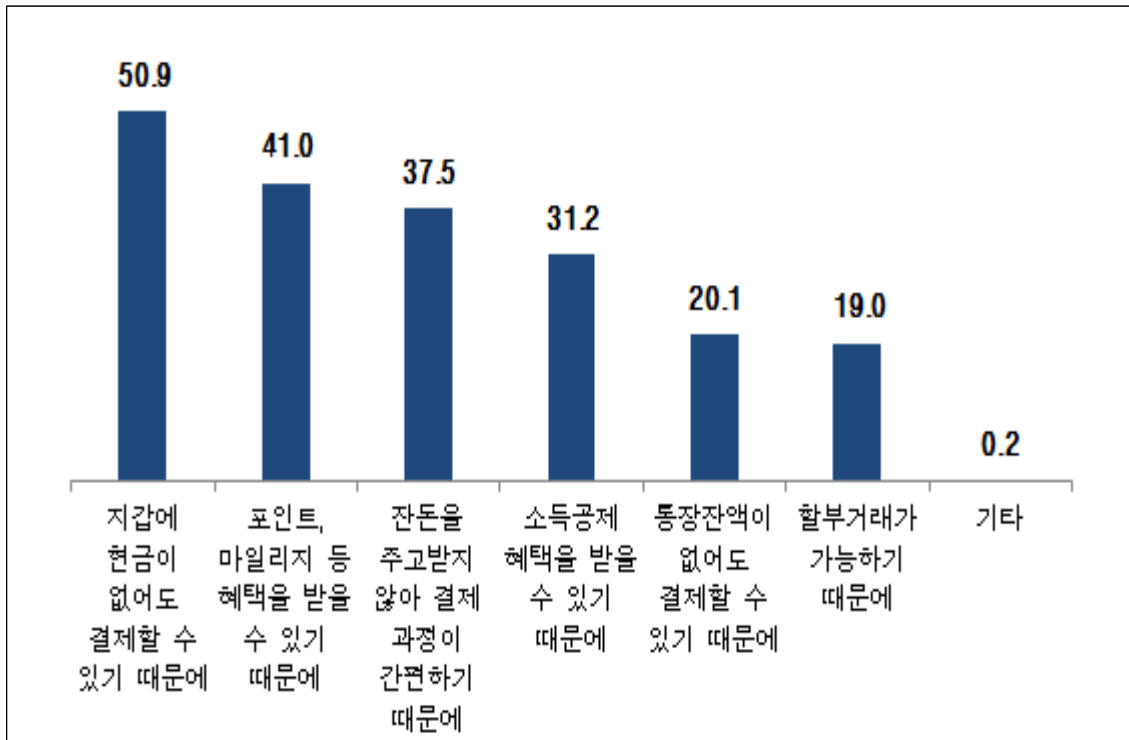
		사례수	신용카드	체크·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
전 체		(2,500)	54.8	23.5	13.3	8.3
성별	남성	(1,625)	56.1	22.8	13.0	8.1
	여성	(875)	52.5	24.9	13.9	8.7
연령대	19~29세	(166)	38.1	38.0	15.1	8.8
	30대	(614)	52.7	26.9	12.7	7.8
	40대	(736)	57.4	20.7	13.6	8.3
	50대 이상	(984)	57.1	21.1	13.1	8.7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48.5	28.7	13.0	9.7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53.4	24.9	13.4	8.3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56.1	21.4	14.0	8.5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59.1	21.0	12.6	7.4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65.4	14.7	11.6	8.3
	1억 2,000만원 이상	(38)	61.8	19.4	11.3	7.6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46.1	29.9	14.5	9.5
	보통(6~10회)	(638)	52.9	25.0	13.7	8.4
	많음(11회 이상)	(1,365)	58.9	20.5	12.7	7.9
결혼 여부	기혼	(1,876)	57.4	21.0	13.3	8.3
	미혼	(624)	47.3	31.1	13.2	8.5
가족 형태	부부	(233)	57.5	21.8	12.8	7.8
	2세대 가구	(1,695)	55.6	22.6	13.5	8.3
	3세대 가구	(228)	57.0	20.8	13.6	8.6
	1인 가구	(271)	48.5	30.7	11.6	9.1
	기타	(73)	45.1	32.3	14.9	7.6

2) 신용카드 사용 이유

- 지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 이유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가 50.9%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41.0%),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37.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3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는 31.2%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용카드 사용의 주된 이유는 사용의 편리성과 혜택 측면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VIII-2] 신용카드 사용 이유 - 중복응답

(n= 2,358, 단위: %)



<표 VIII-47> 신용카드 사용 이유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현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	포인트,마일리지 등 혜택	잔돈이 없어 결제 과정이 간편
전 체		(2,358)	50.9	41.0	37.5
성별	남성	(1,535)	52.7	39.1	37.3
	여성	(823)	47.5	44.6	37.9
연령대	19~29세	(142)	45.1	43.7	32.4
	30대	(578)	51.9	47.2	37.9
	40대	(707)	51.5	43.3	35.5
	50대 이상	(931)	50.7	35.0	39.5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06)	48.5	45.1	43.7
	2,000만원~5,000만 미만	(1,101)	52.3	39.6	36.8
	5,000만원~7,000만 미만	(606)	51.3	40.6	35.8
	7,000만원~1억원 미만	(346)	48.8	41.3	38.2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43.8	50.0	34.4
	1억 2,000만원 이상	(35)	45.7	48.6	51.4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40)	50.7	42.7	34.3
	보통(6~10회)	(596)	51.0	46.0	36.2
	많음(11회 이상)	(1,322)	50.9	38.2	39.1

		사례수	소득공제 혜택	통잔잔액 없이 결제 가능	할부거래 가능	기타
전 체		(2,358)	31.2	20.1	19.0	0.2
성별	남성	(1,535)	34.1	19.0	17.7	0.1
	여성	(823)	25.9	22.2	21.5	0.4
연령대	19~29세	(142)	21.8	22.5	33.8	0.7
	30대	(578)	18.7	25.4	18.5	0.3
	40대	(707)	30.3	19.2	20.1	0.1
	50대 이상	(931)	41.1	17.2	16.3	0.1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06)	17.0	20.4	24.8	0.5
	2,000만원~5,000만 미만	(1,101)	27.0	21.7	22.3	0.3
	5,000만원~7,000만 미만	(606)	37.5	18.6	16.2	0.0
	7,000만원~1억원 미만	(346)	42.5	17.6	11.3	0.3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35.9	20.3	15.6	0.0
	1억 2,000만원 이상	(35)	20.0	20.0	14.3	0.0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40)	21.4	25.7	24.8	0.5
	보통(6~10회)	(596)	24.0	21.6	21.1	0.0
	많음(11회 이상)	(1,322)	37.7	17.6	16.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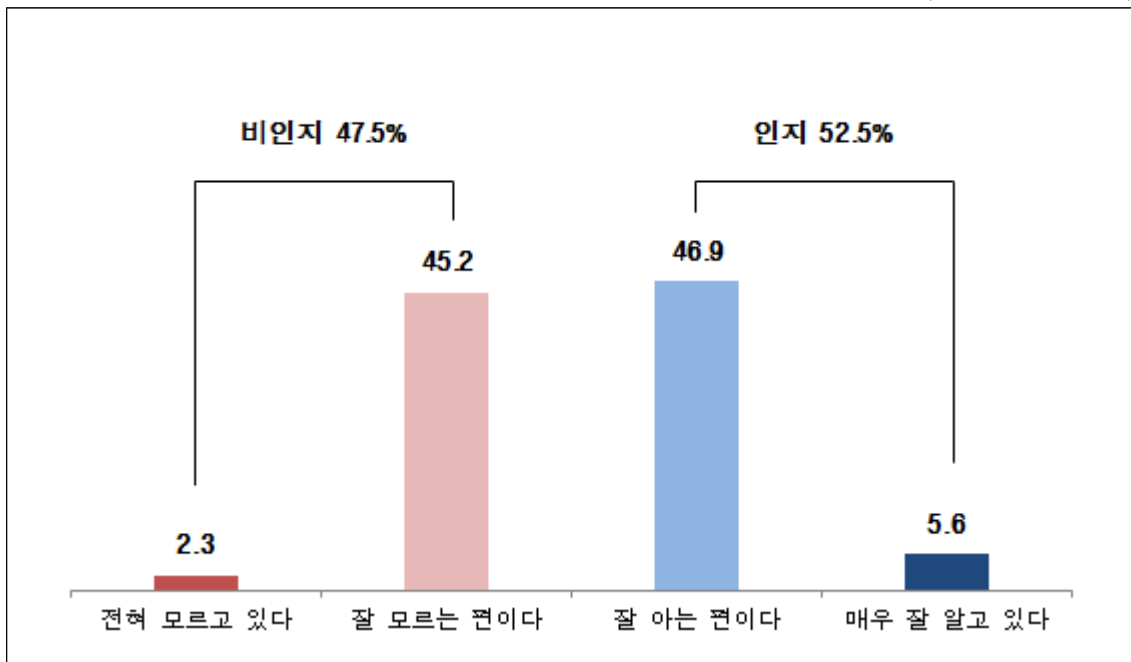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가 52.5%로 ‘모른다’고 응답한 47.5%보다 소폭 높았지만 인지 여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연말정산 경험이 많을수록 제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VIII-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n= 2,500, 단위: %)



<표 VIII-4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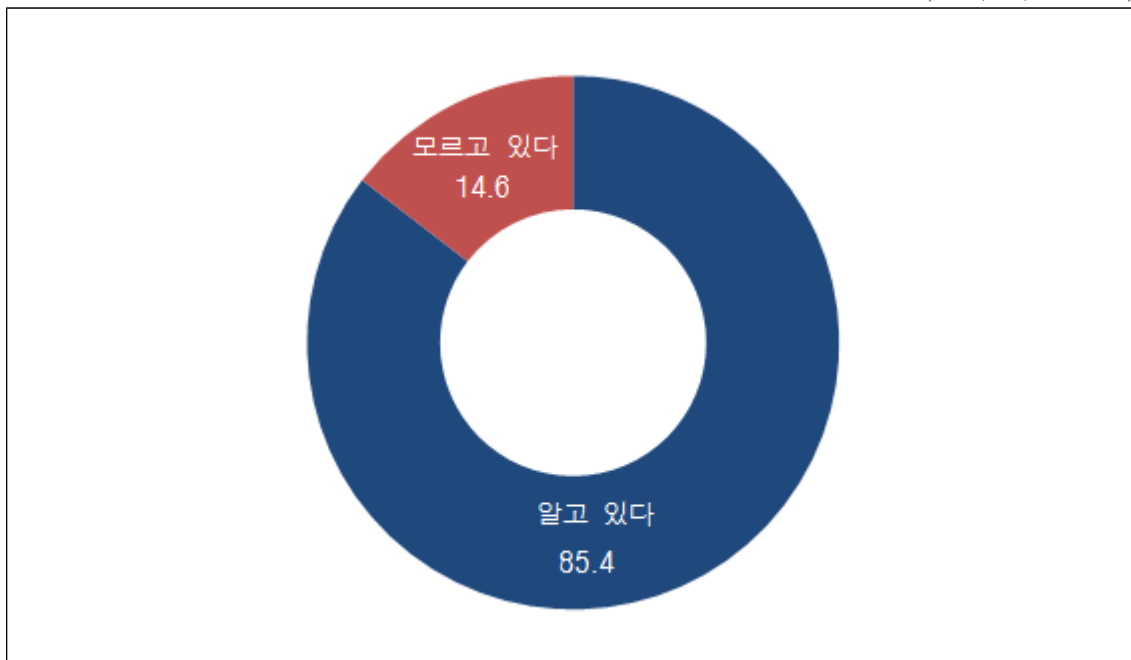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모르고 있다	잘 모르는 편이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 체		(2,500)	2.3	45.2	46.9	5.6
성별	남성	(1,625)	1.9	41.2	50.8	6.1
	여성	(875)	3.0	52.7	39.8	4.6
연령대	19~29세	(166)	7.2	48.8	34.3	9.6
	30대	(614)	2.6	48.4	42.5	6.5
	40대	(736)	1.5	48.4	46.3	3.8
	50대 이상	(984)	1.8	40.3	52.2	5.6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5.8	61.6	29.8	2.9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2.6	54.6	39.0	3.9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1.6	32.8	59.3	6.3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0.3	30.2	59.8	9.7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0.0	20.3	65.6	14.1
	1억 2,000만원 이상	(38)	2.6	34.2	52.6	10.5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4.8	57.7	32.4	5.0
	보통(6~10회)	(638)	2.4	53.1	38.4	6.1
	많음(11회 이상)	(1,365)	1.3	37.0	56.2	5.5
결혼 여부	기혼	(1,876)	1.5	41.7	51.0	5.8
	미혼	(624)	4.6	55.8	34.8	4.8
가족 형태	부부	(233)	3.4	45.1	46.4	5.2
	2세대 가구	(1,695)	1.8	43.5	48.8	5.8
	3세대 가구	(228)	1.8	42.5	49.1	6.6
	1인 가구	(271)	4.8	53.1	37.6	4.4
	기타	(73)	1.4	65.8	31.5	1.4

2)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 인지 여부

- 신용카드 공제율(15%)과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30%) 차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두 부분의 공제율 차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5.4%로 높게 나타남
- 연말정산 경험이 11회 이상의 응답자 층에서는 90.0%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 비중이 높았던 19~29세 연령대의 공제율 차이 인지도는 80.1%로 타 연령대 대비 낮게 나타남

[그림 VIII-4]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 인지 여부

(n= 2,500, 단위: %)



<표 VIII-49>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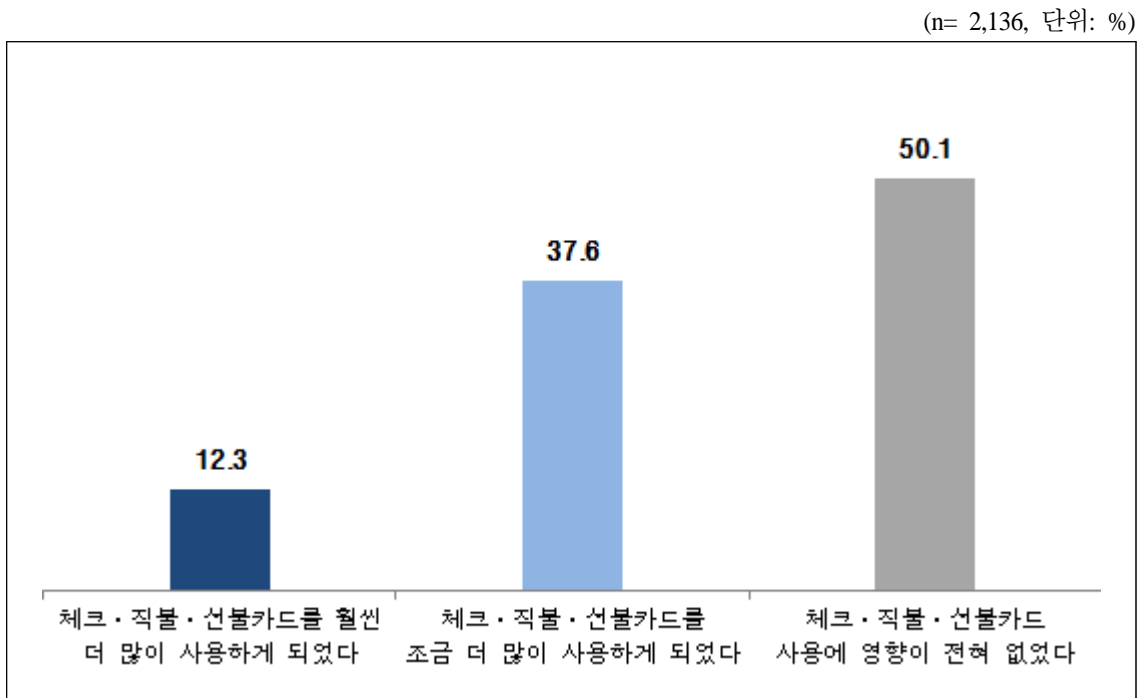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85.4	14.6
성별	남성	(1,625)	86.6	13.4
	여성	(875)	83.2	16.8
연령대	19~29세	(166)	80.1	19.9
	30대	(614)	88.3	11.7
	40대	(736)	81.8	18.2
	50대 이상	(984)	87.3	12.7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76.0	24.0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82.6	17.4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90.0	10.0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94.6	5.4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84.4	15.6
	1억 2,000만원 이상	(38)	76.3	23.7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75.3	24.7
	보통(6~10회)	(638)	83.5	16.5
	많음(11회 이상)	(1,365)	90.0	10.0
결혼 여부	기혼	(1,876)	87.1	12.9
	미혼	(624)	80.4	19.6
가족 형태	부부	(233)	88.8	11.2
	2세대 가구	(1,695)	86.0	14.0
	3세대 가구	(228)	82.9	17.1
	1인 가구	(271)	83.4	16.6
	기타	(73)	76.7	23.3

3)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미친 영향

-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수준인 50.1%가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함
 -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37.6%,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12.3%로 ‘영향이 전혀 없었다’(50.1%) 대비 낮게 조사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말정산 경험이 많을수록 공제율 차이에 따른 카드 사용 행태의 영향이 적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남

[그림 VIII-5]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미친 영향



〈표 VIII-50〉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차이가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미친 영향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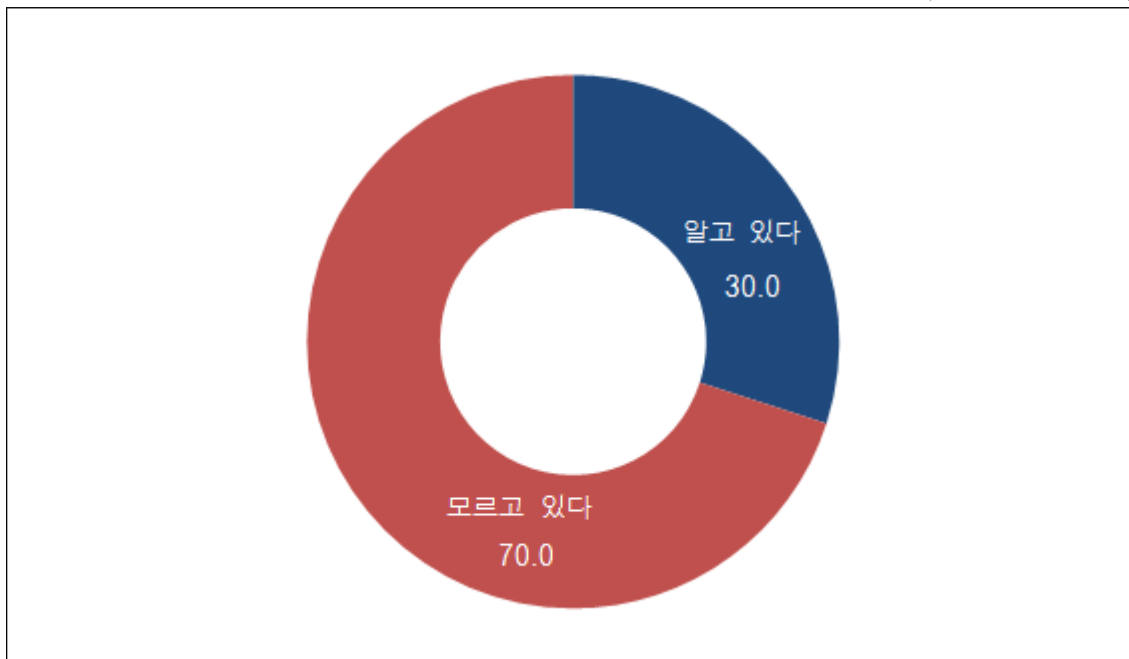
		사례수	체크·직불·선불카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체크·직불·선불카드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
전 체		(2,136)	12.3	37.6	50.1
성별	남성	(1,408)	12.0	36.9	51.1
	여성	(728)	12.9	39.0	48.1
연령대	19~29세	(133)	20.3	44.4	35.3
	30대	(542)	13.5	39.9	46.7
	40대	(602)	11.3	37.2	51.5
	50대 이상	(859)	11.1	35.4	53.6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184)	14.1	33.2	52.7
	2,000만원~5,000만 미만	(980)	13.5	33.7	52.9
	5,000만원~7,000만 미만	(557)	10.2	43.6	46.1
	7,000만원~1억원 미만	(332)	12.3	42.8	44.9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54)	11.1	33.3	55.6
	1억 2,000만원 이상	(29)	3.4	31.0	65.5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374)	16.3	42.8	40.9
	보통(6~10회)	(533)	13.3	36.8	49.9
	많음(11회 이상)	(1,229)	10.7	36.4	53.0
결혼 여부	기혼	(1,634)	11.3	37.8	50.9
	미혼	(502)	15.5	37.1	47.4
가족 형태	부부	(207)	9.7	32.9	57.5
	2세대 가구	(1,458)	12.3	38.7	49.0
	3세대 가구	(189)	12.2	35.4	52.4
	1인 가구	(226)	14.6	38.9	46.5
	기타	(56)	14.3	28.6	57.1

4)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여부

-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 40% 공제율의 추가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70.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함
- 연령대별로 분석했을 때, 19~29세 연령층은 33.1%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40% 이상의 인지도를 보임

[그림 VIII-6]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n= 2,500, 단위: %)



<표 VIII-51> 도서·공연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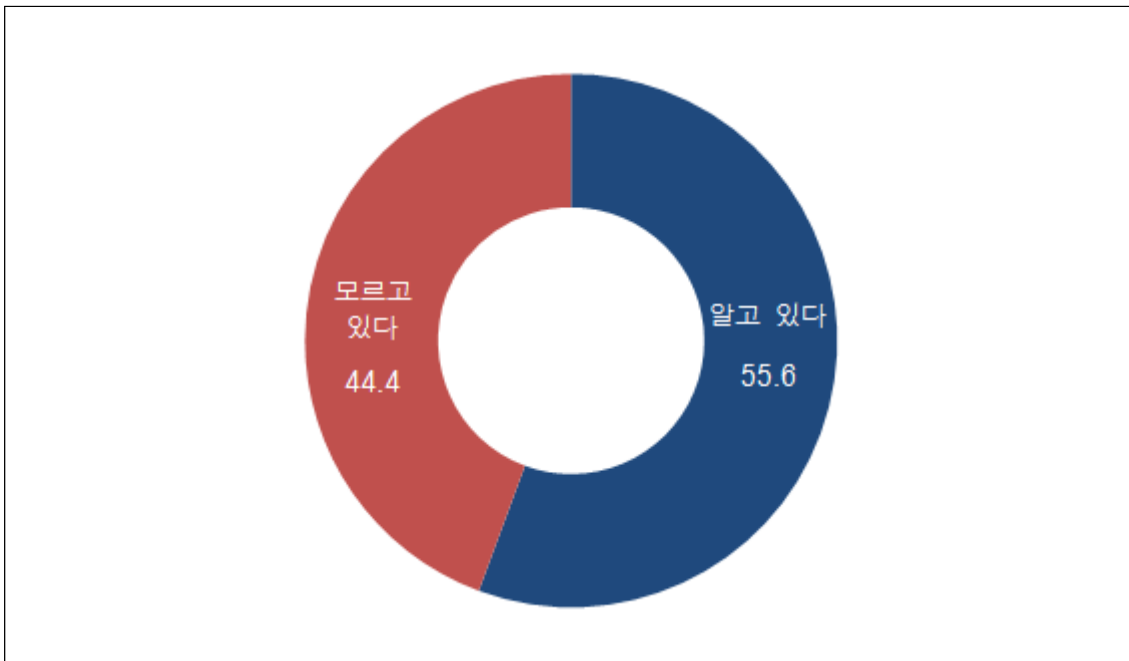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30.0	70.0
성별	남성	(1,625)	30.2	69.8
	여성	(875)	29.6	70.4
연령대	19~29세	(166)	33.1	66.9
	30대	(614)	29.2	70.8
	40대	(736)	28.4	71.6
	50대 이상	(984)	31.1	68.9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22.3	77.7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23.5	76.5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40.7	59.3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34.5	65.5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42.2	57.8
	1억 2,000만원 이상	(38)	42.1	57.9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29.8	70.2
	보통(6~10회)	(638)	28.7	71.3
	많음(11회 이상)	(1,365)	30.6	69.4
결혼 여부	기혼	(1,876)	31.6	68.4
	미혼	(624)	25.2	74.8
가족 형태	부부	(233)	28.8	71.2
	2세대 가구	(1,695)	30.2	69.8
	3세대 가구	(228)	33.8	66.2
	1인 가구	(271)	27.3	72.7
	기타	(73)	26.0	74.0

5)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40% 공제율의 추가공제혜택은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특히,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의 응답자 층에서 65%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임

[그림 VIII-7]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n= 2,500, 단위: %)



<표 VIII-52>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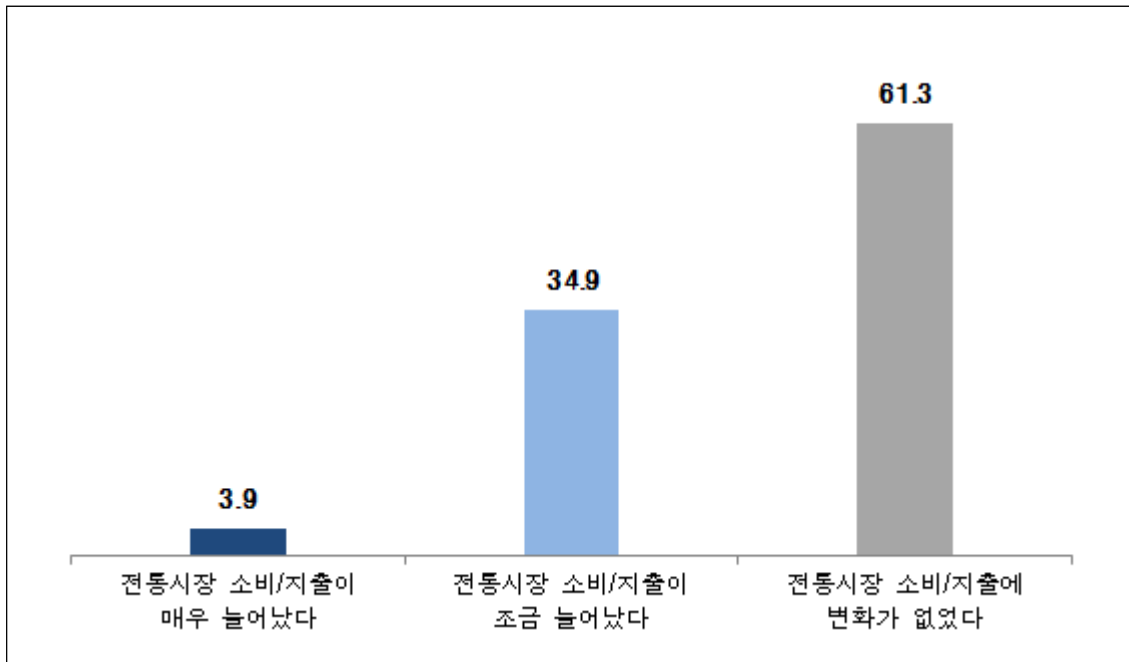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55.6	44.4
성별	남성	(1,625)	57.3	42.7
	여성	(875)	52.6	47.4
연령대	19~29세	(166)	55.4	44.6
	30대	(614)	54.4	45.6
	40대	(736)	52.9	47.1
	50대 이상	(984)	58.5	41.5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36.0	64.0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48.7	51.3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67.2	32.8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69.2	30.8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65.6	34.4
	1억 2,000만원 이상	(38)	68.4	31.6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44.5	55.5
	보통(6~10회)	(638)	50.0	50.0
	많음(11회 이상)	(1,365)	62.3	37.7
결혼 여부	기혼	(1,876)	58.4	41.6
	미혼	(624)	47.3	52.7
가족 형태	부부	(233)	52.4	47.6
	2세대 가구	(1,695)	57.6	42.4
	3세대 가구	(228)	58.3	41.7
	1인 가구	(271)	49.4	50.6
	기타	(73)	34.2	65.8

6)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을 알고 있는 응답자에게 추가공제혜택이 전통시장 사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61.3%가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함
 - ‘조금 늘어났다’는 34.9%, ‘매우 늘어났다’는 3.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말정산을 11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가 10회 이하로 경험한 응답자보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VIII-8]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n= 1,391, 단위: %)



<표 VIII-53>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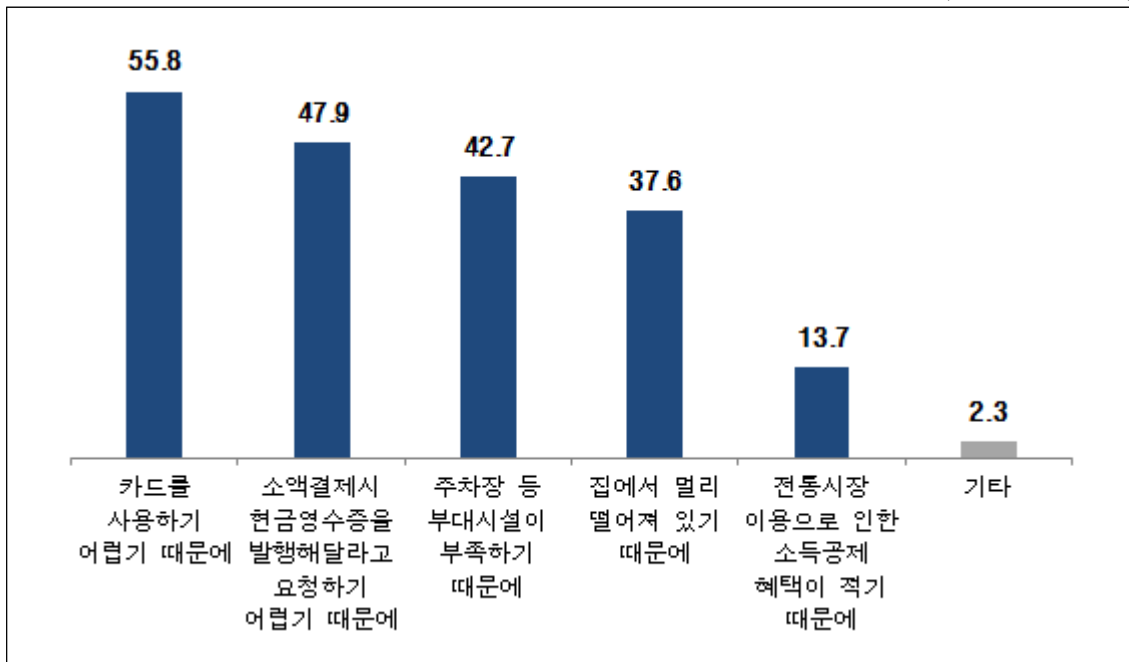
		사례수	전통시장 사용이 매우 늘어났다	전통시장 사용이 조금 늘어났다	전통시장 사용에 변화가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
전 체		(1,391)	3.9	34.9	61.3
성별	남성	(931)	3.7	35.7	60.7
	여성	(460)	4.3	33.3	62.4
연령대	19~29세	(92)	7.6	40.2	52.2
	30대	(334)	4.2	30.8	65.0
	40대	(389)	4.1	33.9	62.0
	50대 이상	(576)	3.0	37.0	60.1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87)	4.6	29.9	65.5
	2,000만원~5,000만 미만	(577)	2.8	33.3	64.0
	5,000만원~7,000만 미만	(416)	4.8	38.9	56.3
	7,000만원~1억원 미만	(243)	4.1	35.8	60.1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42)	7.1	28.6	64.3
	1억 2,000만원 이상	(26)	3.8	23.1	73.1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221)	6.3	34.8	58.8
	보통(6~10회)	(319)	4.1	37.3	58.6
	많음(11회 이상)	(851)	3.2	34.0	62.9
결혼 여부	기혼	(1,096)	3.8	35.4	60.8
	미혼	(295)	4.1	32.9	63.1
가족 형태	부부	(122)	1.6	28.7	69.7
	2세대 가구	(977)	3.6	36.6	59.8
	3세대 가구	(133)	6.8	31.6	61.7
	1인 가구	(134)	5.2	30.6	64.2
	기타	(25)	4.0	36.0	60.0

7) 전통시장 미사용 이유

- 추가공제혜택이 전통시장 사용에 영향이 없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의 응답 비율은 13.7%로 낮게 나타남
 - 그 외에 ‘소액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이 어렵기 때문에’(47.9%),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42.7%)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3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가 13.7%로 낮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결제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그림 VIII-9] 전통시장 미사용 이유 - 중복응답

(n= 852, 단위: %)



<표 VIII-54> 전통시장 미사용 이유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이 어려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체		(852)	55.8	47.9	42.7
성별	남성	(565)	57.3	46.9	45.1
	여성	(287)	52.6	49.8	38.0
연령대	19~29세	(48)	50.0	70.8	20.8
	30대	(217)	60.4	47.9	39.6
	40대	(241)	53.1	43.2	44.0
	50대 이상	(346)	55.5	48.0	46.8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57)	56.1	57.9	24.6
	2,000만원~5,000만 미만	(369)	58.3	49.9	38.2
	5,000만원~7,000만 미만	(234)	55.6	41.9	47.9
	7,000만원~1억원 미만	(146)	50.7	50.7	50.7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27)	55.6	40.7	51.9
	1억 2,000만원 이상	(19)	47.4	42.1	47.4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130)	58.5	58.5	30.8
	보통(6~10회)	(187)	52.4	49.7	44.9
	많음(11회 이상)	(535)	56.3	44.7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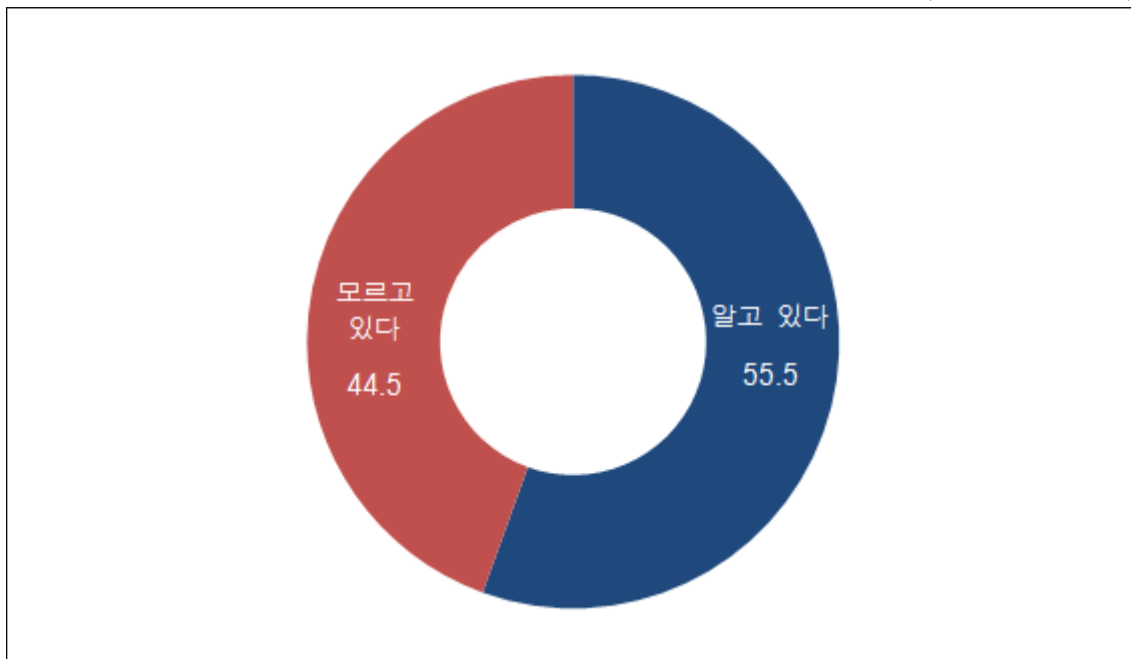
		사례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적음	기타
전 체		(852)	37.6	13.7	2.3
성별	남성	(565)	33.6	14.3	2.7
	여성	(287)	45.3	12.5	1.7
연령대	19~29세	(48)	37.5	14.6	6.3
	30대	(217)	35.9	13.8	2.3
	40대	(241)	44.0	12.0	3.7
	50대 이상	(346)	34.1	14.7	0.9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57)	40.4	19.3	1.8
	2,000만원~5,000만 미만	(369)	37.7	13.6	2.4
	5,000만원~7,000만 미만	(234)	39.3	13.2	2.1
	7,000만원~1억원 미만	(146)	34.2	11.0	2.7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27)	29.6	22.2	0.0
	1억 2,000만원 이상	(19)	42.1	15.8	5.3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130)	32.3	16.9	3.1
	보통(6~10회)	(187)	37.4	15.0	0.5
	많음(11회 이상)	(535)	38.9	12.5	2.8

8)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40% 공제율의 추가공제혜택은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특히 5,0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 6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연말정산 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 내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VIII-10]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n= 2,500, 단위: %)



<표 VIII-55>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 인지 여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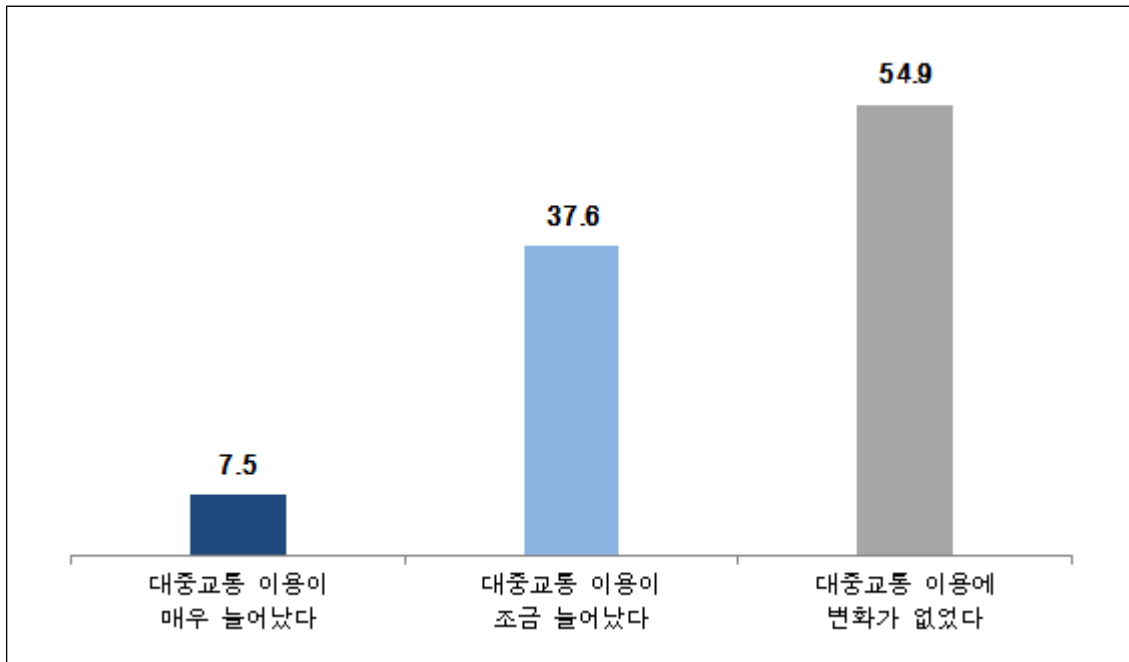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55.5	44.5
성별	남성	(1,625)	57.8	42.2
	여성	(875)	51.3	48.7
연령대	19~29세	(166)	54.2	45.8
	30대	(614)	54.7	45.3
	40대	(736)	53.3	46.7
	50대 이상	(984)	57.9	42.1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34.3	65.7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48.3	51.7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68.7	31.3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68.7	31.3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62.5	37.5
	1억 2,000만원 이상	(38)	68.4	31.6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46.1	53.9
	보통(6~10회)	(638)	50.5	49.5
	많음(11회 이상)	(1,365)	61.3	38.7
결혼 여부	기혼	(1,876)	58.0	42.0
	미혼	(624)	48.1	51.9
가족 형태	부부	(233)	51.9	48.1
	2세대 가구	(1,695)	57.6	42.4
	3세대 가구	(228)	56.6	43.4
	1인 가구	(271)	47.6	52.4
	기타	(73)	45.2	54.8

9)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을 알고 있는 응답자에게 추가공제혜택이 대중교통 이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54.9%가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함
 - ‘조금 늘어났다’는 37.6%, ‘매우 늘어났다’는 7.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경험이 많을수록 추가공제혜택에 따른 소비/지출 영향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VIII-11]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n= 1,388, 단위: %)



<표 VIII-56>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혜택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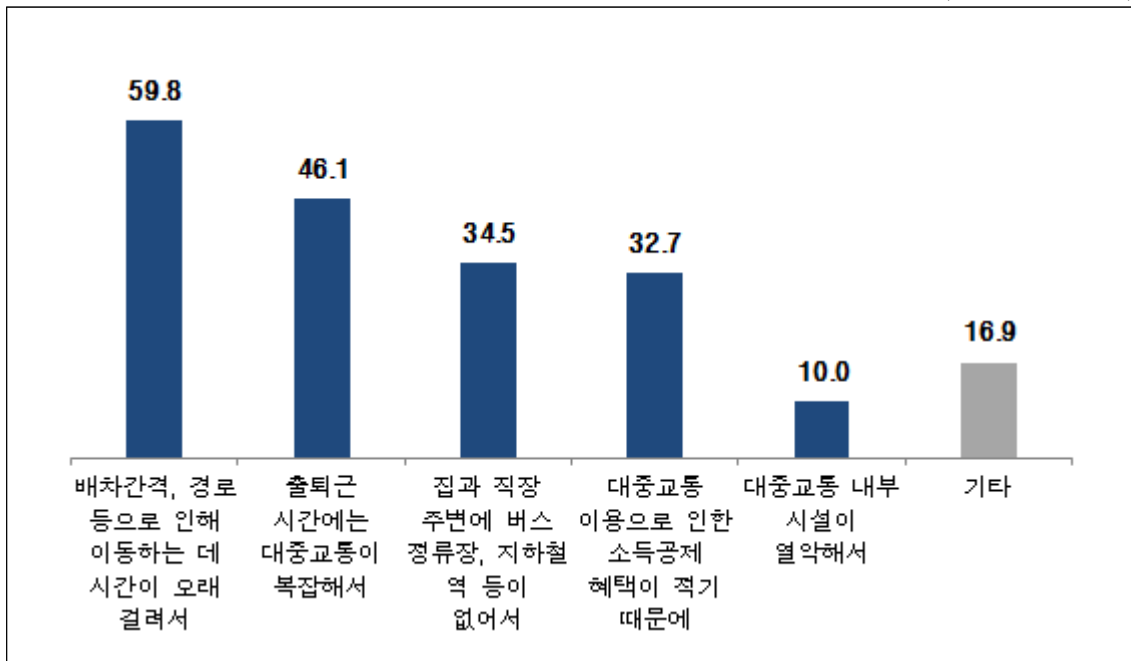
		사례수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늘어났다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늘어났다	대중교통 이용에 변화가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
전 체		(1,388)	7.5	37.6	54.9
성별	남성	(939)	7.5	38.4	54.1
	여성	(449)	7.6	35.9	56.6
연령대	19~29세	(90)	20.0	41.1	38.9
	30대	(336)	6.5	36.0	57.4
	40대	(392)	7.9	36.2	55.9
	50대 이상	(570)	5.8	38.9	55.3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83)	6.0	38.6	55.4
	2,000만원~5,000만 미만	(573)	7.2	36.6	56.2
	5,000만원~7,000만 미만	(425)	9.2	39.5	51.3
	7,000만원~1억원 미만	(241)	6.2	37.8	56.0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40)	10.0	32.5	57.5
	1억 2,000만원 이상	(26)	0.0	30.8	69.2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229)	13.1	44.5	42.4
	보통(6~10회)	(322)	6.2	41.0	52.8
	많음(11회 이상)	(837)	6.5	34.4	59.1
결혼 여부	기혼	(1,088)	7.0	37.9	55.1
	미혼	(300)	9.3	36.7	54.0
가족 형태	부부	(121)	5.0	33.1	62.0
	2세대 가구	(976)	6.9	38.6	54.5
	3세대 가구	(129)	10.9	34.9	54.3
	1인 가구	(129)	10.9	35.7	53.5
	기타	(33)	9.1	42.4	48.5

10) 대중교통 미이용 이유

- 추가공제혜택이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이 없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배차간격, 경로 등으로 인해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복잡해서’(46.1%), ‘집과 직장 주변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이 없어서’(34.5%)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특히,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라는 의견은 32.7%로 중간 정도 수준의 응답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VIII-12] 대중교통 미이용 이유 - 중복응답

(n= 762, 단위: %)



<표 VIII-57> 대중교통 미이용 이유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복잡해서	주변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이 없어서
전 체		(762)	59.8	46.1	34.5
성별	남성	(508)	59.6	48.4	35.8
	여성	(254)	60.2	41.3	31.9
연령대	19~29세	(35)	57.1	40.0	31.4
	30대	(193)	52.3	43.0	37.8
	40대	(219)	61.6	45.7	32.9
	50대 이상	(315)	63.5	48.9	34.0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46)	65.2	41.3	34.8
	2,000만원~5,000만 미만	(322)	64.0	45.7	30.1
	5,000만원~7,000만 미만	(218)	60.6	44.5	40.8
	7,000만원~1억원 미만	(135)	45.9	48.9	34.8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23)	73.9	52.2	43.5
	1억 2,000만원 이상	(18)	50.0	55.6	22.2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97)	64.9	42.3	30.9
	보통(6~10회)	(170)	52.4	44.7	35.3
	많음(11회 이상)	(495)	61.4	47.3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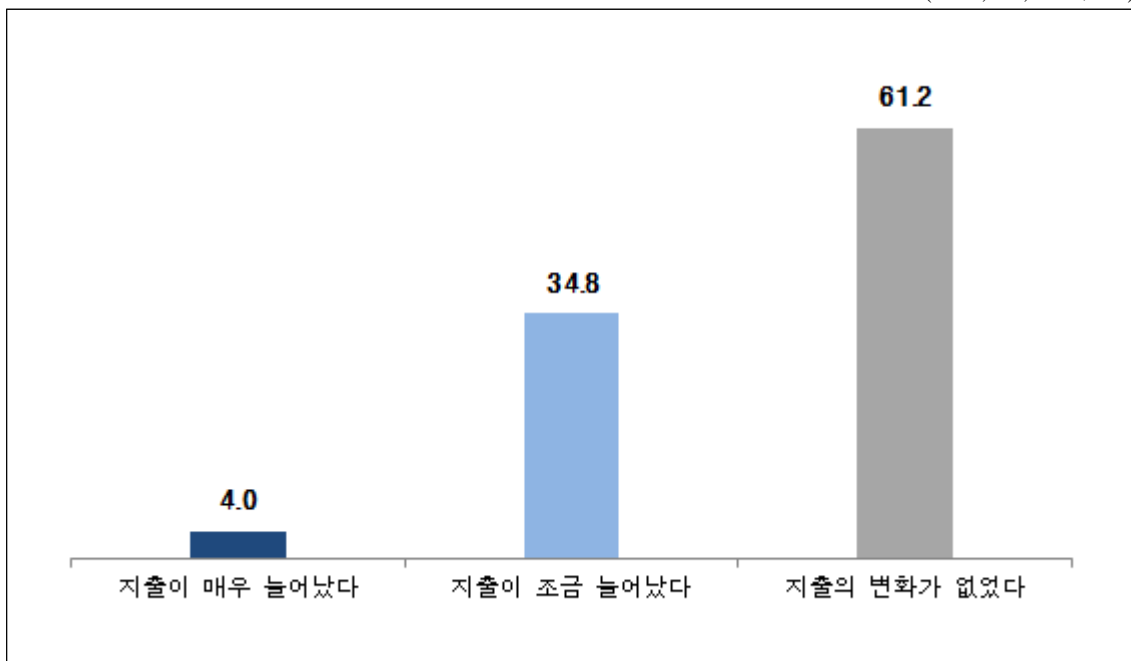
		사례수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	대중교통 내부 시설이 열악해서	기타
전 체		(762)	32.7	10.0	16.9
성별	남성	(508)	31.9	8.9	15.4
	여성	(254)	34.3	12.2	20.1
연령대	19~29세	(35)	28.6	14.3	28.6
	30대	(193)	33.7	9.8	23.3
	40대	(219)	35.2	8.2	16.4
	50대 이상	(315)	30.8	10.8	12.1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46)	30.4	10.9	17.4
	2,000만원~5,000만 미만	(322)	30.4	9.6	20.2
	5,000만원~7,000만 미만	(218)	32.6	9.6	11.9
	7,000만원~1억원 미만	(135)	40.0	11.1	19.3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23)	17.4	4.3	8.7
	1억 2,000만원 이상	(18)	44.4	16.7	11.1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97)	34.0	10.3	17.5
	보통(6~10회)	(170)	32.9	9.4	25.3
	많음(11회 이상)	(495)	32.3	10.1	13.9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전반적인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61.2%가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공제혜택에 대한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연말정산 경험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제도가 전반적인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VIII-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n= 2,500, 단위: %)



<표 VIII-5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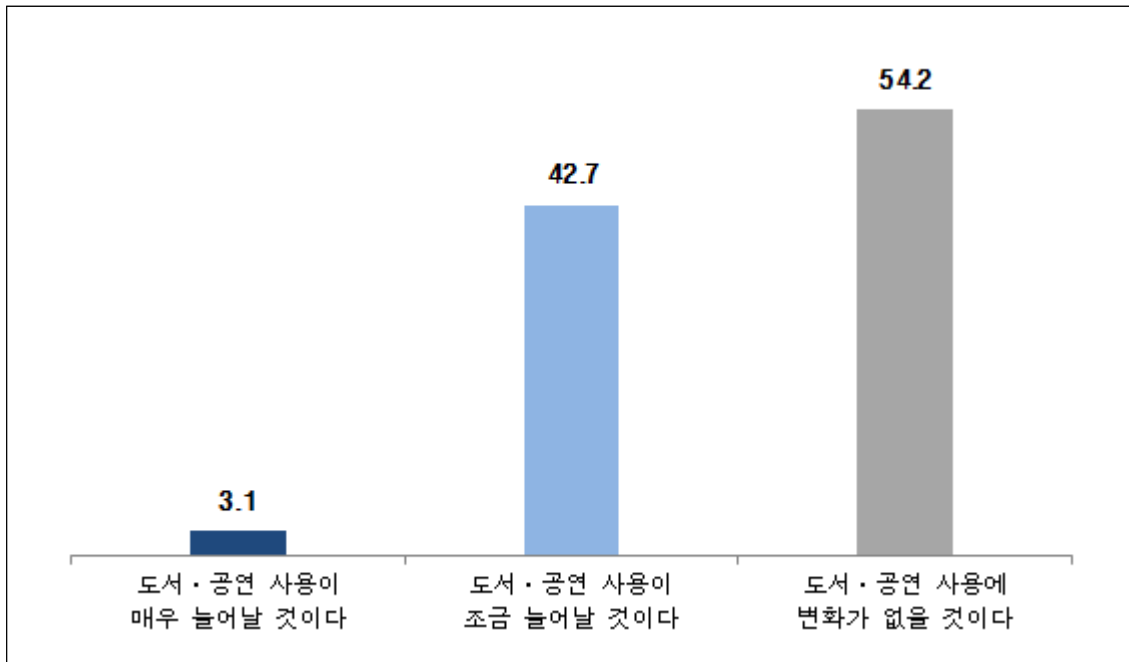
		사례수	지출이 매우 늘어났다	지출이 조금 늘어났다	지출의 변화가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
전 체		(2,500)	4.0	34.8	61.2
성별	남성	(1,625)	3.6	35.3	61.2
	여성	(875)	4.7	34.1	61.3
연령대	19~29세	(166)	5.4	44.6	50.0
	30대	(614)	4.7	31.4	63.8
	40대	(736)	3.5	33.3	63.2
	50대 이상	(984)	3.6	36.5	60.0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4.5	28.5	66.9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3.4	32.0	64.6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4.8	41.8	53.3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3.4	36.5	60.1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6.3	39.1	54.7
	1억 2,000만원 이상	(38)	5.3	26.3	68.4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4.8	39.8	55.3
	보통(6~10회)	(638)	4.5	33.5	61.9
	많음(11회 이상)	(1,365)	3.4	33.6	63.0
결혼 여부	기혼	(1,876)	4.1	35.8	60.2
	미혼	(624)	3.7	32.1	64.3
가족 형태	부부	(233)	2.1	28.8	69.1
	2세대 가구	(1,695)	4.2	36.8	59.0
	3세대 가구	(228)	7.0	36.8	56.1
	1인 가구	(271)	1.1	29.5	69.4
	기타	(73)	4.1	23.3	72.6

12)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의 소비/지출 영향

- 2018년도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이 소비/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 54.2%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 응답자도 4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특히 연령대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연말정산 경험이 많을수록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실제 도서·공연 부분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VIII-14]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의 소비/지출 영향

(n= 2,500, 단위: %)



<표 VIII-59> 신설된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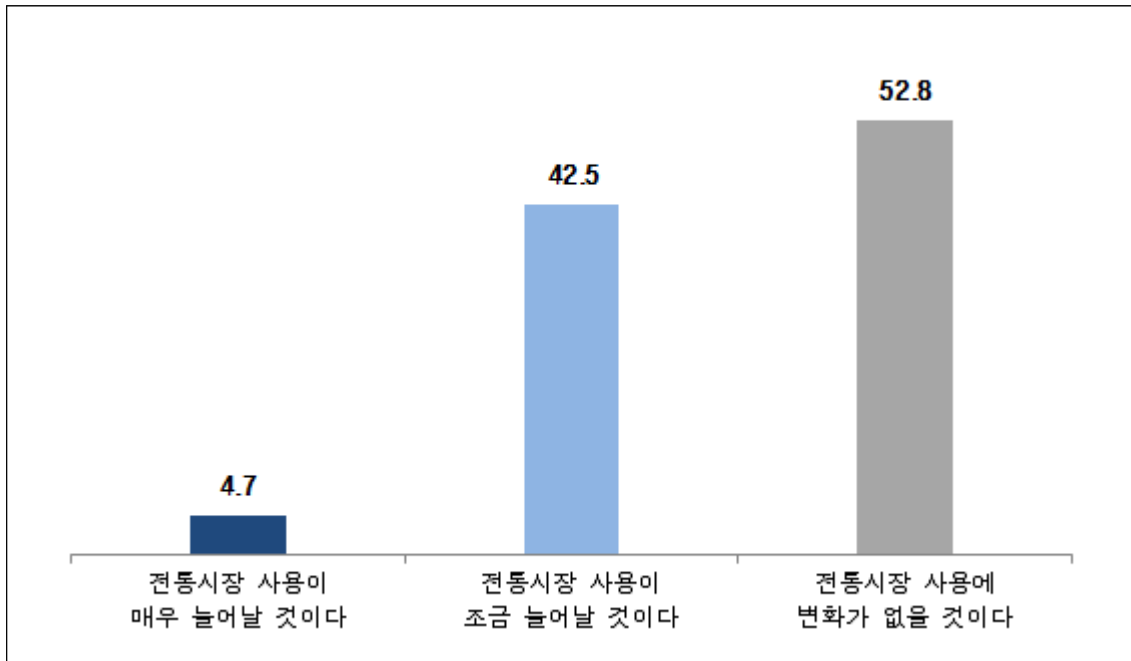
		사례수	도서·공연 사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도서·공연 사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도서·공연 사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 체		(2,500)	3.1	42.7	54.2
성별	남성	(1,625)	2.6	41.2	56.1
	여성	(875)	4.0	45.4	50.6
연령대	19~29세	(166)	6.6	47.6	45.8
	30대	(614)	3.9	43.3	52.8
	40대	(736)	2.7	41.4	55.8
	50대 이상	(984)	2.3	42.4	55.3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2.5	40.9	56.6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2.4	42.2	55.3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3.7	46.2	50.1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4.8	42.5	52.7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4.7	31.3	64.1
	1억 2,000만원 이상	(38)	0.0	31.6	68.4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4.8	45.7	49.5
	보통(6~10회)	(638)	2.7	42.8	54.5
	많음(11회 이상)	(1,365)	2.7	41.5	55.8
결혼 여부	기혼	(1,876)	2.9	43.0	54.1
	미혼	(624)	3.7	41.8	54.5
가족 형태	부부	(233)	1.7	31.3	67.0
	2세대 가구	(1,695)	3.2	44.6	52.2
	3세대 가구	(228)	4.4	40.4	55.3
	1인 가구	(271)	3.0	42.8	54.2
	기타	(73)	1.4	41.1	57.5

13)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30% → 40%)이 소비/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 52.8%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 응답자도 4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VIII-15]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n= 2,500, 단위: %)



<표 VIII-6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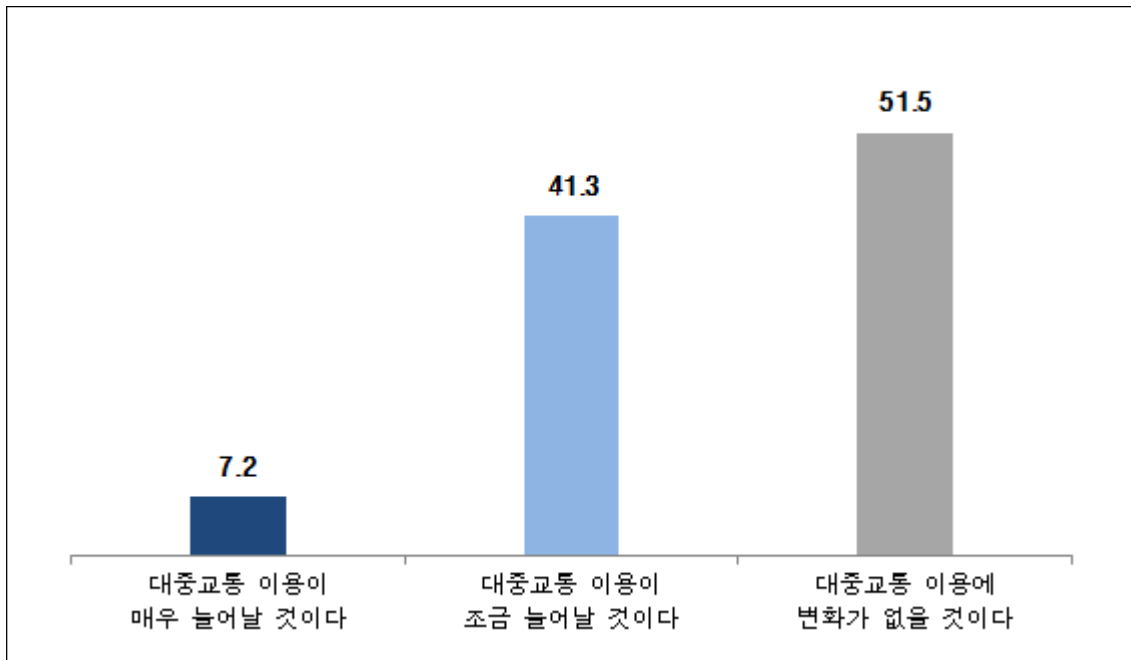
		사례수	전통시장 사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전통시장 사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전통시장 사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 체		(2,500)	4.7	42.5	52.8
성별	남성	(1,625)	4.2	41.8	54.0
	여성	(875)	5.6	43.8	50.6
연령대	19~29세	(166)	3.6	51.8	44.6
	30대	(614)	4.9	36.2	59.0
	40대	(736)	3.4	41.4	55.2
	50대 이상	(984)	5.7	45.6	48.7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5.4	40.9	53.7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4.3	39.5	56.2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5.0	46.0	48.9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5.1	48.1	46.7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6.3	43.8	50.0
	1억 2,000만원 이상	(38)	0.0	31.6	68.4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5.2	46.3	48.5
	보통(6~10회)	(638)	3.4	40.9	55.6
	많음(11회 이상)	(1,365)	5.1	41.8	53.1
결혼 여부	기혼	(1,876)	5.2	43.9	51.0
	미혼	(624)	3.2	38.3	58.5
가족 형태	부부	(233)	3.4	39.9	56.7
	2세대 가구	(1,695)	5.0	42.8	52.2
	3세대 가구	(228)	5.7	49.6	44.7
	1인 가구	(271)	3.0	39.5	57.6
	기타	(73)	4.1	31.5	64.4

14)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30% → 40%)이 소비/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 51.5%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한 응답자도 4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특히, 연말정산 경험이 많을수록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이 실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VIII-16]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n= 2,500, 단위: %)



<표 VIII-61>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인상의 소비/지출 영향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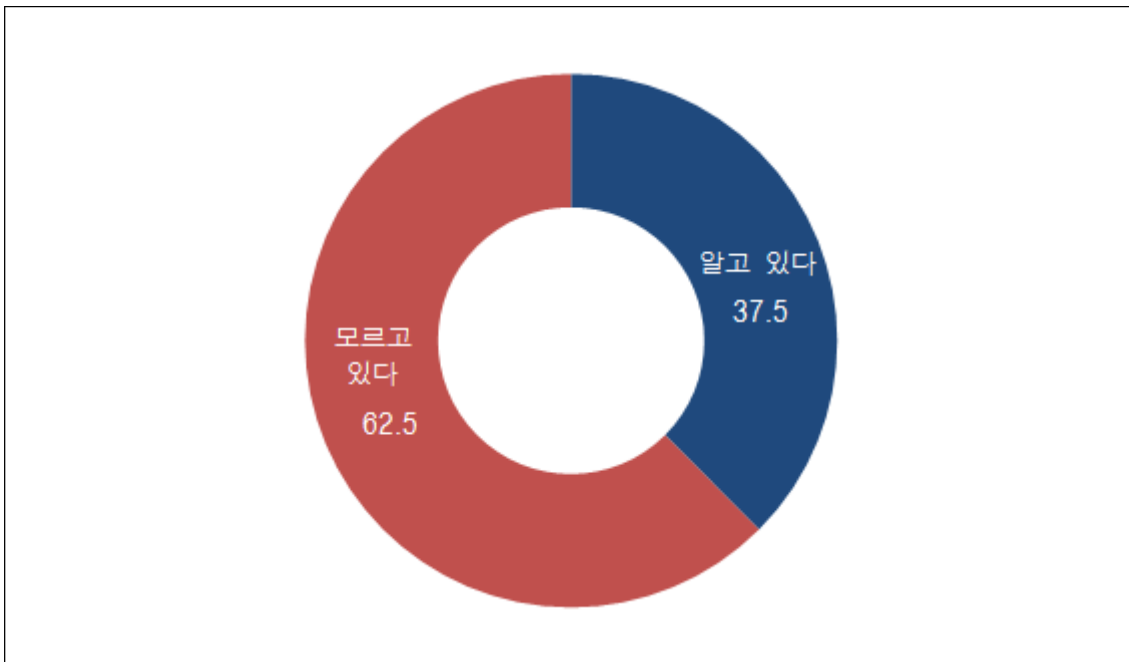
		사례수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 체		(2,500)	7.2	41.3	51.5
성별	남성	(1,625)	6.8	39.9	53.3
	여성	(875)	8.0	43.9	48.1
연령대	19~29세	(166)	9.0	48.2	42.8
	30대	(614)	8.5	37.9	53.6
	40대	(736)	6.7	40.2	53.1
	50대 이상	(984)	6.6	43.0	50.4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7.0	44.2	48.8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6.0	40.7	53.3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8.4	43.0	48.6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10.3	40.2	49.6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7.8	35.9	56.3
	1억 2,000만원 이상	(38)	0.0	31.6	68.4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9.1	46.3	44.7
	보통(6~10회)	(638)	7.7	41.5	50.8
	많음(11회 이상)	(1,365)	6.4	39.3	54.3
결혼 여부	기혼	(1,876)	7.4	41.6	51.1
	미혼	(624)	6.9	40.4	52.7
가족 형태	부부	(233)	6.0	39.9	54.1
	2세대 가구	(1,695)	6.8	42.1	51.2
	3세대 가구	(228)	11.8	39.9	48.2
	1인 가구	(271)	7.7	39.1	53.1
	기타	(73)	5.5	39.7	54.8

15)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인지 여부

-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변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가 62.5%로 ‘알고 있다’(37.5%)보다 높게 조사됨
 - 특히, 공제한도 축소 범위에 해당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공제한도 금액 축소 내용에 대해 4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임

[그림 VIII-17]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인지 여부

(n= 2,500, 단위: %)



<표 VIII-62> 고소득자 공제한도 금액 축소 인지 여부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37.5	62.5
성별	남성	(1,625)	38.7	61.3
	여성	(875)	35.3	64.7
연령대	19~29세	(166)	39.2	60.8
	30대	(614)	35.0	65.0
	40대	(736)	36.5	63.5
	50대 이상	(984)	39.5	60.5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26.4	73.6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29.8	70.2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49.3	50.7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47.0	53.0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51.6	48.4
	1억 2,000만원 이상	(38)	44.7	55.3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32.8	67.2
	보통(6~10회)	(638)	34.0	66.0
	많음(11회 이상)	(1,365)	40.9	59.1
결혼 여부	기혼	(1,876)	40.4	59.6
	미혼	(624)	29.0	71.0
가족 형태	부부	(233)	38.6	61.4
	2세대 가구	(1,695)	38.5	61.5
	3세대 가구	(228)	43.0	57.0
	1인 가구	(271)	31.7	68.3
	기타	(73)	16.4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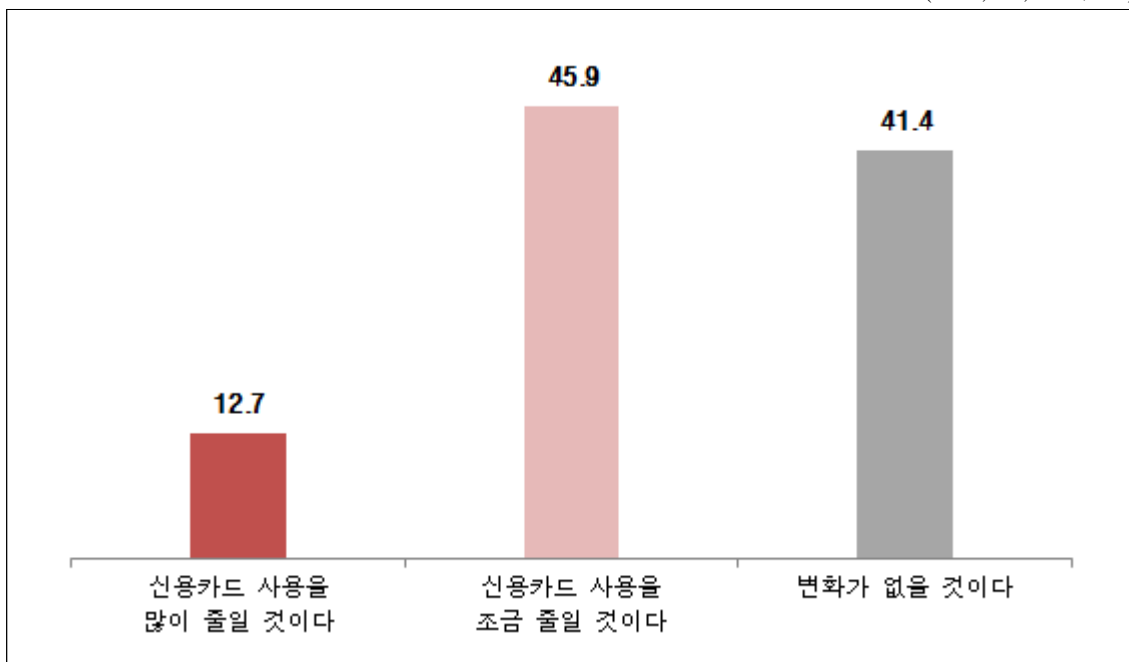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향

1)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 신용카드 공제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현행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물어본 결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것이다’라는 응답이 58.6%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보다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VIII-18]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n= 2,500, 단위: %)



<표 VIII-63>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 제도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영향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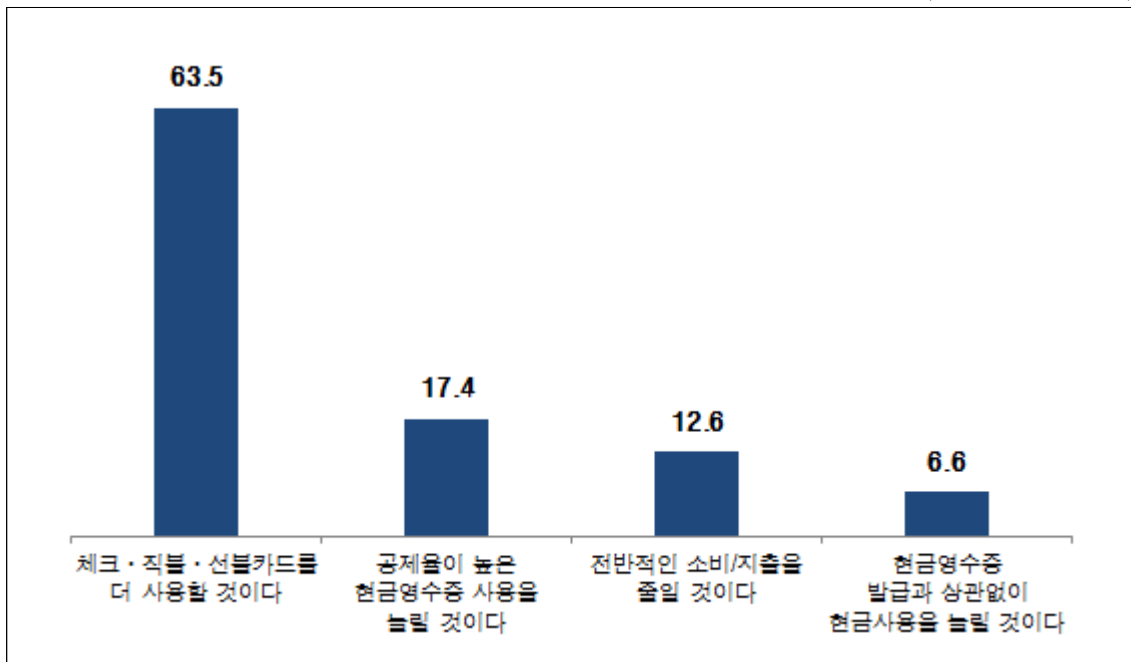
		사례수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줄일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을 조금 줄일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 체		(2,500)	12.7	45.9	41.4
성별	남성	(1,625)	12.3	43.5	44.2
	여성	(875)	13.4	50.3	36.3
연령대	19~29세	(166)	17.5	48.2	34.3
	30대	(614)	13.0	45.9	41.0
	40대	(736)	12.1	46.2	41.7
	50대 이상	(984)	12.1	45.2	42.7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12.0	50.0	38.0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12.6	44.4	43.1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12.8	48.0	39.3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12.5	49.6	37.9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21.9	26.6	51.6
	1억 2,000만원 이상	(38)	5.3	31.6	63.2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15.3	48.3	36.4
	보통(6~10회)	(638)	11.4	47.0	41.5
	많음(11회 이상)	(1,365)	12.3	44.5	43.2
결혼 여부	기혼	(1,876)	12.4	46.6	41.0
	미혼	(624)	13.6	43.6	42.8
가족 형태	부부	(233)	13.7	44.2	42.1
	2세대 가구	(1,695)	12.0	47.1	40.9
	3세대 가구	(228)	18.4	43.4	38.2
	1인 가구	(271)	10.7	45.8	43.5
	기타	(73)	13.7	31.5	54.8

2)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방법

-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용을 줄일지 물어본 결과, ‘체크·직불·선불카드를 더 사용할 것이다’라고 한 응답자가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외에 ‘현금영수증 사용’은 17.4%, ‘전반적 소비/지출 축소’는 12.6%, ‘현금영수증 발급 상관없는 현금 사용’은 6.6%로 조사됨
 - 연령대별로 분석했을 때, 19~29세 응답자 층에서 ‘체크·직불·선불카드를 더 사용할 것이다’는 응답 비율(55.0%)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상관없는 현금사용’ 응답 비율은 11.9%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VIII-19]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방법

(n= 1,464, 단위: %)



<표 VIII-64>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방법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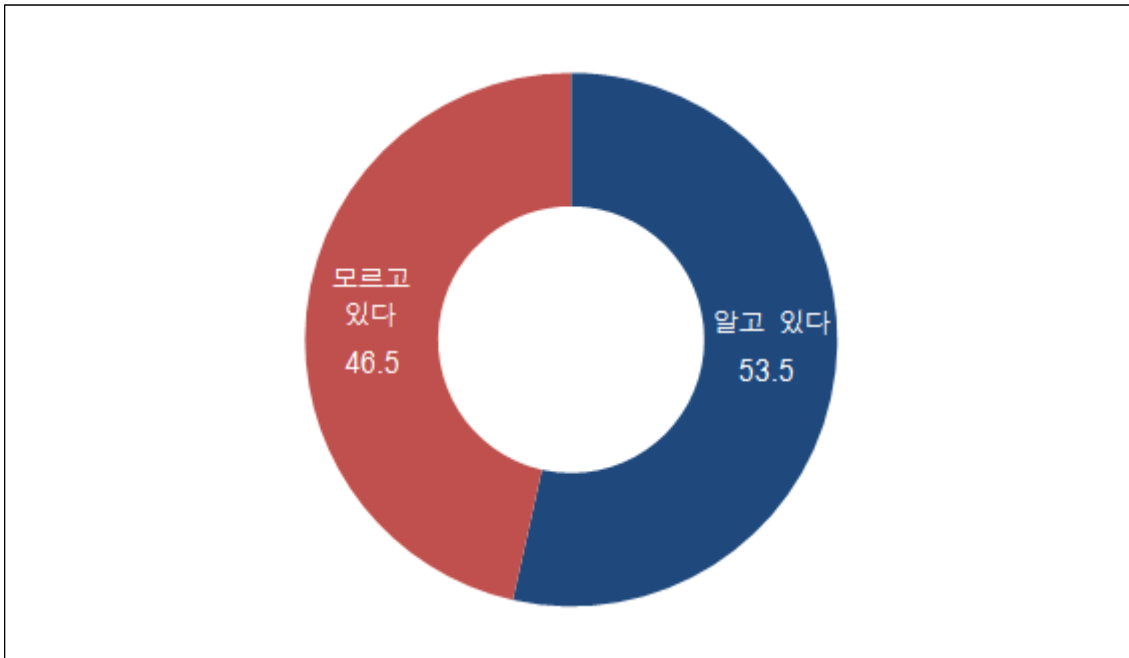
		사례수	체크-직불-선불 카드를 더 사용할 것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릴 것이다	전반적인 소비/지출을 줄일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상관없이 현금 사용을 늘릴 것이다
전 체		(1,464)	63.5	17.4	12.6	6.6
성별	남성	(907)	64.3	17.9	11.5	6.4
	여성	(557)	62.1	16.7	14.4	6.8
연령대	19~29세	(109)	55.0	17.4	15.6	11.9
	30대	(362)	64.9	16.0	11.9	7.2
	40대	(429)	62.5	17.2	14.7	5.6
	50대 이상	(564)	64.9	18.4	10.8	5.9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150)	66.0	16.0	13.3	4.7
	2,000만원~5,000만 미만	(675)	65.2	17.0	12.1	5.6
	5,000만원~7,000만 미만	(376)	58.0	18.9	14.6	8.5
	7,000만원~1억원 미만	(218)	64.2	17.4	11.9	6.4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31)	77.4	12.9	3.2	6.5
	1억 2,000만원 이상	(14)	57.1	21.4	0.0	21.4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316)	56.6	16.5	14.6	12.3
	보통(6~10회)	(373)	65.1	16.1	12.1	6.7
	많음(11회 이상)	(775)	65.4	18.5	12.0	4.1
결혼 여부	기혼	(1,107)	64.6	17.5	12.0	5.9
	미혼	(357)	59.9	17.1	14.3	8.7
가족 형태	부부	(135)	74.8	11.9	10.4	3.0
	2세대 가구	(1,002)	63.1	17.8	12.6	6.6
	3세대 가구	(141)	56.7	20.6	12.8	9.9
	1인 가구	(153)	64.7	16.3	12.4	6.5
	기타	(33)	51.5	21.2	21.2	6.1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르고 있다’(46.5%)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연말정산 경험이 11회 이상의 응답자 층에서 60.9%의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임

[그림 VIII-2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n= 2,500, 단위: %)



<표 VIII-6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인지 여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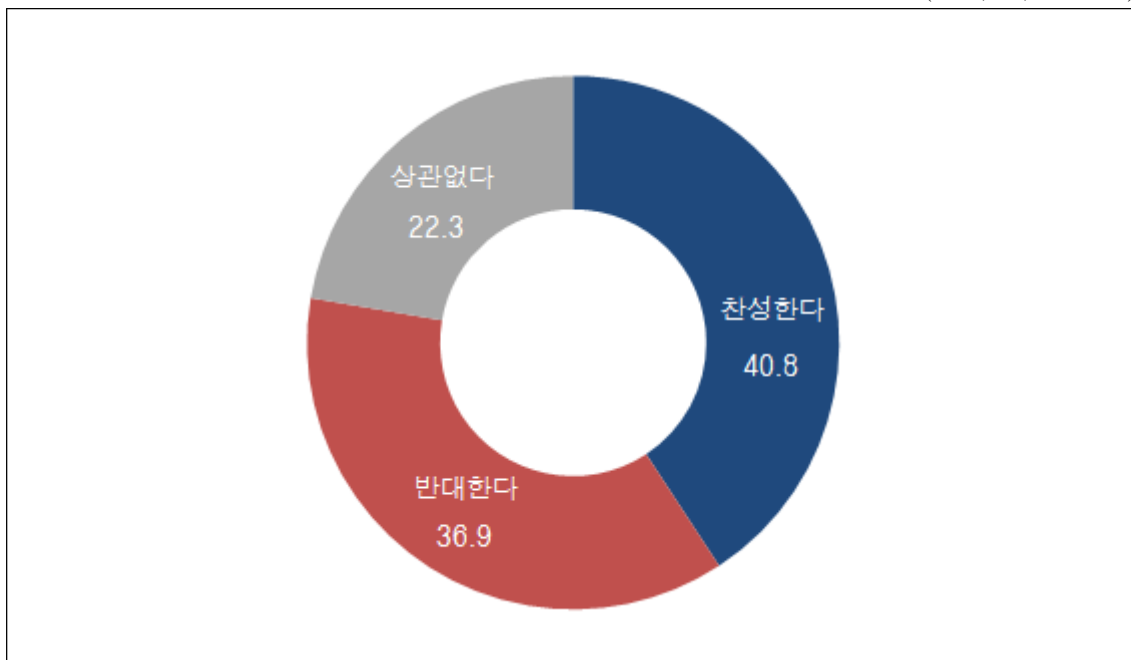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53.5	46.5
성별	남성	(1,625)	58.0	42.0
	여성	(875)	45.1	54.9
연령대	19~29세	(166)	52.4	47.6
	30대	(614)	50.0	50.0
	40대	(736)	51.2	48.8
	50대 이상	(984)	57.6	42.4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37.6	62.4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44.3	55.7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65.8	34.2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70.4	29.6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70.3	29.7
	1억 2,000만원 이상	(38)	60.5	39.5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43.7	56.3
	보통(6~10회)	(638)	45.5	54.5
	많음(11회 이상)	(1,365)	60.9	39.1
결혼 여부	기혼	(1,876)	56.6	43.4
	미혼	(624)	44.2	55.8
가족 형태	부부	(233)	48.1	51.9
	2세대 가구	(1,695)	56.0	44.0
	3세대 가구	(228)	53.9	46.1
	1인 가구	(271)	44.6	55.4
	기타	(73)	45.2	54.8

4)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40.8%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반대한다(36.9%)’와 ‘상관없다(22.3%)’는 의견도 적지 않음
- 소득수준별로는 연소득 5,000만~1억 2,000만원 미만의 중상위층에서 현행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VIII-21]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n= 2,500, 단위: %)



<표 VIII-66>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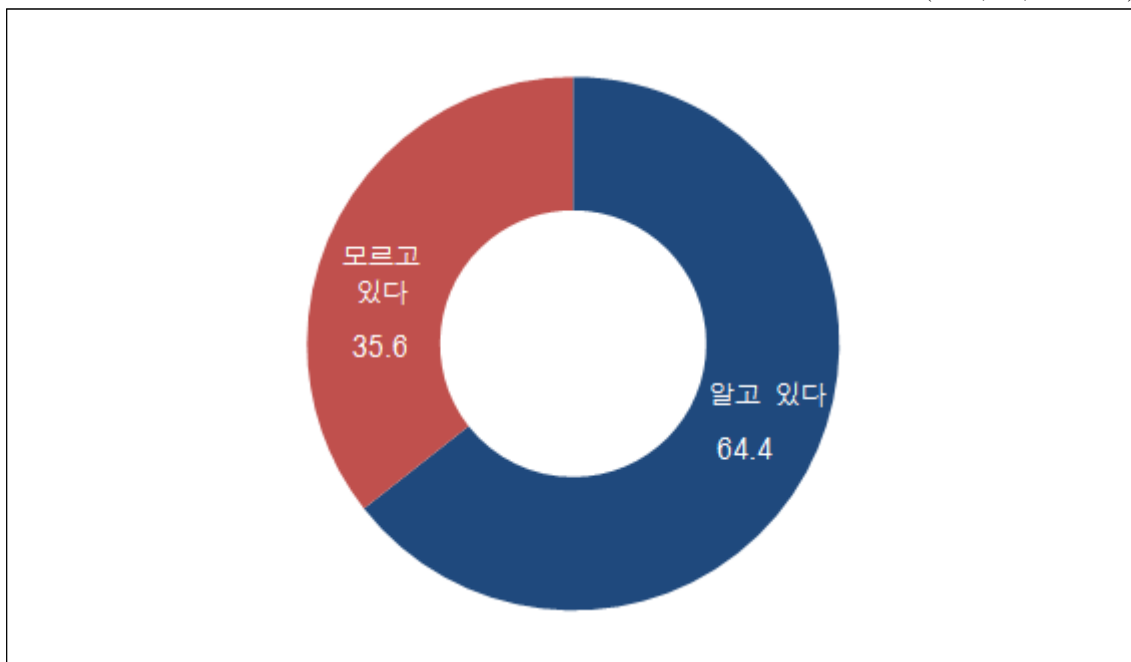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상관없다
전 체		(2,500)	40.8	36.9	22.3
성별	남성	(1,625)	41.8	36.1	22.1
	여성	(875)	38.7	38.5	22.7
연령대	19~29세	(166)	41.6	36.7	21.7
	30대	(614)	38.1	36.3	25.6
	40대	(736)	39.4	36.1	24.5
	50대 이상	(984)	43.3	37.9	18.8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31.0	40.9	28.1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37.8	37.7	24.5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48.0	36.2	15.8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44.2	35.6	20.2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48.4	26.6	25.0
	1억 2,000만원 이상	(38)	34.2	28.9	36.8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40.2	34.0	25.8
	보통(6~10회)	(638)	39.8	37.1	23.0
	많음(11회 이상)	(1,365)	41.4	37.9	20.7
결혼 여부	기혼	(1,876)	42.8	36.6	20.6
	미혼	(624)	34.6	37.8	27.6
가족 형태	부부	(233)	43.3	31.3	25.3
	2세대 가구	(1,695)	41.1	38.2	20.8
	3세대 가구	(228)	42.5	37.3	20.2
	1인 가구	(271)	37.6	31.7	30.6
	기타	(73)	31.5	43.8	24.7

5)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가격 상승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대해서 응답자 64.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르고 있다’(35.6%)보다 높게 조사됨
 - 특히,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았던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타 연령대 대비 높은 인지도를 보임
 - 또한 연말정산 경험횟수가 많아질수록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VIII-22]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n= 2,500, 단위: %)



<표 VIII-67> 신용카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인지 여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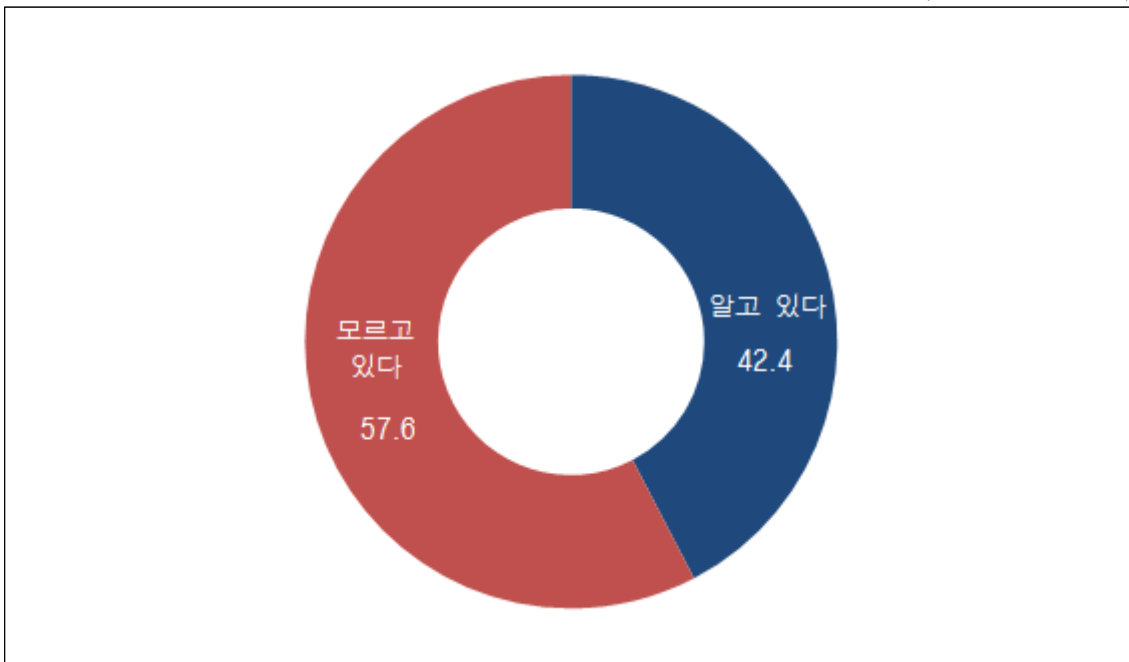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64.4	35.6
성별	남성	(1,625)	66.5	33.5
	여성	(875)	60.5	39.5
연령대	19~29세	(166)	62.7	37.3
	30대	(614)	60.3	39.7
	40대	(736)	62.0	38.0
	50대 이상	(984)	69.1	30.9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59.9	40.1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59.2	40.8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71.2	28.8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70.4	29.6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82.8	17.2
	1억 2,000만원 이상	(38)	57.9	42.1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57.3	42.7
	보통(6~10회)	(638)	62.2	37.8
	많음(11회 이상)	(1,365)	68.0	32.0
결혼 여부	기혼	(1,876)	66.5	33.5
	미혼	(624)	58.2	41.8
가족 형태	부부	(233)	70.4	29.6
	2세대 가구	(1,695)	64.8	35.2
	3세대 가구	(228)	63.6	36.4
	1인 가구	(271)	56.8	43.2
	기타	(73)	65.8	34.2

6)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6%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알고 있다’(42.4%)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연소득 5,000만~1억 2,000만원의 중상위층에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 또한 연말정산 경험횟수별로는 11회 이상으로 경험이 많은 응답자 층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조사됨

[그림 VIII-23]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n= 2,500, 단위: %)



<표 VIII-68>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 인지 여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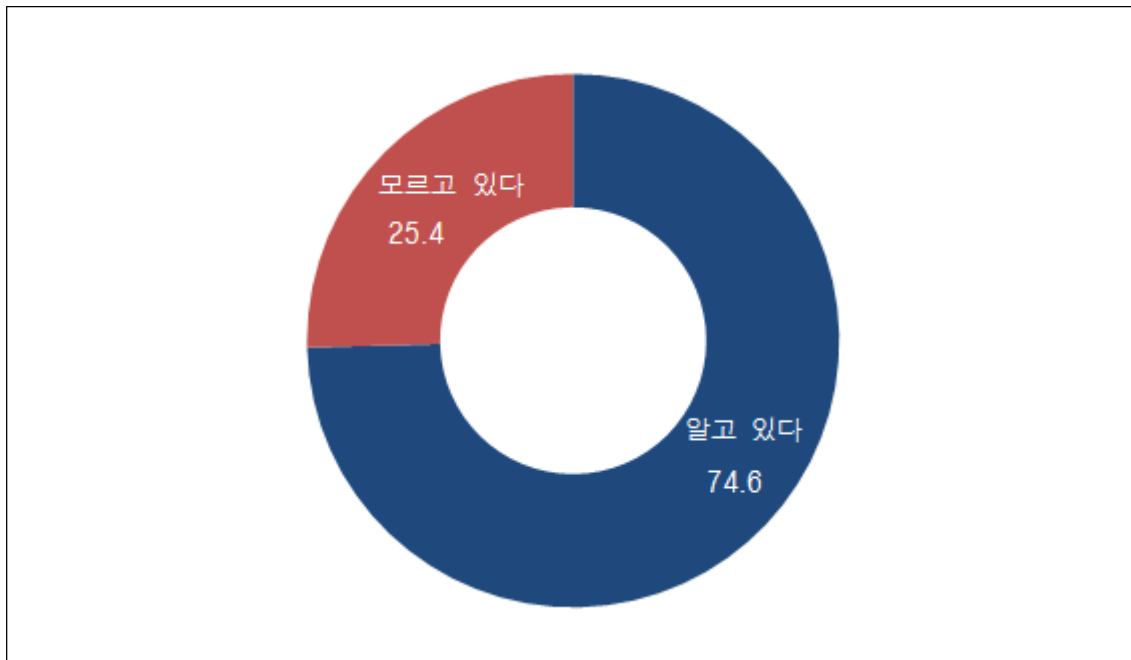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42.4	57.6
성별	남성	(1,625)	45.7	54.3
	여성	(875)	36.1	63.9
연령대	19~29세	(166)	40.4	59.6
	30대	(614)	40.9	59.1
	40대	(736)	39.8	60.2
	50대 이상	(984)	45.5	54.5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36.4	63.6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34.7	65.3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51.1	48.9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54.4	45.6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56.3	43.8
	1억 2,000만원 이상	(38)	42.1	57.9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39.0	61.0
	보통(6~10회)	(638)	38.9	61.1
	많음(11회 이상)	(1,365)	45.2	54.8
결혼 여부	기혼	(1,876)	43.8	56.2
	미혼	(624)	38.0	62.0
가족 형태	부부	(233)	42.9	57.1
	2세대 가구	(1,695)	42.7	57.3
	3세대 가구	(228)	41.7	58.3
	1인 가구	(271)	39.5	60.5
	기타	(73)	45.2	54.8

7) 신용카드 대비 직불·체크카드 장점 인지 여부

- 신용카드 대비 직불·체크카드의 장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4.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르고 있다’(25.4%) 응답 비율과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19~29세와 30대 연령층에서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소득수준별로는 5,000만~1억 2,000만원의 중상위층에서 8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임

[그림 VIII-24] 신용카드 대비 직불·체크카드 장점 인지 여부

(n= 2,500, 단위: %)



<표 VIII-69> 신용카드 대비 직불·체크카드 장점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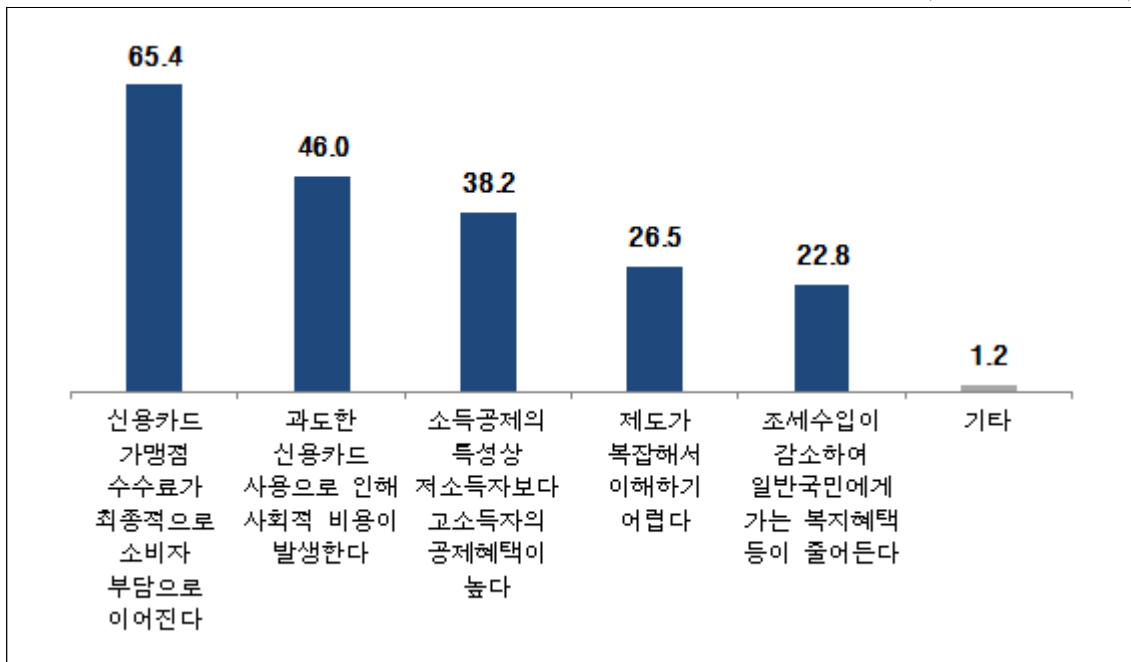
(단위: 건,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 체		(2,500)	74.6	25.4
성별	남성	(1,625)	74.3	25.7
	여성	(875)	75.2	24.8
연령대	19~29세	(166)	77.1	22.9
	30대	(614)	77.0	23.0
	40대	(736)	72.1	27.9
	50대 이상	(984)	74.5	25.5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71.5	28.5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70.7	29.3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80.1	19.9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80.3	19.7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81.3	18.8
	1억 2,000만원 이상	(38)	63.2	36.8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72.6	27.4
	보통(6~10회)	(638)	73.0	27.0
	많음(11회 이상)	(1,365)	76.0	24.0
결혼 여부	기혼	(1,876)	75.3	24.7
	미혼	(624)	72.6	27.4
가족 형태	부부	(233)	77.3	22.7
	2세대 가구	(1,695)	74.1	25.9
	3세대 가구	(228)	79.8	20.2
	1인 가구	(271)	72.3	27.7
	기타	(73)	69.9	30.1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46.0%), ‘소득공제의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혜택이 높다’(38.2%)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특히, 현행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으로 수수료, 사회적 비용 등 제도 실행에 따른 부수적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론됨

[그림 VIII-2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 중복응답
(n= 2,500, 단위: %)



<표 VIII-7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 중복응답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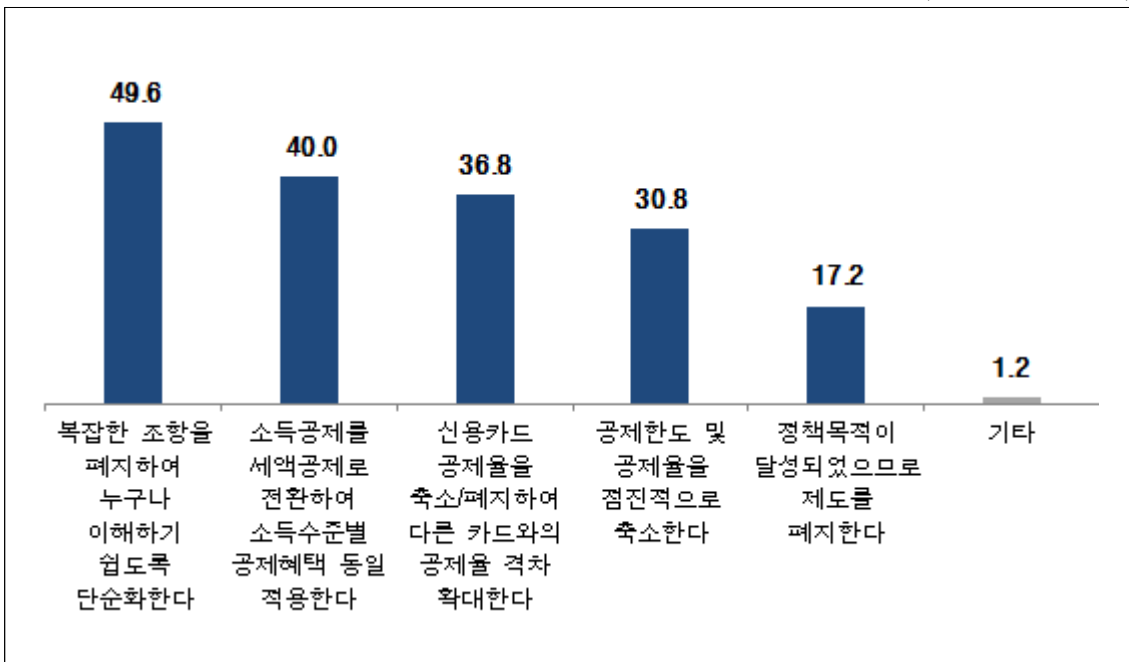
		사례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소득공제의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혜택이 높다
전 체		(2,500)	65.4	46.0	38.2
연령대	19~29세	(166)	60.8	46.4	38.0
	30대	(614)	62.7	43.8	38.1
	40대	(736)	63.0	46.9	37.9
	50대 이상	(984)	69.6	46.5	38.4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62.0	51.2	40.5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66.1	45.0	40.0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62.8	46.0	39.1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68.4	44.2	34.5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76.6	51.6	20.3
	1억 2,000만원 이상	(38)	60.5	47.4	15.8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57.9	44.3	37.8
	보통(6~10회)	(638)	63.6	46.2	40.3
	많음(11회 이상)	(1,365)	68.9	46.4	37.3

		사례수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일반국민에게 가는 복지혜택 등이 줄어든다	기타
전 체		(2,500)	26.5	22.8	1.2
연령대	19~29세	(166)	30.1	24.1	0.6
	30대	(614)	27.9	26.9	0.7
	40대	(736)	27.2	22.8	2.2
	50대 이상	(984)	24.5	20.0	0.9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25.6	19.0	1.7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25.6	22.4	0.8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27.9	22.6	1.5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24.5	27.1	1.4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34.4	14.1	3.1
	1억 2,000만원 이상	(38)	39.5	36.8	0.0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33.0	26.0	1.0
	보통(6~10회)	(638)	25.4	23.8	0.6
	많음(11회 이상)	(1,365)	24.6	21.2	1.5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으로는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다’는 의견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동일 적용’ (40.0%),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폐지하여 다른 카드와의 공제율 격차 확대’ (36.8%)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제도 세부내용 및 공제 방법 등 다양한 차원에 대한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그림 VIII-2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n= 2,500, 단위: %)



<표 VIII-7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동일 적용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폐지하여 다른 카드와의 공제율 격차 확대
전 체		(2,500)	49.6	40.0	36.8
연령대	19~29세	(166)	47.0	36.7	40.4
	30대	(614)	50.7	38.9	38.3
	40대	(736)	49.6	39.0	34.8
	50대 이상	(984)	49.3	41.9	36.8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52.9	36.4	33.5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49.4	42.7	37.3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49.3	37.0	37.0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49.3	38.7	39.3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40.6	35.9	32.8
	1억 2,000만원 이상	(38)	55.3	44.7	23.7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46.3	38.0	37.8
	보통(6~10회)	(638)	49.8	41.4	38.1
	많음(11회 이상)	(1,365)	50.6	40.0	35.8

		사례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정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제도를 폐지한다	기타
전 체		(2,500)	30.8	17.2	1.2
연령대	19~29세	(166)	29.5	23.5	1.2
	30대	(614)	31.3	16.9	1.0
	40대	(736)	32.7	18.2	0.8
	50대 이상	(984)	29.2	15.7	1.5
소득수준	2,000만원 미만	(242)	31.4	15.7	0.4
	2,000만원~5,000만 미만	(1,186)	30.4	16.4	0.9
	5,000만원~7,000만 미만	(619)	31.5	19.4	2.1
	7,000만원~1억원 미만	(351)	30.5	15.4	0.6
	1억원~1억 2000만원 미만	(64)	34.4	23.4	1.6
	1억 2,000만원 이상	(38)	21.1	23.7	2.6
연말정산 경험횟수	적음(3~5회)	(497)	33.2	20.5	0.8
	보통(6~10회)	(638)	28.1	18.2	0.9
	많음(11회 이상)	(1,365)	31.1	15.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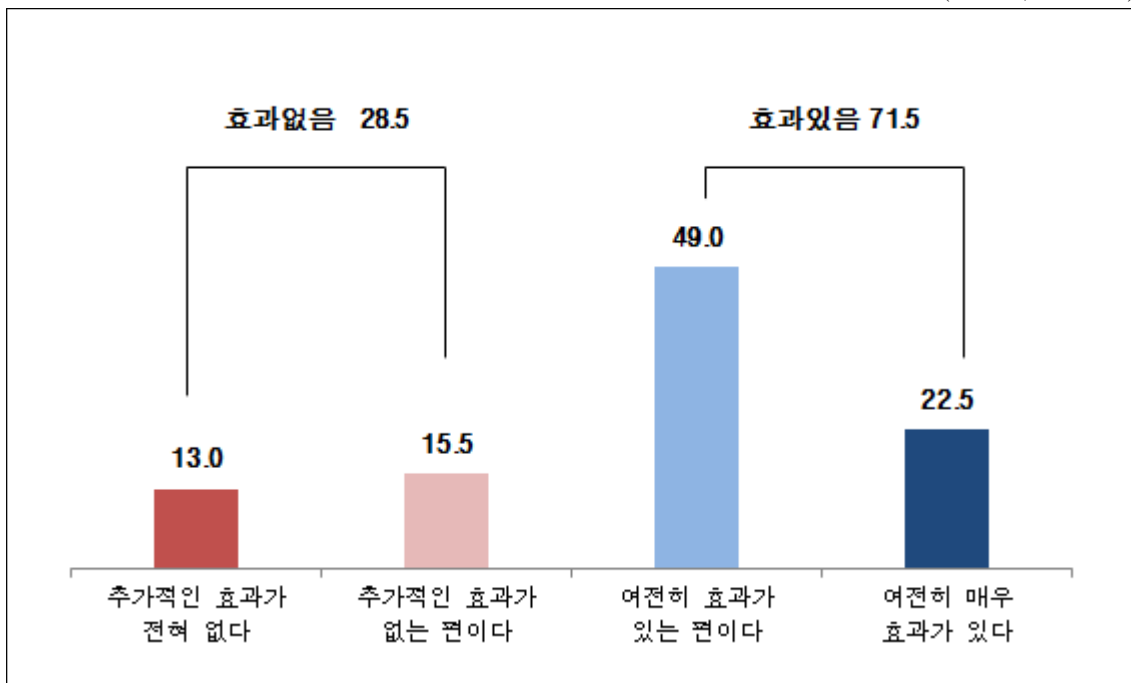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

1) 정부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의 과표 양성화 효과

□ 정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이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가 71.5%로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고 한 응답자(28.5%)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VIII-27] 정부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의 과표 양성화 효과

(n= 200, 단위: %)



<표 VIII-72> 정부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장려 정책의 과표 양성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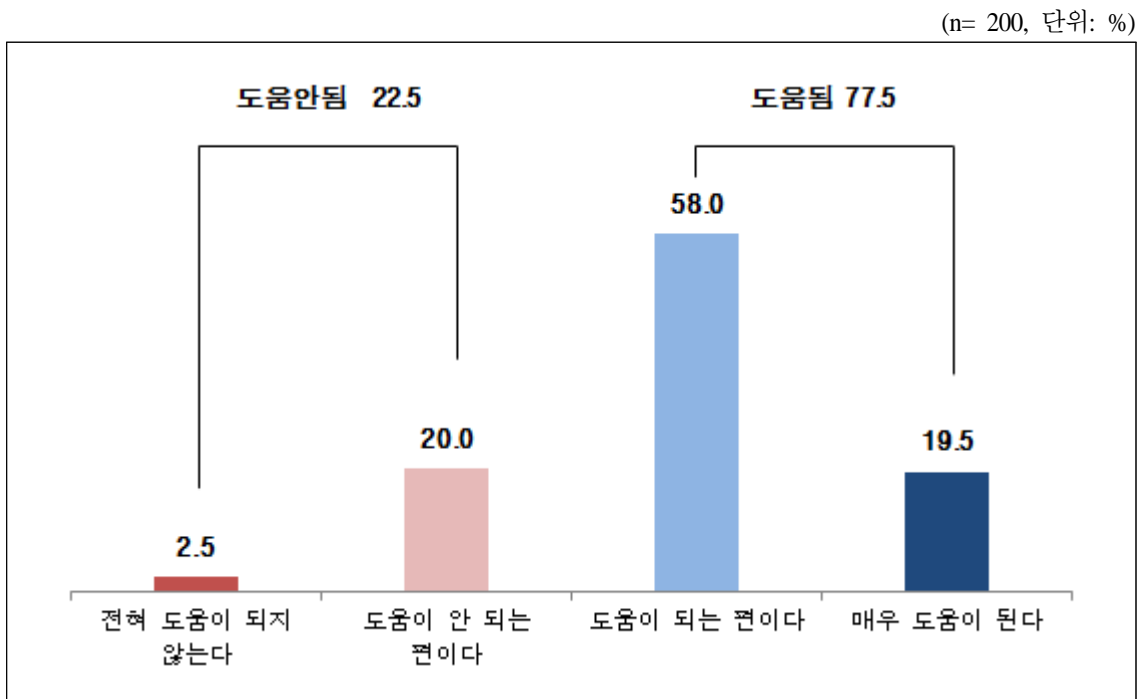
(단위: 건, %)

	사례수	추가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	추가적인 효과가 없는 편이다	여전히 효과가 있는 편이다	여전히 매우 효과가 있다
전 체	(200)	13.0	15.5	49.0	22.5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 도움 정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인 77.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그림 VIII-28]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 도움 정도



<표 VIII-7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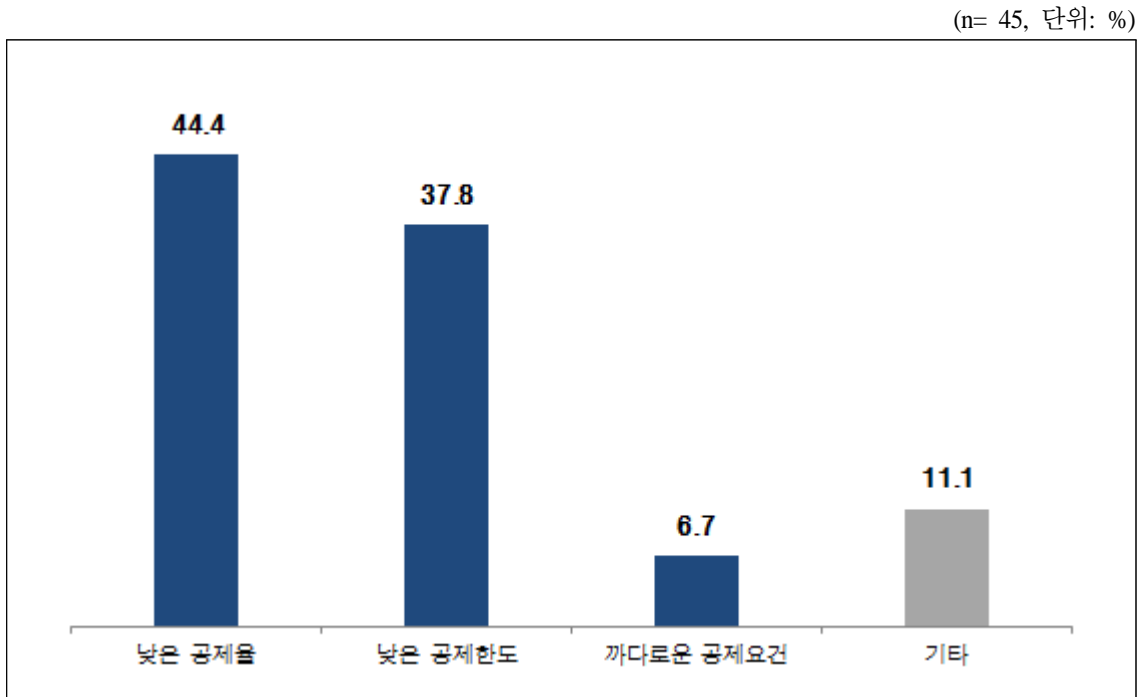
(단위: 건, %)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 체	(200)	2.5	20.0	58.0	19.5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4.4%가 ‘낮은 공제율’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낮은 공제한도’ 또한 3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VIII-29]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표 VIII-7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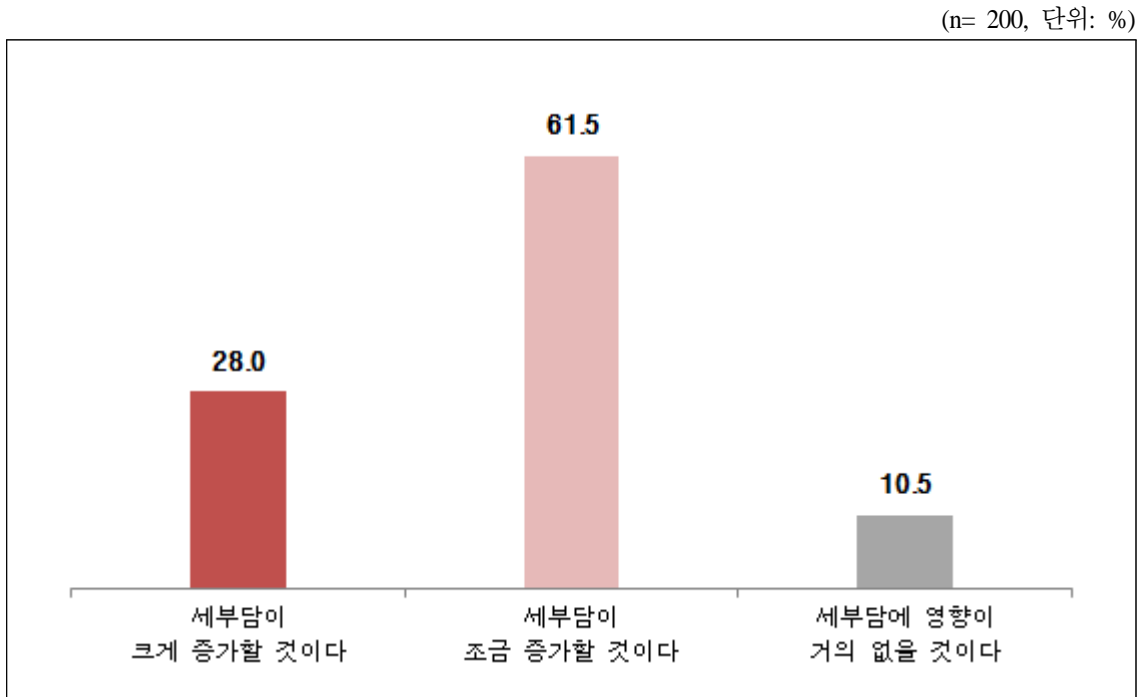
(단위: 건, %)

	사례수	낮은 공제율	낮은 공제한도	까다로운 공제요건	기타
전 체	(45)	44.4	37.8	6.7	11.1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인하가 자영업자 세부담에 미칠 영향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인하할 경우 자영업자 세부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물어본 결과, ‘세부담이 조금 증가’가 61.5%, ‘세부담이 크게 증가’가 28.0%로 전체 응답자 중 89.5%가 공제율을 인하한다면 자영업자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그림 VIII-3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인하가 자영업자 세부담에 미칠 영향



<표 VIII-7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 인하가 자영업자 세부담에 미칠 영향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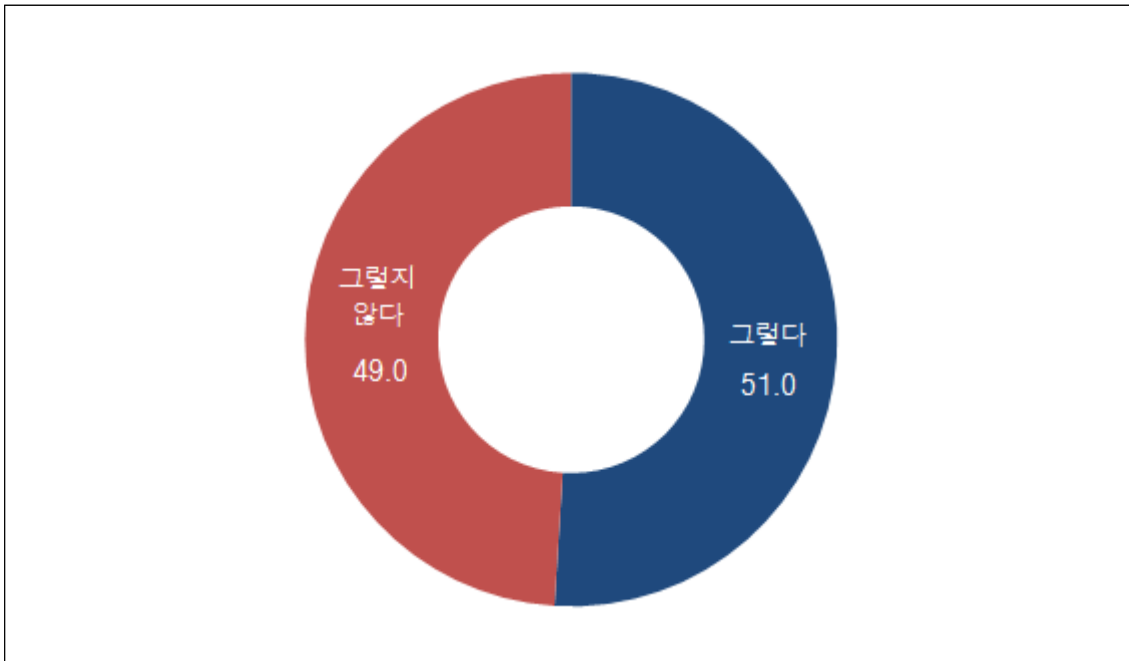
	사례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부담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	세부담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전 체	(200)	28.0	61.5	10.5

5)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필요에 대한 의견

- 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51.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49.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VIII-31]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필요에 대한 의견

(n= 200, 단위: %)



<표 VIII-76>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필요에 대한 의견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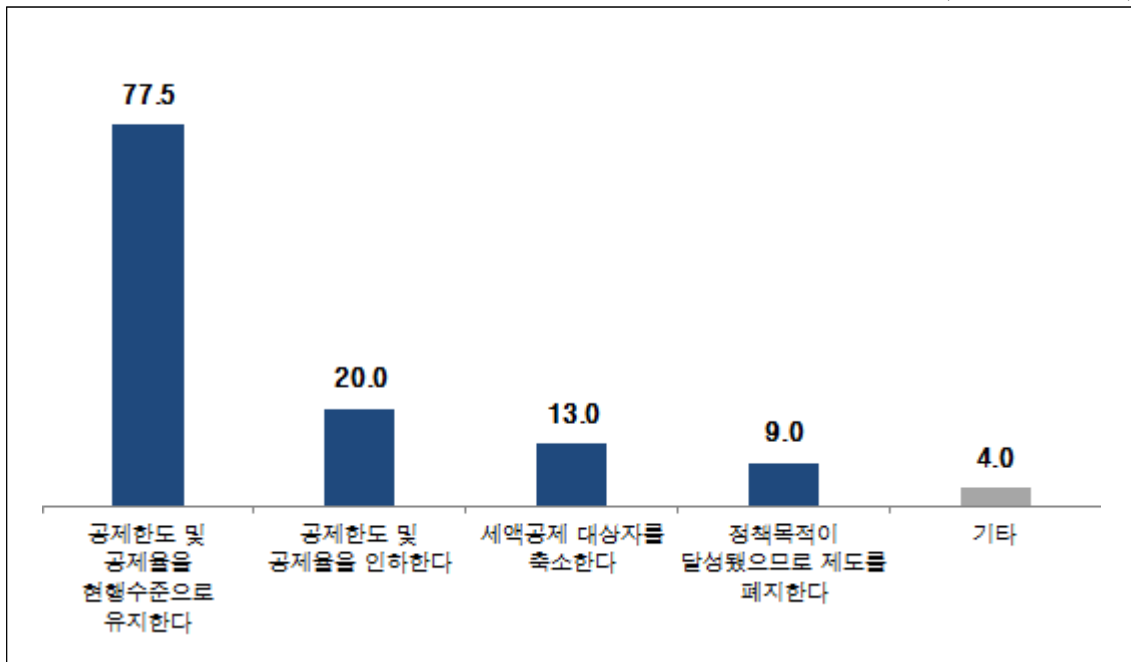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200)	51.0	49.0

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는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VIII-3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n= 200, 단위: %)



<표 VIII-77>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 - 중복응답

(단위: 건, %)

	사례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인하한다	세액공제 대상자를 축소한다	제도를 폐지한다	기타
전 체	(200)	77.5	20.0	13.0	9.0	4.0

Ⅸ. 정책방향 및 대안



IX. 정책방향 및 대안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 정책방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직불·체크카드 수수 및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을 통해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러한 효과는 제도 도입 초기에 극적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그 효과가 둔화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인한 2000년 이후 조세지출 규모는 총 36조원으로 동 기간의 개인사업자 세수증가액 32조원을 초과함

- 제도의 효과성이 저하되었지만,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2016년 기준 51.5%)이 동 공제제도를 통해 연평균 20만원의 세부담 절감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폐지는 근로소득자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조세규모가 1.8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축소 또는 폐지 추진시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 감소로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폐지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으려면 제도의 단순화,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 지불수단 간 공제율 격차 확대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단순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복잡성을 해소함
 -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 고소득자 공제한도의 추가 축소 또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해 고소득층에 조세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

- 지불수단 간 공제율 격차 확대: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를 확대함
- 상기의 출구전략은 설문조사 결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개편방안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상위 3개 항목임
 -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다’는 의견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동일 적용’(40.0%),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폐지하여 다른 카드와의 공제율 격차 확대’(3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나. 정책대안

1) 제도의 단순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 폐지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정책효과가 불명확하고,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이후 전통시장 매출과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금결제비율이 90%에 달하고, 신용카드단말기 보급률이 2013년 이후 정체상태에 있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 대중교통 평균 목적통행량은 2014년 소폭 증가한 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평균 이용인원은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하여 추가공제혜택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촉진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 결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절반에 불과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추가공제혜택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추가공제혜택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에 미친 영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함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 때문에 전통시장 사용이 매우 늘어났다는 응답자는 3.9%에 불과하였으며, 61.3%는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함

-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늘어났다는 응답자는 7.5%였고,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을 폐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을 11.3%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만 폐지할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9.6%,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만 폐지할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의 폐지가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의 폐지보다 조세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의 폐지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 폐지로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공제혜택이 5.1% 감소하는 반면 총급여 8천만~1억원인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3배 높은 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IX-1>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공제조항 폐지 시 공제혜택 변화
(단위: 백만원, %)

총급여 ²⁾	현재 공제혜택 ¹⁾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 폐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만 폐지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만 폐지	
		공제혜택	변동률	공제혜택	변동률	공제혜택	변동률
~1천	6,818	6,473	-5.1	6,492	-4.8	6,515	-4.4
1~1.5천	30,841	28,408	-7.9	28,553	-7.4	28,634	-7.2
1.5~2천	98,054	89,702	-8.5	90,227	-8.0	90,427	-7.8
2~3천	271,287	246,307	-9.2	248,520	-8.4	249,409	-8.1
3~4천	326,629	296,727	-9.2	300,445	-8.0	301,465	-7.7
4~4.5천	166,941	151,048	-9.5	153,403	-8.1	153,788	-7.9
4.5~5천	157,707	142,113	-9.9	144,565	-8.3	144,925	-8.1
5~6천	273,525	245,299	-10.3	249,870	-8.6	250,690	-8.3
6~8천	401,962	351,599	-12.5	359,806	-10.5	362,620	-9.8
8천~1억	203,552	173,007	-15.0	178,019	-12.5	180,507	-11.3
1~2억	198,387	164,778	-16.9	170,271	-14.2	174,201	-12.2
2~3억	8,543	7,123	-16.6	7,430	-13.0	7,566	-11.4
합계	2,144,244	1,902,583	-11.3	1,937,602	-9.6	1,950,746	-9.0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임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바, 추가공제혜택의 폐지로 공제한도가 축소되면 카드 사용액이 많은 고소득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음

2)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

- 소득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함
- 고소득층에 세금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소득구간별 차등한도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고소득자의 공제한도 축소만으로는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이후에도 전체 근로소득자의 7%에 해당하는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계층에 전체 조세혜택의 18% 이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의 공제한도를 현재보다 낮추거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고소득층의 공제한도 추가 인하

- 2017년 이전에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7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50만~100만원 축소함
 - 2017년부터 총급여 7천만~1억 2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가 50만원 줄어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가 100만원 줄어 200만원으로 변경됨
- 고소득자의 공제한도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소득층에 세금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제한도를 다음과 같이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IX-2> 고소득자 공제한도 추가축소방안

총급여	공제한도	
	【대안 1】	【대안 2】
7천 이하	Min(총급여의 20%, 300만원)	Min(총급여의 20%, 300만원)
7천~1억 2천	200만원	150만원
1억 2천 초과	150만원	100만원
공통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추가공제혜택 제공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현재 수준에서 50만원 추가 인하할 경우(대안 1), 조세지출은 3.9% 감소하고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속 되는 공제혜택은 19.1%에서 17%로 2.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고소득자 공제한도를 50만원 추가 인하했을 때 총급여 8천만~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세액은 26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3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현재 수준에서 100만원 추가 인하할 경우(대안 2), 조세지출은 8.1% 감소하고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속 되는 공제혜택은 19.1%에서 14.5%로 4.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고소득자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 인하했을 때 총급여 8천만~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세액은 26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7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IX-3> 고소득자 공제한도 추가축소방안

(단위: 백만원, %, %p)

총급여	현행		【대안 1】			【대안 2】		
	공제혜택	비중(A)	공제혜택	비중(B)	변동(=A-B)	공제혜택	비중(C)	변동(=A-C)
~1천	6,818	0.3	6,818	0.3	0.0	6,818	0.3	0.0
1~1.5천	30,841	1.4	30,841	1.5	0.0	30,841	1.6	0.0
1.5~2천	98,054	4.6	98,054	4.8	0.0	98,054	5.0	0.0
2~3천	271,287	12.7	271,287	13.2	0.0	271,287	13.8	0.0
3~4천	326,629	15.2	326,629	15.9	0.0	326,629	16.6	0.0
4~4.5천	166,941	7.8	166,941	8.1	0.0	166,941	8.5	0.0
4.5~5천	157,707	7.4	157,707	7.7	0.0	157,707	8.0	0.0
5~6천	273,525	12.8	273,525	13.3	0.0	273,525	13.9	0.0
6~8천	401,962	18.7	378,488	18.4	-5.8	353,056	17.9	-12.2
8천~1억	203,552	9.5	174,863	8.5	-14.1	143,803	7.3	-29.4
1~2억	198,387	9.3	168,339	8.2	-15.1	136,091	6.9	-31.4
2~3억	8,543	0.4	7,052	0.3	-17.5	5,468	0.3	-36.0
합계	2,144,244	100	2,060,544	100	-3.9	1,970,219	100	-8.1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임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표 IX-4>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로 인한 1인당 공제세액의 변화

(단위: 원)

총급여	1인당 공제세액			1인당 경감세액		
	현행	대안 1	대안 2	현행	대안 1	대안 2
6~8천	2,739,361	2,579,385	2,406,063	346,688	326,441	304,506
8천~1억	2,618,745	2,249,663	1,850,069	397,629	341,588	280,914
1~2억	2,478,819	2,103,379	1,700,437	487,898	414,002	334,692
2~3억	2,154,786	1,778,718	1,379,337	595,880	491,883	381,439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임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할 경우,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가정함

<표 IX-5> 세액공제로의 전환 방안

최저사용금액		【대안 1】 총급여의 25%	【대안 2】 총급여의 25%	【대안 3】 총급여의 25%
세액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	3%	3%
	직불카드	3%	2.5%	2.5%
	신용카드	1.5%	1%	0.5%
공제한도		- 총급여 7천 이하: 36만원 ¹⁾ - 총급여 7천~1억 2천: 30만원 ¹⁾ - 총급여 1억 2천 초과: 24만원 ¹⁾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한도 → 각각 12만원 ²⁾		

주: 1) 소득공제하의 소득구간별 공제한도에 총급여 6천만~8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평균 유효세율 12%를 곱하여 산출함

2) 소득공제하의 추가공제한도 100만원에 총급여 6천만~8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평균 유효세율 12%를 곱하여 산출함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 3%, 신용카드 공제율 1.5% 적용 시(대안 1),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에 비하여 공제혜택이 증가하며,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의 비중은 19.1%에서 11.6%로 7.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제방식 변경으로 총급여 1천 5백만원~3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조세혜택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총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는 종전에 비하여 조세혜택이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안 1 채택 시 조세지출은 현재수준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 2.5%, 신용카드 공제율 1% 적용 시(대안 2),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에 비하여 공제혜택이 증가하며,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의 비중은 19.1%에서 12.2%로 6.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제방식 변경으로 총급여 1천 5백만원~3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조세혜택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총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는 종전에 비하여 조세혜택이 6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안 2 채택 시 조세지출은 현재수준에서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 2.5%, 신용카드 공제율 0.5% 적용 시(대안 3),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은 종전에 비하여 공제혜택이 증가하며,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귀착되는 조세혜택의 비중은 19.1%에서 12.7%로 6.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제방식 변경으로 총급여 2천만~3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조세혜택이 가장 크게 증가하며, 총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는 종전에 비하여 조세혜택이 6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안 3 채택 시 조세지출은 현재수준에서 1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IX-6> 세액공제로 전환 시 공제혜택 변화

(단위: 백만원, %)

총급여	현행		【대안 1】			【대안 2】			【대안 3】		
	공제혜택	비중	공제혜택	비중	변동률	공제혜택	비중	변동률	공제혜택	비중	변동률
~1천	6,818	0.3	7,815	0.3	15	7,408	0.4	8.7	7,083	0.4	3.9
1~1.5천	30,841	1.4	44,348	1.9	44	38,437	1.9	24.6	34,526	1.9	11.9
1.5~2천	98,054	4.6	161,216	6.9	64	132,923	6.6	35.6	116,290	6.3	18.6
2~3천	271,287	12.7	441,720	19.0	63	367,488	18.2	35.5	327,191	17.7	20.6
3~4천	326,629	15.2	419,809	18.1	29	359,166	17.8	10.0	324,979	17.6	-0.5
4~4.5천	166,941	7.8	187,725	8.1	12	163,646	8.1	-2.0	149,577	8.1	-10.4
4.5~5천	157,707	7.4	166,053	7.1	5	145,782	7.2	-7.6	133,503	7.2	-15.3
5~6천	273,525	12.8	268,304	11.5	-2	237,562	11.8	-13.1	218,575	11.8	-20.1
6~8천	401,962	18.7	357,850	15.4	-11	321,854	15.9	-19.9	300,688	16.3	-25.2
8천~1억	203,552	9.5	151,828	6.5	-25	138,410	6.9	-32.0	131,412	7.1	-35.4
1~2억	198,387	9.3	114,181	4.9	-42	104,534	5.2	-47.3	99,903	5.4	-49.6
2~3억	8,543	0.4	3,515	0.2	-59	3,270	0.2	-61.7	3,154	0.2	-63.1
합계	2,144,244	100	2,324,362	100	8	2,020,479	100	-5.8	1,846,881	100	-13.9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 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임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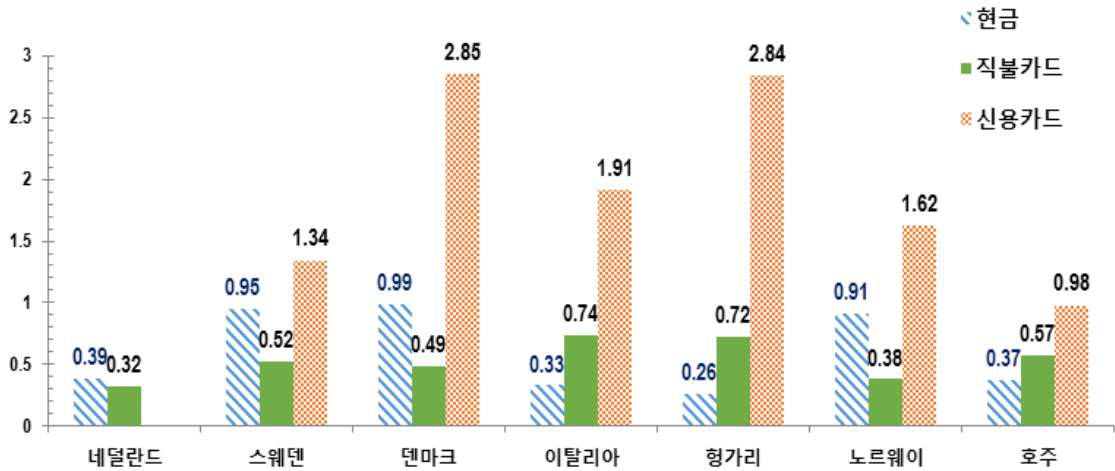
3) 지불수단 간 공제율 격차 확대

□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직불·체크카드에 비해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높은 지급수단임

- 주요국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현금이 0.26~0.99유로, 직불카드가 0.32~0.74유로, 신용카드가 0.98~2.85유로로 신용카드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현금, 직불카드의 순서임

[그림 IX-1]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

(단위: 유로)



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헝가리는 2009년, 노르웨이, 호주는 2013년
 자료: 한국은행,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6.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지급액 비율은 2016년 기준 45.5%로 조사대상국가 평균인 18.3%보다 월등히 높지만, 직불·체크카드 지급액 비율은 27.6%로 조사대상국가 평균인 37%보다 낮음
 - 미국, 영국, 호주의 직불·체크카드 지급액 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46.1%, 52.9%, 44.1%로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가 직불·체크카드에 의해 결제되고 있음
 - 반면 미국, 영국, 호주의 신용카드 지급액 비율은 2016년 기준 24.7%, 11.5%, 22.6%로 신용카드 지급액 비율이 직불·체크카드 지급액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결제행태를 보임

- 신용카드는 직불·체크카드에 비하여 높은 가맹점수수료,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비용이 크므로 신용카드공제율을 낮추고, 직불·체크카드공제율은 높여 직불·체크카드에 의한 지급액 비중을 높이고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액 비중은 낮출 필요가 있음
 -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커질수록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은 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줄어 결과적으로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X-7〉 카드를 이용한 지급비용 국가간 비교

(단위: %)

국가	카드 지급액(e머니 제외)						직불기능을 가진 카드 지급액						신용카드 지급액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61.9	63.1	64.7	65.6	66.7		38.9	40.3	41.8	42.9	44.1		23.0	22.8	22.9	22.8	22.6	
벨기에	48.9	49.3	43.8	47.6	49.4		43.3	43.3	39.2	41.4	41.8		nav	nav	0.1	0.1	0.1	
브라질	36.6	38.5	40.3	42.1	43.6		17.6	19.0	20.6	22.6	23.5		19.0	19.5	19.7	19.5	20.1	
캐나다	73.9	74.9	76.3	77.0	78.8		43.0	41.8	42.5	43.1	43.0		30.9	33.1	33.8	33.9	35.7	
중국	80.4	83.7	86.3	81.1	82.3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프랑스	46.9	49.6	49.8	50.9	52.6		nav	nav	26.0	30.3	36.5		nav	nav	0.5	1.2	1.2	
독일	17.5	18.5	19.1	18.6	19.0		14.2	14.7	14.5	13.7	14.0		0.2	0.3	0.4	0.4	0.5	
홍콩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인도	75.0	73.8	72.6	67.3	63.4		70.1	68.4	67.2	61.8	57.5		4.7	5.2	5.3	5.3	5.7	
이탈리아	38.2	40.4	42.4	42.9	45.5		25.6	27.3	29.0	30.6	32.0		12.6	13.1	13.4	12.3	13.5	
일본	61.4	nav	nav	nav	nav		0.1	nav	nav	nav	nav		61.3	nav	nav	nav	nav	
한국	64.9	67.4	69.6	71.6	73.1		16.7	20.2	23.3	25.6	27.6		48.2	47.2	46.3	46.0	45.5	
멕시코	51.5	54.5	57.0	59.9	62.4		31.6	34.6	37.4	40.8	41.2		19.9	19.9	19.5	19.1	21.2	
네덜란드	45.7	45.4	49.1	38.5	51.6		43.8	43.5	47.1	37.0	49.5		nav	nav	nav	nav	nav	
러시아	39.0	46.9	53.9	63.0	71.0		36.0	42.4	48.2	56.9	64.9		3.0	4.4	5.6	6.1	6.1	
사우디아라비아	91.6	91.2	92.0	92.4	92.6		91.6	91.2	92.0	92.4	92.6		nav	nav	nav	nav	nav	
싱가포르	6.9	13.5	14.9	15.2	16.4		6.9	6.9	7.6	7.5	8.2		nav	6.7	7.4	7.7	8.2	
남아프리카	49.3	52.5	56.2	59.5	63.3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nav	
스웨덴	65.4	66.5	67.2	67.7	66.3		54.1	55.1	55.6	55.8	54.5		10.1	10.2	10.4	10.5	10.5	
스위스	39.8	41.0	43.3	47.7	50.4		26.6	27.0	28.3	33.1	34.4		13.2	14.1	15.0	14.7	16.1	
터키	98.8	91.7	90.4	90.4	90.3		15.1	15.4	17.2	19.5	22.3		83.8	76.3	73.2	70.9	68.0	
영국	57.0	58.9	61.2	63.2	65.1		44.1	45.8	48.1	49.9	52.9		10.9	11.1	11.3	11.6	11.5	
미국	65.5	67.0	68.2	69.5	70.8		43.5	44.5	45.1	45.8	46.1		22.0	22.4	23.1	23.8	24.7	
평균	57.3	59.1	61.4	62.6	64.9		31.8	33.8	35.9	36.1	37.0		24.2	20.4	18.1	18.0	18.3	

주: nav는 해당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자료: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MI countries - Figures for 2016

-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조정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가정함
 - 대안 1: 직불·체크카드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어 공제율 격차를 확대하는 방안
 - 대안 2: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모두 낮추되, 공제율 격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 대안 3: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모두 낮추되,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많이 낮추어 공제율 격차를 확대하는 방안

〈표 IX-8〉 소득공제율 조정방안

(단위: %)

최저사용금액		【대안 1】			【대안 2】			【대안 3】		
		총급여의 25%			총급여의 25%			총급여의 25%		
세액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40			40		
	직불·체크카드	30	30	30	25	20	15	25	25	20
	신용카드	10	5	0	10	5	0	5	0	0
	공제율 격차	20	25	30	15	15	15	20	25	20

- <표 IX-9> ~ <표 IX-14>는 지불수단별 공제율 격차를 조정했을 때, 소득계층별 공제혜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임
 - 공제율 격차 확대 시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분과 직불·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추정한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재계산함
 - <표 VI-22>에서 제시한 DDR의 회귀계수값은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격차가 1%p 확대될 때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몇 %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나타냄
- 【대안 1】 직불·체크카드 공제율(30%)을 그대로 두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10%, 5%, 0%로 낮추어 공제율 격차를 확대할 경우, 조세지출은 각각 3.4%, 8.8%, 17.2% 감소하며, 전 소득구간에서 조세혜택의 감소가 관찰됨
 -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 5%로 낮추어 공제격차를 25%, 20%로 확대 시 총급여 5천만~6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0%로 낮추어 공제격차를 30%로 확대 시 총 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X-9〉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확대
(신청자 1인당 기준)

(단위: 원)

총급여	현행 1인당 공제혜택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10%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5%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0%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천만원	52,347	50,558	-1,789	47,454	-4,893	42,168	-10,179
1~1.5천만원	91,909	85,575	-6,334	77,084	-14,825	66,382	-25,527
1.5~2천만원	108,945	100,471	-8,474	89,752	-19,193	77,158	-31,787
2~3천만원	137,217	129,027	-8,190	118,100	-19,117	104,540	-32,677
3~4천만원	205,577	196,433	-9,144	182,914	-22,663	164,499	-41,078
4~4.5천만원	256,455	247,374	-9,081	232,864	-23,591	211,241	-45,214
4.5~5천만원	282,980	273,663	-9,317	258,025	-24,955	234,032	-48,948
5~6천만원	315,735	306,553	-9,182	290,426	-25,309	263,978	-51,757
6~8천만원	346,688	339,316	-7,372	325,347	-21,341	299,638	-47,050
8천만~1억	397,629	392,013	-5,616	380,281	-17,348	354,069	-43,560
1~2억	487,898	482,041	-5,857	469,059	-18,839	436,147	-51,751
2~3억	595,880	589,985	-5,895	576,048	-19,832	530,025	-65,855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 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와의 차이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표 IX-10〉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확대
(총액 기준)

(단위: 백만원, %)

총급여	현행 공제혜택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10%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5%		직불카드 = 30% 신용카드 = 0%	
		공제혜택	변동률	공제혜택	변동률	공제혜택	변동률
~1천만원	6,818	6,585	-3.4	6,181	-9.3	5,492	-19.4
1~1.5천만원	30,841	28,715	-6.9	25,866	-16.1	22,275	-27.8
1.5~2천만원	98,054	90,427	-7.8	80,779	-17.6	69,444	-29.2
2~3천만원	271,287	255,094	-6.0	233,491	-13.9	206,683	-23.8
3~4천만원	326,629	312,101	-4.4	290,620	-11.0	261,362	-20.0
4~4.5천만원	166,941	161,029	-3.5	151,584	-9.2	137,508	-17.6
4.5~5천만원	157,707	152,515	-3.3	143,800	-8.8	130,428	-17.3
5~6천만원	273,525	265,571	-2.9	251,600	-8.0	228,687	-16.4
6~8천만원	401,962	393,415	-2.1	377,219	-6.2	347,411	-13.6
8천만~1억	203,552	200,677	-1.4	194,671	-4.4	181,252	-11.0
1~2억	198,387	196,005	-1.2	190,727	-3.9	177,344	-10.6
2~3억	8,543	8,458	-1.0	8,258	-3.3	7,598	-11.1
합계	2,144,244	2,070,592	-3.4	1,954,796	-8.8	1,775,486	-17.2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 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와의 차이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 【대안 2】 현재의 공제율 격차 15%를 유지하되 직불·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율을 (25%, 10%), (20%, 5%), (15%, 0%)로 인하할 경우 조세지출은 각각 7.9%, 20.6%, 41.1% 감소하며, 전 소득구간에서 조세혜택의 감소가 관찰됨
- 공제율 격차 15%를 유지한 상태에서 직불·체크·신용카드 공제율을 인하할 경우 총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X-11〉 직불카드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유지
(신청자 1인당 기준)

(단위: 원)

총급여	현행 1인당 공제혜택	직불카드 = 25% 신용카드 = 10%		직불카드 = 20% 신용카드 = 5%		직불카드 = 15% 신용카드 = 0%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천만원	52,347	48,233	-4,114	41,719	-10,628	31,115	-21,232
1~1.5천만원	91,909	79,736	-12,173	63,611	-28,298	43,122	-48,787
1.5~2천만원	108,945	93,161	-15,784	73,015	-35,930	49,018	-59,927
2~3천만원	137,217	120,183	-17,034	96,914	-40,303	67,294	-69,923
3~4천만원	205,577	185,040	-20,537	153,813	-51,764	109,291	-96,286
4~4.5천만원	256,455	234,945	-21,510	199,460	-56,995	144,535	-111,920
4.5~5천만원	282,980	260,937	-22,043	223,344	-59,636	162,351	-120,629
5~6천만원	315,735	293,519	-22,216	253,937	-61,798	186,358	-129,377
6~8천만원	346,688	327,439	-19,249	291,334	-55,354	222,516	-124,172
8천만~1억	397,629	380,367	-17,262	347,653	-49,976	275,773	-121,856
1~2억	487,898	468,086	-19,812	432,531	-55,367	348,122	-139,776
2~3억	595,880	570,826	-25,054	532,362	-63,518	427,587	-168,293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 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와의 차이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표 IX-12〉 직불카드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유지
(총액기준)

(단위: 백만원, %)

총급여	현행 공제혜택	직불카드 = 25% 신용카드 = 10%		직불카드 = 20% 신용카드 = 5%		직불카드 = 15% 신용카드 = 0%	
		공제혜택	변동률	공제혜택	변동률	공제혜택	변동률
~1천만원	6,818	6,282	-7.9	5,434	-20.3	4,052	-40.6
1~1.5천만원	30,841	26,756	-13.2	21,345	-30.8	14,470	-53.1
1.5~2천만원	98,054	83,848	-14.5	65,716	-33.0	44,118	-55.0
2~3천만원	271,287	237,609	-12.4	191,604	-29.4	133,044	-51.0
3~4천만원	326,629	293,998	-10.0	244,384	-25.2	173,646	-46.8
4~4.5천만원	166,941	152,939	-8.4	129,839	-22.2	94,086	-43.6
4.5~5천만원	157,707	145,423	-7.8	124,472	-21.1	90,480	-42.6
5~6천만원	273,525	254,279	-7.0	219,989	-19.6	161,444	-41.0
6~8천만원	401,962	379,644	-5.6	337,783	-16.0	257,993	-35.8
8천만~1억	203,552	194,715	-4.3	177,968	-12.6	141,172	-30.6
1~2억	198,387	190,331	-4.1	175,873	-11.3	141,552	-28.6
2~3억	8,543	8,183	-4.2	7,632	-10.7	6,130	-28.2
합계	2,144,244	1,974,006	-7.9	1,702,040	-20.6	1,262,187	-41.1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 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와의 차이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 【대안 3】 직불·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율을 (25%, 5%), (25%, 0%), (20%, 0%)로 인하하여 공제율 격차를 확대할 경우 조세지출은 각각 14.0%, 23.4%, 31.2% 감소하며, 전 소득구간에서 조세혜택의 감소가 관찰됨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을 25%, 신용카드 공제율을 5%로 인하하여 공제율 격차를 20%로 확대 시 총급여 5천만~6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을 25%, 신용카드 공제율을 0%로 인하하여 공제율 격차를 25%로 확대 시 총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불·체크카드 공제율을 20%, 신용카드 공제율을 0%로 인하하여 공제율 격차를 20%로 확대 시 총급여 2억~3억원인 근로소득자의 1인당 공제금액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X-13〉 직불카드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확대
(신청자 1인당 기준)

(단위: 원)

총급여	현행 1인당 공제혜택	직불카드 = 25% 신용카드 = 5%		직불카드 = 25% 신용카드 = 0%		직불카드 = 20% 신용카드 = 0%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인당 공제혜택	변동액
~1천만원	52,347	44,905	- 7,442	39,261	- 13,086	35,653	- 16,694
1~1.5천만원	91,909	70,804	- 21,105	59,608	- 32,301	51,857	- 40,052
1.5~2천만원	108,945	81,863	- 27,082	68,737	- 40,208	59,353	- 49,592
2~3천만원	137,217	108,347	- 28,870	93,850	- 43,367	81,446	- 55,771
3~4천만원	205,577	169,942	- 35,635	149,684	- 55,893	131,447	- 74,130
4~4.5천만원	256,455	218,321	- 38,134	194,035	- 62,420	172,140	- 84,315
4.5~5천만원	282,980	242,979	- 40,001	215,838	- 67,142	192,452	- 90,528
5~6천만원	315,735	274,685	- 41,050	244,617	- 71,118	219,465	- 96,270
6~8천만원	346,688	310,927	- 35,761	281,140	- 65,548	256,399	- 90,289
8천만~1억	397,629	366,421	- 31,208	335,674	- 61,955	310,901	- 86,728
1~2억	487,898	453,013	- 34,885	414,747	- 73,151	386,750	-101,148
2~3억	595,880	555,337	- 40,543	502,449	-93,431	469,721	-126,159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 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와의 차이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표 IX-14〉 직불카드 공제율 인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공제율 격차 확대
(총액기준)

(단위: 백만원, %)

총급여	현행 공제혜택	직불카드 = 25% 신용카드 = 5%		직불카드 = 25% 신용카드 = 0%		직불카드 = 20% 신용카드 = 0%	
		공제혜택	변동률	공제혜택	변동률	공제혜택	변동률
~1천만원	6,818	5,848	-14.2	5,113	-25.0	4,643	-31.9
1~1.5천만원	30,841	23,759	-23.0	20,002	-35.1	17,401	-43.6
1.5~2천만원	98,054	73,679	-24.9	61,866	-36.9	53,419	-45.5
2~3천만원	271,287	214,209	-21.0	185,546	-31.6	161,024	-40.6
3~4천만원	326,629	270,010	-17.3	237,823	-27.2	208,849	-36.1
4~4.5천만원	166,941	142,117	-14.9	126,308	-24.3	112,056	-32.9
4.5~5천만원	157,707	135,414	-14.1	120,288	-23.7	107,255	-32.0
5~6천만원	273,525	237,964	-13.0	211,915	-22.5	190,126	-30.5
6~8천만원	401,962	360,501	-10.3	325,964	-18.9	297,279	-26.0
8천만~1억	203,552	187,576	-7.8	171,836	-15.6	159,155	-21.8
1~2억	198,387	184,202	-7.2	168,642	-15.0	157,258	-20.7
2~3억	8,543	7,961	-6.8	7,203	-15.7	6,734	-21.2
합계	2,144,244	1,843,240	-14.0	1,642,507	-23.4	1,475,199	-31.2

주: 1.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세법개정사항(고소득자 공제 한도 축소,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반영했을 때 소득구간별 공제혜택(=소득공제금액×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재계산한 결과와의 차이

2. 총급여 3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제도변경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 소득계층별 지불결제수단을 살펴본 결과,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과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층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은 20%로 소득구간별로 차이가 거의 없지만,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면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3천만~8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액 비중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X-15〉 소득계층별 신용·직불·체크카드 사용액(2016년 기준)

(단위: 원, %)

총급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천만원	169,987	1	256,154	1	11,700,000	68	3,634,211	21	1,460,266	8	17,220,618
1~1.5천만원	185,172	1	310,215	2	11,900,000	67	3,683,673	21	1,776,164	10	17,855,224
1.5~2천만원	282,593	2	370,890	2	11,500,000	67	3,160,178	19	1,763,105	10	17,076,766
2~3천만원	330,357	2	442,007	2	12,600,000	64	3,888,438	20	2,511,444	13	19,772,246
3~4천만원	376,900	2	459,343	2	15,300,000	62	4,979,721	20	3,490,609	14	24,606,573
4~4.5천만원	409,499	1	473,371	2	17,400,000	62	5,641,282	20	4,170,967	15	28,095,120
4.5~5천만원	441,095	1	493,874	2	18,800,000	62	5,910,433	20	4,441,712	15	30,087,114
5~6천만원	456,011	1	537,144	2	20,900,000	63	6,337,120	19	4,853,962	15	33,084,237
6~8천만원	500,717	1	674,205	2	23,800,000	63	7,262,548	19	5,298,876	14	37,536,345
8천만~1억	543,103	1	815,697	2	28,200,000	65	7,961,869	18	5,807,515	13	43,328,183
1~2억	562,968	1	975,829	2	36,300,000	69	8,283,698	16	6,237,346	12	52,359,842
2~3억	561,381	1	927,972	1	59,300,000	77	8,037,873	10	7,875,137	10	76,702,363

주: 1. 2011~2016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국제청에 신고한 200,301명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임
 2. 극단치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변수에 대해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은 상하위 1%에 해당하는 원저라이징을 실시함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 정책방향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정책으로 늘어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됨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정책이 지닌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효과 약화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정책으로 인하여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하였으나, 동 제도를 통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상당하여 자영업자의 경영여건과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를 유지하고, 추후 단계적인 개편방안을 모색
 - 추후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세액공제대상자의 축소나 우대공제율에 대한 일몰연장 중단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나. 정책대안

1)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축소

- 우대공제율이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2009년은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대공제율 적용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어주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었음
-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 및 현금영수증 발급 문화 정착으로 일반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폭이 둔화됐으므로 우대공제율을 유지할 논리적 근거가 약화됨
 - 우대공제율 적용은 거래투명성 제고로 과표 양성화 효과가 지속되어 세부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일 때 정책적 타당성을 지님
-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축소방안은 i) 일반사업자에 한해 우대공제율(1.3%) 적용을 중단하고 통상적 공제율(1%)로 회귀하는 방안과 ii)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2.6%를 인하하는 방안, iii)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가) 일반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혜택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폭이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세지원의 규모 또한 그에 비례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음식업/소매업/서비스업의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2010년 20%/21%/25%에서 2016년에는 8%/4%/12%로 하락함
-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폭이 둔화된 일반사업자를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반사업자에 세액공제혜택의 90% 이상이 집중되는 과세불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을 23%(2016년 기준 3천 6백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IX-16> 일반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 시 세수효과

(단위: 백만원, 만원)

업종	신고건수 ¹⁾	공제금액(백만원)			건당 공제금액(만원)		
		우대공제율 적용 ¹⁾	우대공제율 미적용 ²⁾	차이	우대공제율 적용 ¹⁾	우대공제율 미적용 ²⁾	차이
농림어업	119	67	52	15	56	43	13
광업	5	2	2	0	40	31	9
제조업	46,133	16,335	12,565	3,770	35	27	8
전기가스수도업	61	9	7	2	15	11	3
도매업	141,003	98,829	76,022	22,807	70	54	16
소매업	304,001	431,654	332,042	99,612	142	109	33
부동산매매업	50	33	25	8	66	51	15
건설업	11,440	2,597	1,998	599	23	17	5
음식업	435,601	816,547	628,113	188,434	187	144	43
숙박업	18,526	25,661	19,739	5,922	139	107	32
운수창고통신업	5,679	1,575	1,212	363	28	21	6
부동산임대업	2,167	1,101	847	254	51	39	12
대리중개도급업	24,642	13,801	10,616	3,185	56	43	13
서비스업	170,584	168,918	129,937	38,981	99	76	23
합계	1,160,011	1,577,129	1,213,176	363,953			

주: 1)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매출이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2) 우대공제율 적용 시 공제금액×1.3%÷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 일반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은 1인당 평균 31만원(=363,953백만원/일반사업자 신고건수 1,160,011건)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율 적용을 유지하되, 일반사업자에 한해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 시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이 소폭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은 일반사업자의 수혜비중을 92%에서 90%로 낮추는 대신 간이과세자의 수혜비중을 8%에서 10%로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IX-17> 일반사업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중단 시 사업자별 공제혜택 변동

(단위: 백만원, %, %p)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가. 우대공제율 적용 ¹⁾	1,577,129	92	139,191	8	1,716,320
나. 우대공제율 미적용 ²⁾	1,213,176	90	139,191	10	1,352,367
차이(=나 - 가)	-363,953	-2	-	2	-363,953

주: 1)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매출이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2) 우대공제율 적용 시 공제금액×1.3%÷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나)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축소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통상적 공제율의 2배인 2.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음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이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이 타 업종보다 높아야 함
- 음식업은 연도별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타 업종보다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이 높은 반면 숙박업은 타 업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기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은 10%로 전체 산업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고, 서비스업 평균(8%)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반면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은 3%로 전체 산업 평균 및 서비스업 평균보다 낮음
-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비중은 타 업종보다 높지만, 신용카드 등 매출증가율은 타 업종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우대공제율을 현재보다 낮추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음식업 간이과세자의 우대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숙박업 간이과세자만 우대공제율을 중단할 경우, 15억원의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됨
 - 【대안 1】 실행 시 숙박업 간이사업자 1인당 12만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을 모두 중단할 경우, 193억원의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됨
 - 【대안 4】 실행 시 음식업 간이사업자 1인당 10만원, 숙박업 간이사업자 1인당 12만원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

<표 IX-18>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축소 시 세수효과

(단위: 백만원)

업종	【현행】 음식업=2.6% 숙박업=2.6%	【대안 1】 음식업=2.6% 숙박업=1.3%	【대안 2】 음식업=2.0% 숙박업=2.0%	【대안 3】 음식업=2.0% 숙박업=1.3%	【대안 4】 음식업=1.3% 숙박업=1.3%
음식업	35,575	35,575	27,365 ²⁾	27,365 ²⁾	17,788 ¹⁾
숙박업	3,098	1,549 ¹⁾	2,383 ²⁾	1,549 ¹⁾	1,549 ¹⁾
합 계	38,673	37,124	29,748	28,914	19,337
세수변동		1,549	8,925	9,759	19,337

주: 1.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매출이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1) 우대공제율 적용 시 공제금액×1.3%÷2.6%

2) 우대공제율 적용 시 공제금액×2.0%÷2.6%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표 IX-19〉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축소 시 1인당 세 부담 효과 변동

(단위: 원)

업종	【대안 1】 음식업=2.6% 숙박업=1.3%	【대안 2】 음식업=2.0% 숙박업=2.0%	【대안 3】 음식업=2.0% 숙박업=1.3%	【대안 4】 음식업=1.3% 숙박업=1.3%
음식업	-	- 47,516	- 47,516	-102,944
숙박업	-121,186	- 55,938	-121,186	-121,186

- 주: 1.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매출이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
 2. 우대공제율 적용 시 공제금액×1.3%÷2.6%
 3. 우대공제율 적용 시 공제금액×2.0%÷2.6%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이용

2)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혜택 차등화

- 현재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5백만원의 공제한도와 1.3% 또는 2.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이 큰 쪽으로 감소하는 5억원을 기점으로 공제한도나 세액공제율에 차등을 둘 경우 매출이 큰 사업자에게 공제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 샘플링자료 분석결과 과세표준 4천 8백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신청자 숫자가 전체의 45%를 차지하나, 이들이 공제받은 세액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가)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의 차등화

-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이 5백만원, 5억원 초과는 3백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일반사업자 1인당 공제세액이 32만~92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공제한도 축소로 인한 세 부담 증가효과는 수입금액이 클수록 증가

<표 IX-20>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원)

과세표준	【현행】 수입금액 관계없이 5백만원	【대안 1】 수입금액 5억 미만=5백만원 수입금액 5억 초과=3백만원		【대안 2】 수입금액 2억 미만=5백만원 수입금액 2억 초과=3백만원	
		금액	차이	금액	차이
2억~5억	1,933,571	1,933,571	0	1,780,475	-153,096
5억~10억	1,883,580	1,562,156	-321,424	1,562,156	-321,424
10억~20억	1,801,063	1,419,685	-381,378	1,419,685	-381,378
20억 초과	2,941,499	2,012,933	-928,566	2,012,933	-928,566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수입금액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의 공제한도를 3백만원으로 축소할 경우, 41억원의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됨
 - 이러한 세수효과 추계는 국세청이 제공한 샘플링자료의 과세규모별 분포가 실제와 일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출된 것임
 - 수입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초과는 3백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할 경우, 258억원의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됨

<표 IX-21>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원)

과세표준	【대안 1】 수입금액 5억 미만=5백만원 수입금액 5억 초과=3백만원		【대안 2】 수입금액 2억 미만=5백만원 수입금액 2억 초과=3백만원	
	2억~5억	-		-21,709
5억~10억	-3,538		-3,538	
10억~20억	-415		-415	
20억 초과	-194		-194	
합계	-4,147		-25,856	

주: 1.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2. 세수효과=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속한 국세청 샘플링자료 수*(2016년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수÷국세청 샘플링자료 수)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나)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화

-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이 1.3%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5억원 초과는 우대공제율 적용을 폐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일반사업자 1인당 공제세액이 2만~4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세액공제율 인하로 1인당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계층은 과세표준 5억~10억원 구간으로 나타남

<표 IX-22>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원)

과세표준	【현행】 수입금액 관계없이 1.3%	【대안 1】 수입금액 5억 미만=1.3% 수입금액 5억 초과=1.0% 공제한도 = 5백만원		【대안 2】 수입금액 2억 미만=1.3% 수입금액 2억 초과=1.0% 공제한도 = 5백만원	
		금액	차이	금액	차이
2억~5억	1,933,571	1,933,571	0	1,862,825	-70,746
5억~10억	1,883,580	1,843,069	-40,511	1,843,069	-40,511
10억~20억	1,801,063	1,778,781	-22,282	1,778,781	-22,282
20억 초과	2,941,499	2,922,024	-19,475	2,922,024	-19,475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수입금액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을 중단할 경우, 4억원의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됨
 - 이러한 세수효과 추계는 국세청이 제공한 샘플링자료의 과세규모별 분포가 실제와 일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출된 것임
 - 수입금액 2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을 중단할 경우, 105억원의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됨

<표 IX-23>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원)

과세표준	【대안 1】	【대안 2】
	수입금액 5억 미만=1.3% 수입금액 5억 초과=1.0% 공제한도 = 5백만원	수입금액 2억 미만=1.3% 수입금액 2억 초과=1.0% 공제한도 = 5백만원
2억~5억	-	-10,032
5억~10억	-446	-446
10억~20억	-24	-24
20억 초과	-4	-4
합계	-474	-10,506

주: 1.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2. 세수효과=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속한 국세청 샘플링자료 수*(2016년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수÷국세청 샘플링자료 수)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이 1.3%의 우대공제율과 5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는 우대공제율 적용을 폐지하고 공제한도를 3백만원으로 축소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일반사업자 1인당 공제세액이 40만~97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세액공제율 인하로 1인당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계층은 과세표준 20억 초과 구간으로 나타남

<표 IX-24>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

(단위: 원)

과세표준	【현행】 수입금액 관계없이 공제율 1.3%, 한도 5백만원	【대안 1】		【대안 2】	
		수입금액 5억 미만=공제율 1.3%, 한도 5백 수입금액 5억 초과=공제율 1.0%, 한도 3백		수입금액 2억 미만=공제율 1.3%, 한도 5백 수입금액 2억 초과=공제율 1.0%, 한도 3백	
		금액	차이	금액	차이
2억~5억	1,933,571	1,933,571	0	1,610,924	-322,647
5억~10억	1,883,580	1,481,559	-402,021	1,481,559	-402,021
10억~20억	1,801,063	1,374,362	-426,701	1,374,362	-426,701
20억 초과	2,941,499	1,967,990	-973,509	1,967,990	-973,509

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 수입금액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을 중단하고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할 경우, 50억원의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됨
 - 이러한 세수효과 추계는 국세청이 제공한 샘플링자료의 과세규모별 분포가 실제와 일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출된 것임
 - 수입금액 2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을 중단하고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할 경우, 508억원의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됨

<표 IX-25>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원)

과세표준	【대안 1】	【대안 2】
	수입금액 5억 미만=공제율 1.3%, 한도 5백 수입금액 5억 초과=공제율 1.0%, 한도 3백	수입금액 2억 미만=공제율 1.3%, 한도 5백 수입금액 2억 초과=공제율 1.0%, 한도 3백
2억~5억	-	-45,752
5억~10억	-4,425	-4,425
10억~20억	-464	-464
20억 초과	-203	-203
합계	-5,092	-50,845

- 주: 1.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2012~2016년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신고자료 371,153건)를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2. 세수효과=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가 1인당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속한 국세청 샘플링자료 수*(2016년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일반사업자 수÷국세청 샘플링자료 수)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가공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김재진,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9

김재진·홍범교,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2.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2017

기획재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8

국세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부 록



부 록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설문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심층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현 소득공제 제도 수정 및 개선을 위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공제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20개 이내이며, 소요시간은 대략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조사담당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문의사항 : 김정민 연구원

(Tel. 02-3484-0000)

응답자 기본 사항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만 19세 미만 조사 종료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 11. 충남(세종)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 16. 제주 | | | | |

SQ4. 귀하의 현재 근로 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상용근로자 : 사업장에 상시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2. 임시근로자 : 사업장에 상시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3.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조사 종료
4.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님(학생, 자영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
 조사 종료

SQ5. 귀하께서는 연말정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조사 종료

SQ5-1. (SQ5 보기1 응답자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총 몇 회 경험하셨습니다?

회 3회 이상인 경우만 조사 진행

SQ6. 실례지만 귀하(가족이 아닌 개인)의 총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전, 2017년 기준)

1. 2,000만원 미만
2. 2,000만원 ~ 5,000만원 미만
3. 5,000만원 ~ 7,000만원 미만
4. 7,000만원 ~ 1억원 미만
5. 1억원 ~ 1억 2,000만원 미만
6. 1억 2,000만원 이상

A. 지불결제수단 이용 현황

※ 우선 귀하께서 평소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결제하는 방식(지불결제수단)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천천히 읽으신 후,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불결제수단별 특징〉

신용카드	개인 신용한도금액에 한하여 미리 구매를 하고 정해진 날 대금을 결제하는 후불형 카드를 말함. 현금서비스, 할인혜택 등을 제공함.
체크카드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지급수단임.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현금서비스,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음.
직불카드	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체크카드와 개념이 동일하지만, 결제를 위해서는 은행계좌와 연동된 별도 수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으나 선진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됨
선불카드	돈을 미리 내고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하거나, 금액이 미리 충전된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함. 예) 충전식 버스카드, 충전식 하이패스카드, 카드형 상품권, 공중전화 카드 등

Q01. 귀하의 평소 지불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시요.

지불결제수단		사용금액 비중			
카드	신용카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체크·직불·선불카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현금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합계		<input type="text" value="1"/>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

Q02. (Q01 '신용카드' 0% 응답자 제외) 귀하께서 평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Rotation)

1.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2.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 결제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
3. 포인트, 마일리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 할부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6. 통장잔액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7. 기타

B.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

※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천천히 읽으신 후, 이어지는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입 목적

- 1999년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 공제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

기본 공제 부문		추가 공제 부문		
신용카드 사용분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15%	30%	30%	40%	40%

→ 연간 총 지출 비용이 똑같더라도,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같이 공제율이 높은 추가 공제 부문의 지출이 많을수록 공제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짐

○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 공제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공제금액 합과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

① 전통시장 공제금액(100만원 한도)+대중교통 공제금액(100만원 한도)

+도서·공연 공제금액(100만원 한도) = 최대 300만원 한도

② 공제한도 초과금액 = 5개 부문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합계 - 공제한도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이 추가 공제금액으로 산정되어, 최종 소득공제 금액에 반영됨

Q03. 귀하께서는 위 표에서 설명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1. 전혀 모르고 있다
2. 잘 모르는 편이다
3. 잘 아는 편이다
4. 매우 잘 알고 있다

Q04.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15%)보다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30%)이 더 높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Q04-1. (Q04 보기1 응답자만)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과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의 차이가 귀하의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어떤 영향을 있었습니까?

1.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
2.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선불카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3.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선불카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Q05.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서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 추가공제혜택(30%)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Q06.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추가공제혜택(40%)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Q06-1. (Q06 보기1 응답자만) 그렇다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40%)이 귀하의 전통시장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1. 전통시장 소비/지출에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
2. 전통시장 소비/지출이 조금 늘어났다
3. 전통시장 소비/지출이 매우 늘어났다

Q06-2. (Q06-1 보기1 응답자만)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이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Rotation)

1.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매장의 단말기 미구비 등)
2. 소액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3.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4.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5. 전통시장 이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
6. 기타

Q07.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서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추가공제혜택(40%)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Q07-1. (Q07 보기1 응답자만)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혜택(40%)이 귀하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1. 대중교통 이용에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
2.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늘어났다
3.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늘어났다

Q07-2. (Q07-1 보기1 응답자만)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Rotation)

1. 집과 직장 주변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등이 없어서
2. 대중교통 내부 시설(좌석, 환기, 냉방 등)이 열악해서
3.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복잡해서
4.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기 때문에
5. 배차간격, 경로 등으로 인해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6. 기타

Q0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귀하의 전반적인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1. 지출의 변화가 없었다(영향이 없었다)
2. 지출이 조금 늘어났다
3. 지출이 매우 늘어났다

Q0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공제 부문 중 도서·공연 사용분은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3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도서·공연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귀하의 도서·공연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도서·공연 사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영향이 없을 것이다)
2. 도서·공연 사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3. 도서·공연 사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Q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공제 부문 중 전통시장 사용에 대한 공제율이 2017년도 사용분부터 30%에서 4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율 인상이 귀하의 전통시장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통시장 사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영향이 없을 것이다)
2. 전통시장 사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3. 전통시장 사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Q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공제 부문 중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이 2017년도 사용분부터 30%에서 4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율 인상이 귀하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대중교통 이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영향이 없을 것이다)
2.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3.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늘어날 것이다

Q12. 2017년도 과세연도 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 금액 축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과세연도’란 세금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의미하며, ‘해당연도 1년’으로 이해하고 아래 문항에 응답 바랍니다.

○ 기존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변경된(2017년도분부터 적용)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C.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향

Q13.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이 15%,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이 3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이고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공제혜택과의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면, 귀하의 신용카드 사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변화가 없을 것이다(영향이 없을 것이다)
2. 신용카드 사용을 조금 줄일 것이다
3.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줄일 것이다

Q13-1. (Q11 보기2,3 응답자만) 제도 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신다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시겠습니까?

(보기 Rotation)

1. 신용카드사용액을 줄이는 대신 체크·직불·선불카드를 더 사용할 것이다
2. 신용카드사용액을 줄이는 대신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릴 것이다
3. 신용카드사용액을 줄이는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과 상관없이 현금사용을 늘릴 것이다
4. 다른 결제수단을 더 사용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소비/지출을 줄일 것이다
5. 기타

Q14. 아래 내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 소득공제 :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이전의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이 줄어드는 제도로, 고소득자가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 세액공제 : 기본세율이 적용된 이후의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므로, 동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Q19. 현행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보기 Rotation)

1. 소득공제의 특성상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공제혜택이 높다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3.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4. 제도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5.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 등이 줄어든다
6. 기타

Q20. 앞서 응답하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최대 2개 선택 가능)

(보기 Rotation)

1. 복잡한 조항을 폐지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다
2.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축소하여 체크·직불·선불카드와의 공제율 격차를 확대한다
3.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소득수준별 공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5. 정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제도를 폐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복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6. 기타

통계 처리를 위한 질문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1. 전문직 | 2. 경영/관리/사무직 | 3. 판매/서비스직 |
| 4. 생산/기능직 | 5. 농림/수산/축산업 | 6. 기타 |

DQ2.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 | | |
|----------|------------|---------|
| 1. 고졸 미만 | 2. 고졸 | 3. 전문대졸 |
| 4. 대졸 | 5. 대학원졸 이상 | |

DQ3. 귀하의 거주지역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 | | |
|-------------------|---------|-------------|
| 1.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 2. 중소도시 | 3. 읍·면·군 지역 |
|-------------------|---------|-------------|

DQ4.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 | |
|-------|-------|
| 1. 기혼 | 2. 미혼 |
|-------|-------|

DQ5. 귀하의 가족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1. 부부
2. 부부+자녀로 이루어져 있는 2세대 가구
3. 부부+부모+자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3세대 이상 가구
4. 1인 가구
5. 기타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설문조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심층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현 세액공제 제도 수정 및 개선을 위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대략 5개이며, 소요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조사담당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담당연구원 : 김정민 (02-3484-3031)

응답자 기본 사항

SQ1. 귀하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한 개인사업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한 세액공제를 받은 고객이 총 5명 이상입니까?

(2017년, 한 해 기준)

1. 예
2. 아니오 조사 종료

SQ2.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세무법인
2. 회계법인
3. 기타

Q01.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장려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미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됐으므로 추가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
2. 추가적인 효과가 없는 편이다
3. 여전히 효과가 있는 편이다
4. 여전히 매우 효과가 있다

Q02.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많아지면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증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3.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Q02-1. (Q02 보기3,4 응답자만)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가 자영업자 세부담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까다로운 공제요건(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10억 이상 매출의 개인사업자 제외)
2. 낮은 공제한도(연간 500만원 한도)
3. 낮은 공제율(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수준이며, 2019년도부터 공제율 인하 예정)
4. 기타

Q03. 2019년부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율 인하가 자영업자의 세부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기존 세액공제율		인하될 세액공제율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2.6%	→	2%
그 밖의 경우	1.3%	→	1%

1. 세부담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2. 세부담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
3.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Q0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대해서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일반 사업자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Q0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개 선택 가능)

(보기 Rotation)

1. 조세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인하한다
2.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
3. 조세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자를 축소한다
4. 정책목적이 달성됐으므로 제도를 폐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복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5. 기타